議政白書

1997



忠清北道議會

忠淸北道民憲章

(제정 : 1979. 4. 22)

충청북도는 충의롭고 중후한 전통을 지닌 곳이요, 수려한 자연과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고장이다.

우리 도민은 진취적인 기상을 길러 모두가 잘사는 복지사회건설을 위하여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첫 째 : 충효와 학문의 전통을 이어받아 의롭고 바르게 산다.

둘 째 : 내 고장을 사랑하고 문화유산을 보전하여 도민의 긍지를 높인다.

셋 째 : 성실하게 일하고 근검 절약하여 생산하는 생활을 한다.

넷 째 : 서로 돕고 아끼며 공익과 봉사를 앞세워 명랑한 사회를 이룩한다.

다섯째 :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풍토를 조성하여 번영된 내일을 개척한다.

忠淸北道議會議員倫理綱領

(제정 : 1991. 10. 9)

우리 의원은 도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 도민의 신뢰를 받으며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도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 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부단히 인격과 지성을 함양하여 도덕적 품위를 가지고 공사생활에 사표가 된다.

2. 우리는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우선하는 정신으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3. 우리는 도민의 수범자로서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솔선한다.

4. 우리는 의정활동의 일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의원상호간 존중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

5. 우리는 도민에 대한 책임자로서 모든 공적·사적 언행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진다.

발 간 사



존경하는 15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가슴벅찬 희망과 꿈을 안고 제5대의회가 1995년 7월 12일 역사적인 개원식을 시작으로 힘차게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4대의회가 30년만에 지방자치를 부활시켰다고 한다면 제5대의회의 전반기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원년을 열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촉구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개정과 추곡 및 잎담배 수매가 인상 건의,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공사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통해 경영정상화 촉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특히 특정 다목적댐 주변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입법청원 추진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민의 신뢰구축과 수준높은 의회상 정립은 큰 보람과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이와같은 의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드리고 기록으로 영구히 보존함과 동시에 의정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97의정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참여를 바라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의정백서 발간을 위하여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제5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다가오는 21세기의 초석을 다지고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계속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6월

충청북도의회의장 김 동 진

第 5 代 議會 前半期 議長團



의장 車 珠 元



부의장 劉 永 勳



부의장 申 完 燮

第 5 代 議會 前半期 常任委員長



의회운영위원장
金 俊 錫



기획경제위원장
宋 在 周



내 무 위 원 장
成 者 德



교육사회위원장
劉 載 喆



농림수산위원장
安 載 元



건설교통위원장
韓 相 文

第 5 代 忠淸北道議會 議員

성 명	선거구 및 정당	학 력 및 경 력
 朴 用 仁 (37. 10. 10)	청주시 제1선거구 (자민련) 〔영·북2·북3가동, 문화·북1·남2가동, 서운·남1가동, 서문동, 남주동, 석교동, 수동, 우암동〕	· 청주대학교 상과 졸업 · 청주대학교대학원 회계학수료(2년)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현) · 제4대 청주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金 俊 錫 (42. 11. 8)	청주시 제2선거구 (무소속) 〔내덕1동, 내덕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북청주 로타리크럽 회장 · 제4대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金 春 植 (58. 9. 2)	청주시 제3선거구 (자민련) 〔탑·대성동, 영운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용암·용정·방서동〕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CEL 청주어학원장(현) · 새한국당 청주 흥덕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현) · 충청북도민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5대의회 내무(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성 명	선거구 및 정당	학 력 및 경 력
 崔 鍾 哲 (54. 1. 3)	청주시 제4선거구 (민주당) 〔사직1동, 운천·신봉동, 봉명1동, 봉명2·송정동, 강서2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현)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현) · 통일교육 전문위원(현)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林 憲 用 (58. 6. 12)	청주시 제5선거구 (민주당) 〔사직2동, 모충동,산·미·분·장동, 수곡동〕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현)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朴 晩 淳 (41. 3. 19)	청주시 제6선거구 (무소속)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복대1동, 복대2동, 가경동, 강서1동〕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가경, 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현)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성 명	선거구 및 정당	학 력 및 경 력
 金 仁 植 (36. 12. 6)	충주시 제1선거구 (신한국) 〔성내·성남·성서동, 충인·충의동, 용산동, 지현동, 호암·직동, 안림·종민·목벌동〕	·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權 寧 觀 (47. 1. 9)	충주시 제2선거구 (신한국) 〔문화동, 단월·풍·가주동, 용관·용두·달천동, 봉방동, 칠금·금릉동〕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주시 4-H후원회장(현)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현) · 충주시 생활체육협의회장(현)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尹 炳 泰 (51. 5. 20)	충주시 제3선거구 (자민련) 〔교현1동, 교현2동, 연수동, 목행·용탄동〕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이사 충주지사장(현) · 자민련 충북지부 부위원장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1대 충주시회 의원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중앙위원 충북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성 명	선거구 및 정당	학 력 및 경 력
 金 在 根 (55. 4. 23)	충주시 제4선거구 (신한국) 〔주덕읍, 살미면, 상모면, 이류면〕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지역개발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 중원당약국 대표(현)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현)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현)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李 善 鎬 (58. 9. 27)	충주시 제5선거구 (무소속)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가금면〕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신니면 한우영농법인 대표이사 · 충주시 농어민후계자연합회장(현) · 충청북도 농어민후계자연합회이사(현) · 충주시 농어촌발전심의회위원(현)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崔 先 煥 (45. 3. 25)	충주시 제6선거구 (자민련)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현)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성 명	선거구 및 정당	학 력 및 경 력
 李 吉 廈 (57. 2. 19)	제천시 제1선거구 (무소속) 〔교동, 남천동, 동현동, 두학동〕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 상임위원 · 기독교 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장 ·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전국부회장 · 한겨레신문 제천지국장(현) · 생명과 환경을 위한 모임 운영위원(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李 炳 斗 (46. 9. 16)	제천시 제2선거구 (신한국) 〔중앙동, 의림동, 용두동, 청전동〕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제2지구 의료보험조합이사(현)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현)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李 丙 哲 (55. 6. 24)	제천시 제3선거구 (무소속) 〔명서동, 화산1동, 화산2동, 영천1동, 영천2동〕	· 세명대학교 행정경영대학원 재학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현) · 제천 음식업지부장(현) · 삼성운수(주) 대표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성 명	선거구 및 정당	학 력 및 경 력
 朴 尙 秀 (45. 10. 26)	제천시 제4선거구 (무소속)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 세명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과 재 · 제천군 농촌지도소 · 괴산군 농촌지도소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 제천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도전우체국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崔 英 洛 (58. 2. 28)	제천시 제5선거구 (무소속)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李 敏 熙 (50. 4. 13)	청원군 제1선거구 (민주당)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 청주농업고등학교 임업과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수학 · 통일민주당 청주·청원 조직부장 · 민주산악회 청원군 조직부장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성 명	선거구 및 정당	학 력 및 경 력
 吳 成 鎭 (48. 9. 26)	청원군 제2선거구 (신한국) 〔남이면, 현도면, 부용면, 강내면, 강외면〕	· 충남대학교 식품가공학과 졸업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현)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현)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부회장(현)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현)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車 珠 龍 (37. 9. 13)	청원군 제3선거구 (신한국) 〔옥산면, 오창면, 북이면, 북일면〕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 과정 수료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현)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현) · 신한국당 청원지구당 부위원장(현) · 북일도정공장 대표(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李 香 來 (50. 10. 16)	보은군 제1선거구 (민주당) 〔보은읍, 내속리면, 외속리면, 마로면, 탄부면〕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바 수료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성 명	선거구 및 정당	학 력 및 경 력
 劉 載 喆 (28. 10. 25)	보은군 제2선거구 (민주당)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북면, 내북면, 산외면〕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총대 · 6. 25참전동우회 보은군지회장(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宋 在 周 (37. 11. 7)	옥천군 제2선거구 (무소속) 〔옥천읍, 군서면, 군북면〕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업협동조합 조합장(현)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현) · 제53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安 哲 浩 (40. 12. 8)	옥천군 제2선거구 (자민련) 〔동이면, 이원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장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대책특별위원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현) · 청산화학 대표(현)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성 명	선거구 및 정당	학 력 및 경 력
 張 準 浩 (41. 4. 1)	영동군 제1선거구 (신한국) 〔영동읍, 양강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 지회장 · 지전장학회 회장(현)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보은, 옥천,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鄭 泰 禎 (46. 4. 29)	영동군 제2선거구 (신한국)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현)·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韓 相 文 (34. 10. 5)	진천군 제1선거구 (민주당)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성 명	선거구 및 정당	학 력 및 경 력
 劉 永 勳 (55. 4. 30)	진천군 제1선거구 (민주당)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만승면〕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金 大 鎬 (52. 2. 21)	괴산군 제1선거구 (신한국)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소수면, 불정면〕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경영학 전공 · 괴산 청년회의소 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현) · (주)동산운수 대표(현) · 새마을운동 괴산군 지회장(현) · 경북 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의회운영) 위원회 위원
 朴 蘊 燮 (40. 12. 13)	괴산군 제2선거구 (민주당)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 송면초등학교 졸업 · 민족통일협의회 괴산군 부의장 · 국제 퇴계학회 충북이사(현)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현) · 괴산향교 장의(현) · 민주당 청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성 명	선거구 및 정당	학 력 및 경 력
 柳 明 昊 (42. 2. 28)	괴산군 제3선거구 (무소속) 〔증평읍, 도안면〕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괴산군 4-H 후원회장(현) · 민주평통 괴산군협의회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車 珠 元 (29. 12. 21)	음성군 제1선거구 (신한국)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 성균관대 경영행정대학원 경영학 연구과정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 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크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현)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현)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成 者 德 (57. 6. 20)	음성군 제2선거구 (무소속)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현)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현)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현) · 금왕 천주교회 사목회 부회장(현)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성 명	선거구 및 정당	학 력 및 경 력
 朴 濟 國 (38. 8. 18)	음성군 제3선거구 (신한국) 〔맹동면, 대소면, 삼성면〕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현)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申 完 燮 (40. 11. 16)	단양군 제1선거구 (신한국) 〔단양읍, 단성면, 대강면, 적성면〕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현) · 제4대 도의회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安 載 元 (50. 2. 3)	단양군 제2선거구 (무소속) 〔매포읍,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현) · 제4대 도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성 명	선거구 및 정당	학 력 및 경 력
 宋 玉 順 (42. 4. 2)	비례대표 (신한국)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중퇴 · 한국어린이육영회 충북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현) · 충청북도 새마을부녀회장(현) · 의료법인 한국병원 이사(현)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적십자 가사조정위원(현) · 청주지법 가사조정위원(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金 東 鎭 (36. 10. 2)	비례대표 (신한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 신농한의원 원장(현)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현)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朴 鶴 來 (23. 3. 11)	비례대표 (민주당)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현)

성 명	선거구 및 정당	학 력 및 경 력
 李 鍾 國 (29. 6. 6)	비례대표 (자민련)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 내덕, 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議 政 活 動



제5대의회 개원에 앞서 회의실에서 열린 의원 상견례('95. 7. 10)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5대의회 개원식에서 있은 의원선서('95. 7. 12)

議政活動



2002월드컵축구대회 오송경기장유치추진상황보고 청취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96. 7. 9)



'96상반기 의회사무처 업무추진상황보고('96. 7. 8)

議 政 活 動

기획경제위원회



'96상반기 공보관실 업무추진상황보고('96. 7. 19)



청원군 북일면소재 광명난명예연구소 현지방문('96. 4. 17)

議 政 活 動

내무위원회



'95년도 내무국 행정사무감사('95. 11. 21)



진천군 문백면소재 문화유적지 농다리 답사('96. 3. 14)

議 政 活 動

교육사회위원회



교육위원회 관련 조례안 심사('95. 10. 10)



충주시 소재 새한미디어 공장의 공해배출시설 운영실태 점검('95. 8. 23)

議 政 活 動

농림수산위원회



'97년도 농촌진흥원 예산안 예비심사('96. 12. 4)



내수면개발시험장 신어중연구시설 확인('96. 3. 13)

議 政 活 動

건설교통 위원회



'96년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96. 11. 21)



단양군 영춘면 수해현장을 방문 수해실태 확인 및 복구지원활동 장병격려('95. 9. 1)

議 政 活 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7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종합심사('96. 12. 9)



'96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추경예산안 종합심사('96. 12. 19)

議政活動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에 관한 건 협의('95. 8. 26)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청원 자료수집을 위한
현지의견수렴활동('96. 10. 2)

議 政 活 動



청주시 소재 충혼탑 참배('96. 1. 1)



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96 신년인사회('96. 1. 3)

議 政 活 動



제5대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 ('96. 7. 12)



식목일 기념행사를 겸한 생명의 숲 조성('96. 4. 5)

議 政 活 動



청원군 강외지역 수해현장 방문('95. 8. 29)



청원군 관내 과수원 농촌일손돕기('96. 5. 30)

議 政 活 動



서울에서 개최된 충북지역출신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95. 10. 16)



충북100년 기념행사 축하사절단인 일본 야마나시현의회의장일행 접견('96. 8. 3)

議 政 活 動



의원들의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주병덕 도지사 ('96. 4. 22)



도정질문·답변과정을 방청하고 있는 도민들의 열기('96. 9. 2)

議 政 活 動



김주철 미국아리조나주립대학 부총장을 초청『지방자치와 의회의 역할』에 대한 의원연찬('96. 7. 18)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에 앞서 관계관 선서('96. 11. 21)

일 러 두 기

○ 이 백서는 제5대 충청북도의회의 개원이후 전반기 (1995년 7월 12일 ~ 1997년 1월 11일)동안의 회기별 의정활동 내용을 수록하였음.

○ 제1장은 의회개관편으로 의회연혁, 의회구성, 의회의 지위와 권한, 의회의 운영, 의회사무처 현황에 대한 변동사항을 정리하였고

○ 제2장은 의정활동편으로 제115회 임시회부터 제132회 정기회까지 18회에 걸친 회기별 개회배경, 회기, 본회의활동, 위원회 활동상황을 요약 수록하였으며, 주요안건별 처리결과 부문에서는 모든 안건에 대한 그 경과 및 결과를 다루었으나 일부 경미한 안건처리 결과는 생략하였음.

○ 제3장은 행정사무감사편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요와 '95년도 및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하였고

○ 제4장은 청원 및 진정처리편으로 청원과 진정에 관한 처리개요, 처리현황, 처리절차, 처리내용을 간단하게 수록하였으며

○ 끝으로 부록편에서는 역대도의원 명단, 회기별 개회사와 의회관련 각종 기념행사의 연설문집,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의정통계 및 자료를 수록하였음.

目　　次

第 1 章 議會槪觀 ····· 9

第 1 節 一般現況 ····· 11

1. 議會沿革 ····· 11
2. 議會機構 ····· 12
3. 議會構成 ····· 13

第 2 節 議會의 地位와 權限 ····· 16

1. 議會의 地位 ····· 16
2. 議會의 權限 ····· 17

第 3 節 議會의 運營 ····· 26

1. 會　期 ····· 26
2. 本會議 ····· 26
3. 委員會 ····· 26
4. 議案의 處理 ····· 28
5. 會議錄 作成 및 發刊 ····· 36
6. 會議場 傍聽 ····· 38

第 4 節 議會事務處 ····· 39

1. 機構 및 定員 ····· 39
2. 部署別 機能 ····· 40
3. 議會資料室 運營 ····· 41
4. 議會施設 ····· 42
5. 議會事務處 幹部名單 ····· 44

第 2 章 議政活動 ····· 45

第 1 節 第115回 臨時會 ····· 47

1. 開會背景 ····· 47
2. 會　　期 ····· 47
3. 本會議 活動 ····· 47
4. 委員會 活動 ····· 49

第 2 節 第116回 臨時會 ····· 53

1. 開會背景 ····· 53
2. 會　　期 ····· 53
3. 本會議 活動 ····· 53
4. 委員會 活動 ····· 56

第 3 節 第117回 臨時會 ····· 70

1. 開會背景 ····· 70
2. 會　　期 ····· 70
3. 本會議 活動 ····· 70
4. 委員會 活動 ····· 100

第 4 節 第118回 臨時會 ····· 105

1. 開會背景 ····· 105
2. 會　　期 ····· 105
3. 本會議 活動 ····· 105
4. 委員會 活動 ····· 108

第 5 節 第119回 臨時會 ····· 119
1. 開會背景 ····· 119
2. 會　　期 ····· 119
3. 本會議 活動 ····· 119
4. 委員會 活動 ····· 121

第 6 節 第120回 定期會 ····· 131
1. 開會背景 ····· 131
2. 會　　期 ····· 131
3. 本會議 活動 ····· 131
4. 委員會 活動 ····· 163

第 7 節 第121回 臨時會 ····· 179
1. 開會背景 ····· 179
2. 會　　期 ····· 179
3. 本會議 活動 ····· 179
4. 委員會 活動 ····· 181

第 8 節 第122回 臨時會 ····· 193
1. 開會背景 ····· 193
2. 會　　期 ····· 193
3. 本會議 活動 ····· 193
4. 委員會 活動 ····· 195

第 9 節 第123回 臨時會 ····· 200

1. 開會背景 ····· 200

2. 會　　期 ····· 200

3. 本會議 活動 ····· 200

4. 委員會 活動 ····· 202

第 10 節 第124回 臨時會 ····· 206

1. 開會背景 ····· 206

2. 會　　期 ····· 206

3. 本會議 活動 ····· 206

4. 委員會 活動 ····· 228

第 11 節 第125回 臨時會 ····· 238

1. 開會背景 ····· 238

2. 會　　期 ····· 238

3. 本會議 活動 ····· 238

4. 委員會 活動 ····· 241

第 12 節 第126回 臨時會 ····· 250

1. 開會背景 ····· 250

2. 會　　期 ····· 250

3. 本會議 活動 ····· 250

4. 委員會 活動 ····· 252

第 13 節 第127回 臨時會 ····· 255
1. 開會背景 ····· 255
2. 會　　期 ····· 255
3. 本會議 活動 ····· 255
4. 委員會 活動 ····· 257

第 14 節 第128回 臨時會 ····· 269
1. 開會背景 ····· 269
2. 會　　期 ····· 269
3. 本會議 活動 ····· 269
4. 委員會 活動 ····· 316

第 15 節 第129回 臨時會 ····· 324
1. 開會背景 ····· 324
2. 會　　期 ····· 324
3. 本會議 活動 ····· 324
4. 委員會 活動 ····· 326

第 16 節 第130回 臨時會 ····· 333
1. 開會背景 ····· 333
2. 會　　期 ····· 333
3. 本會議 活動 ····· 333
4. 委員會 活動 ····· 335

第 17 節 第131回 臨時會 ····· 338
1. 開會背景 ····· 338
2. 會　　期 ····· 338
3. 本會議 活動 ····· 338
4. 委員會 活動 ····· 340

第 18 節 第132回 定期會 ····· 343
1. 開會背景 ····· 343
2. 會　　期 ····· 343
3. 本會議 活動 ····· 343
4. 委員會 活動 ····· 359

第 3 章 行政事務監査 ····· 379

第 1 節 行政事務監査 槪要 ····· 381
1.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權 ····· 381
2. 監査過程 및 節次 ····· 382

第 2 節 1995年度 行政事務監査 ····· 383
1. 監査의 目的 ····· 383
2. 監査 期間 ····· 383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383
4. 監査班 編成 ····· 384
5. 監査日程 및 場所 ····· 385
6. 委員會別 指摘事項 ····· 387
7. 主要 指摘內容 ····· 387

第 3 節 1996年度 行政事務監査 ····· 403
1. 監査의 目的 ····· 403
2. 監査 期間 ····· 403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403
4. 監査班 編成 ····· 404
5. 監査日程 및 場所 ····· 405
6. 委員會別 指摘事項 ····· 407
7. 主要 指摘內容 ····· 407

第 4 章 請願 및 陳情處理 ····· 423

第 1 節 請 願 ····· 425
1. 處理 槪要 ····· 425
2. 處理 現況 ····· 425
3. 處理 節次 ····· 426
4. 處理 內容 ····· 427

第 2 節 陳 情 ····· 433
1. 處理 槪要 ····· 433
2. 處理 現況 ····· 433
3. 處理 節次 ····· 434
4. 處理 內容 ····· 435

부 록 ····· 459

Ⅰ. 歷代 道議員 名單 ····· 461

Ⅱ. 演說文集 ····· 465

Ⅲ. 議政統計 및 資料 ····· 507

第1章 議會概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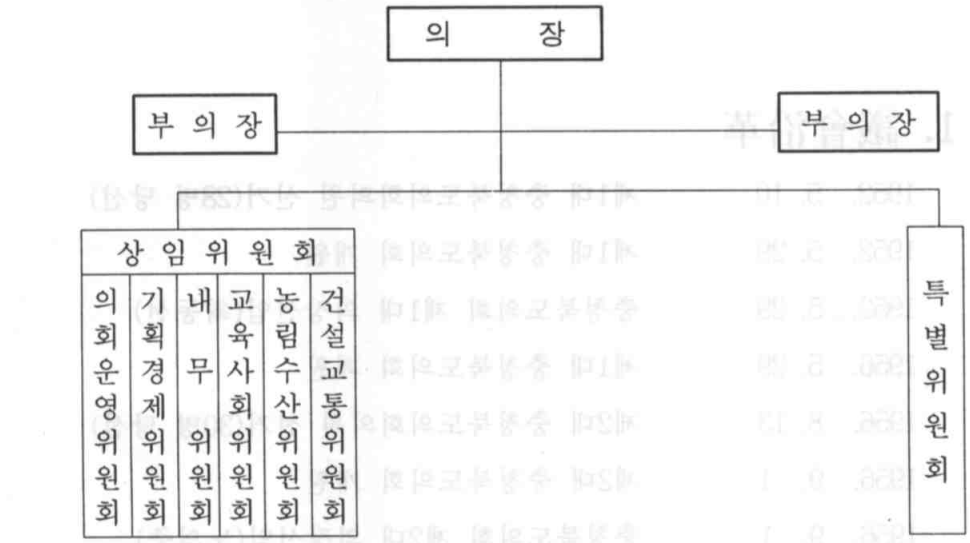
第1節 一般現況
第2節 議會의 地位와 權限
第3節 議會의 運營
第4節 議會事務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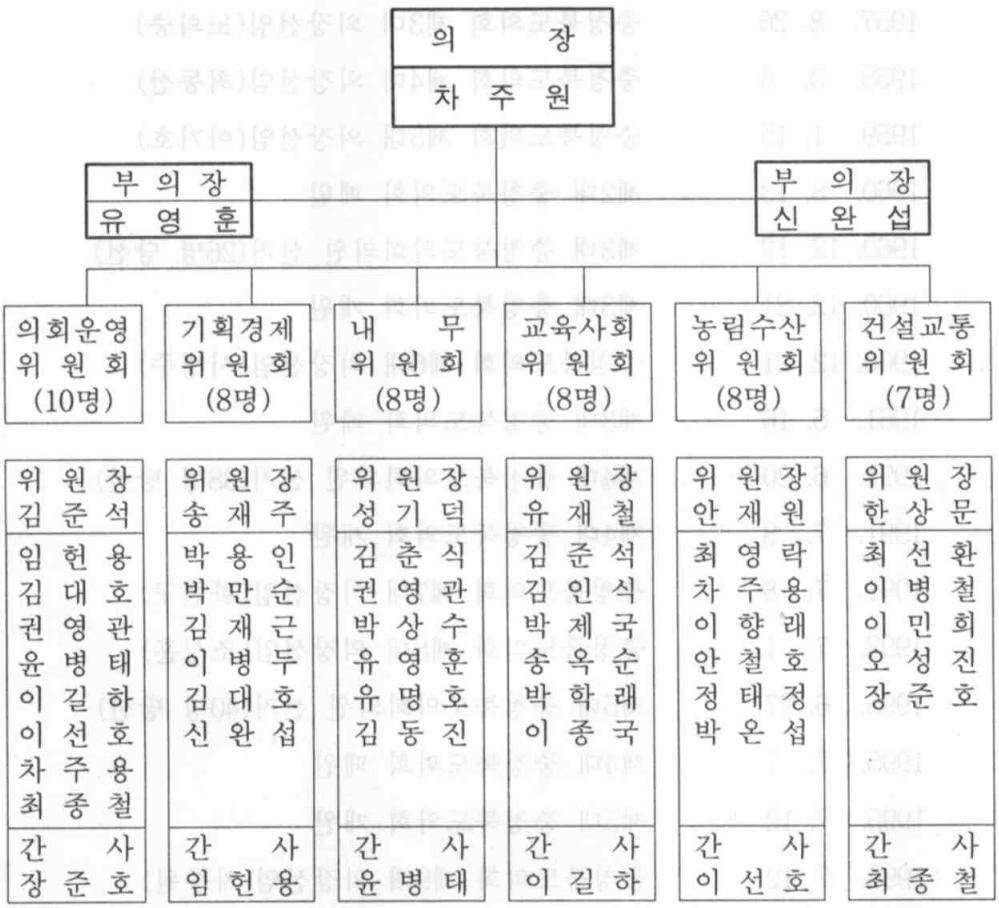
第 1 節　一般現況

1. 議會沿革

1952. 5. 10	제1대 충청북도의회의원 선거(28명 당선)
1952. 5. 29	제1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1952. 5. 29	충청북도의회 제1대 의장선임(최동선)
1956. 5. 29	제1대 충청북도의회 폐원
1956. 8. 13	제2대 충청북도의회의원 선거(30명 당선)
1956. 9. 1	제2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1956. 9. 1	충청북도의회 제2대 의장선임(노의중)
1957. 8. 26	충청북도의회 제3대 의장선임(노의중)
1958. 3. 6	충청북도의회 제4대 의장선임(최동선)
1959. 1. 15	충청북도의회 제5대 의장선임(이기호)
1960. 8. 13	제2대 충청북도의회 폐원
1960. 12. 12	제3대 충청북도의회의원 선거(26명 당선)
1960. 12. 21	제3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1960. 12. 21	충청북도의회 제6대 의장선임(서병주)
1961. 5. 16	제3대 충청북도의회 폐원
1991. 6. 20	제4대 충청북도의회의원 선거(38명 당선)
1991. 7. 8	제4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1991. 7. 8	충청북도의회 제7대 의장선임(한현구)
1993. 7. 1	충청북도의회 제8대 의장선임(조성훈)
1995. 6. 27	제5대 충청북도의회의원 선거(40명 당선)
1995. 7. 7	제4대 충청북도의회 폐원
1995. 7. 12	제5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1995. 7. 12	충청북도의회 제9대 의장선임(차주원)

2. 議會機構


의 장
부 의 장
부 의 장
상 임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특별위원회


의 장
차 주 원
부 의 장
유 영 훈
부 의 장
신 완 섭
의회운영위원회 (10명)
기획경제위원회 (8명)
내무위원회 (8명)
교육사회위원회 (8명)
농림수산위원회 (8명)
건설교통위원회 (7명)
위원장 김준석
위원장 송재주
위원장 성기덕
위원장 유재철
위원장 안재원
위원장 한상문
임헌용
김대호
권영관
윤병태
이길하
이선호
차주용
최종철
박용인
박만순
김재근
이병두
김대호
신완섭
김춘식
권영관
박상수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최영락
차주용
이향래
안철호
정태정
박온섭
최선환
이병철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
간사 장준호
간사 임헌용
간사 윤병태
간사 이길하
간사 이선호
간사 최종철

3. 議會構成

1) 의 원

제5대 충청북도의회는 36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지역구의원 36인과 비례대표 4인, 총 40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 의원정수 : 도의원 36인, 비례대표 4인, 총40인)

도의원은 도민의 대표로서 조례의 제·개정,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등 중요도정을 심의 결정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여 의원의 신분에 상응하는 여러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임기는 4년이다.

(단, 제5대의회의원 임기 3년)

2) 의 장·부의장

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고 있으며 의장 및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다. (단, 제5대의회 의장·부의장 임기 : 1년 6월)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의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의장,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3) 본 회 의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전원(40인)으로 구성되며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며, 일반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4) 위 원 회

가) 상임위원회

의회는 6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별 소관 집행기관의 의안과 청원등을 심사 처리한다.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이다.
(단, 제5대의회 상임위원 임기 : 1년 6월)

상임위원장은 당해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회별 소관부서

위 원 회 별	정 수	소 관 사 항
의회운영위원회	10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
기획경제위원회	8	<3실 1국> ○공보관실, 감사실, 기획관리실 ○공업경제국
내 무 위 원 회	8	<3국 · 본부, 1직속기관,1출장소,1사업소> ○내무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지방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교육사회위원회	8	<2국 1직속기관, 1교육청> ○보건환경국, 사회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교육청(교육, 학술업무)
농림수산위원회	8	<1국, 1직속기관> ○농정국 ○농촌진흥원
건설교통위원회	7	<1국 2사업소>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단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나) 특별위원회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현황

명 칭	구 성 일 (활동기한)	구 성 의 원	활 동 상 황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95.10.19 ('97.1.7)	위원장 : 이병두 간 사 : 유명호 위 원 : 김준석, 임헌용, 김동진, 권영관, 김재근, 최선환, 최영락, 이민희, 이향래, 이희복, 정태정, 박제국 ※ 위원교체 ('96.5.20) ┌ 김준석→김춘식 └ 이희복(자격상실) ※ 위원보임('96.10.29) · 안철호위원	<'95년도> 1. '95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 제2회, 제3회 (도청,교육청) 2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심사 (도청, 교육청) 3.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심사 (도청) 4. '96년도 예산안 심사 <'96년도> 1. '96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 제1회, 제2회 (도청, 교육청) 2.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 심사 (도청, 교육청) 3. '97년도 예산안심사 (도청, 교육청)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96.7.24 ('97.6.30)	위원장 : 박학래 간 사 : 최선환 위 원 : 최종철, 이선호, 이길하, 오성진,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박온섭, 박제국 ※ 위원보임('96.10.29) · 박상수위원	1. 위원회 활동방향 협의 ('96. 9. 20) 2. 특정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 에 관한 법률제정 청원서 제출 - '96. 9. 23 (국회) 3. 댐주변지역 주민피해 및 환경 등 문제점 점검 현지확인 (10.1~2, 단양,충주) 4. 본회의시 활동상황 보고 관련 협의 ('96. 12. 23)

第 2 節 議會의 地位와 權限

1. 議會의 地位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주민이 지방자치의 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참여 정치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필수적인 기관이다.

2)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즉 자치단체 주민의 부담,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3)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등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집행기관이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2. 議會의 權限

1)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

조례안은 도의원과 도지사가 제안할 수 있으며 도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다만,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그리고 조례안의 의결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장에게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며, 그 확정조례가 도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공포 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공포한다.

〈범 위〉

- 의회 권한의 전권기능의 원칙(Prinzip der Allzustandigkeit des Rates)에 의거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모든 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관할권 가짐
- 지방의회의 관할 범위는 곧 의결사항의 범위의 문제
- 필요적 의결사항, 조례에 의한 의결사항 및 임의적 의결사항의 3가지 종류로 구분됨.

① 필요적 의결사항(법정의결사항)

○ 지방의회가 필수적으로 의결해야 할 법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조례에 의한 의결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앞서의 법정의결사항 이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

○ 조례에 의한 의결사항도 반드시 지방의회가 의결해야 하나, 의결의무가 법률이 아니고 조례로 정해지는 점에 필요적 의결 사항과 차이

③ 임의적 의결사항

○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지방의회가 의결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지방자치법상의 규정 없음

○ 지방의회는 주민직선에 의해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주민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전권기능을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임의적 의결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좋음.

2) 재정에 관한 권한

도의회는 도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결산을 심사하며 도민의 부담이 되는 주민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며 도의 채무부담에 대한 동의 등 재정에 관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바, 이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의회의 주요한 권능의 하나이다. 예산안은 도에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되며 의회에서는 도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계수를 조정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하여 확정된다.

도의회는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그 규모 및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나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신 비목을 설치할 때에는 도지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지사는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출납폐쇄후 3일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의회는 도지사가 제출한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예산안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세입세출결산은 도에서 제출되면 지체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예산의 심의 확정권
- ○ 결산 승인권
- ○ 지방세의 부과 징수조례제정권
- ○ 지방채 발행 동의권
- ○ 예산외의 재정 부담행위 등에 관한 동의권
- ○ 주요재산등의 취득·설치관리·처분에 관한 조례 제정권
- ○ 지방공사 및 공단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권 등

※ 별표참조

3) 도정통제에 관한 권한

도의회는 의회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나 현안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을 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감사와 직접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행정·교육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도 있다.

도지사의 보조기관중 부지사,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그 보조기관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을 보고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음은 물론 본회의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교육감, 부지사 또는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은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 대집행기관 견제권

· 동의권

· 보고 및 서류제출 청구권

· 의견 표명권

· 의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권

○ 중요 공무원 선임권

· 교육위원 선임권

○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당해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특정사안에 대해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음)

·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 별표참조

4) 의회자율운영에 관한 권한

도의회는 법률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사항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의회의 집회·휴회 및 회기 등의 결정권, 의장단선출 등의 내부조직권, 의사와 내부법률에 관한 규칙제정권, 의사일정의 작성 등 의사에 관한 권한, 내부경호등 질서유지에 관한 권한, 의원의 징계등 의원의 신분에 관한 권한을 다른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5) 청원수리에 관한 권한

의회에 청원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권한과 관련 된 사항에 대하여 청원이 가능하다.

○ 청원수리사항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이나 징계, 처벌의 요구
- 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청원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 동일 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별표 1〕 법령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결사항(34건)

제 목	근 거	실시기관	비 고
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법 제35조	시·도 시·군·구	
② 예산의 심의·확정	〃	〃	
③ 결산의 승인	〃	〃	
④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	
⑤ 기금의 설치 운용	〃	〃	
⑥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	
⑦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	
⑧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	
⑨ 청원의 수리와 처리	〃	〃	
⑩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	
⑪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	〃	
⑫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의 조사	법제36조제1항	〃	
⑬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의 의결	법제41조제1항	〃	
⑭ 지방의회의 회기 의결	법제41조제2항	〃	
⑮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 불신임 의결	법제49조제1항	〃	
⑯ 폐회중 위원회의 개회	법제53조	〃	
⑰ 지방의회 회의의 비공개 결정	법제57조	〃	

제 목	근 거	실시기관	비 고
⑱ 비밀을 요하는 지방의회 회의록의 비공개 결정	법제64조제4항	시·도 시·군·구	
⑲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상실 의결	법제72조제1항	〃	
⑳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	법제78조	〃	
㉑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의결	법제19조제4항 제98조제2항 제99조 제159조제2항	〃	
㉒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법제115조제1항	〃	
㉓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세입·세출 예산외의 채무부담원인행위	법제115조제2항	〃	
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부담 행위	법제115조제3항	〃	
㉕ 지방자체단체의 채권에 관한 채무의 면제 또는 효력의 변경	법제115조제5항	〃	
㉖ 회계년도 예산안의 확정	법제118조제2항	〃	
㉗ 지방자치단체의 계속비의 의결	법제119조	〃	
㉘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법제121조	〃	
㉙ 지방자치단체 소관사무 일부를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위탁시 그 규약의 제정	법제141조제2항	〃	
㉚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 구성과 규약 제정	법제142조제2항	〃	
㉛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의 규약 변경,행정협의회 폐지	법제148조	〃	
㉜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의 설립과 규약 제정	법제149조제1항	〃	
㉝ 지방자치단체의 규약변경과 조합해산	법제154조제1항	〃	
㉞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사무의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령제17조의 3 제1항	〃	

□ 타법령상 지방의회 의결사항(14건)

제 목	근 거	실시기관	비 고
① 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의 조상충용	지방재정법 제3조제3항	시·도 시·군·구	·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요함
② 지방자치단체의 일시 차입금	〃 제11조제1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단체, 공사, 공단 또는 공익법인에 대한 출자	〃 제15조제2항	〃	
④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이용	〃 제38조제1항	〃	
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명시이월	〃 제40조제1항	〃	
⑥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제77조제1항	〃	
⑦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보조받아야 할 공공시설에 한함)	〃 제109조제1항	〃	· 사전 내무부관의 승인의 요함.
⑧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5조제2항	시·군·구	
⑨ 교육위원의 선출	〃 제5조제4항	시·도	
⑩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	〃 제13조제2항	〃	
⑪ 교육·학예에 관한 예산안	〃 제13조제2항	〃	
⑫ 교육·학예에 관한 결산	〃 제13조제2항	〃	
⑬ 교육·학예에 관한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 제13조제2항	〃	
⑭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	지방세법 제9조의2	시·도 시·군·구	

〔별표 2〕 지방의회 자율권(23건)

제 목	근 거	실시기관	비 고
① 임시회 소집권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시·도 시·군·구	
② 개회, 휴회, 폐회의 의결	〃 제41조제1항	〃	
③ 정기회, 임시회의 회기 결정	〃 제41조제2항	〃	
④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선출	〃 제42조	〃	
⑤ 지방의회 임시의장의 선출	〃 제46조	〃	
⑥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불신임 결의	〃 제49조	〃	
⑦ 지방의회 위원회의 구성	〃 제50조제1항	〃	
⑧ 위원회 위원의 선임	〃 제50조제3항	〃	
⑨ 위원회의 개회	〃 제53조	〃	
⑩ 회의의 비공개 의결	〃 제57조	〃	
⑪ 의안의 발의권	〃 제58조	〃	
⑫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본회의 부의	〃 제61조제1항	〃	
⑬ 회의규칙의 제정권	〃 제63조	〃	
⑭ 비밀을 요하는 회의록의 비공개	〃 제64조제4항	〃	
⑮ 청원의 심사·처리	〃 제67조제1항 제68조	〃	
⑯ 청원소개의원에 대한 청원의 취지 설명 요구	〃 제68조제2항	〃	
⑰ 지방의회의원의 사직허가	〃 제69조	〃	
⑱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심사 청구 및 의결	〃 제71조	〃	
⑲ 지방의회의원 자격상실 의결	〃 제72조제1항	〃	
⑳ 방청인의 단속에 관한 회의규칙 제정	〃 제77조제4항	〃	
㉑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권	〃 제78조	〃	
㉒ 타 의원을 모욕한 의원의 징계 요구	〃 제79조제2항	〃	
㉓ 징계에 대한 회의규칙의 제정	〃 제81조	〃	

第3節 議會의 運營

1. 會　　期

회기란 의회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정기회의 회기는 40일 이내,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기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기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하며,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2. 本 會 議

도의회의 최종의사결정 단계로서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의결, 선임 또는 결정』한다고 할 때 이 지방의회는 본회의를 의미하게 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본회의는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도지사,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로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최종 의결한다. 본회의에서 발언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표결은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한다.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행하며, 일반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도의회의 운영》

회 의 종 류

■ **본회의** : 의회의사의 최종결정
(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

- 정기회 : 매년11월20일(40일간)
- 임시회 : 필요시(도지사 및 재적의원 1/3이상 요구시) 15일 이내

※ 회의 총일수는 연중 120일 이내

■ **위원회**

	기 능	소 집
상 임 위원회	소관의안·청원 등 심사처리	위원장·재적위원 1/3이상 요구시
특 별 위원회	특정사안의 일시적처리	위원장·재적위원 1/3이상 요구시

회 의 진 행

소 집

⬇

개 회

⬇

보 고

⬇ ·안건회부현황등

의사일정 상정

⬇

제 안 설 명
(심사보고)

⬇

질의, 답변, 토론

⬇

표 결, 의 결

⬇

산 회

3. 委 員 會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6개의 상임위원회를 두되 의장을 제외한 39명의 전 의원이 각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직하고 있다.

가. 의안의 심사

본회의에 보고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할 때에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토론을 벌인다.

나. 발 언

의안에 대한 발언회수 및 시간 등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한다.

다. 표 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라. 심사보고서 작성제출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議案의 處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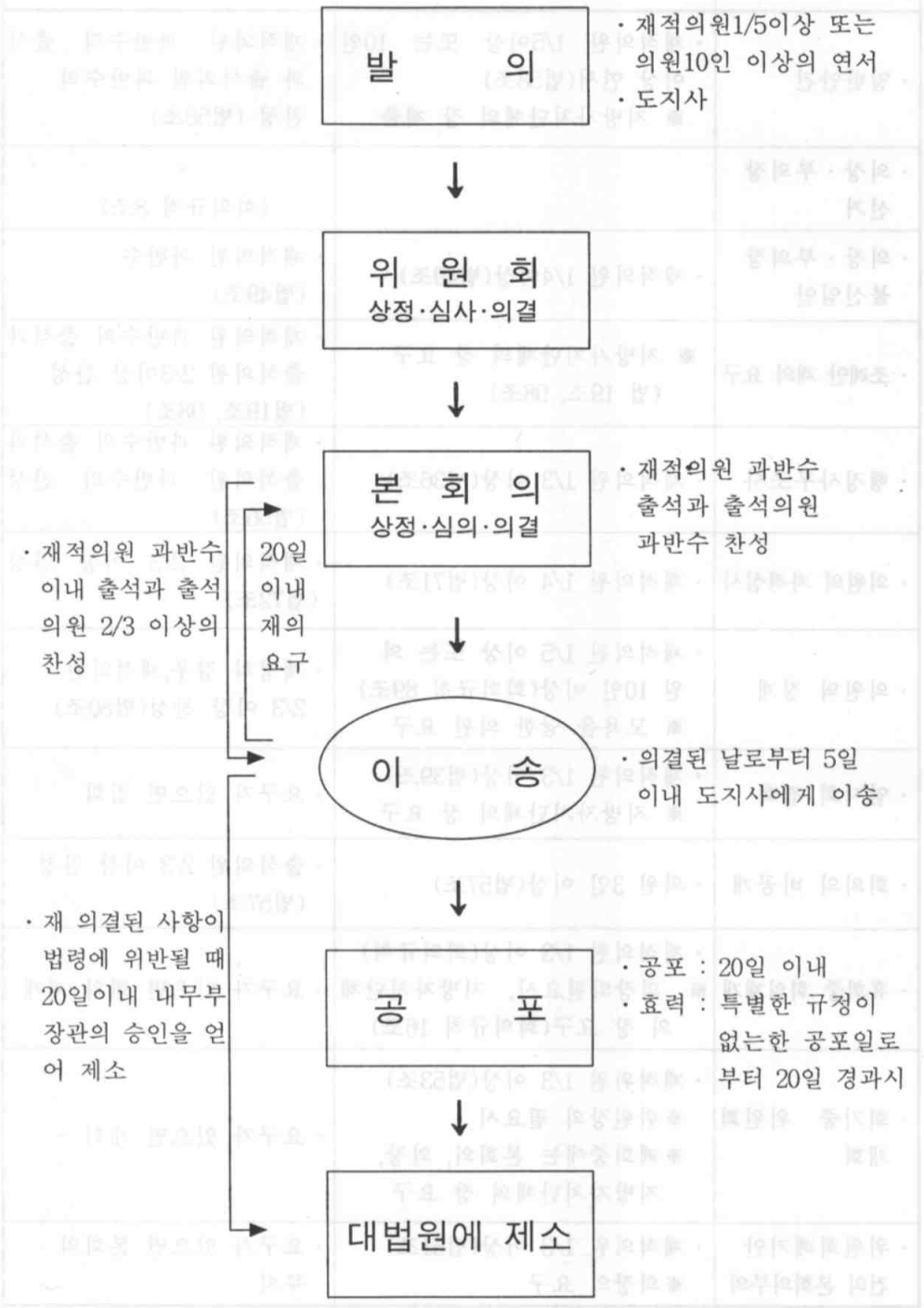
의회에서 논의하여야 할 모든 사안을 의안이라 하며 의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도지사, 교육감, 위원회 또는 의원은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의안에는 근거법규, 발의자와 찬성자의 서명,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조문대비(조례의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한다.

상임위원회에서는 ① 제안자의 취지설명 ②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③ 질 의 ④ 토 론 ⑤ 축조심사의 순서를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한다.

본회의에 다시 부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1) 조례제정절차


발 의
· 재적의원1/5이상 또는 의원10인 이상의 연서
· 도지사
위 원 회
상정·심사·의결
본 회 의
상정·심의·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재적의원 과반수 이내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
20일 이내 재의 요구
이 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도지사에게 이송
· 재 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될 때 20일이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소
공 포
· 공포 : 20일 이내
· 효력 :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시
대법원에 제소

2) 의안의 발의 및 의결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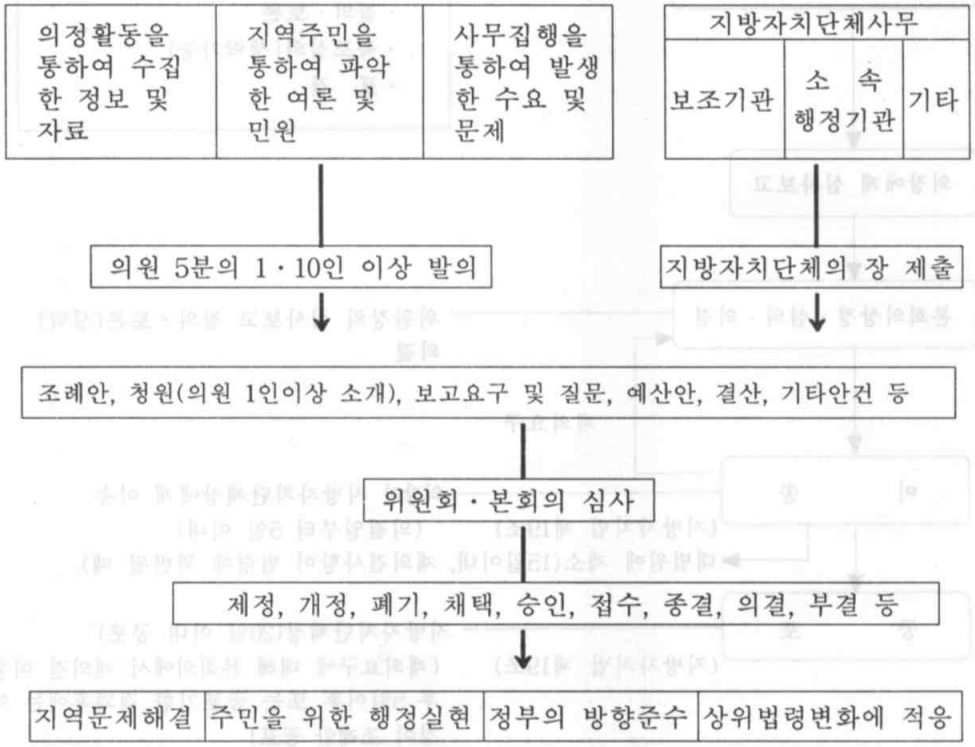
안건 또는 동의	발 의 정 족 수	의 결 정 족 수
· 일반안건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 이상 연서(법5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법56조)
· 의장·부의장 선거		〃 (회의규칙 8조)
· 의장·부의장 불신임안	· 재적의원 1/4이상(법49조)	· 재적의원 과반수 (법49조)
· 조례안 재의 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 요구 (법 19조, 98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법19조, 98조)
· 행정사무조사	· 재적의원 1/3 이상(법36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법56조)
· 의원의 자격심사	· 재적의원 1/4 이상(법71조)	·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법72조)
· 의원의 징계	·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회의규칙 89조) ※ 모욕을 당한 의원 요구	· 제명의 경우,재적의원 2/3 이상 찬성(법80조)
· 임시회 집회	· 재적의원 1/3 이상(법3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요구	· 요구가 있으면 집회
· 회의의 비공개	· 의원 3인 이상(법57조)	·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법57조)
· 휴회중 회의재개	· 재적의원 1/3 이상(회의규칙) ※ 의장의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요구(회의규칙 16조)	· 요구가 있으면 회의 재개
· 회기중 위원회 개회	· 재적위원 1/3 이상(법53조) ※위원장의 필요시 ※폐회중에는 본회의, 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요구	· 요구가 있으면 개회
· 위원회폐기안건의 본회의부의	· 재적의원 1/3 이상(법61조) ※의장의 요구	·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 부의

3) 의안(조례안) 심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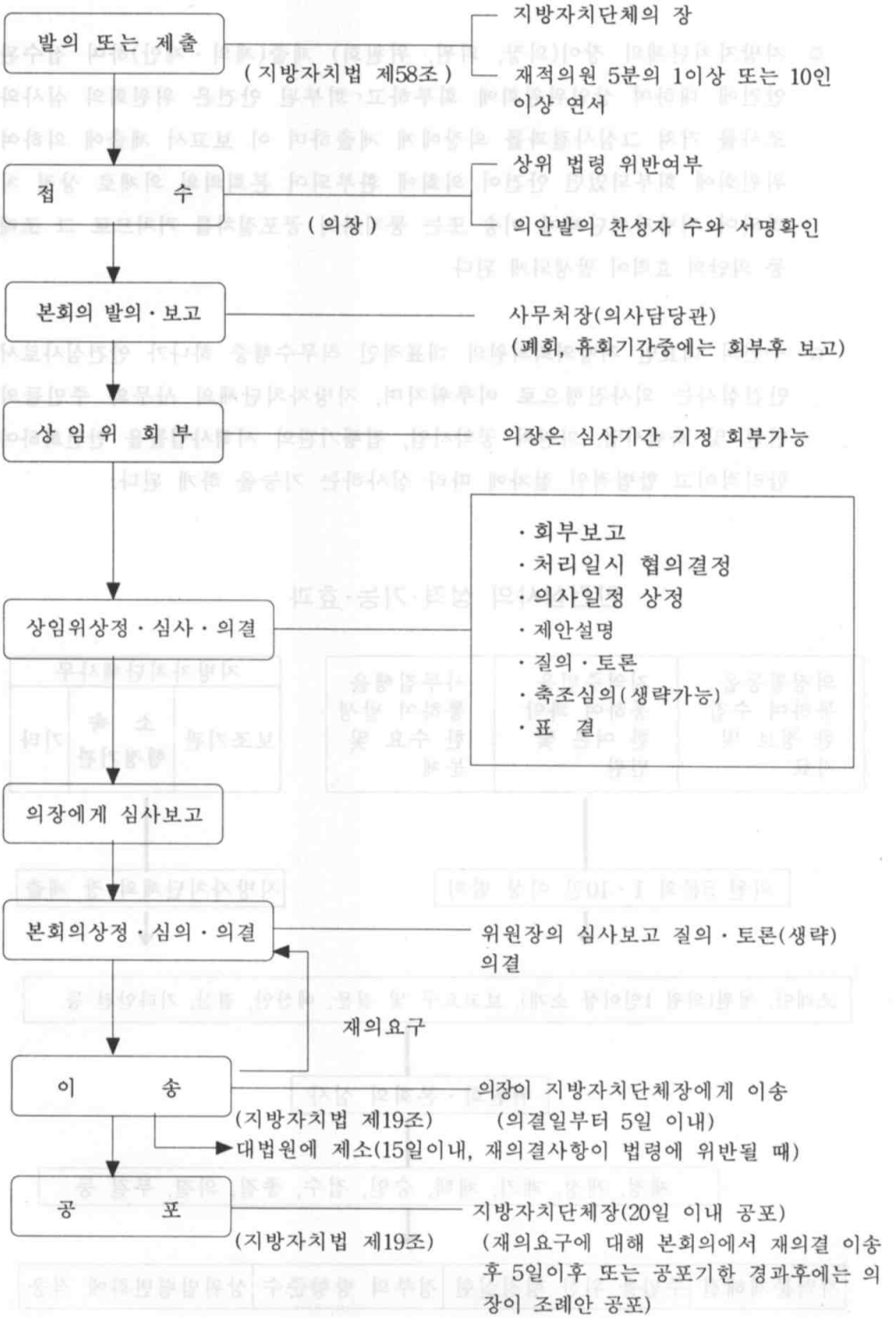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의장, 의원, 위원회) 제출(제의·제안)하여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회부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와 조사를 거쳐 그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며 이 보고서 제출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이 의회에 환부되어 본회의의 의제로 상정 처리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또는 통지하여 공포절차를 거치므로 그 조례 등 의안의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의 대표적인 직무수행중 하나가 안건심사로서 안건심사는 의사진행으로 이루워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주민들의 민원 및 숙원사업, 의원의 공약사업, 집행기관의 시책사업들을 안건화하여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심사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안건심사의 성격·기능·효과



《의안(조례안)심의절차》


발의 또는 제출
(지방자치법 제5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 이상 연서
접 수
(의장)
상위 법령 위반여부
의안발의 찬성자 수와 서명확인
본회의 발의·보고
사무처장(의사담당관)
(폐회, 휴회기간중에는 회부후 보고)
상 임 위 회 부
의장은 심사기간 기정 회부가능
상임위상정·심사·의결
·회부보고
·처리일시 협의결정
·의사일정 상정
·제안설명
·질의·토론
·축조심의(생략가능)
·표 결
의장에게 심사보고
본회의상정·심의·의결
위원장의 심사보고 질의·토론(생략) 의결
재의요구
이 송
(지방자치법 제19조)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의결일부터 5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15일이내, 재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반될 때)
공 포
(지방자치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장(20일 이내 공포)
(재의요구에 대해 본회의에서 재의결 이송 후 5일이후 또는 공포기한 경과후에는 의장이 조례안 공포)

4) 예산안과 결산심사

의회에 예산안 및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실·국장의 설명을 들어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필요에 따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본회의에 상정한다.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가) 제출시기

○ 예산안 : 회계년도 개시50일전까지(법118조) → 11월21일까지 제출

○ 결산안 : 예산안제출시 전년도세입세출예산에대한 결산서 함께 제출

나) 심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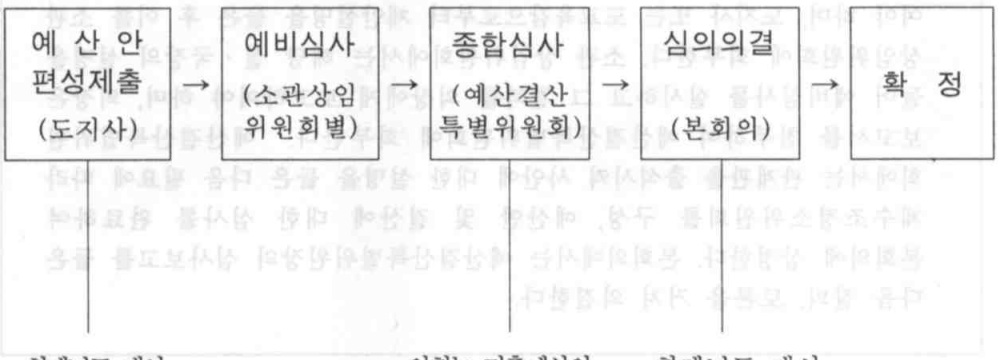
○ 예산안 : ① 관계법령에 의한 "지방의회"의 고유영역
② 집행기관의 심사참여와 긴밀한 협력에 의한 심사
③ 제안설명 또는 시정연설 - 행정사무감사 - 전년도결산 - 위원회심사 - 본회의 의결 (12월16일까지 의결)

○ 결산안 : 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관계" 영역
② 예비비지출사항과 병행심사가능
③ 출납정리(2월말까지)- 세입세출결산서작성(5월말까지) -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회계검사- 지적사항·시정 및 조치 - 결산서의회제출(예산안과동시) - 결산심사 -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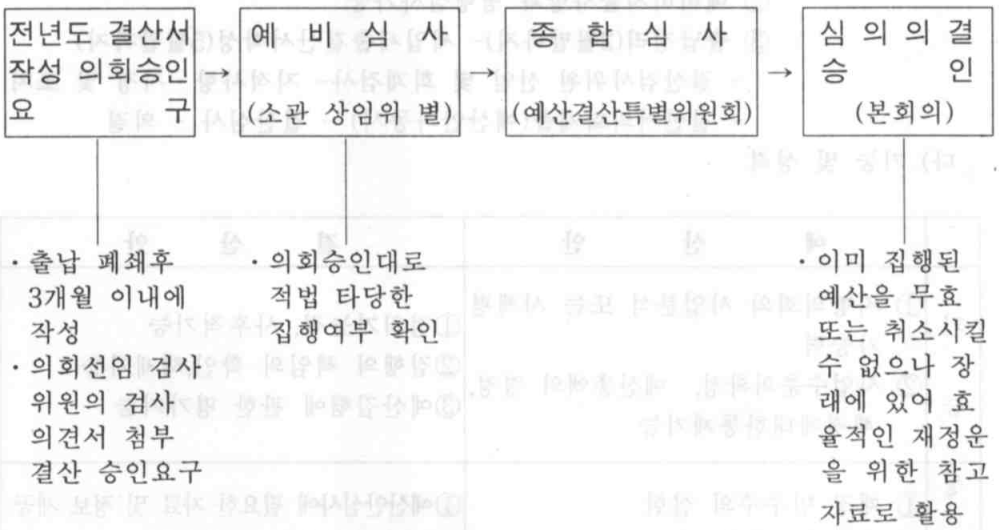
다) 기능 및 성격

	예 산 안	결 산 안
기능	① 지방의회의 사업분석 또는 시책평가능력 ② 사업수준의확정, 예산총액의 결정, 행정에대한통제기능	①정치기능적, 사후적기능 ②집행의 책임의 확인,해제기능 ③예산집행에 관한 평가기능
성격	① 재정 민주주의 실현 ② 재정규모결정	①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공 ②예산안심사와 연계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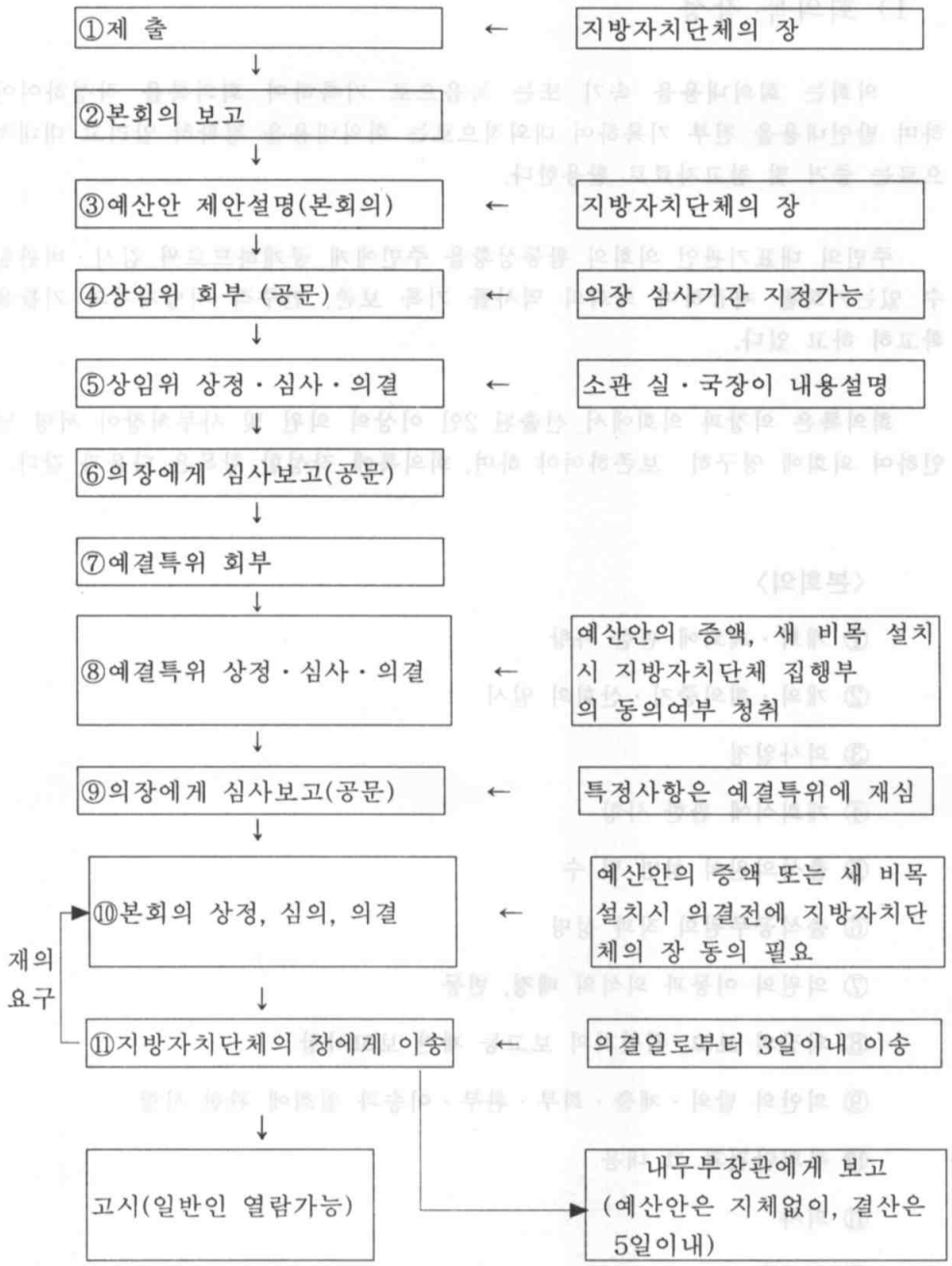
《예산안 처리절차》



《결산승인 절차》



《예산안(추경) 및 결산(예비비)》



※예산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안설명시는「0000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으로 상정함(예산안 자체를 의사일정에 올리는 것이 아님)

5. 會議錄 作成 및 發刊

1) 회의록 작성

의회는 회의내용을 속기 또는 녹음으로 기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언내용을 전부 기록하여 대외적으로는 회의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대내적으로는 증거 및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활동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므로써 감시·비판할 수 있는기회를 제공하며 의회의 역사를 기록 보존, 민주적 지방자치의 기틀을 확고히 하고 있다.

회의록은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 날인하여 의회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작성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본회의〉

①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②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③ 의사일정
④ 개회식에 관한 사항
⑤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⑥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⑦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
⑧ 의장의 보고, 위원회의 보고등 제반 보고사항
⑨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⑩ 부의안건과 그 내용
⑪ 의사
⑫ 표결수
⑬ 기명·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⑭ 서면질문과 답변서

⑮ 의원의 발언보충서

⑯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 >

①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② 의사일정

③ 출석위원의 성명 및 수

④ 출석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⑤ 출석한 공무원·증인·감정인·참고인·진술인의 성명

⑥ 심사안건명

⑦ 의사

⑧ 표결수

⑨ 위원장의 보고

⑩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⑪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회의록 발간

회의록은 발간하여 의원 전원에게 배부하며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나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부 또는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회의가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대의회 기간중 회의록 발간부수는 총 18회에 4,420부이며 충청북도 산하 기관, ·군 및 시·도의회, 언론기관, 유관기관 등 111개 부서에 배부하여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제를 견고하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

6. 會議場 傍聽

의회의 본회의 방청은 일반방청, 단체방청, 장기방청으로 구분되며 방청의 허가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장이 그 수를 정하여 방청권을 교부한다.

본회의장 방청석은 147석으로 한정되어 접수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교부한다.

위원회의 방청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

가. 방청의 제한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주기가 있는 자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자

나. 방청인 금지 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 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 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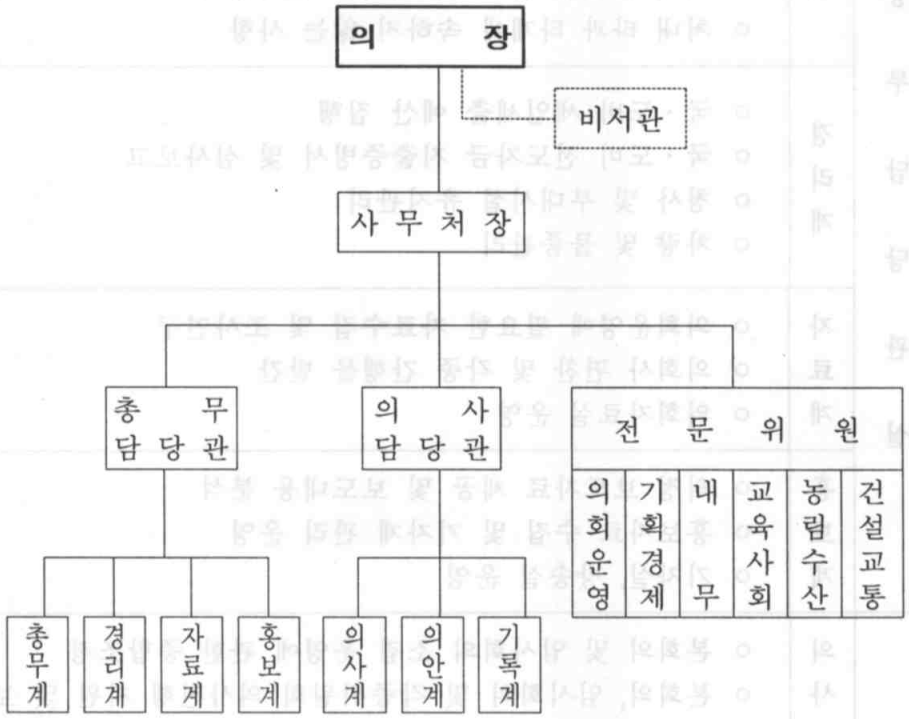
다. 연도별 방청현황 (단위 :명)

총 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2,435	149	114	797	288	549	538

第 4 節 議會事務處

1. 機構 및 定員

1) 기 구



2) 정 원

구분 / 실별	계	일반직							기능직			
		소계	행정 3급	행별 4급	행별 5급	행정 6급	행별 7급	사서 7급	소계	8등급	9등급	10등급
계	65	36	1	8	8	6	12	1	29	5	10	14
총무담당관실	25	14	1	1	5	3	3	1	11	3	1	7
의사담당관실	22	10	-	1	3	3	3	-	12	2	9	1
전문위원실	18	12	-	6	-	-	6	-	6	-	-	6

2. 部署別 機能

구 분		업 무 분 장
총무담당관실	총무계	○ 의회 기본사무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 서무, 복무, 포상, 관인 관리 및 보안업무 ○ 문서수발 및 보존 관리 ○ 의회의 방청 참관 및 회의장 질서유지 ○ 처내 타과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경리계	○ 국·도비 세입세출 예산 집행 ○ 국·도비 전도자금 지출증빙서 및 심사보고 ○ 청사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 차량 및 물품관리
	자료계	○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 의회사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 ○ 의회자료실 운영
	홍보계	○ 의정 보도자료 제공 및 보도내용 분석 ○ 홍보자료 수집 및 기자재 관리 운영 ○ 기자실, 방송실 운영
의사담당관실	의사계	○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 본회의, 임시회의 및 각종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않은 사항
	의안계	○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 청원, 진정의 접수 분류 및 처리 ○ 의안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기록계	○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 회의록 녹음, 속기에 관한 사항
전문위원실		○ 위원회의 의안심사 및 의사진행 보좌

3. 議會 資料室 運營

1) 현 황

○ 면 적 : 112.2m^2 (33.94평)

○ 집 기

- 서가 및 책장 : 28조
- 도서수납대 : 1조
- TV(VTR겸용) : 1대
- 다기능사무기기 : 1대
- 북 트 럭 : 2대
- 열람테이블 : 4조(12인용)
- 전자복사기 : 1대
- 십진분류표 : 1조
- 전동제본천공기 : 1대

○ 전담인력 : 사서8급 1명

○ 장서수

('96. 12. 31 현재)

구 분	수 량	구 분	수 량
계	10,246권	예 술(600)	179권
총 류(000)	246권	어 학(700)	114권
철 학(100)	278권	문 학(800)	1,524권
종 교(200)	42권	역 사(900)	859권
사회과학(300)	2,805권	기관·단체 간행물, 논문	1,713권
순수과학(400)	42권	기 타	1,765권
기술과학(500)	679권	· 회의록,판례 · 시청각자료	(1,635) (130)

2) 도서대출운영

('96. 12. 31 현재)

이용자별 / 연도별	계	의 원	공무원	일 반
1991	11권	·	11권(100%)	·
1992	321권	73권(22.7%)	245권(76.3%)	3권(1.0%)
1993	460권	30권(6.5%)	379권(82.4%)	51권(11.1%)
1994	1,753권	30권(1.7%)	1.227권(70.0%)	496권(28.3%)
1995	3,364권	127권(3.8%)	3,184권(94.6%)	53권(1.6%)
1996	2,921권	68권(2.3%)	2,673권(91.5%)	180권(6.2%)

4. 議會施設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 건　　평 : 2,222평 (지상 7층)

○ 착　　공 : '91. 12. 30

○ 완　　공 : '93. 10. 20

○ 시 설 비 : 3,792 백만원

○ 시설배치

층　별	시　설　명	면 적(평)	비　고
총　계		1,023.4	
2　층	계	124.2	
	건설교통위 전문위원실	10.4	
	건설교통위 사무실	21.8	
	건설교통위 회의실	36	
	의　　회 회의실	56	
3　층	계	141.4	
	교육사회위 전문위원실	10.4	
	교육사회위 사무실	21.8	
	교육사회위 회의실	36	
	농림수산위 전문위원실	10.4	
	농림수산위 사무실	32.8	
	농림수산위 회의실	30	
4　층	계	124.2	
	기획경제위 전문위원실	10.4	
	기획경제위 사무실	21.8	
	기획경제위 회의실	36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8	
	특별위원회 사무실	13	
	특별위원회실	35	

층 별	시 설 명	면 적(평)	비 고
	계	127.6	
5 층	내무위 전문위원실	10.4	
	내무위 사무실	21.8	
	내무위 회의실	36	
	의회운영위 전문위원실	10.4	
	의회운영위 사무실	13	
	의회운영위 회의실	36	
	계	340.6	
6 층	본회의장	104	
	의원휴게실	33.6	
	도청대기실	13.2	
	교육청대기실	9.2	
	총무담당관실	11.2	
	의사담당관실	11.2	
	의 장 실	42.2	
	부 속 실	14.5	
	부의장실 (2)	29	
	사무처장실	14.5	
	총 무 과	29	
	의 사 과	29	
	계	165.4	
7 층	의회자료실	33.6	
	행정자료실	58	
	기 자 실	16.8	
	창 고	25	
	문 서 고	32	

5. 議會事務處 幹部名單

직 위	직 급	성 명	의회전입일자	비 고
사무처장	지방부이사관	조 영 창	'94. 1. 3	
총무담당관	지방서기관	이 홍 우	'94. 1. 14	
의사담당관	〃	이 성 동	'95. 8. 8	
전문위원	〃	우 병 수	'94. 4. 27	
〃	〃	김 재 평	'95. 8. 8	
〃	〃	오 창 환	'95. 8. 8	
〃	〃	이 병 생	'94. 7. 21	
〃	지방별정4급	오 병 천	'91. 7. 27	
〃	지방별정4급	김 영 만	'91. 11. 15	
총무계장	지방행정사무관	유 광 준	'94. 1. 17	
경리계장	〃	우 일 제	'91. 7. 8	
자료계장	〃	이 태 수	'95. 8. 8	
홍보계장	〃	안 중 기	'93. 7. 24	
비서실장	〃	김 영 웅	'93. 7. 24	
의사계장	〃	김 종 만	'91. 7. 8	
의안계장	〃	박 응 희	'94. 7. 25	
기록계장	〃	임 성 규	'93. 7. 24	

第2章　議政活動

第　1　節　第115回　臨時會
第　2　節　第116回　臨時會
第　3　節　第117回　臨時會
第　4　節　第118回　臨時會
第　5　節　第119回　臨時會
第　6　節　第120回　定期會
第　7　節　第121回　臨時會
第　8　節　第122回　臨時會
第　9　節　第123回　臨時會
第　10　節　第124回　臨時會
第　11　節　第125回　臨時會
第　12　節　第126回　臨時會
第　13　節　第127回　臨時會
第　14　節　第128回　臨時會
第　15　節　第129回　臨時會
第　16　節　第130回　臨時會
第　17　節　第131回　臨時會
第　18　節　第132回　定期會

第 1 節 第115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1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5대 충청북도의회 개원을 위한 회의로서 '95년 7월 3일, 충청북도지사가 집회공고하여 '95년 7월 12일 10시에 개회되어 의장·부의장을 선출한 후 14시 개원 및 개회식을 거행하였다.

2. 會　　期 : 1995. 7. 12 (수) ~ 7. 15 (토)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 의장·부의장 선거
-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상임위원장 선거
- ○ 조례안 - 5건

※ 회의록 서명의원 : 박용인, 김준석의원

2) 의안처리현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건 의 안	결 의 안	기　　타
9건	5	·	·	·	4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1995. 7. 12 (수)

- ○ 의장·부의장 선거
  - · 의　장 : 차주원
  - · 부의장 : 유영훈, 신완섭

□ 제2차 본회의 : 1995. 7. 13 (목)

- ○ 제1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 · 회　기 : 1995. 7. 12 ~ 7. 15 (4일간)
-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상임위원장 선거

□ 제3차 본회의 : 1995. 7. 15 (토)

- ㅇ 충청북도 가격 등의 표시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 (원안가결)
- ㅇ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ㅇ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ㅇ 충청북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ㅇ 충청북도 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ㅇ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원안가결)

4) 회의진행시간

ㅇ 개회식 : '95. 7. 12(수) 14:56~15:13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 (평균)	7시간 11분 (2시간 24분)	
1차 (7. 12)	10 : 06 ~ 14 : 35	4시간 29분
2차 (7. 13)	10 : 05 ~ 12 : 27	2시간 22분
3차 (7. 15)	11 : 04 ~ 11 : 24	20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9.2%)

대 상 인 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3	1	2	3
4 0 명	40	40	39	-	-	1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 상임위원회 '95. 7. 12 ~ 7. 15 (4일간)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비고
의회운영위원회	'95. 7.12	1	○제1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기획경제위원회	'95. 7.14	1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내 무 위원회	'95. 7.14	1	○충청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2) 안건처리현황

위원회별	상정	처리	처리결과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6	6	6					
의회운영위원회	1	1	1					
기획경제위원회	1	1	1					
내무위원회	4	4	4					

3) 주요안건심사경과 및 결과

□ 기획경제위원회

◉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 주요골자 >

○ 과태료부과 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함

· 가격등의 표시 명령을 위반한 사람

· 가격등의 표시와 관련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사람

· 가격등의 표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

○ 위반유형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

○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

○ 이의신청은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 리 내 용					비 고
			가 결		부 결	보 류	기 타	
			원 안	수 정				
계	1	1	1					
조 례 안	1	1	1					

□ 내무위원회

◉ 충청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

< 주요골자 >

○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의 자격기준

·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

·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

·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

< 주요골자 >

○ 도 체육회관을 기부채납 당사자인 도체육회장에게 위탁관리·운영토록함.

○ 이 조례 및 기타 도지사의 명령처분 위반시 위탁을 철회할 수 있음.

○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매년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목적외 사용, 비용 징수등은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도지사의 회관 운영사항을 조사·검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체육회장은 이에 따라야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부지사의 배치 근거 부여(제1조)

○ 부지사의 분장사무 규정(제2조)

· 행정부지사 : 일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등

· 정무부지사 : 정무 업무에 관한 사항 등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본청의 정원 4명을 증원

· 부지사 요원 1명 (1급 상당 지방별정직)

· 비서요원 3명 (지방행정 6급 1명, 지방기능직 2명)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 리 내 용					비 고
			가 결		부 결	보 류	기 타	
			원 안	수 정				
계	4	4	4					
조 례 안	4	4	4					

第 2 節 第116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1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진학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95년 8월 8일 집회공고하고, 제5대의회 구성 후 도정보고 청취, 제2기 충청북도교육위원 선출,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8월 16일 오전11시에 개회되었다.

2. 會　　期 : 1995. 8. 16 (수) ~ 8. 26 (토)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조례안 - 10건
- 도정보고 (교육시책 포함)
- 제2기 충청북도 교육위원 선출 (11명)
- '94년도 충청북도 및 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 선임

※ 회의록 서명의원 : 김춘식, 최종철의원

2) 의안처리현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건 의 안	결 의 안	기 타
17건	10	·	1	2	4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1995. 8. 16 (수)

- 제1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원안가결)
  - 회　기 : '95. 8. 16 ~ 8. 26 (11일간)
- 도정보고 (교육시책 포함)
- '94년도 충청북도 및 교육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 의　원 : 김재근, 김춘식의원 선임

□ 제2차 본회의 : 1995. 8. 21 (월)

○ 제2기 충청북도 교육위원선출 (11명)

등록 의회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나이)	주 소	최종 출신학교	경 력	등록 구분
청주시	김영세	남	'32.10.28 (63)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우성A 107동 1303호	청주대 법과 졸	36년 2월	경 력
충주시	조일환	남	'37.12.19 (58)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197-10	중앙대 경상대 중퇴	21년 1월	경 력
제천시	정만재	남	'34. 9.24 (61)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228-46	충남대 대학원 졸	30년	경 력
청원군	이기수	남	'42. 5.12 (53)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639	중앙대 대학원 졸	16년 5월	경 력
보은군	박재현	남	'29. 9.25 (68)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69	서울대 농대 졸	38년11월	경 력
옥천군	김광수	남	'33. 3. 2 (62)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23-1	대전사범 (본과)졸	현 교육위 원	비경력
영동군	이근수	남	'33.10.10 (62)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345	영동농고 졸	15년	경 력
진천군	신용철	남	'39.10.15 (56)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양지A 103호 205호	대전대 대학원 졸	13년10월	경 력
괴산군	박동기	남	'29. 9.21 (66)	괴산군 칠성면 갈읍리 250	고려대 교육대학원 졸	38년11월	경 력
음성군	안병일	남	'34. 4.12 (61)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 336-1	청주대 상대 졸	음 성 군 의회의장	비경력
단양군	이경윤	남	'37. 5.29 (58)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650	제천농고 졸	36년 8월	경 력

□ 제3차 본회의 : 1995. 8. 26 (토)

※ 수해상황 보고

- ㅇ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ㅇ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ㅇ 충청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ㅇ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ㅇ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ㅇ 충청북도 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ㅇ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수정가결)
- ㅇ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설치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ㅇ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ㅇ '9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원안가결)
- ㅇ 충청북도 농촌소득개발 유공자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ㅇ '95년산 잎담배 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안 (원안채택)
- ㅇ 지방자치발전의 정착을 위한 관련법규 개정촉구결의안(원안채택)
- ㅇ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 유치지원에 대한 결의안 (원안채택)

4) 회의진행시간

ㅇ 개회식 : '95. 8. 16(수) 11:01~11:08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 (평균)	7시간 57분 (2시간 39분)	
1차 (8. 16)	11 : 09 ~ 12 : 01	52분
2차 (8. 21)	10 : 06 ~ 16 : 07	6시간 01분
3차 (8. 26)	11 : 03 ~ 12 : 07	1시간 04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9.2%)

대 상 인 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3	1	2	3
4 0 명	40	40	39	-	-	1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 상임위원회 '95. 8. 16 ~ 8. 26 (11일간)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비고
의회운영위원회	'95. 8.16	1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 ○지방자치발전의정착을위한관련법규개정촉구결의안	
	'95. 8.21	2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기획경제위원회	'95. 8.17	1	○업무보고(공보관실, 감사실, 기획관리실 청주.충주의료원)	
	'95. 8.18	2	○ 〃 (국제통상협력실, 지역경제국)	
	'95. 8.22	3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내 무 위원회	'95. 8.17	1	○업무보고(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95. 8.18	2	○ 〃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	
	'95. 8.22	3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2002년월드컵축구경기유치지원결의 ○행정구역조정에관한진정처리협의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비고
교육사회 위 원 회	'95. 8.17 8.18 8.22 8.23 8.24	1 2 3	○업무보고 (보사환경국,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교육청) ○업무보고 (가정복지국) ○도관장 공해배출업소현황청취 ○ 〃 현장방문	
농림수산 위 원 회	'95. 8.17 '95. 8.18	1 2	○업무보고 (농정국)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 중개정조례 ○업무보고 (농촌진흥원) ○엽연초생산조합장 및 농가와의 간담회 ○'95년산잎담배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	
건설교통 위 원 회	'95. 8.17 '95. 8.18	1 2	○업무보고 (건설교통국) ○간담회 ○업무보고 (공영개발사업단,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 ○공영개발사업단사업현지확인	

2) 안건처리현황

위원회별	상정	처리	처리결과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5	15	14	1				
의회운영위원회	3	3	3					
기획경제위원회	1	1	1					
내무위원회	9	9	8	1				
농림수산위원회	2	2	2					

3) 주요안건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 주요내용 >

- ○ 회의운영 → 의안의 적기처리, 지방자치원년 성공적 정착
- ○ 의안 및 의정자료관리 → 완벽한 심의도모, 철저한 보존대책강구
- ○ 의정홍보활동 → 정확한 보도유도, 홍보물의 신속한 배포
- ○ 의정지원능력의 배양 → 전문성확보, 인화단결도모, 직무능력제고
- ○ '95 예산규모 및 집행 → 적정예산계상 및 집행

◉ 제11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

제116회 임시회 기간을 '95. 8. 16 부터 8. 2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기로 결정함

◉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조례제명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를 “충청북도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로 함

○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신설하여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5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100,000원을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 함

○ “일비” 를 “회의수당” 으로 하고 의원이 회기중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출석일수 1일에 60,000원을 지급토록 함

○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토록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지방자치발전의정착을위한관련법규개정촉구결의안

< 주요골자 >

○ 지방자치발전저해관련법규의개정

○ 지방의원의 역할 강화 위한 유급보좌관제 시행

○ 지방이양대상사무의 조속이양 촉구

○ 국가사무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과중경비부담 반대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3	3	3					
조례안	1	1	1					
결의안	1	1	1					
일반안건	1	1	1					

□ 기획경제위원회

◉ 업무보고 주요내용

< 공보관실 소관 >

- ○ 도정홍보강화를 위해 기획홍보를 활성화하고 언론매체, 민간간행물, 중계유선방송, TV, CATV을 통한 홍보
- ○ 홍보간행물발간
- ○ 국민홍보위원의 홍보활동강화
- ○ 보도분석

< 감사실 소관 >

- ○ 행정감사의 내실화 및 기획감사계획
- ○ 공직기강 확립 및 부정부패척결

< 기획관리실 소관 >

- ○ 「충북21세기위원회」 설치
- ○ 대통령 공약사업 관리
- ○ 도지사 선거공약사항 추진
- ○ 세계화 추진
- ○ 민자유치사업 추진
-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분석
- ○ 도정주요업무 심사평가
- ○ 행정자료실운영
- ○ 대형사고예방
- ○ 지방재정 건전운영
- ○ 전국자치복권 발행
- ○ 옥천공업전문대학설치 추진
- ○ 지역개발기금운영
- ○ 법무행정관리
- ○ 기업법령 소식지 발간
- ○ 행정의 전산화 추진
- ○ 행정정보시스템 본격가동
- ○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 ○ 통계조사업무추진

< 청주의료원 소관 >

○ 환자진료 및 재정운용관리
○ 정신질환자 특수병동 운영
○ 장의편의시설 운영
○ 건강관리사업
○ 전산화사업 추진

< 충주의료원 소관 >

○ 병원건물 담장 보수공사
○ 정밀진단용 필수의료장비보강 및 노후장비교체
○ 원무전산화 추진

<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

○ 도민의식의 「세계화」 추진
○ 「충청북도 알리기」 운동전개
○ 「충청북도 명예대사」 제운영
○ 국제도시간 자매교류 활성화
○ 세계화 정보센타 운영
○ 외국인 투자유치
○ 조사연구의 내실화

< 지역경제국 소관 >

○ 중소기업의 세계화, 전문화촉진
○ 지방공업의 내실있는 육성
○ 특색있는 내륙관광 기반조성
○ 도민의 경제생활 편의제공

◉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되었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
○ 보상금의 지급 요건이 중복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 부지사의 직제가 행정·정무부지사로 나뉘어짐에 따라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함
○ 심의회 위원중 "도 본청 관련 실·국장 1인"을 "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심의회 간사는 도지사가 임명한 "도 소속 공무원"에서 "도 기획관"으로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례안	1	1	1					

□ 내무위원회

◉ 업무보고 주요내용

< 내무국 소관 >

- ㅇ 세계화추진 : 선진 국민 5대덕목 생활화, 공직자의 세계화의식과 전문성 함양, 4대문화제 중점육성
- ㅇ 민본도정실천 : 도정대화 운영, 「참봉사」 민원행정 추진
- ㅇ 지방자치역량 제고 : 지방자치발전의 제도적기반 강화, 광역행정기능 강화
- ㅇ 건강한생활환경 조성 : 건전사회기풍 확산, 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
- ㅇ 자주재원의 확충과 재무관리의 경영화 : 자주재원의확충, 재무관리경영화
- ㅇ 향토문화체육의창달 : 지방문화예술기반 확충 및 활동촉진 전통민속예술의 발굴 및 보존 문화유산 보존관리 지방체육의 진흥

< 민방위국 소관 >

- ㅇ 민방위조직운영의 활성화
- ㅇ 내실있는 민방위교육운영
- ㅇ 민방위훈련의 사태 대응력 강화
- ㅇ 민방위시설의 정비확충
- ㅇ 경보시설의 운영강화
- ㅇ 인력동원 대비태세 강화
- ㅇ 주민신고망의 내실운영
- ㅇ 화생방 방호능력 제고
- ㅇ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 ㅇ 을지연습 '95실시
- ㅇ 효율적인 동원자원 관리

< 소방본부 소관 >

○ 소방관서 신설 및 청사확보

○ 소방관서 운영정원 증원

○ 소방행정 인력의 정예화

○ 소방장비 보강

○ 소방공직기강 확립

○ 119구조·구급업무의 전문화

○ 소방활동 능력의 제고

< 공무원교육원 소관 >

○ '95교육훈련의 내실화

○ 교육발전 위한 교관의 교수능력 향상

○ 교육생 해외연수 실시

○ 참여식 교육 운영

○ 제3회 시군정 연구발표회 개최

○ 공무원교육원 청사이전신축

< 도민교육원 소관 >

○ 기본교육, 기술, 의식교육

○ 분야별 도민의식, 영농기술, 농기계훈련교육

< 증평출장소 소관 >

○ 주민위주의 봉사행정 실천

○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

○ 지역경제의 안정과 경쟁력 강화

○ 경쟁력있는 지역농업개발 추진

○ 지역균형 개발의 촉진

○ 주민 복지 수준의 향상

○ 향토문화와 체육진흥

◉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읍·면·동장 일반직화에 따른 관계조문 정리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출장소 소속공무원의 임용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정원 : 40명 증원

○ 의회사무처 - 1명 (기능 10등급(운전) 1)

· 의장전용차량 운전원 : 1명

○ 직속기관(소방관서) - 39명 (위2, 장2, 교15, 사20)

· 청주소방서 : 6대 (대형펌프1, 구조1, 구급4), 18명

· 충주소방서 : 1대 (대형펌프1), 4명

· 제천소방서 : 1대 (구급1), 2명

· 영동소방서 : 1대 (승용1, 진단1), 2명

· 증평소방서 : 6대 (지휘1, 화물, 승용1, 조명1, 구조1, 구급1), 13명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장학생의 의무근무기간 조정 : 특별훈련기간의 2배⇒ 훈련기관과 동일한 기간 (국내 일과후의 특별훈련의 경우 훈련기간의 5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동조례 제1조 인용조문 중 문화예술진흥법 '5조제2항' 을 '4조제2항' 으로 하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규정 제12조' 를 삭제함

○ 도교육청 직제변경에 따라 조례 제2조중 '학무국장' 을 '중등교육국장' 으로 함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및 요지

· 지방자치제실시와 더불어 각종위원회 위원장의 선임에 있어 관례시되어오고 있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던 것을 행정부지사로 자구수정함으로써 보다 충실하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기대하고자 함과

· 위원회 임기에 있어 4년과 2년으로 차등임기제를 실시함으로써 위원상호간의 위화감 조성과 상대적 비적극성이 유발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제한적 규정을 삭제하고 동등한 임기제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 제2조(구성)제2항 조문 중 "도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는 자구수정과 제4조(위원회임기) 중 "4년으로 하되 최초에 위촉되는 위원중 3인의 임기는"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기금관리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납입, 관리토록 되어 있는 기금을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계좌에 납입, 관리하도록 함.

○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과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담당 회계관직변경 지침에 의거 도지사가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는 기금운용관은 내무국장이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계장이 하도록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 삭제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도로, 하천등)의 취득시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 및 결과통보 규정추가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 지정

· 기타지역 : 400㎡ ⇒ 700㎡로 확대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

·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 매각시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종전 1급관사에서 1, 2급관사로 확대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 주요골자 >

○ 재산의 취득

· 시설채소시험장조성

- 부지매입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6-1번지외 12필지, 답) 30,147㎡
- 연구동 신축 1,147.35㎡
- 관리사 신축 350㎡

· 임야매입

- 매입대상지 선정중 200,000㎡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02년월드컵축구경기유치지원결의

< 주요골자 >

○ 2002년의 월드컵축구대회를 청주·오송경기장에 유치되도록 노력하고 성공적 개최에 적극 참여 다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9	9	8	1				
조례안	8	8	7	1				
결의안	1	1	1					

□ 교육사회위원회

◉ 업무보고 주요내용

< 보사환경국 소관 >

○ 저소득층의 복지증진

○ 도민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강화

○ 공중 식품위생관리

○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 검사요원 교육 및 정도관리

○ 신속. 정확한 시험·검사 업무추진

< 가정복지국 소관 >

○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

○ 노인여가활동 지원

○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 화장장. 납골당 이용 권장

○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가정 보호

○ 아동복지시설 보강 및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

○ 모자복지증진 및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

○ 건전한 소비문화와 쾌적한 환경조성

○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 추진

○ 여성회관운영

< 교육청 소관 >

○ 21세기를 주도할 자주적이고 창의적, 도덕적, 건강한 한국인 육성

○ 교육개혁추진 및 의식전환

○ 교육행정 전산망 구축

□ 농림수산위원회

◉ 업무보고 주요내용

< 농정국 소관 >

- ○ 농어촌 발전대책의 지속적 추진
- ○ 농특산품의 세계명품화
- ○ 무한경쟁시대를 선도할 전문인력육성
- ○ 지역별 특화품목의 육성
- ○ 도시민의 농촌휴양시설 조성
- ○ 가공, 유통시설의 확충
- ○ 식량의 안정적 생산
- ○ 농업기계화 및 생산기반 조성
- ○ 농업용수 개발
- ○ 축산업경쟁력 제고
- ○ 산림자원조성과 공익기능증대
- ○ 농촌생활환경의 획기적개선

< 농촌진흥원 소관 >

- ○ 새로운 기술연구개발
- ○ 새기술보급과 경영개선
- ○ 농업전문인력 육성과 교육홍보
- ○ 생활기술보급과 문화생활여건 조성

◉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 농촌소득개발유공자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중 "농어촌개발국장"을 "농정국장"으로, "농림수산국장"은 삭제하고 "농협도지회장"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으로 "충북원예협동조합장"을 "충북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장"으로 명칭 변경
-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어촌개발과장"을 간사로 한다를 "농업정책과장"으로 명칭 변경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5년산잎담배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

< 주요골자 >

○ 잎담배수매가의 인상과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계획은 검토되어야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2	2	2					
조례안	1	1	1					
결의안	1	1	1					

□ 건설교통위원회

◉ 업무보고 주요내용

< 건설교통국 소관 >

○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

○ 대전·청주 광역권 개발

○ 도시가로망 정비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해결

○ 효율적토지 및 지적관리

○ 농어촌,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 하천개수, 수해복구사업추진

○ 도로망 확충

○ 위험교량 및 도로유지관리

○ 도심주차난해소와 오지 및 벽지대중교통지원 확대

<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

○ 가경(2)지구 택지개발사업 마무리 추진

○ 부용공업단지조성사업

○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

<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 >

○ 오창과학산업단지 추진

○ 충주과학산업단지 추진

第 3 節 第117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17회 임시회는 김진학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95년 8월 31일 집회공고하고 도정질문, 조례안 심의의결 등을 위하여 9월 12일 오후 2시30분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1995. 9. 12 (화) ~ 9. 22 (금)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ㅇ 도정질문(교육시책 포함)
- ㅇ 조례안 - 3건
- ㅇ 국제도시간 자매교류추진상황 보고

※ 회의록 서명의원 : 임헌용, 박만순의원

2) 의안처리현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건 의 안	결 의 안	기　　타
8 건	3	·	2	·	3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1995. 9. 12 (화)

- ㅇ 제1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원안가결)
  - · 회　기 : '95. 9. 12 ~ 9. 22 (11일간)
- ㅇ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원안가결)
  - · 기　간 : '95. 9. 18 ~ 9. 20 (3일간)
  - · 대　상 : 도지사, 충청북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공무원

□ 제2차 본회의 : 1995. 9. 18(월)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기획경제위원회 김 대 호 의원

질 문 요 지

○민자유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 답변 : 도지사 주병덕 >

○추진경위

-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정(정부) : '94. 8. 3
-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위원회 구성(도)
- 민자유치법상 경과조치사업 추진('95.5.19) : 청주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속리산유스호스텔 건설사업, 중원유스호스텔 건설사업
- 민자유치설명회 개최('95.4.18) : 서울 힐튼호텔에서 청주.충주상공회의소와 공동, 국내50대그룹, 도내 향토출신 기업 대표 100여명 초청

○설명회 이후 추진상황

- 삼성의료원 : 2차본도방문, 보건의료과학단지내 대학,병원,연구소 설립
- 효성, 한화, 코오롱, 극동, 진로, 한진, 대우 : 문의, 현지답사
- 극동건설 : 진천 만뢰산관광사업 참여의향서 제출(금년 6월), 현재 관광지 지정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 협의중(연내 사업착수 예상)
-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18개 공단에 많은 기업이 입주희망, 신청중
- 앞으로 지속추진 : 경제단체 등에 협조공문 발송, 각 일간지에 입주업체 모집공고, 기업체 직접 방문 홍보

질 문 요 지

○지리정보시스템(GIS)의 활용화

- 그간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
- 계획중인 지하수종합정보데이타베이스 구축에 따른 보유기술과 장비능력
- 사업추진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소요예산

< 답변 : 기획관리실장 김 광 홍 >

○지리정보시스템은

- 상하수도, 가스등 지하시설물의 전산관리, 도로, 도시계획등 적지선정 및 산림관련, 환경자원등의 3차원 지형정보 처리 및 분석 등에 주로 이용

○전국 최초로 지리정보시스템 도입('92. 4월)

○본도는 농업소득 작목재배 적지선정을 우선 연구과제로 선정 추진
- '92 - '94. 6월, 도내 전시군 대상
- 시군이 선정한 소득작목에 대하여 적지선정 분석작업 완료
  (도 농촌진흥원이 실시한 현지검증에서 적중률 79%확인)
- 분석결과를 시군 산업과, 농촌지도소 제공 활용

○향후 지하수 종합정보 데이타 베이스 구축사업 추진
- 우리도의 중요한 부존자원인 맑은물 보전을 위하여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인공위성 자료와 기구축된 지형자료를 수집하여 추진
- 인공위성자료 분석장비 도입 : 금년도 당초예산 8,700만원 확보
- 자체 기술 수준으로는 해결곤란, 전문회사와 공동 연구개발 추진

질 문 요 지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 및 활용
- 위원회 구성이후 회의 미개최 해명과 앞으로 계획
- 위원회 폐지 및 민간단체 위임

< 답변 : 보사환경국장 조 규 린 >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위원회구성 : 중앙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금년 4/4분기중 위원회 개최
- 우리 도의 환경기본정책 수립,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 문제,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비 비용부담 협의문제
- 위원회 위원도 각계각층 인사가 고루 참여토록 개선

○위원회 폐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무설치 규정으로 어려움

질 문 요 지

○'96년도 괴산 농산물 공판장 건립 도비 특별지원 용의

<답변 : 농정국장 박 만 순 >

○농림수산부에 지원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현재 예산 심의중

○총사업비 21억원중 지방비 4억2천만원 중 일부 사업비의 도비지원은 앞으로 중앙에서 사업확정 시달되면 지원방안 검토

질 문 요 지

○지역중소기업 연쇄부도에 따른 중소기업보호대책과 재경원의 긴급정책 지원자금 500억원 지원상황
- 기업 및 서민호보대책, 중소기업 부도에 대비한 사전대책
- 우선지원된 300억원 집행 부진이유, 추가지원금 200억원 지원시기

○농공단지 입부업체의 운영상 문제
- 기업체 본사 지역유치를 위한 제도나 행정적 지원 방안
- 농촌 유휴인력 취업기회 확대 방안

< 답변 : 지역경제국장 김 승 기 >

○박영자사건 ('94.1.29)이후 8회로
- 충주의 합동계열 9개사 340억원에 대한투자금융의 여신정립으로 어음교환액 전액의 부도처리, 홍업백화점과 충주지역 서울아스콘 등 거액의 부도
- 현재 중소기업 조업률 80.3%, 실업률 2%로 완전고용수준 유지하고 있고 예금액과 대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 제조업 산업활동지수는 생산 22%, 출하 17% 증가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어려움 해결
- 운전자금 300억원 조기지원(연리7.5%)
- 산업구조조정자금 451억원은 7% 지원 (도와 중진공)
- 중소기업대출자금 조기집행 협조 : 2조2천억원 이상
- 신용보증 지원확대 : 법정운용배수 15 → 20배로 확대실시
- 중소기업 경영애로 상담센타 설치운영 :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부

○재경원의 긴급정책자금 조기지원
- 충북은행을 통하여 1차 300억원을 상업어음 할인이나 운전자금으로 9월 5일 부터 각 업체에 지원중, 2차로 지원될 200억원도 최선의 노력

○도내 입주 기업체는 3,067개 업체로서
- 이중 87%인 2,655개 업체가 도내에 본사를 두고 있고 13%인 412개 업체가 타시도에 본사를 두고 있음
- 현재 타시도에 본사를 둔 412개 업체는 대부분 대기업으로 서울에 75%인 307개 업체, 경기도에 10%인 43개 업체임
- 본사를 공장 소재지에 두어야 할 의무화 규정이 없으며 본사이전이 안되더라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대부분은 공장 소재지에 납부중

·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본사 이전업체 위주로 각종 자금지원이나 신규 공단 조성시 분양우대, 인허가시 적극적인 권유

○ 현재 33개 농공단지에 입주한 298개 업체의 종업원은 12,800명으로

· 72%인 9,200명은 현지주민, 28%인 3,600명이 외지인임

· 시군 읍면동의 취업알선 창구를 통해 단순노동인력이 다수 취업토록 유도

질 문 요 지

○ '95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문제

· 조기복구 노력 및 방안, 복구비 부담(도비50%,시군비 50%)을 전액 도비로 지원할 용의

· 지방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협조 노력한 실적, 복구비 부족액에 대한 특별방안

< 답변 : 건설교통국장 송 완 호 >

○ 소규모시설 복구부담기준(중앙재해대책본부)은 전액 지방비로 도 재정형편 역시 매우 열악한 상태로 소규모시설 복구비의 전액 도비부담 지난

○ 금번 수해복구 지방비 부담액 500억원 중 250억원을 국고 전환금으로 충당토록 현재 추진중

○ 소규모시설 복구비 지원 중 국고부담 상향 조정 건의 ('95. 9. 6)

· 현재의 지방비 100%에서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

기획경제위원회 임 헌 용 의원

질 문 요 지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 원칙

○ 조직의 효율성에 대하여

· 21세기를 대비하는 행정조직 구상과 효율적인 재편성 계획

< 답변 : 도지사 주 병 덕 >

○ 인사관리

· 인사관계법령과 충청북도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 특히 승진인사에 있어서는 "충청북도승진임용등의심의에관한규정"을 제정

· 직급별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직무와 관련한 전문성 있는 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 동일직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전보 등 실시

○그동안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관계로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조직운영이 미흡하였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조직관리

○이제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개편안을 자체적으로 강구중에 있으며 기본안을 확정 추진할 계획임

○그러나 도의 기구를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으로 관계법령 개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

○5급이상 공무원의 정원조정권을 갖고 있는 내부부장관의 승인절차가 복잡하여 다소 시일이 소요됨

질 문 요 지

○조직의 효율성에 대하여

· 청주·충주의료원을 각각 충북대 부속병원, 건국대 부속병원에 위탁경영

< 답변 : 기획관리실장 김 광 홍 >

○청주.충주의료원은

· 1909년에 설립 자애병원으로 출발하여 지방공사의료원으로 발전

○그러나 민간 의료기관의 비약적 성장과 더불어 지방공사 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약화, 우수인력의 확보곤란, 시설장비의 노후화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

○서울대학병원에 위탁경영중인 서울시립 보람의병원도 만성적인 적자병원임

○따라서 영세서민의 의료시혜를 위하여 당분간 현체제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민간위탁 또는 민영화를 적극검토 준비중임

질 문 요 지

○도지사 공약 사항 공개

·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조직(안전관리사업단) 신설 의향

○ 조직의 효율성에 대하여

· 향후 10년 동안의 공무원 충원계획과 단속통제분야 공무원을 지역경제 및 복지분야에 투여

< 답변 : 내무국장 최 경 주 >

○재난관리법 제정공포(정부) : '95. 7. 18

· 대형사고 등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수습에 필요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재난관리업무 담당기구 설치

· 정부 : 국무총리실과 내무부에서 면밀 검토중

· 도 : 자체적으로 신설방안 검토중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개발과 행정수용의 예측분석, 시설관리, 증설계획, 장비구입 확충계획 등과 병행하여 종합연구할 사항으로 앞으로 인력충원을 최대한 억제, 합리적 인사운영 노력

○단속분야 공무원의 경제, 복지분야 재배치는 현재 추진중인 조직개편 계획과 병행하여 검토중인 사항임

질 문 요 지

○도지사 공약사항 공개
- 노후 상수도관 교체계획
- 아젠다21에 대한 충북의제21 준비상황

< 답변 : 보사환경국장 조 규 린 >

○우리 도에 설치된 상수도관은 3,383km로
- 이중 설치된지 20년이상된 상수도관은 8.7%인 296km이며
- '94년에 45억원을 들여 54km, '95-98년까지 208억원을 들여 242km를 교체하고
- 20년이 안된 상수도 노후관이라 할지라도 녹물 발생시 즉시 교체
- 시군별, 연도별 세부계획은 서면보고

○아젠다 21
- 이행을 위한 사안이 워낙 복잡 방대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현재 서울, 부산, 인천시만 계획구상 용역단계임
- 충북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환경오염대비책 연구발표('94)
-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에 환경오염실태 및 방지대책 용역('95)
- 앞으로 환경부 기본지침 등을 감안 충북아젠다21 조기마련 적극 추진

질 문 요 지

○지역 특화산업에 관하여
- 지역 산업단지에 적합한 특화산업 육성계획 수립

< 답변 : 지역경제국장 김 승 기 >

○공업화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
- 권역별 업종배치계획
- 우리도에 알맞는 중점육성업종 선정

질 문 요 지

○지역특화산업에 관하여
 · 오송과학의료단지에 대한 정부의지와 조기실현을 위한 추진계획
○청주 KBS 이전에 대한 지원대책
 · 부지매입, 건축비, 시설비 지원건의

< 답변 : 건설교통국장 송 완 호 >

○계획내용
 ·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3백만평 부지에 7천억원을 투입해서 '96~2000년까지 조성
 · 입주기관 : 보건연구원외 5개 국가기관, 보건.의료.식품.생명공학 관련 30여 연구기관

○추진상황
 ·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관학단지 조성사업으로 내시, 입주업체 모집중
 · 건설교통부의 국가공단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발주 의뢰중

○'93부터 청주KBS방송국 이전사업 추진중에 봉명· 신봉동 일대의 공업단지 조성 사업지구에 약6,500평의 부지로 이전코자 하였으나
○전파관리의 어려움과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94. 3. 9 부지매입 불가통보가 있어 사업중단 상태임
○ KBS내부에서 이전위치와 사업지가 확보되면 적극 지원할 계획임

내무위원회 윤 병 태 의원

질 문 요 지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조직 재편
 · 중앙정부로부터 자치조직원을 되찾아 올 계획
 ·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행정조직 재편할 계획
○정책보좌관제도 운영에 대하여
 · 정년퇴직에 가까운 공무원으로만 두는 이유와 이들의 충분한 활용여부
 · 도민을 위한 일을 하도록 앞으로의 활용계획
○자주재원 확충방안
 · 과세시가 표준액의 인상폭과 조세저항 해소대책
 · 공기업 및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방안이나 대책

< 답변 : 도지사 주 병 덕 >

○자치조직권 문제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필요성 제기 또는 개선 추진하였고 정식공문을 통해 다시 건의하겠음

○도의 조직개편 문제는

· 개편의 필요성이나 범위,향후 행정수요, 행정의 발전방향 또는 직원들의 사기앙양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할 사항임

· 도의 조직을 개편할 때에는 의회에 개편안을 사전보고 및 여론수렴 등을 통해 추진하겠음

○현재의 정책보좌관제도는 작년의 지방행정조직 축소개편, 시군통합, 지방자치선거에 따른 잉여인력의 활용방안으로 실시하는 것임

○현재 13명으로 공무원법으로 보장된 공직자의 잔임기간 동안 신분을 보장하면서 재직중에 쌓은 경험과 지식을 도정에 자문하고 있음

○앞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복지를 위하여 임무를 주고 구체적인 자문을 받는 등 활용해 나가겠음

○부동산의 과표는 국세에 적용하는 공시지가와 지방세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신경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96년에 이를 공시지가로 전환하여 일원화할 방침으로 내무부에서 여론 수렴 등 구체적으로 추진중임

○생수, 산림, 관광 등 우리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임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를 통한 경역수익 증대를 시도하겠음

질 문 요 지

○자연사박물관 건립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 답변 : 내무국장 최 경 주 >

○우리 도 출신인 한국운석광물연구소장 김동섭 박사로부터 15종 10만여점의 자연사자료 기증서 접수 : '94. 4월

○충주시에서 기증자와 협의, 건립예정지를 수안보 조산공원으로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비지원 요청하였으나 불가회신

○당초사업비 179억원을 '95년에 85억원 규모로 축소하여 사업조정

○수안보 조산공원에 건립부지 3만평 확보, 공원조성계획 변경 추진중

○본 사업은 막대한 지방비 투자와 사후 유지관리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어 민간자본 유치를 검토하겠음

질 문 요 지

○조령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징수
 · 경상북도의 문경새재와 중복 징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 답변 : 농정국장 박 만 순 >

○조령산 자연휴양림은 '92~ '94년에 18억 6,900만원의 사업비로 각종시설을 완공하여 '95. 1. 25개장 운영중임

○'94. 1. 14부터 3차에 걸쳐 도계지점인 삼관문 정상에서의 입장료 징수 상호 폐지를 경상북도에 공식 요청하였으나 불가회신

○'95. 3. 25 입장료 중복징수문제 조정을 내무부에 건의한 결과 내무부 주관으로 충북과 경북의 관계기관간에 2차 협의한바 있으나 협조되지 않아 개선되지 않고 있음

○본도에서는 조령산 자연휴양림 입구과 도계지점에 안내판 설치, 매표소에서 사전 안내하고 있고 앞으로 내무부에 재조정 건의와 경상북도와 계속 협의 개선하겠음

내무위원회 김 춘 식 의원

질 문 요 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기관 활용
 · 도금고를 지역금융기관으로 이관

< 답변 : 도지사 주 병 덕 >

○도금고는 지방재정법 제64조와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지정

 · 현재 도금고는 1954년부터 제일은행 청주지점을 도금고로 지정하여 매 2년마다 계약기간을 갱신하고 있음

 · 자금동원능력, 기채실태,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을 종합 고려하여 '95. 1. 2 ~ '96. 12. 31까지 계약된 상태임

○지방은행 지원을 위하여

 · '91년부터 농촌진흥원,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도로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등 5개 외청의 예금이나 금고지출 대행업무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금고를 충북은행에 일부 이관

○내년 연말에 가서 이관문제 검토시 도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금융기관을 택하여 결정하겠음

질 문 요 지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의 활용실태와 대책
○재정관리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 비합리적 세수추계와 품목별 예산제도 탈피
 · 재정계획, 투자심사와 연계한 예산 편성
 · 결산율 제고 및 불용액 최소화 방안
 · 예산결산의 신문공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 답변 : 내무국장 최 경 주 >

○마을회관은 총 1,759동으로 ('94년말)
 · 이중 1,602동은 마을회의실, 경로당, 마을금고, 공동구판장, 공부방으로 활용
 · 20년이상된 건물은 40%인 780여동으로 157동은 활용 불가능
 · 앞으로 효용도와 경제성이 없는 것은 폐기하고, 노후회관은 시설개보수로 주민들의 만남과 대화의 장소, 생활편익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임
○면 복지회관은 '84년부터 30동을 건립하여 운영중에 있고
 · 회관당 시설규모는 132평 정도로 독서실, 예식장, 집회장, 경로당, 사무실 및 학원, 이·미용실 등을 다양하게 이용
 · '95상반기까지 이용주민수는 11만 6천명이며
 · 앞으로 농산물직판장, 새마을금고, 보건진료소 입주 유도와 건전한 상업시설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계획임

○'94불용액은 예산액 7,688억원의 7.5%인 576억원으로
 · 일반회계 160억원(예산액 5,422억원의 2.9%)과 특별회계 416억원(예산액 2,266억원의 18.4%)이며
 · 불용사유는 인건비 절감, 계획변경취소, 기관별 소액 집행잔액 등임
 · 앞으로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정확한 소요액 판단과 사업적기 발주 노력
○예산 및 결산결과는 중요항목을 충청북도 도보로 고시하여 알리고 있으며, 전항목을 신문등에 고시하는 것은 많은 경비가 소요됨
○'94년 지방세 3천만원이상 체납자는 21명 119억여원이며
 · 사유는 소송계류중이거나, 법정관리, 법인의 도산, 부도 등이고
 · 고액 체납자 명단 언론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확보채권을 조기 공매조치토록 성업공사, 법원 등과 긴밀히 협조하겠음

질 문 요 지

○용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전선의 지중화 설치유도와 가스공급과 관련한 경제적 피해대책과 R곡선도로 건설과 교통신호등 미설치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대책

< 답변 : 건설교통국장 송 완 호 >

○토개공과 한전의 공사비 부담 협의가 되지 않아 전선의 지중화 미실시

○용암택지 환경영향평가시 단독 및 공동주택의 취사난방연료는 LNG 사용 협의

○곡선형도로 개설은 기 결정된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시공하고 신호등 6개소, 대형교통안내표지판 10개소 설치중

○공영개발사업단은 '89. 5. 3설치, '95. 12. 30까지 한시 운영

□ 제3차 본회의 : 1995. 9. 19(화)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교육사회위원회 박 제 국 의원

질 문 요 지

○청주지방환경청 설치방안

○서울시, 인천시 등에 충주호 환경분담금을 요구

○지하수 개발에 대하여

· 지하수 개발시 폐공처리비용(환경오염세)을 부과하여 행정기관이 폐공처리할 용의는

· 지하수 개발관리를 위하여 새 부서 설치나 한개 부서로 통합할 용의는

< 답변 : 도지사 주병덕 >

○충북에 없는 지방청 설치방안 강구지시

○청주에는 금강환경관리청 청주환경출장소만 있어 민원처리 등 애로

○'95년에 환경부에 청주환경출장소를 청주환경관리청으로 승격 건의하였으나 지지부진하여 환경부를 직접방문 건의할 계획임

○대청호의 경우 '90. 7월 정부에서 상수원 수질보전 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수처리장시설 운영등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관련 자치단체간의 협약으로 분담하고 있음

○현재 총 1,632공 중 1,597공은 폐공처리하였고 나머지 35공은 조속히 폐공조치

○앞으로 폐공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시 폐공처리 비용을 예치하는 제도 환경부에서 추진중

○농업용수는 농림수산부, 먹는물은 환경부 소관이며 사후관리를 한 부서에서 전담문제는 현재 지하수를 중앙부처의 개별법에 의거 관리하고 있어 곤란함

○그러나 폐공처리는 지하수 개발시에 폐공비용을 사전에 선납토록 하여 환경관리부서에서 일괄 폐공처리토록 하겠음

질 문 요 지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하여
- 14개 무허가 업체에 대한 대책
- 정확한 수질개선 부담금 부과장치
- 회사별 1일 채수 가능량의 적정성
- 7개 수실개선부담금 미납업체에 대한 징수대책
- 수맥별 채수한계 용량을 정하여 시행할 용의

< 답변 : 보사환경국장 조 규 린 >

○먹는물관리법 제정시행: '95. 5. 1

○14개 미허가 업체에 대하여는 법제정 당시 이미 사업을 사실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수실개선 부담금을 납부하고 이들 업체는 현재 허가신청 중에 있음

○수질개선부담금은 판매액의 20%로서 금년에 처음으로 5, 6월 2개월분 19억6천6백만원을 부과하였고 업체별 1일 채수가능량은 환경영향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있고 수질개선부담금은 채수자동측량기로 측정

○부담금 미납 6개업체 2억2천만원에 대하여는 1차독촉(9.24), 2차독촉을 거쳐 강제징수 조치하겠음

○수맥별 채수한계 용량은 정확히 측정하긴 어려워 개선책을 중앙부처에 건의중임

질 문 요 지

○고속도로 BOX(횡단용 지하통로) 확장건의에 대한 처리결과와 향후대책

< 답변 : 건설교통국장 송 완 호 >

○기존 고속도로는 도로확장시에 기존의 통과박스 개량을 도로공사와 협의 시행중

○신설 고속도로는 설계 확정전에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 추진

○농로 등의 협소한 통과박스에 대하여는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을시 도로관리청과 긴밀협조하여 개선

질 문 요 지

○폐교문제에 대하여

· 24개 폐교 관리비 상향 조정 용의

· '96년 폐교계획과 사후관리 대책

· 폐교를 체육시설이나 휴식처로 활용하여 주민공동으로 관리토록 할 용의

< 답변 : 교육감 정 인 영 >

○폐교학교 관리비는 내년도 예산에 대폭 인상 작업중

○폐교의 기본원칙은 학교규모가 너무 영세하여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수 없거나 또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 할 수 없는 학교임

○내년도 폐교 예정학교는 8개학교로 충주1, 제천3, 청원2, 보은1, 괴산1 교임

○사후관리는 주민들이 게이트볼장, 농산물 보관창고, 체육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면 주민공동 관리운영을 적극 권장하겠음

질 문 요 지

○학교시설에 대하여

· 중학교 기술, 가사실습실 확보실태와 대책

· 학교 음용수시설 개선실적과 지도감독 실적

< 답변 :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

○기존 남녀공학 중학교의 기술실과 가사실은 기확보 되었으나, 순수남녀학교의 경우 각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휴 및 특별교실을 우선 전용하여 사용하고 "학교시설설비기준령"등에 의한 부족한 특별교실은 연차 계획으로 확보추진중

○학교 음용수 시설은

· 지하수를 음용수 및 기타용으로 사용중인 239개소를 검사한 결과 228개소는 양호, 부적합은 11개소 임

· 부적합 11개소에 대하여는 청소, 연막소독 6개소, 정수기 설치 2개소, 안전식수 운반활용 2개소, '96년 재개발 1개소임

· 옥천 안내중학교 수량부족에 대하여는 영동소방서, 옥천출장소 급수차를 이용하여 '92년 3,000리터 '95년 6,000리터 급수

질 문 요 지

○학교시설에 대하여
 · 학교 화장실 개선 및 소요예산 우선 집행
 · 신개발지 개교학교의 부지협소와 시설미비 현황 및 대책

< 답변 : 관리국장 신 재 철 >

○학교화장실은 464학교 중 90개교가 재래식 화장실로서
 · 오수의 농지유입, 상수원보호지역, 폐교학교, 이전예정학교 등으로 여건 조성시 수세식으로 개량
 · 신축학교의 교직원 화장실은 남녀구분하고 기존화장실은 연차보수하고 학생화장실도 계속 확충
 · 학교시설은 교실 신증축, 노후시설 개보수, 화장실 개량확충을 우선 시행하고 '95년에 학생화장실 85동, 직원화장실 9동을 개량·확충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확충할 계획임

○'92년도 이후 신설학교는 19개교로 청주 14, 충주3, 제천2 이며 앞으로 2000년까지 21개교를 신설할 계획임
 · 신설학교 규모는 주변 학구와의 관계, 주택건설 및 주민입주계획 등을 면밀 검토하여 결정하고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에 의한 기준면적과 시설확보
 · 국민학교는 시설을 일시에 완공하고 중고등학교는 연차별 시설 확충으로 특별교실이 부족한 상태로 개교하는 사례는 없음
 · 부지가 협소한 일부학교는 학교시설 결정당시 개별사업 주체가 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교용지 기준면적으로 제공하였기 때문이며 현재는 부지면적 협의시 운동장 코스 100m이상 확보하고 있음

교육사회위원회 이 길 하 의원

질 문 요 지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과 충북지역 온천관광지 개발
 ·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계획 백지화 여부와 재개발시 도의 대책
 · 북부지역 온천개발에 따른 충주호 수질보호 방안

○수질관리위원회 구성
 · 남한강과 달천의 보호를 위해 수질관리위원회 구성 용의
 · 도의 각종 자문기구에 시민환경단체 참여

○새한미디어 공해문제
 · 공해배출 묵인여부
 · 새한미디어 가동이후 외부 폐기물의 충주유입내역 및 성분 조사 여부
 · 새한미디어 공해 해결복안과 전문기관에 환경진단 의뢰

< 답변 : 보사환경국장 조 규 린 >

○당초 계획보다 확대 개발하려고 요청하였으나 환경부에서 허가거부에 따라 답보상태이며, 다시 개발 추진된다면 설득하고 중앙부처와도 계속 협조하면서 확대 추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금강수계에는 금강환경관리위원회가 남한강 수계에는 남한강환경관리위원회가 설치 운영중임

- 수계지역 관련 자치단체 의회의운영, 각종 직능단체장 등 각계인사 22명으로 구성
- 현재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고 위원회의 중복을 피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 설치는 어려움

○도의 각종 자문기구에 시민환경단체를 참여시킬 만한 기능이 있다면 참여시키겠음

○새한미디어는 '86. 7월 허가를 받아 연간매출 3천억원, 종업원 15,000여명으로 99%가 충주시민임

○'93년이후 19회의 환경오염도에 대한 지도점검실시, 개선명령,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고 완벽한 공해방지시설 설치권고로 솔벤트 훼손시설을 52억원을 들여 금년6월에 발주하여 내년 6월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임

○새한미디어 인천공장에서 충주공장으로 폐기물 반입내역은 '89-'93년까지는 월평균 약 17톤이, '94년에 35톤, '95년에 60톤이 반입되어 소각 처리됨

○반입된 폐기물의 성분은 폐합성수지와 폐합성섬유로서 특정폐기물로 분류되다가 '94.4.1일부터 일반폐기물로 분류 소각처리됨.
그러나 '95.8.27일이후 일체 인천으로부터 반입되지 않고 있음을 서류 확인하였고 또한 수시 확인중임

○앞으로 지도단속 강화와 전문기관에 환경진단 등을 회사측과 적극 협조 노력하겠음

질 문 요 지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과 충북지역 온천관광지 개발

- 단양 한알유스호스텔 건립에 따른 천동계곡 오염방지방안과 준공검사전 관광객 수용 여부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

- 특정 종교단체로 변경 위탁한 배경
- 결원된 전임상담요원을 보충하지 못하는 실정
- 위탁단체 업무 및 도 지원 내용

< 답변 : 가정복지국장 장 상 자 >

○오물수거를 분리처리하고 가연성은 자체처리, 불연성은 수거처리하고

○'95. 3.20, '95. 9.11일 2회의 오수정화시설 점검결과 BOD 20PPM이하로 별도로 200mm 흄관을 900mm로 매설하여 방류하고 있음(법적기준은 BOD 60PPM)

○'93.12.18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도)와 '94.12.13일 건축물 준공검사(단양군수)후 '94.12.16일 등록증을 교부하였으며

○'94.12.16자로 2박3일간 서울중학교 학생 497명을 처음 수용하였으며 조사결과 준공검사가 나가기 전에 관광객 수용사실은 없음

○위탁배경은 청소년기본법 제61조 및 문화체육부 지침에 의거 청소년 진로지도와 비행예방 및 고충해결을 위하여 '91.1.20일부터 한국청소년충북연맹에 위탁하였고 '95. 2. 20운영권 자진 반납하였음

○위탁경위는 새로운 위탁운영 법인단체를 공모한 결과 5개단체가 응모하였고 심사위원 9명으로 공정심사한 결과 청주YMCA에 위탁하였으며 참고로 전국13시도에서도 종교단체나 청소년 관련단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음

○위탁단체 교체로 사무실 이전과 인수 등으로 결원보충이 지연되었으나 빠른 시일내에 보충토록 추진중임

○위탁단체의 임무는 청소년 건전육성, 여가활동 지원, 취업 및 진로 지도와 고민.고충 상담

○운영비의 50%를 도비지원하고 있고 위탁단체장은 직원임용에 있어서 선발심사후 도지사의 승인과 직원 복무지도 단속과 보조사업 성실수행의 권한이 있음

질 문 요 지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과 충북지역 온천관광지 개발

· 보은 신정관광지구 개발, 살미 문강온천지구 지정의 지역이기주의 여부와 개발 백지화 용의

< 답변 : 건설교통국장 송 완 호 >

○온천개발의 절차와 수질오염 방지대책

· 온천발견자가 온천발견 신고를 하면 도지사가 온천지구 지정을 하고 용도지역변경을 한후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 온천개발 추진계획을 받은 다음 온천개발

○살미, 문강온천 개발

· 발견자 이진백이 '94.2.4일 250만㎡의 온천지구를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 평가 협의시 개발계획 승인시 환경대책을 완벽하게 반영한 후 허가 하겠음

○보은 신정지구 개발사업

· 보은군에서 산외면에 25만㎡의 국민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현재 기본계획만 수립한 상태로 앞으로 계획수립에서 승인까지 모든 과정에서 환경문제 해결

질 문 요 지

○경쟁교육 위주의 충북교육 실상에 관하여

· 수학능력평가의 비공개

· 학교측이 학생에게 부정행위 조장한 진위

· 일부 교육청의 성적우수학교에 상금 지급

○보충수업, 자율학습과 관련

· 현재 실시여부와 원래 취지 및 자율의사 반영여부 등 운영실태

· 관리수당, 보충수업비 등 내역

< 답변 : 교육감 정 인 영 >

○본도 실시 학력평가는 모든 교과를 종합한 종합교과적 문제 출제로 종합 응용력이나 창의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

○지난 6. 23일 도내 중학교 3학년 대상 수능평가에 대한 평가관리 부당처리에 대하여는 앞으로 단순히 장학자료로 활용하고 일부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

○일부 교육청에서 상금지급 여부는 학교운영을 종합 분석해서 우수한 학교에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데 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교육자치는 학부형들의 교육에 관한 여망을 학교에서 받아 들이는 것으로 학부형들이 보충수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시 학교에서는 보충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보충수업의 가부는 학교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임

○감독기관에서는 자율학습을 하지말라고 지시하기에 앞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원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 밖에 없음

질 문 요 지

○사립학교강사 경력인정에 대한 조치상황
 · 도내 해당교사와 실제 혜택받은 교사 현황
○도교육청 발간 충북의 선비정신 책자내용
 · 변절한 친일파로 규정된 정춘수를 독립투사로 소개하고 있는데 시정 용의
○과학관 운영과 관련
 · 생산중단된 구형컴퓨터(286기종) 위주의 운영개선을 위한 예산지원

< 답변 : 중등교육국장 전 태 식 >

○'95. 6.28일 통보된 교육부의 사립학교 교원임용 승인에 소요된 기간경력 인정처리치침에 의거 이에 해당되는 교사 14명이 모두 '95. 7. 1일자로 경력인정 되었음

○더욱 연구하여 신학년 신학기까지 보완처리 하겠음

○'96년내 과학관의 첨단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청주중학교, 충주 중앙중학교에 멀티미디어교실 설치 추진중

○현재 386기존 보유 과학관은 청원, 괴산 2개소로 그외 7개소 과학관에 586기종 40대씩 보급하기 위한 재원 확보중

농림수산위원회 박 온 섭 의원

질 문 요 지

○청주시 소재 학교에 다니는 농촌 학생들에게 연립주택이나 소규모 아파트 제공 용의

< 답변 : 가정복지국장 장 상 자 >

○정부의 농어촌발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특별세 투자계획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에서는 '95년부터 농어민 자녀 대학생을 위한 학사건립 추진중

○시도당 40억원 지원하여 대학밀집지역 지방도시에 건립

○우리 도에서는 지원이 확정되면 '96년 시범사업으로 기숙사 건립을 추진할 계획

질 문 요 지

○농어민후계자 문제에 대하여
 · 후계자 중 영농을 하지 않거나 융자자금의 타용도 활용 실태
 · 융자금 회수실적과 앞으로의 대책
○조령산 자연휴양림의 관리 운영을 도유림사업소에서 괴산군 임업협동조합으로 이관 타당성 검토
○잎담배 경작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원 용의
○홍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대책
○영농법인"연유회"(괴산영풍)에 대한 자금지원 등 정상가동대책
○농기계 사용중 상해발생에 따른 농기계상해보험의 보험료 일부 지원용의

< 답변 : 농정국장 박 만 순 >

○본도의 농어민 후계자 육성
 · '81-'95년까지 6,021명 선발
 · 이중 도시이주, 전입 등으로 941명이 줄어 현재 5,080명이 있으며
 · 융자금 상환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4,638명 관리중

○자금관리
 · 융자를 받은후 상환기일 전에 도시이주 또는 전입등으로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취소와 동시 자금회수
 · 회수된 융자금은 다음 연도에 후계자 육성자금으로 재투자하고 있음

○조령산 자연휴양림은
 · 금년 1. 25개장 운영중이며 '92~'94년까지 18억6,900만원 투자
 · 64종의 휴양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임
 · 앞으로 수안보 온천, 월악산 국립공원과 연계해서 국민건강 휴양공간을 조성하여 경영수익을 증대코자 시설을 계속 보완 하겠으며
 · 괴산군 임업협동조합으로의 위탁관리는 현재 어려운 실정임

○잎담배는 담배사업법에 의거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수매가격 및 소요물량을 사전에 예시하여 계약재배하는 전매작물로서 잎담배 생산에 필요한 지원도 담배인삼공사가 전담하고 있음
○담배소비세는 시군세로서 담배생산농가 지원문제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며 도비의 별도지원은 어려움

○현재 농업분야 재해시에 적용하는 농업재해대책법은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법이 아니고, 구호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피해농민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도에서는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단가의 현실화, 지원비율의 상향조정등 재해대책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음

○영농법인 "연유회"는 정부지원사업으로 '94년부터 4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시험 가동중이며

○앞으로 경영활성화 방안강구와 우수 공동퇴비장의 생산기술과 판매전략등 경영 기법 습득 지도하겠음

○농민이 농기계 사용중에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농작물상해공제와 농기계 종합공제제도를 농협에서 시행중

질 문 요 지

○농촌기계화 및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농로 확포장 대책
○농촌공가 재활용 정리대책 및 문화예술인에게 제공 계획

< 답변 : 건설교통국장 송 완 호 >

○도내 농촌도로는 1,971개 노선에 4,785km이며 확포장 사업비는 1조 1,372억원 소요

- '93 - 2004년까지 포장률 50%를 목표로 추진중이며
- '94년까지 1,309억원을 투자하여 858km 확포장 하였고
- '95년에 276억원을 투자하여 64개 노선 84.9km를 확포장 중에 있음

○'94년 현재 농촌공가는 총 4,850동으로 2,292동은 사용가능하고 2,558동은 사용 불가능함

○우리 도를 각종 문화예술의 창작의 산실로 육성하는 방안 검토중

농림수산위원회 이 희 복 의원

질 문 요 지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확대시행
○산림환경연구소 부지 시민공원화
○농업관련 사업소 통폐합

<답변 : 부지사 나 기 정 >

○금년도에 영동군 학산 보건지소 등 9개소에 11억원을 들여 보강중이며 내년에도 확대시행

○농촌여성들에 대하여 가구마다 카드를 작성하고 자궁암 진단, 건강상담을 실시중이며 앞으로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진료안내 실시

○산림환경연구소 주변 청주용담동 일대는

·'92. 9월 용암2지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되었고, '95년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 착수

○청원군 미원면으로 연구소를 이전하여 우수한 시험림과 수목원을 조성하도록 '94-'96년까지 이전사업 추진중

○도에는 13개의 사업소가 있으며, 일부의 사업소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기능 감소

○'93. 7월 잠종장을 잠업검사로로 통합, 치산사업소를 산림환경연구소와 통폐합 한 바 있으며, 사업소 통폐합 문제는 앞으로 있을 조직개편시 검토하겠음

질 문 요 지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해업체대책(옥천 청산농공단지내 재룡산업 관련)
○시군의회 의결에 따른 재의 요구

< 답변 : 기획관리실장 김 광 홍 >

○옥천군수가 옥천 농공단지내의 재룡산업에게 금지업종인 도금시설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계약을 변경하자 인근 주민대표가 계약변경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무효등의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과는 구별된다는 행정심판이론이나 판례 등을 감안해서 각하 의결

·행정심판위원 제척건은 잘못된 것으로 시인함

○지난 4년간 시군에 재의요구 하도록 한 조례안은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등 총 8건으로 '91년 1건, '93년 3건, '94년 4건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재의 요구하였음

질 문 요 지

○농산물의 주기적인 가격폭락과 대비책 추진실적 및 "지역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영
○농특세로 추진하는 재경지정리사업의 본도 대상지구 및 시행방법은
○남부3군의 과학영농단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

< 답변 : 농정국장 박 만 순 >

○작물별 적정재배와 안정생산을 위하여 주요작물에 대한 재배의향조사등을 통한 농산물유통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은

· 중앙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1조128억원을 활용하여 농산물유통공사로 하여금 농협 및 관련단체를 통한 채소류 비축수매사업과 가공 및 수출확대사업등을 추진하고 있고

· 도에서는 농산물유통공사 충북지사와 농협충북지역본부 등을 통하여 9월 현재 306억2,100만원을 지원받아 농산물 가격 안정사업 추진중임

· 지역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문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음

질 문 요 지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해업체 대책(옥천 청산농공단지내 재룡산업 관련)

< 답변 : 지역경제국장 김 승 기 >

○옥천 청산농공단지의 공해업체 입주허가 경위

· 도내 33개 농공단지에 입주한 298개 업체중 금속도금업체는 재룡산업 뿐이며

· 재룡산업 입주계약 변경 전에 금강환경관리청과 협의를 거쳐야 하나 실무자등의 잘못으로 군자체 환경성 검토만으로 판단하여 처리, 관계 공무원은 엄중 문책한 바 있음

· 재룡산업은 아직까지 공해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도 적합하여 허가취소보다는 오염물질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음

□ 제4차 본회의 : 1995. 9. 20(수)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건설교통위원회 김 원 식 의원

질 문 요 지

○북부지역 관광개발에 대하여
 · 제천, 단양 집중개발로 첨단 휴양도시화할 의향
 · 종합연구 추진을 위하여 관광과를 실 또는 국으로 승격개편 용의

< 답변 : 도지사 주 병 덕 >

○우리도의 관광개발계획은 크게 두 권역으로 추진중

○북부지역 관광개발사업 추진상황
 · 교리지구, 청풍문화재단지, 제천 능강지구, 단양온달지구 등

○'93. 7월 관광과에 관광지도계를 신설 보강한 바 있으며, 앞으로 관광분야의 업무량 증가추세와 인력, 예산확보 등 제반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관광과의 승격문제를 점차적으로 검토하겠음

질 문 요 지

○북부지역의 4대 시멘트회사에 대하여
 · 충북지역특별발전세를 부과토록 조례제정

< 답변 : 내무국장 최 경 주 >

○현행조세제도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목을 신설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임

○시멘트뿐만 아니라 광물, 수자원 등 지역의 특정자원이 지방세원화 될 수 있는 방안은 장기 연구검토할 사항임

○앞으로 우리 도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세원발굴 노력

질 문 요 지

○단양, 제천지역의 심야영업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

○쓰레기 재활용공장 건립

< 답변 : 보사환경국장 조 규 린 >

○식품접객업소의 심야영업시간 제한은 '90.1.1부터 밤12시까지로 제한

○수안보 온천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편의도모 차원에서 지난 8. 11 전국최초로 새벽 2시까지 연장한 바 있음

○우리도에서는 전 지역을 풀기보다는 일부 관광지에 대해서만은 해당지역 시장군수가 지역주민, 기관단체와 협의해서 건의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재활용품 수집은 시군에서 자원재생공사와 연계하여 수집

○도내 재생공장은 68개소이며, 또한 자원재생공사 충북지사에서는 청원군 북일면 세교리에 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는 파쇄 시설을 설치중임

○앞으로 공단이나 대형공장 건립시 재활용 시설을 갖추도록 추진하고 자치단체에서도 민관 공동투자하여 쓰레기 재활용공장 설치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음

질 문 요 지

○북부지역의 4대 시멘트회사에 대하여
· 시멘트회사의 본사를 지역에 유치할 계획

< 답변 : 지역경제국장 김 승 기 >

○본사이전 부진사유는 같은 그룹계열사 공장과 부대시설들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고 금융이나 정보활용, 통상협력의 원활화와 고급기술인력 확보가 용이한 점 등 유리한 점이 서울에 많이 있기 때문임

○본사가 우리 도에 없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공장 소재지에 납부되고 있고, 다만 본사에 소속된 직원의 주민세와 건물,토지에 한하여 본사 소재지에 납부하고 있을 뿐임

○우리도에 있는 4개 시멘트회사는 지방세수 증대와 인근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질 문 요 지

○제천 - 수산간 597번 지방도의 4차선 확장시기와 '96상반기 착공예정인 청풍교리관광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조기 착공할 의향

○박달재와 다릿재 터널 조기완공 방안

○준국도건설 사업비 100% 전액을 국비로 부담 건의

○위험교량 보수

○건설업체 부실벌점제 도입에 따른 도의 추진상황

< 답변 :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

○제천 - 수산간 도로는 31km로서 4차선 확장노선의 교통량 1일 8,000대 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교통량 급격증가 예상시점은 교리관광지구와 청풍문화재단지 등 충주호권 관광개발 완공과 건설교통부에서 실시설계중인 제천시 남부우회도로 완공 및 금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중앙고속도로와 동시 개통되도록 추진

○대전국토관리청 시행구간으로 충주-제천간 36.7km : 71억 투자, 확장 완료
○박달재 터널공사 : 2차선 상행선 '96.4월개통예정, 2차선 하행선 금년 하반기 착공 '98년 완공예정
○다릿재 터널공사: 4차선 설계중, 내년착공 '99년 완공예정
○도지사 취임후 중앙부처 방문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 중앙부처와 긴밀 협조
○현재 도로법 개정중으로 건설교통부에서 7.3일자 입법예고 중
○국도,준용도 지정대상은 전국3,678km로서 우리도에서는 7개노선 191km를 국도, 준용도로 승격 추진중
○건설비용 전액 국고부담 문제는 이번 정기회에서 도로법 개정이 확정되면 문제점 분석하여 건의

○도내 지방도와 군도상 교량은 총591개로서
○이중 개보수 대상교량은 190개소이며
○개축대상 75개소 소요사업비는 518억원으로 지방도 172억원, 시군도 346억원임
○보수대상 115개소 소요사업비는 35억원으로
・'95년에 지방도 27개소, 시군도 16개소 등 총 43개소를 완료하였고 72개소는 추진중임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을 법제처에 요구하여 심의중

건설교통위원회 오 성 진 의원

질 문 요 지

○청주광역권 쓰레기 매립장 갈등 미해결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

< 답변 : 보사환경국장 조 규 린 >

○ 추진경위
・'90. 10. 30일 청주시장과 청원군수간에 매립장 건설 및 운영협정
・'91. 10월 , '92. 7월 환경부에서 기본계획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 '92. 12. 2일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로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승인으로 '92. 12. 9일 청주시장이 동양건설과 공사계약 체결
· 이후, 건설부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승인, 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필요한 행정절차가 완료된 상태로 있고
· 청원군수의 백지화 발표, 주민반발로 지연된 실정임

○ 숙원사업비는 청주시에서 7억원을 매립장 인근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집행, 청원군의 16억원(도비6, 시비10)은 미집행 상태임
○ 설계용역비 2억5천만원은 청주시에서 집행
○ 도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협의 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해서 조정해 나가겠음

질 문 요 지

○ 농업재해보상보험제도 건의 용의
○ 농업진흥기금 1천억 조성계획 용의

< 답변 : 농정국장 박 만 순 >

○ 정부에서는 '79-'86까지 타당성 검토와 기본조사를 거친후 '87-'91년까지 도상연습 실시등 농작물재해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장기간 연구 검토하였으나 문제점이 많아 추진을 중단한 바 있음
○ 정부의 방침은 보험제도의 실시요건이 조성될 때까지 현재의 농업재해 지원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 개선하는 것임
○ 그러나 도에서는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확대와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조기시행을 건의하겠음

○ 도에서는 농어촌 소득개발기금을 '93년부터 도조례로 제정해서 기금을 조성하여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농민들로 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음
○ 농업진흥기금 조성방안 제시내용 중
· 구조개선사업비의 일정률은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충당이 어려우며
· 시군 자치단체 출연금은 시군 자치단체와 사전협의가 선행돼야 하고
· 농업관련 단체 출연금은 중앙의 사전 사업승인 문제 등으로 다소 어려움
○ 따라서 현재의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음

질 문 요 지

○재해피해 보상 및 복구문제
○건설공사 추진 지연 문제
○국도, 지방도, 군도 등의 노견포장 대책
○시공중인 건설공사도 수해복구비 국고부담 지원

< 답변 : 건설교통국장 송 완 호 >

○중앙재해대책본부 기준 중앙지원 대상은
- 농작물등 동산피해를 제외한 피해액이 시군당 7억원이상, 청주시는 11억원 이상
- 공공시설 복구지원은 개소당 피해액 400만원이상, 복구소요액 800만원 이상
- 사망.실종자는 1인당 400만원, 부상자는 200만원 지급
- 주택전파, 유실, 반파나 2헥타 미만 경작자가 80%이상 피해시 1~3개 월간의 장기구호와 양곡10가마 지원
- 2헥타 미만 경작자로서 50%이상 피해농가는 자녀수업료, 각종 공과금 면제, 양곡 5가마 지원
- 주택복구는 지구당 0.5헥타이상, 심도 10cm이상 피해시 2헥타미만 소유자에게 복구비의 50%, 2헥타이상 소유자에게 복구비의 20% 지원, 농경지 복구가 불가능하여 국가의 매입희망시 매입가능, 농경지 유실매몰 침수로 농작물 피해시 종자 및 비료대 지원, 침수지 농경지에 농약대 지원

○농축산물 시설물은 중소규모는 보조 20%, 융자 60%, 자담20%, 대규모의 경우는 융자 70%, 자담 30% 지원

○공기부족 예상지구에 대하여 집중적인 공정관리와 품질관리를 기하고 보상지연의 최소화를 위하여 금년부터 4차선 확장사업은 선보상 실시
○앞으로 건설공사의 용지보상을 선보상하고 확대해 나가겠음

○국도는 '92년부터 갓길포장을 시작하여 현재 32개 노선 527km 시행중
○지방도는 '93년부터 10개 노선 20.5km 시행중
○군도는 '95년에 3개노선 4km 시행중
○갓길포장은 종합검토해서 계속 추진

○시공중인 공사피해는 현재 복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중앙부서의 기준 개선과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수해복구 비용 지원에 대하여 지난 9. 6일 중앙부서에 건의한 바 있음

질 문 요 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문제

< 답변 :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 창 국 >

○'92-2001년까지 10년간 청원군 오창면 일원 285만6천평의 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산업을 유치,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현재 토개공과 주민간의 의견조정이 매듭단계로 연내 보상 가능

○이주할 택지를 100평으로 하고 조성원가의 30%이내 공급과 공업지역으로 변경해서 실거래가격 보상요구 건은

·택지는 70평을 조성원가의 50-70%로 공급하고 보상은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해서만 보상토록 법에 규정되어 주민의 양해를 받는 중임

○이주할 택지 마련후 공사시행 요구 등 15건은

·그간 도에서 토개공측에 강력히 요구한 결과 주민의 뜻에 따르기로 개공과 협의 완료

○LG, 대우, 금호그룹 등 16개 업체에서 110만평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계획보다 32%를 더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며, 타지역 이전설은 확인결과 사실무근임

질 문 요 지

○교육시설에 대하여

< 답변 : 관리국장 신 재 철 >

○도내 91개면에 중학교가 없는 곳은 33개면으로 이중 인구 6천명 미만이 27개면, 6~8천명이 중원군 이류면 등 3개면, 8천~1만명이 청원군 남일면 등 2개면, 1만명이상은 청원군 강외면 1개면 임

○현재 도시전입 농촌지역 학생수는 소수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의 과밀학급에 큰 영향은 없으나 앞으로 도시지역의 학교설립 요인 발생시 외곽지역에 배치해서 시내 교통난과 과밀학급 해소에 적극 대처하겠음

□ 제5차 본회의 : 1995. 9. 22(금)

○ 충청북도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수해농가 특별지원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건의안 (원안채택)

○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실시에 관한 건의안 (원안채택)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95. 9. 12(화) 14:31~14:41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 (평균)	20시간 25분 (4시간 05분)	
1차 (9. 12)	14 : 41 ~ 15 : 01	20분
2차 (9. 18)	10 : 04 ~ 16 : 27	6시간 23분
3차 (9. 19)	10 : 05 ~ 17 : 07	7시간 02분
4차 (9. 20)	10 : 03 ~ 15 : 45	5시간 42분
5차 (9. 22)	11 : 03 ~ 12 : 01	58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8.0%)

대상인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3	4	5	1	2	3	4	5
40명	38	40	40	39	39	2	-	-	1	1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 상임위원회 '95. 9. 12 ~ 9. 22 (11일간)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비 고
기획경제 위원회	'95. 9.12	1	○주요사업지구시찰계획결정	
	9.13		○옥천 동이농공단지 현지방문	
	9.14		○현지방문(미백복숭아, 느타리버섯재배단지)	
	9.15		○수안보관광지구방문	
	9.21	2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	
내 무 위원회	'95. 9.1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9.13	2	○소방서 업무현황 청취(충주,증평)	
	9.14	3	○ 〃 (제천)	
			○청풍문화재단지 보존 및 정비실태 답사	
	9.15	4	○소방서업무현황 청취(영동,청주)	
	9.21	5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교육사회 위원회	'95. 9.13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9.14		○공단폐수 종말처리장외 1개시설 현지방문	
	9.15		○공해배출업소 현장방문결과 간담회	
	9.21		○환경기초시설 현지방문 간담회	
농림수산 위원회	'95. 9.13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농업관련유관기관방문	
	9.14		○ 〃	
	9.15	2	○수해농가특별지원및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건의안	
			○배합사료부가가치세영세율전면실시에관한건의안	
건설교통 위원회	'95. 9.1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9.13		○현 지 방 문	
	9.14		○ 〃	
	9.15		○ 〃	

2) 안건처리현황

위원회별	상정	처리	처리결과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7	7	7					
의회운영위원회	2	2	2					
기획경제위원회	1	1	1					
내무위원회	1	1	1					
교육사회위원회	1	1	1					
농림수산위원회	2	2	2					

3) 주요안건 심사결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11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 주요골자 >

○ 회기는 10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주요 의사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95.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심의 및 의원연찬활동 등의 부의안건 처리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

< 주요골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과 위원의 선임방법을 협의 정하려는 것임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 리 내 용					비 고
			가 결		부 결	보 류	기 타	
			원 안	수 정				
계	2	2	2					
일반안건	2	2	2					

□ 기획경제위원회

◉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

< 주요골자 >

○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 리 내 용					비 고
			가 결		부 결	보 류	기 타	
			원 안	수 정				
계	1	1	1					
조 례 안	1	1	1					

□ 내무위원회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정책보좌관 정원 : 본청에 11명을 한시로 증원

- 지방행정 2급 1명 ('97. 6.30)
- 지방행정 3급 3명 ('96.12.31 - 1명, '97. 6.30 - 2명)
- 지방행정 4급 2명 ('96.12.31)
- 지방시설 4급 4명 ('96. 6.30 - 1명, '97.12.31 - 3명)
- 지방수의 4급 1명 ('96.12.31)

○ 지방전임전문직공무원 정원 : 15명 증원

· 본청 : 9명 (7급 7명, 8급 2명)

· 사업소(자연학습원) : 6명 (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례안	1	1	1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얻어야 하는 중요재산 범위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내지 제4항과 같이함.

○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던 것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함

○ 관리계획에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던 것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만을 포함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례안	1	1	1					

□ 농림수산위원회

◉ 수해농가특별지원및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건의안

< 주요골자 >

○ 특별영농자금지원확대

○ 각종 재해시 작목별 전액보상 되도록 관련법규 개정

○ 농경지 복구비용 국고지원요망

○ 농업재해보험제도실시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배합사료부가가치세영세율전면실시에관한건의안

< 주요골자 >

○ 부업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전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적용하여 주길 요망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2	2	2					
건의안	2	2	2					

第 4 節 第118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18회 임시회는 김진학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95년 9월 28일 집회공고하여 도교육청의 2회 추경예산안과 '94년 세입·세출결산승인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10월 9일, 오후 3시30분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1995. 10. 9 (월) ~ 10. 18 (수)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199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 199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 6건
-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설치를 위한 건의안

※ 회의록 서명의원 : 권영관, 윤병태의원

2) 의안처리현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건 의 안	결 의 안	기　　타
13건	6	1	1	1	4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1995. 10. 9 (월)

○ 제1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원안가결)

· 회 기 : '95. 10. 9 ~ 10. 18 (10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14명(원안가결)

· 위원장 : 이병두

· 간 사 : 유명호

· 위 원 : 김준석, 임헌용, 김동진, 권영관, 김재근, 최선환, 최영락, 이민희, 이향래, 이희복, 정태정, 박제국

※ 존속기간 : 의결일로부터 1997. 1. 7까지

○ 199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제2차 본회의 : 1995. 10. 18 (수)

○ 199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원안가결)

○ 199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 충청북도 21세기위원회 설치운영조례수정안(수정가결)

○ 충청북도 명예연구소 운영조례안 (원안가결)

○ 충청북도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96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원안가결)

○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설치를 위한 건의안 (원안채택)

○ 충청북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95. 10. 9 (월) 15:33~15:41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 (평균)	2시간 15분 (1시간 08분)	
1차 (10. 9)	15 : 41 ~ 16 : 49	1시간 08분
2차 (10. 18)	11 : 03 ~ 12 : 10	1시간 07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8.8%)

대상인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1	2
4 0 명	39	40	1	-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 상임위원회 '95. 10. 9 ~ 10. 18 (11일간)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비고
의회운영 위 원 회	'95.10. 9	1	○제118회 임시회 회기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협의	
기획경제 위 원 회	'95.10.10	1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 ○'96자치복권 발행계획심사	
	'95.10.11 ~12	2	○'94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 ○의원 연찬회	
내 무 위 원 회	'95.10. 9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95.10.10	2	○정춘수동상년내철거에대한 청원심사	
	10.11	3	○ 〃	
	'95.10.12	4	○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10.13		○진정서 처리 간담회	
교육사회 위 원 회	'95.10.10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95.10.11	2	○'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	
	'95.10.12	3	○'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예비심사	
농림수산 위 원 회	'95.10.1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간담회	
	10.11		○옥천시설포도시험장 현장방문	
	10.12		○단양마늘시험장 현장방문	
건설교통 위 원 회	'95.10.1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를위한건의안	
	10.11		○도로관리사업소 방문	
	10.12		○ 〃	
	10.13		○레미콘생산업체 현장방문	
	10.14		○ 〃	
	10.16		○간담회	

□ 특별위원회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비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95.10.13	1	○'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 종합심사	
	'95.10.14	2	○소위원회 활동	
	'95.10.15	3	○종합심의 의결	

2) 안건처리현황

위원회별	상정	처리	처리결과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2	12	11	1				
의회운영위원회	2	2	2					
기획경제위원회	3	3	3					
내무위원회	1	1	1					
교육사회위원회	3	3	2	1				
건설교통위원회	1	1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	2					

3) 주요안건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ㅇ 구 성 일 : '95. 10. 9
- ㅇ 위 원 수 : 14명
- ㅇ 활동기간 : '95. 10. 9 ~ '97. 1. 7
- ㅇ 시군별위원수 배정 - 1명(단, 청주·충주는 3명, 제천 2명)
- ㅇ 정당별 위원수
  - 민자당 : 6명
  - 민주당 : 4명
  - 자민련 : 1명
  - 무소속 : 3명
- ㅇ 상임위원회별 위원수

위원회별	계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비고
인원	명 14	3	3	2	4	2	

- ㅇ 위원명단
  - ·위원장 : 이 병 두 (제천시, 민자당, 기획경제)
  - ·간 사 : 유 명 호 (괴산군, 무소속, 내 무)
  - ·위 원 : 김 준 석 (청주시, 무소속, 교육사회)
    임 헌 용 (청주시, 민주당, 기획경제)
    김 동 진 (청주시, 민자당, 내 무)
    권 영 관 (충주시, 민자당, 내 무)
    김 재 근 (충주시, 민자당, 기획경제)
    최 선 환 (충주시, 자민련, 건설교통)
    최 영 락 (제천시, 무소속, 농림수산)
    이 민 희 (청원군, 민주당, 건설교통)
    이 향 래 (보은군, 민주당, 농림수산)
    이 희 복 (옥천군, 민주당, 농림수산)
    정 태 정 (영동군, 민자당, 농림수산)
    박 제 국 (음성군, 민자당, 교육사회)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리내용					비 고
			가결		부 결	보 류	기 타	
			원 안	수 정				
계	2	2	2					
일반안건	2	2	2					

□ 기획경제위원회

◉ 충청북도 21세기위원회 설치운영조례

< 주요골자 >

○ 구　　성 : 각계 각층의 도민 100명 이내

○ 기　　능 : 생활현장의 체험적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충북의 중장기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등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는 공식기구

○ 회　　의 : 정기회 년 2회,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

○ 임　　기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분과위원회 : 행정제도, 산업경제, 환경복지, 건설교통, 정보과학, 문화관광, 분과위원회 등 6개 분야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 본 21세기 위원회는 충북의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도정목표 정립과 분야별 정책방향설정에 관한 전문가 및 현장 생활인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는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 위원수가 100명에 이르고 있어 운영적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우려되고 있어 위원수를 축소하였으며, 순수 민간자문기구로서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도록 심의의결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음.

○ 수정요지

· 위원회 위원수를 100인에서 60명으로 축소 (안 제3조 제1항)

· 심의의결에 대한 의결정족수 조항 삭제 (안 제6조 제3항)

·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을 자문사항으로 수정 (안 제7조 제4항)

· 업무위탁기관에 공무원 파견 근거조항 삭제 (안 제8조 제2항)

· 관계공무원, 이해당사자등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 (안 제11조 제2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 (안 제13조)

· 기능이 유사한 충청북도세계화추진위원회조례 폐지 (안 부칙)

◉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

< 주요골자 >

○ 지정요건 및 대상분야 (안 제2조)

○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안 제5조 및 제6조)

○ 연구성과 평가회 개최 (안 제7조)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6 자치복권 발행계획

< 주요골자 >

○ 발 행 주 체 :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 판 매 지 역 : 전국

○ 발행규모및수익 : 2,400억원 (예상수익 600억원)

○ 발행형식 및 발행액

- 즉 석 식 : 1,200억원 (매월 100억원)

- 추 첨 식 : 1,200억원 (매주 24억원)

○ 발 행 기 간 : '96. 1. 1 ~ 12. 31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3	3	3					
조례안	2	2	2					
일반안건	1	1	1					

□ 내무위원회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뿐만아니라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임대하는 경우도 도세를 면제

○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공장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면제된 도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례안	1	1	1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 주요골자 >

○ 위원상해등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 위원보상금 지급절차 및 방법

○ 위원상해등 보상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자구조정)

○ 수정이유 및 요지

· 위원장의 사고시 그 직무대행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조례안 제12조 제2항 규정중 "지명하는"을 "지명한"으로 자구수정하여 의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

< 주요골자 >

○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를 신설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월 5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100,000원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 함.

○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고 교육위원의 회기중 회의(소위원회 회의 포함)에 출석한 경우에 한해 1일 60,000원을 지급토록 함

○ 여비는 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만 지급토록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심사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의뢰 승인

<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3	3	2	1				
조례안	3	3	2	1				

□ 건설교통위원회

◉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를위한건의안

< 주요골자 >

- ㅇ 충청북도는 국가기간교통의 요충지임
- ㅇ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첨단산업지대임
- ㅇ 오송역기점시 건설비 절감 효과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건의안	1	1	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 주요내용 >

○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분 / 관별	예산액 (1)	징수결정액 (2)	수납액 (3)	불납결손액 (4)	미징수액 (2-3-4)
합계	504,876,418	519,864,335	519,833,832	25,503	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40,360,325	340,360,325	340,360,325	0	0
지방교육양여금	81,030,133	81,030,133	81,030,133	0	0
교육환경개선교부금	1	0	0	0	0
국고지원금	4,663,776	4,668,882	4,668,882	0	0
비법정전입금	77,234	81,011	81,011	0	0
지원금	1	0	0	0	0
재산수입	6,904,372	6,545,987	6,545,987	0	0
입학금및수업료수입	27,625,395	27,918,525	27,894,063	25,461	0
사용료및수수료수입	312,176	313,005	313,005	0	0
잡수입	5,299,466	6,070,245	6,070,203	42	0
지방교육비	1	0	0	0	0
이월금	38,481,136	52,753,823	52,753,823	0	0
주민부담금	122,402	122,400	122,400	0	0

○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분 / 관별	예산액 (1)	전년도이월액 (2)	이용·이체예비비사용 (3)	예산현액 (4)	지출액 (5)	다음년도이월액 (6)	불용액 (7) (4-5-6)
합 계	504,876,418	14,272,685	0	519,149,103	478,803,613	22,577,889	17,767,601
교육위원회비	596,265	19,124	0	615,389	554,737	0	60,652
교육행정비	24,780,290	0	0	24,780,290	23,813,196	30,000	937,094
교육사업비	10,782,696	89,850	282,196	11,154,742	10,600,361	0	554,381
학교비	338,737,139	18,340	0	338,755,479	322,783,571	30,000	5,941,908
사학지원비	30,358,398	382,000	0	30,740,398	30,128,047	0	612,351
시설비	96,309,227	13,763,371	13,632	110,086,230	80,923,701	22,517,889	6,644,640
제지출경비	2	0	0	2	0	0	2
예비비	3,312,401	0	△295,828	3,016,573	0	0	3,016,573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

< 주요내용 >

(단위 : 천원)

장 별	예 산 액	'95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내역		
		요구액	증	감
합 계	539,463,778	539,463,778	-	-
교육위원회	569,321	569,321	-	-
본청	435,965,025	435,965,025	-	-
청주교육청	37,054,390	37,054,390	-	-
충주교육청	11,780,915	11,780,915	-	-
제천교육청	11,037,199	11,037,199	-	-
청원교육청	5,967,606	5,967,606	-	-
보은교육청	4,289,498	4,289,498	-	-
옥천교육청	3,036,315	3,036,315	-	-
영동교육청	6,967,559	6,967,559	-	-
진천교육청	3,818,720	3,818,720	-	-
괴산교육청	7,155,017	7,155,017	-	-
음성교육청	6,440,529	6,440,529	-	-
단양교육청	4,288,490	4,288,490	-	-
예 비 비	1,142,865	1,142,865	-	-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 리 내 용					비 고
			가 결		부 결	보 류	기 타	
			원 안	수 정				
계	2	2	2					
예 산 안	1	1	1					
결 산 안	1	1	1					

第 5 節 第119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19회 임시회는 김진학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95년 10월 24일 집회공고하고 충청북도의 제2회 추경예산안과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다루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기 위하여 11월 1일 오전11시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1995. 11. 1 (수) ~ 11. 9 (목)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조례안 - 2건
- 199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 199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건의안 - 3건

※ 회의록 서명의원 : 김인식, 김재근의원

2) 의안처리현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승 인 안	건 의 안	기　타
10건	2	1	3	3	1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1995. 11. 1 (수)

○ 제1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원안가결)

· 회 기 : '95. 11. 1 ~ 11. 9 (9일간)

○ 199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의원연찬회 (13:30~16:40)

· 예산결산심사기법 (국회의정연수원 신해룡교수)

□ 제2차 본회의 : 1995. 11. 9 (목)

○ 199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원안가결)

○ 1994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원안가결)

○ 199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 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원안가결)

○ 먹는 물 관리법 개정 건의안(원안채택)

○ '95년산 추곡수매에 관한 건의안(원안채택)

※ 안재원의원 외 8인 발의

○ 중부내륙고속도로 일부노선 변경건의안(원안채택)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95. 11. 1(수) 11:03~11:11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 (평균)	1시간 25분 (38분)	
1차 (11. 1)	11 : 11 ~ 11 : 31	20분
2차 (11. 9)	11 : 04 ~ 11 : 59	55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1.3%)

대 상 인 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1	2
4 0 명	39	34	1	6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 상임위원회 '95. 11. 1 ~ 11. 9 (9일간)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비고
의회운영위원회	'95.11. 1	1	○제1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	
	11. 4	2	○'9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 ○'95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예비심사(의회사무처) ○'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인요구	
기획경제위원회	'95.11. 2	1	○'9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 (공보, 감사, 기획관리실) ○'94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	
	11. 3	2	○'95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예비심사(기획관리실) ○'9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국제통상협력실, 지역경제국) ○'95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예비심사(지역경제국)	
	11. 4	3	○'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의건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	
내무위원회	'95.11. 2	1	○'9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각실국원, 출장소) ○'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인요구	
	11. 3	2	○'95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예비심사(내무국, 소방본부,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 ○청원심사 (행정구역조정)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비고
교육사회 위원회	'95.11. 2	1	○'9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 ○'95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예비심사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11. 3	2	○'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	
	11. 4	3	○먹는물관리법개정건의	
농림수산 위원회	'95.11. 2	1	○'95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예비심사 (농정국) ○'95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예비심사 (농촌진흥원)	
	'95.11. 3	2	○'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	
	'95.11. 4	3	○'9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 ○'95년산추곡수매에관한건의	
건설교통 위원회	'95.11. 2	1	○'9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 ○'95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예비심사	
	'95.11. 3	2	○'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	
	'95.11. 4	3	○중부내륙고속도로일부노선변경건의	

□ 특별위원회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비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95.11. 6 ~ 11. 7	1~3	○'9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 ○'94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 ○'95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	

2) 안건처리현황

위원회별	상정	처리	처리결과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9	9	8	1				
의회운영위원회	1	1	1					
내무위원회	2	2	2					
교육사회위원회	1	1	1					
농림수산위원회	1	1	1					
건설교통위원회	1	1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3	2	1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내무위원회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직속기관 정원 11명 증원 (제천소방서 매포파출소 인력)

· 지방소방위 1명, 지방소방장 2명, 지방소방교 4명, 지방소방사 4명

○ 사업소 정원 4명 증원 (가축위생소시험소 중부지소 인력)

· 지방가축위생연구사 2명, 지방수의주사보 2명

○ 이미 운영중인 정책보좌관 정원 중 기존의 6급이하 정원을 감축하여 한시정원으로 조정한 정원을 지침 변경에 따라 감축된 당초정원으로 환원시키기 위하여 해당 조례의 부칙일부 수정

· 조례 제2180호 ('95. 2.17)의 부칙 제3항의 한시정원 내역 중 본청 정책보좌관 3명을 삭제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를 설치하고, 이와 관련한 지소 관할구역 조정

· 북부지소 : 충주시, 음성군

· 남부지소 :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 제천지소 : 제천시, 단양군

· 중부지소 : 괴산군, 진천군

○ 지방연구직및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대통령령)의 시행에 따른 연구직 공무원의 직렬 조정

· 지방농업연구관 → 지방가축위생연구관

○ 지소장 중 중부지소장은 6급으로 보임하도록 단서규정 신설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2	2	2					
조례안	2	2	2					

□ 교육사회위원회

◉ 먹는물관리법개정 건의

< 주요내용 >

○ 환경부장관허가시 개인도 수원개발이나 제조할 수 있는 현행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개발생산 토록하여 자원보전을 철저히 하도록 개정 건의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건의안	1	1	1					

□ 농림수산위원회

◉ '95년산 추곡수매에 관한 건의

< 주요내용 >

○ 추곡수매가의 13% 이상 인상

○ 각종 보조금의 직접 지불제도 실시

○ 양곡정책 전반의 제도적·재정적 지원보장

○ 농기계 반값 공급전면실시 등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건의안	1	1	1					

□ 건설교통위원회

◉ 중부내륙고속도로 일부노선 변경건의

< 주요내용 >

○ 지역간 연결도로 도심내 통과 지양

○ 노은 연하리 ~ 가금면 용전리 ~ 이류면 장성리 노선으로 변경요망

○ 장호원과 충주 I.C 중간지점에 노은 I.C 설치검토요망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건의안	1	1	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94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

< 주요내용 >

○ 결산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현액 ①	세입결산액 ②	세출결산액 ③	세계잉여금
합계	768,809,766	733,616,579	535,735,968	197,880,611
일반회계	542,150,806	553,639,441	471,032,718	82,606,723
특별회계	226,658,960	179,977,138	64,703,250	115,273,888
· 공영개발사업	148,526,389	99,677,199	13,388,142	86,289,057
· 지역개발기금	56,981,008	59,157,813	30,789,355	28,368,458
· 의료보호기금	15,786,097	15,775,083	15,569,779	205,304
· 농어촌소득개발기금	3,474,177	3,475,754	3,474,000	1,754
· 대청호대책	1,891,289	1,891,289	1,481,974	409,315

○ 세입결산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 ③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계	768,809,766	754,413,275	733,615,579	238,604	20,558,092
일반회계	542,150,806	574,144,003	553,639,441	238,604	20,265,958
특별회계	226,658,960	180,269,272	179,977,138	-	292,134
· 공기업	205,507,397	159,127,147	158,835,013	-	292,134
- 공영개발사업	148,526,389	99,969,334	99,677,200	-	292,134
- 지역개발기금	56,981,008	59,157,813	59,157,813	-	-
· 의료보호기금	15,786,097	15,157,813	15,775,083	-	-
·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3,474,177	3,475,753	3,475,753	-	-
· 대청호대책	1,891,289	1,891,289	1,891,289	-	-

○ 세출결산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액 ①	지출원인행위액 ②	지출액 ③	다음년도이월액 ④	불용액
합계	768,809,766	575,611,348	535,735,968	175,451,399	57,622,399
일반회계	542,150,806	510,684,309	471,032,718	55,102,921	16,015,167
특별회계	226,658,960	64,927,039	64,703,250	120,348,478	41,607,232
· 공기업	205,507,397	44,401,286	44,177,497	120,348,478	40,981,422
- 공영개발사업	148,526,389	13,611,931	13,388,142	120,348,478	14,789,769
- 지역개발기금	56,981,008	30,789,355	30,789,355	-	26,191,653
· 의료보호기금	15,786,097	15,569,779	15,569,779	-	261,318
·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3,474,177	3,474,900	3,474,000	-	177
· 대청호대책	1,891,289	1,481,974	1,481,974	-	409,315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4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

< 주요내용 >

(단위: 천원)

구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예비비 지출사유
세·항	세세항	사업명				
계			4,139,843	4,062,999	76,844	
본청			4,027,021	3,965,127	61,894	
2111 기관운영	① 기관공통운영	유족보상금	47,664	47,664	-	순직공무원유족보상금
		연금지급금	740	740	-	일용직 퇴직금
3121 저소득주민보호	② 이재민구호	이재민구호비	69,400	69,400	-	충주호유람선사고사망자 유가족장제비및부상자 위로금
4114농업기반조성	⑤ 한해대책	가뭄대책비	415,200	415,200	-	가뭄대책사업비
4132농사시험연구	①식량작목시험	손해배상금	120,593	110,000	10,593	진흥원내소류지익상자 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금
4211 산림관리	① 산림보호	산불진화장비구입비	32,010	32,010	-	산불진화장비(헬기장 착용)구입비
5215 도로관리사업소운영	① 사업소운영	수해복구비	32,145	32,145	-	'94.8.28-8,30집중호우에 따른수해복구비도비부담금
		위험교량정비	140,000	140,000	-	위험교량인 주덕 가교설치비
5314 재해대책	① 재해복구	수해복구비	2,371,865	2,371,816	49	'94.8.28-9.30집중호우에 따른수해보구비도비부담금
	② 재해예방	수해복구비	565,690	514,595	51,095	'94.6.30집중호우에따른 수해피해 복구비
		위험교량정비	203,774	203,774	-	위험교량 실시설계비
8111 지방채상환	③ 국외차입금상환	차입금상환	27,940	27,783	152	IBRD군도개발 차관 원금상환액 부족분
증평			112,822	97,872	14,950	
4114 농업기반조성	⑤ 한해대책	가뭄대책비	24,822	23,222	1,600	가뭄대책에 필요한 용수 원개발 및 장비구입
5314 재해대책	① 재해예방	위험교량정비	88,000	74,650	13,350	위험교량실시설계비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5년도 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

< 주요내용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소관별	예산액	제출예산액		수정내역	
		계	'95 2회	증	감
합계	616,510,031	616,510,031	616,510,031	200,000	200,000
기획경제위원회	63,170,927	62,970,927	62,970,927	200,000	
공보관실	611,758	611,758	611,758	-	-
감사실	121,256	121,256	121,256	-	-
국제통상협력실	416,211	416,211	416,211	-	-
기획관리실	42,634,411	42,634,411	42,634,411	200,000	-
지역경제국	19,187,291	19,187,291	19,187,291	-	-
내무위원회	163,981,461	164,181,461	164,181,461	-	200,000
내무국	111,279,071	111,479,071	111,479,071	-	200,000
민방위국	384,218	384,218	384,218	-	-
소방본부	20,517,520	20,517,520	20,517,520	-	-
공무원교육원	1,486,126	1,486,126	1,486,126	-	-
도민교육원	1,257,114	1,257,114	1,257,114	-	-
증평출장소	29,057,412	29,057,412	29,057,412	-	-
교육사회위원회	85,811,422	85,811,422	85,811,422	-	-
보사환경국	60,514,446	60,514,446	60,514,446	-	-
보건환경연구원	1,850,244	1,850,244	1,850,244	-	-
가정복지국	23,446,732	23,446,732	23,446,732	-	-
농림수산위원회	136,215,035	136,215,035	136,215,035	-	-
농정국	118,313,438	118,313,438	118,313,438	-	-
농촌진흥원	17,901,597	17,901,597	17,901,597	-	-
건설교통위원회	164,465,910	164,465,910	164,465,910	-	-
건설교통국	164.465,910	164,465,910	164,465,910	-	-
의회운영위원회	2,865,276	2,865,276	2,865,276	-	-
의회사무처	2,865,276	2,865,276	2,865,276	-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제 출 예 산 액		수 정 내 역	
		계	'95 2회	증	감
합 계	157,971,372	157,971,372	157,971,372	121,968	121,968
공기업특별회계	136,319,410	136,319,410	136,319,410	121,968	121,968
공 영 개 발	52,244,888	52,244,888	52,244,888	121,968	121,968
지역개발기금	84,074,522	84,074,522	84,074,522		
기타특별회계	21,651,962	21,651,962	21,651,962	-	-
의료보호기금	16,401,651	16,401,651	16,401,651	-	-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운영관리	3,340,385	3,340,385	3,340,385	-	-
대청호특별대책 지역환경기초 시설운영관리	1,910,526	1,910,526	1,910,526	-	-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및 요지

· 19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7,744억8,140만3천원중 3억2,196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 리 내 용					비 고
			가 결		부 결	보 류	기 타	
			원 안	수 정				
계	3	3	2	1				
예 산 안	1	1		1				
결 산 안	1	1	1					
승 인 안	1	1	1					

第 6 節 第120回 定期會

1. 開會背景

제120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5년 11월 9일 집회 공고하고 도 및 교육청의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3회 추경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을 위하여 11월 20일 오후2시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1995. 11. 20 (월) ~ 12. 29 (금)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ㅇ 조례안 - 14건
- ㅇ 1996년도 충청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
- ㅇ 1995년도 제3회 충청북도 및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 ㅇ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95. 11.21~11.29)
- ㅇ 시정연설(교육시책연설 포함)
- ㅇ 도정질문('95. 11. 30~12. 2)
- ㅇ 건의안 1건, 승인안 1건

※ 회의록 서명의원 : 최선환, 이길하의원

2) 의안처리현황

계	조례안	예산안	승인안	건의안	청 원	기 타
31 건	14	4	1	1	1	10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1995. 11. 20 (월)

○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원안가결)

· 회 기 : '95. 11. 20 ~ 12. 29 (40일)

○ 1996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제안설명 포함)

○ 199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교육시책연설(제안설명 포함)

○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가결)

□ 제2차 본회의 : 1995. 11. 30 (목)

○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내무위원회 유 명 호 의원

질 문 요 지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대하여

· 가칭 "충북문화예술체육주간"의 설정으로 충북예술제, 도민체전, 시군문화제의 병행실시

· 전국체전대비 실업팀 창단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과 에리트 체육인 양성계획

· 초중고 출신 우수 체육인의 타도 유출 방지대책

< 답변 : 도지사 주병덕 >

○도민체전은 전국체전 대비로 6월 개최, 충북예술제는 문화의 달인 10월 개최가 바람직하여 병행개최는 어려운 실정임

○전국체전 상위권 입상과 기관 단체 실업팀 창단을 위하여 협의 노력중임

< 답변 : 내무국장 최경주 >

○출전종목과 경기방법 등 개선보완할 계획임

○생활체육 종목과 민속놀이 종목을 확대하겠음

○전국체전에 파견할 대표선수에 대한 별도의 선발전과 강화훈련 등을 실시하겠음

< 답변 :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

○초중고 재학선수 타시도 전출시 본도 교육감 동의서를 첨부할 때 신중 검토하고

○고교 졸업선수에 대하여 본도 수용가능 선수는 본도 진학 및 취업을 적극 추진하고 본도 수용불가 선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최선을 다 하겠음

질 문 요 지

○지역균형개발 분야에 대하여
 · 청주.청원권 편중개발 등의 지역간 불균형 개발 해소책
 · 본도 내륙에 정책사업 추진

< 답변 : 도지사 주병덕 >

○청주.청원권 개발은 교통여건, 지리적 여건 등으로 되는 것이지 지사가 의도하는 것은 아님

< 답변 : 기획관리실장 김 광 홍 >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7대권역 개발에 포함하여 추진하겠음

질 문 요 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에 대하여
 ·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사항과 사업량 축소이유
 · 본 사업을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일원화하여 확대추진
○도산하 외청사업소의 청주시 외곽이전에 대하여

< 답변 : 내무국장 최 경 주 >

○건강한 국토사업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서 오염되고 훼손된 국토경관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93년부터 내무부 시책으로 추진중임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마을단위 주민숙원사업을 대상으로 건당 1,000만원 이내의 소규모 사업을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반면에 건강한 국토사업은 도로환경 정비, 마을간 도로 확포장 등 비교적 다수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건당 1~2억원 정도 사업규모로 교부세외 지방비로 추진중

○도시지역에 위치한 외청사업소를 시외곽 지역으로 이전하여 기능과 역할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4개년사업으로 ('94 - '97) 이전을 추진중임

○이전후 기존재산 활용문제는 구청사를 매각하여 이전사업 재원 충당 가능

질 문 요 지

○관광개발산업 분야에 대하여
 · 전도내를 연결하는 대규모시스템 관광안내소 설치
 · 관광권 개발사업비 해결방안 및 민자유치 진행상황
 · 도내 관광코스 개발 확충방안 및 향후 관광전망

< 답변 : 지역경제국장 박 만 순 >

○도내 관광안내소는 속리산, 월악산국립공원과 청주, 수안보, 화양동, 단양 송호, 장계관광지 등 8개소에 설치 운영중

○5대권역 관광개발계획 수립 추진중 : 단양권, 충주호권, 중부권, 속리산권, 양산팔경

○관광코스는 권역내코스, 권역간 연계코스, 타시도 연계코스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설명회, 외국여행사 초청간담회, 해외여행사를 통한 홍보 등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하고 있음

질 문 요 지

○충북의 지역현안에 대하여
-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논의에 대한 도지사의 소신
- 청주의 광역시 승격에 대비한 도의 대응방안
- 청주권의 비대화에 대한 도의 충주권 개발구상

< 답변 : 도지사 주 병 덕 >

○청주시.청원군 통합문제는 지난해 4월 주민의견 조사결과 청원군 주민 64.8%반대, 청원군의회 3:11로 반대 의결한 바 있으며 현 시점에서 통합논란은 바람직하지 않음

○청주시의 광역시로의 승격은 종전의 예로 보아 인구 1백만명이상, 국가정책상 필요시 검토되는 사항임

< 답변 : 기획관리실장 김 광 홍 >

○내년에 본격 추진되는 북부권 개발사업으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1조7 천억원을 비롯하여 충주 - 제천 29.5㎞ 1,593억원, 충주-수안보간 48.2㎞ 1,992억원, 충주 - 봉양간 29.5㎞ 충주-송강간 10.5㎞에 346억원, 송강-백운간 8.8㎞ 실시 설계중 수안보 - 연풍간 12㎞ 실시설계 또한 내년도 정부의 도로망 확충사업의 20%가 충북에 투자되고 중원문화국제학술심포지움 개최로 중원문화권 위상제고,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이 본격 추진

질 문 요 지

○민선지사 취임 1차년도에 대한 도정수행 공과 평가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하여

< 답변 : 기획관리실장 김 광 홍 >

○도지사 공약사항은 10개분야 39개 실천사항으로 확정하여 추진하겠으며

○그간 도정수행 성과로는

· 지난여름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인 것과

· 청주국제공항 관련 도로망 확충, 중부내륙 고속도로 조기착공, 청원 종합경마타운유치

· 생명의숲운동전개, 도정 대화의날 운영, 영업시간 연장결정, 21세기위원회 운영, 명예연구소 운영

· 특정다목적댐법, 먹는물관리법 개정건의

· 내년예산 팽창규모는 정부예산 16.2% 신장율에 비하여 월등한 36.5%이며 세입 예산도 국고보조, 양여금, 지방교부세가 월등 신장하고 지방세는 6% 신장에 그침으로써 주민들의 세부담을 최소화 시켰음

○공직기강 확립과 사기진작책에 대하여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음

< 답변 : 내무국장 최 경 주 >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무주택 공무원의 주택임대, 주택자금 융자알선 확대, 공무원 자녀 중고생 학비보조, 대학생장학금 융자, 장기요양공무원 요양비 지원 등과 도 자체 사업으로 동호회 활동지원, 건강관리와 체력단련시설 등 후생복지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도청 어린이집 설치와 하계 휴양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음

○조직개편 관계는 현재 의견수렴 추진단계임

질 문 요 지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한 자율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정책의 노력 성과

○지방공무원교육원 운영개선에 대하여

< 답변 : 내무국장 최 경 주 >

○도와 시군간 관계 재정립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개선중

○지방자치권 신장을 위하여 290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지난 8월 중앙에 건의 하였음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현재 587건을 선정하여 부처간 협의을 마치고 국회 법령개정 작업중에 있음

○교육과정이 직종별.직급별로 다양하고 교육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강사확보, 적시교육문제 등으로 전문교관 폐지와 외래강사 전환 운영은 불가능한 실정임

< 답변 : 공무원교육원장 유 의 재 >

○정신교육강화를 위하여 '95년 기본교육과정에 30%를 소양과목으로 편성·운영하였고

○교육원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행정고시 출신자와 대졸자로 교관을 선발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중앙통제 독립문제는 금년 1. 5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제정되어 4. 1일부터 시행중에 있음

농림수산위원회 이 선 호 의원

질 문 요 지

○진흥원 부지 매각이전에 따른 잉여재원에 대한 대책

< 답변 : 내무국장 최 경 주 >

○외청사업소 이전은 4개년 계획으로 ('95~'97)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원은 교통이 편리하고 토질이 양호하여 시험사업에 적지인 청원군 오창면 괴정리 일대 8만 5천평 규모로 이전을 추진중임

·'96상반기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부지정리 및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97년 완공목표임

·이전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약 240억원 정도 소요

·이전재원 조달을 위하여 매각할 현 부지의 대각대금은 약 320억원 정도 추정되어 재산 매각 차액이 약 80억원 정도 발생 예상

·그러나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지매각 전망 불투명하여 부지매각 대금을 정확히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며 재산매각 결과에 따라서 농업관련 사업소 이전에 투자하겠음

질 문 요 지

○충주댐 맑은 물값 보상방안

·발전용량에 따른 지역개발세 현행 10톤당 1원50전 현실화 계획

·댐주변지역 사업비 1억원 현실화 계획

< 답변 : 내무국장 최 경 주 >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발전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92년에 신설된 세목으로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등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세수는 극히 저조한 실정임

○따라서 도에서는 많은 발전용수는 물론 지역개발세 전반에 대한 세율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92년 8월부터 댐특위 구성운영등 수차에 걸쳐 중앙에 건의한 바 있음

○이에 따라서 지난해 7월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세율 조정권의 범위내에서 지역개발세 세율을 50% 인상 조정하여 발전용수는 10톤당 1원에서 1원50전으로, 지하자원은 채광된 광물가액의 1/1,000에서 1.5/1,000로 인상 하였고

○'95. 1. 1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 중 음용수인 지하수는 그간 건의 내용의 일부가 반영되어 톤당 1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하였음

< 답변 : 건설교통국장 송 완 호 >

○댐지역 지원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댐주변 지역의 시군에 지원한 사업으로 당초에는 발전소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93. 12. 10특정다목적댐법 개정에 따라 '95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개정전에 지원사업비 재원은 전전년도 발전판매 수익금 5/1,000이 었으나 개정후에는 발전판매 수익금의 10/1,000이내와 수도, 공업용수 판매 수익금의 50/1,000이내로 대폭 증가되었음

○지원사업비 내역은 5개년간('90 -'94) 4억9천만원 지원되어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성사업, 홍보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에 투자되었음

○매년 1억원씩 지원된 특정다목적댐법에 따라 '95년 2억9천만원, '96년 2억8천만원으로 증액 예상 됨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사업비 인상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질 문 요 지

○농축산업 해외진출 용의

○시범관광농원 운영

○유휴농지의 증가, 농지의 전용 등으로 식량자급 기반 급락에 따른 중장기 대책

< 답변 : 농정국장 박 만 순 >

○충북 농정의 장기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음

○우리 도의 관광농원 조성사업은 '85년부 시작하여 금년까지 30개소를 조성하였으나 운영비 부족, 경영기법 미숙등로 일부 관광농원은 성과가 미흡함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투자재원과 경영인력확보, 운영기법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나 시장군수가 희망하고 사업성 검토 타당성이 있으면 시범적으로 조성운영을 검토하겠음

○앞으로 관광농원 조성시 사업 참여농가 선정, 작목의 선정, 시설규모, 운영기법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 도내 2,3개소를 모델로하여 체계적인 현장교육과 타지역의 우수농원 견학 등을 통하여 운영의 내실화에 노력하겠음

○정부에서는 식량작물 재배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량농지에 대한 전용과 다른 작물재배를 억제토록 강구함과 아울러 경작가능 휴경농지에 대하여는 영농규모 확대농가에게 농지를 매각하거나 영농법인으로 하여금 대리 경작토록 유도

○장기적인 대책으로 다수확 품종을 개발보급하고 생산기반 정비를 위하여 일반경지정리사업과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2004년까지 대상면적의 100%를 완료하고 밭기반 정비사업도 현재 대상면적의 6%에서 2007년까지 100%인 5,500헥타를 추진

○아울러 연차적으로 농업용수 개발을 확대하여 수리안전답을 제고하고 쌀 전업농을 2004년까지 우리도에서 6000호 정도 선정 육성

○이외에 생산농민들의 영농의욕 고취와 소득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음

질 문 요 지

○농촌주택 확대보급계획

○개인하천 보상문제

< 답변 : 건설교통국장 송 완 호 >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민의 주건환경의 향상과 정주 의욕을 고취시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도에서는 농촌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대식 주택으로 개량하고자 노력중

○우리 도내의 주택개량 대상 총수는 61,924동으로 '76년부터 현재 29,962동을 개량 완료하였음

○현재 48.4%가 개량되었고 미개량 31,962동은 연차별로 추진중
○농촌주택개량 물량 배정기준은 농가호수의 비율에 따라 내무부에서 배정함에 따라 금년도의 신청량 5,500동의 30%인 1,580동으로 배정되었음
○시군별 농촌주택 개량 배당호수와 집단화 대상마을 주민, 농어촌후계자 등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추진중이나 희망물량보다 배정량이 부족하여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하천편입 사유토지 현황은 우리 도에는 직할하천 4,043필지 13만 9천평, 지방하천 2,766필지 98만평, 준용하천 14,824필지 55만평임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하여 '92. 12. 30부터 보상신청을 받아서 직할하천 2,407필지 92만평, 지방하천 1,857필지 68만평을 보상하고 금년말까지 직할하천 70%, 지방하천 99% 보상되고 '98년까지 보상 완료 하겠음
○준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으로서 하천구역내 편입토지는 사유권이 인정되어 보상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나 우리도에서는 하천정비 기본 계획에 의거 하천 개수공사하는 하천구역내는 보상을 하고 있음

질 문 요 지

○언론인의 기업체, 공공기관에 물품판매행위 근절대책

< 답변 : 공보관 권 청 사 >

○서울소재 프레스센타, 영상사업단, 기자협회, 특정언론사를 사칭해서 책자나 비디오테잎 구매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많이 감소되었음
○도에서는 특정 언론사 사칭하여 구매요청시 단호히 거부하고 있고 일부 지방언론사에서 책자, 잡지 등 구매요청시 필요에 의해 구입하고 있음
○앞으로 언론사의 구매요청시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 구입해서 활용한 계획임

농림수산위원회 최 영 락 의원

질 문 요 지

○가칭"충북농업연구소(농업타운)" 건설
· 농업관련 사업소의 기구개편
· 농업전문 기능인 양성 교육기관 등 농업타운 건설

< 답변 : 도지사 주 병 덕 >

○연말 기구개편시 연구 검토
○농업타운 건설은 장기 검토사항으로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음

질 문 요 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도농복합형 시에 대하여
· 통합당시 정부의 구체적인 약속내용과 현재 진행상황
· 통합시의 읍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의 대책

< 답변 : 내무국장 최 경 주 >

○시군 통합 당시의 약속사항은 종전 군지역의 각종 특례를 계속 인정하고 절감된 예산을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하여 도농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인원감소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통합지역의 읍설치를 약속한 바 있음

○그간의 추진상황은 통합전 군지역에 특례를 인정하였던 지방교부세의 분리산정 각종 공과금의 차등 부과, 학교 의무교육, 시내버스 요금조정 등이 약속대로 시행되고 있고 '96년까지 통합시당 2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고 지역개발비 3억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음

○그리고 인건비 및 중복투자비 절감예산 51억원을 군도 확포장 및 소득증대사업 등 농촌지역 개발사업비로 시군에 재투자하고 있으며

○통합시의 주덕면과 봉양면을 지난 3.2일자로 읍으로 승격하였음

< 답변 : 건설교통국장 송 완 호 >

○주덕읍과 봉양읍에 대해서 '94년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96년에 내무부에서 소도읍 가꾸기사업 책정 검토중이며, '95년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 봉양읍에 연장 170m, 폭 10m에 3억 6천만원, '96년에 주덕읍에 연장 360m, 폭 6m에 6억원 투자

질 문 요 지

○충북특색에 맞는 지역농업 개발
○ 농업자금 대출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하여
○우리 도의 임목대책에 대하여

< 답변 : 농정국장 박 만 순 >

○충북의 농업은 식량자급과 수도권에 농산물 조달기지 역할

○정부의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은 농림수산 실시요령에 의거 '95년 1년간 추진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지난 11.14일 상당부분을 수정보완하였음

○국고지원예산 최대한 확보와 지방비 예산절감을 통하여 농촌소득 증대부분에 투자하고 농어촌 소득개발기금을 내년에 110억원 조성하고 '98년까지 3백억원을 확보 지원

○우리도에서는 '94년 2월 해외정보센타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망에 가입하였음

○'95년 정책자금은 농림수산부, 산림청 등 중앙 관련기관으로부터 조성된 기금 1,240억원이 농수축협에 배정되어 8백억원이 융자되었으며, 보조금은 1,237억원 중에서 947억원이 집행되고 290억원이 미집행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출 방법은 무보증 신용대출, 보증신용대출, 후치담보대출, 신용보증부 대출 등이 있으며 농수축협을 통해 지원되고 있음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국산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 단속공무원은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등을 농산물검사소, 지도소, 경찰과 합동단속 및 시군자체 단속을 실시하며
- 단속실적은 1,167회에 2,699명을 동원 21,335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 등 2,555건을 적발하여 고발 7건, 과태료부과224건, 주의경고 1,571건, 현지시정 753건등 행정조치를 하였음
- 이러한 단속과정에서 일부품목의 경우 수입산과 국내산과의 육안 식별이 어렵고 일반 재래시장과 노점상의 이행실태가 저조한 실정임
- 앞으로 시군간 단속공무원 교체단속 실시와 읍면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로 원산지 표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음

○우리 도의 임목대책은 산림청 조림시책에 따라 지난 '73년부터 1, 2차 산녹화 사업과 산지자원화계획 기간인 '95년까지 20만4천헥타의 조림을 실시

○이중 낙엽송 조림은 6만6천헥타에 1억9천8백만본으로 32%이며, 심은지 20여년생이 많아 2010년대에는 조림후 30년이 경과되어 1헥타에 260㎥를 수확하여 1,482만원의 소득 예상

○앞으로 심은 나무의 보육사업으로 수요증가에 대처함은 물론 천연림 보육사업과 수액채취림 등 특용 활용수 조림을 확대하며 특히 생명의숲 조성운동을 전개하여 2000년까지 210헥타에 11개 수종 30여만본을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 공해예방과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는 등 산림의 경영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질 문 요 지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 문제

< 답변 : 농촌진흥원장 이 상 석 >

○'94년 12월 지방자치법 제103조제4항과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 정원에관한법률 제정으로 '97. 1. 1일부터 도 농촌진흥원 과장급 이상 6명을 제외한 458명이 지방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음

○'92년부터 지도직 48명을 감원, 연구직을 증원하여 시험국에 경영과를 신설하였고 '93년 옥천시설포도시험장, '94년 단양마늘시험장, '95년 음성시설채소시험장 등 3개 지역특화작목 시험장을 설치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앞으로 새로운 부서의 신설은 필요에 따라 보완검토 추진하겠음

□ 제3차 본회의 : 1995. 12. 1 (금)

○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건설교통위원회 이 민 희 의원

질 문 요 지

○오창과학산업단지 건설에 대하여

· 토개공과의 협상조건 외에 도의 별도 배려 문제

· 제116회 임시회시 건설기획단장의 '95년 12월까지 보상 완료한다는 발언의 효력과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견해

< 답변 : 부지사 나 기 정 >

○본 사업은 토개공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토지보상, 이주대책, 조성공사, 분양까지 맡아서 하는 것이며

○지난 11. 15일부터 물건조사를 시작하여 31%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 조사 완료와 내년 상반기 보상실시 예정임

질 문 요 지

○그린벨트, 상수도보호, 군사보호, 농업진흥지역 등 규제완화와 거주주민지원 대책

○의료보험 통합운영에 대하여

○생수공장의 허가와 보존대책

< 답변 : 기획관리실장 김 광 홍 >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 제5조에 의거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의 목적으로 지정되어 보호구역내에서는 수질오염물질(특정 유해물질), 유독물, 오수, 분뇨등의 배출행위가 제한되고 있어 일정범위 이상의 건축행위 등 상수원보호를 위한 개인 재산권를 침해하고 있는 실정임

○대청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의 규제완화 및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으나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에 의거 하수도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보호구역 안에서는 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제한행위가 완화되도록 하고 있을 뿐임

○또한 대청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동안 청원군 문의면 지역, 보은군 회남면 법주리 지역등에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간이 상수도 개발 등 단편적 지원이 있었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지원을 확대 노력하겠음

○의료보험의 관리체계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사안으로서 정부에서는 '94. 1월 의료보장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정책토론과 연구검토를 실시한 바 있으며, 각 조합을 통합할 경우 보험료 징수율 저하, 보험급여 급팽창으로 보험재정 악화, 각 조합원들의 상대적 반발 등 문제점이 도출됨으로서 현 조합체제를 유지하면서 개선방안을 추진할 방침임

○현재 본도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농어촌지역조합이 15,632원, 도시지역조합이 16,803원, 직장조합21,306원, 공무원 27,668원으로 농어촌지역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으로 현 조합체제를 유지하면서 농어촌지역 보험재정을 확대지원토록 중앙정부에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음

○지하수에 대한 부존자원 조사를 정밀 실시할 경우 청원군 초정약수의 경우 3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바 도내 전역을 조사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

· 우선 먹는샘물 공장이 집중 입지되어 있는 청원군 북일면 초정리, 미원면, 옥천군 청성면 등에 대해서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절반을 교부받는 해당지역 군수로 하여금 지하수 부존자원 조사를 실시토록 지시한바 있으며 그 실시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하자원 보존대책을 수립하겠음

○먹는샘물 공장현황은 기 허가 4개소, 허가신청중 14개소, 허가추진중 11개소이며 세부내역은 서면제출하겠음

질 문 요 지

○그린벨트, 상수도보호, 군사보호, 농업진흥지역 등 규제완화와 거주주민 지원 대책

< 답변 : 내무국장 최 경 주 >

○종합토지세는 좁은 국토, 한정된 면적의 전통적인 토지 소유욕에 따른 토지의 과다 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 투기로 인한 국민경제 이상현상의 조정과 지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종전의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해서 '89. 6. 16일 신설한 세목임

○보호구역 등의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실태는 과세의 기초자료인 토지등급 결정시 사유 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 제한받지 않는 일반토지보다 등급 가액을 토지 실가 비율에 맞도록 낮게 책정하고 있고 세율적용도 0.1%로 낮게 적용할 뿐아니라 분리과세하여 누진세율도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별도의 추가 감면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질 문 요 지

○그린벨트, 상수도보호, 군사보호, 농업진흥지역 등 규제완화와 거주주민 지원 대책

○농산물 유통문제에 대하여

· 우리 도 기후, 토양에 적합한 농축산물 개발보급

· 농산물 유통 정보센타 설치로 신속한 가격정보 제공 등 체계적인 관리기구 운영

< 답변 : 농정국장 박 만 순 >

○농업진흥지역 지정운영은 우량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하나의 농사권역으로 묶어 제한된 재원을 집중 투자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올리는 한편 그 밖의 농지는 농외소득시설로 활용토록 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보존하고자 지난 '93. 12. 24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

○금년도 우리 도의 추곡 수매량은 쌀 생산량 18만7천석의 31%인 57만8천석이 배정

· 도내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만 생산된 쌀의 양이 도 전체의 57%인 110만석으로 추계되어 수매량보다 1.9배 가량 많기 때문에 전량수매는 어려움

· '95년산 추곡수매 중앙배정 기준에 의하면 생산량, 전년도 수매실적, 농업진흥 지역등을 감안하여 배정토록 되어 있어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있음
·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 보다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중앙에 건의

○우리 도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양질의 농특산물 개발육성을 위하여 그간 5억원을 투자하여 원예작물, 생산유통 지원사업과 1군 1명품 지역특화 사업을 집중지원한 바 있고
○수도권의 농산물 공급확대 방안으로는 그간 서울시의 158개 동과 자매결연을 맺고 농산물 직거래와 전시 판매행사 등을 통한 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판매촉진 운동을 전개하여 왔음
○현재 농산물 유통정보는 농촌지도소와 회원농협에서 가락동과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락가격을 매일 자동응답전화를 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질 문 요 지

○그린벨트, 상수도보호, 군사보호, 농업진흥지역 등 규제완화와 거주주민 지원 대책

< 답변 : 건설교통국장 송 완 호 >

○우리 도의 개발제한 구역 현황은 '73년 건설부고시 제258호로 청주, 청원, 옥천 3개시군에 236.7㎢를 지정 도시의 확장 방지 및 환경보전에 좋은 성과를 거둔 반면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재산권의 제한에 따른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음
○따라서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음
○도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 개선 등 각종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주민숙원사업 지원사항으로 그린벨트내의 마을안길 및 진입로 확포장, 하수구정비, 소하천 정비, 소교량 가설 등 '95년까지 28억원 지원, '96년에 10억원 증액지원계획이며 연차적으로 확대지원 계획임

질 문 요 지

○5. 18관련자 처벌특별법 제정촉구 서명 교사 추궁문제

< 답변 : 중등교육국장 전 태 식 >

○본사항으로 현직에서 물러난 교사는 없음
○서명동참 교사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논의된 바도 없고 처리계획도 없음

건설교통위원회 장 준 호 의원

질 문 요 지

○문화예술진흥에 대하여
 · 국악고등학교 건립운영 추진계획
 · 난계국악단에 대한 획기적 예산지원

< 답변 : 부지사 나 기 정 >

○국악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제반여건이 갖추어진 후 영동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난계국악단 예산지원은 영동군 자체해결 문제이나 추후 다시 검토하겠음

질 문 요 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역사무소 설치

< 답변 : 기획관리실장 김 광 홍 >

○장애인 고용촉진과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을 유치하고자 지난 8. 31일 노동부장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에게 청주사무소 설치를 건의한 바 있음

질 문 요 지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제도에 대하여
○우수인재(꿈나무) 양성을 위한 조례 제정

< 답변 : 내무국장 최 경 주 >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32조에 의거 6·7급은 도 인사위원회에서 8·9급은 시군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음

< 답변 : 내무국장 최 경 주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충청북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서도 예체능 학생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음

○예체능 인재양성을 위한 별도의 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은 현재 검토한 바 없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질 문 요 지

○전문건설업 보호육성 대책
○영동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 19번 국도(영동IC - 무주구천동) 4차선 확장 조속추진을 위한 도의 지원
 · 영동읍 소재지 계산철도 지하도 확장사업 계획

< 답변 : 건설교통국장 송 완 호 >

○우리 도 건설업체 증가 현황은
 · '90년 159개 업체 263개 면허에서 '95. 1. 7일 완화조치후 '95년말 현재 633개 업체 965개면허로 366% 증가하였고 업체당 수주액은 '90년 6억1천만원에서 '95년 7억4천2백만원으로 12.6% 증가에 그침
○도내 전문건설업체 보호육성방안은
 · 충청북도시설공사 특수조건을 제정, 우리지역 공사는 도내 업체만이 수급토록 돼 있고
 · 건설공사 계약금액 20억원이하 공사의 경우 선급금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
 · 일반 건설업체에 수주한 공정의 20~30%는 의무적으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하도록 되어 있음

< 답변 : 건설교통국장 송 완 호 >

○국도19호선 영동IC-영동-무주간 4차선 확장공사는 대전국토관리청 시행사업으로 영동-무주간 37.5㎞에 2,100억원 소요예정으로 본 노선이 '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진입로임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와 협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조기 완공되도록 노력 하겠음
○영동읍 계산리 철도 지하도 확장공사는
 · 경부선 철도 2개노선, 국방부 전용철도 1개노선이 관통하는 곳으로 현재 폭이 3m로 통행인 및 소형차량만 통행하고 있으며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양안도로가 도시계획 도로에 맞추어 기 개설되어 있음
 · 본 지하도를 도시계획도로 폭인 12m로 확장시 30억원 소요
 · '96년 도의 신규투자사업 대상지구로 책정되어 있고 '96년도에 6억원 을 투자 착공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음

질 문 요 지

○대입수학능력시험에 대하여

< 답변 : 중등교육국장 전 태 식 >

○남부 3군에 1개소의 고사장 설치사유는 시험지구 조정은 시도교육감의 요청으로 교육부 평가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고사장 설치건의 결과는 시도간의 형평성 유지와 예산상 문제로 현행과 같이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평가원의 답변이 있었음

○'97년 해당시군에서 고사 실시대책은 계속 노력하겠음

건설교통위원회 최 종 철 의원

질 문 요 지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실무팀 구성, 제도개선, 조직정비

· 도로관리사업소 시험실을 건설교통국장 직속으로 승격 및 인력 확충

· 지방도로의 확충에 따른 효율적인 유지관리대책

· 건설공사 감독공무원 인력 확충이나 조직 재정비

○도 조직개편에 대하여

·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통폐합

○오송역 설치에 대하여

< 답변 : 부지사 나 기 정 >

○현재 도의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나 그 과정에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등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중

○도로관리사업소의 시험실은 토목직 3명, 기능직 3명 등 6명이 도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95. 10월 현재 총 5,700여건의 시험을 실시하여 2억8천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음

○지방도는 43개노선 937㎞에서 금년 10월 건설교통부의 노선조정계획에 의해서 42개노선 1,214㎞로 277㎞가 증가

·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비로 '95년에 66억6천만원을 확보하여 도로선형 불량개소 개량, 덧씌우기, 노후교량 개보수, 교통표지판 설치, 차선도색 실시

· 내년에는 85억1천만원의 소요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도로유지 관리용 장비 4대를 추가확보 위해 예산 계상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현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요공정의 사전 검측 실시와 철저한 품질관리 시행

○공영개사업단과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은 두 사업소가 특수목적을 위한 한시 기구로 설치 되었으나 그 기능이 부분적으로 유사한 것은 사실임. 두사업소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기능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서울-부산간 430㎞ 구간에 '92년부터 2000년까지 총 10조7,4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 당초 청주가 노선계획에서 제외되었으나 노선변경으로 청주권이 포함되었고 '91. 9. 19일 교통부장관이 청주권 인구 100만명 도달시에 오송역 설치 검토를 발표한 바 있음

○호남고속철도 기점역 오송유치를 위하여 오송역은 교통의 요충지이고 '97. 2월에 국제공항 개항과 충북선, 중앙선, 태백선을 연결한 국가 기간철도의 효율성 제고,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물류비용의 절감, 천안 연결노선보다 20-30㎞의 거리단축으로 인한 건설비용의 절감등 오송기점역의 타당성을 중앙에 건의하고 관계공무원이 교통개발연구원, 철도청, 건설교통부 등을 방문해서 그 타당성을 설명한 바 있음

질 문 요 지

○도지사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의원들의 공약사항도 도정 반영

< 답변 : 기획관리실장 김 광 홍 >

○해당부서별로 수용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음

질 문 요 지

○가족 휴양시설의 조성

· 청원IC부근에 대규모 가족휴양시설 설치와 연계 관광코스 개설 추진

○개별입지 공장의 공단조성

· 도내의 개별입지 입주업체의 오폐수 처리 실태

· 도내의 개별입지 입주업체의 공단조성으로 집단화

< 답변 : 지역경제국장 김 승 기 >

○날로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비하여 중부권 관광계획을 수립하여 청원 옥산지구에 245만평과 초정지구 35만평을 가족 사계절 종합휴양지로, 진천 만뢰산 지구 117만평을 가족 청소년 산악 탐방코스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음

○도내에 입주하는 소규모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저렴한 가격의 용지 확보와 공장 건축기간 단축, 입지여건 등이 양호한 지역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에 의하여 공장을 건립하였음

· 기존에 산재한 공장의 집단화는 강제할 수 없으며 막대한 경비등이 소요됨

· 지역실정에 맞는 집단화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촉구하고 농공단지 조성시 개발보조금을 대폭 증액 지원하여 농공단지를 많이 조성함으로써 농공단지의 개발시책 통합지침의 개정을 중앙에 건의할 계획임

○도내에 개별로 입주한 2,520업체중 폐수처리 대상업체는 1,087개소이며 이들 업체에서는 배출허용 기준이내로 오폐수를 정화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방지시설의 노후 및 처리기술의 미흡으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하천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있음

·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등의 행정조치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병행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

질 문 요 지

○주차난 및 교통사고 대책

· 도로 및 주택가 주차문제

· 36번 국도(청주-충주)의 횡단보도 문제점 개선 대책

○수해복구 문제에 대하여

· 항구적인 수해복구대책과 수해피해의 반복이유 및 설계시공상 감리 실태

○지하 배관망도의 작성

· 우리도의 지하 배관시설물에 대한 관리 현황 및 종합 지하배관망도 작성계획

< 답변 : 건설교통국장 송 완 호 >

○정부는 자동차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주차시설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

○교통사고 사망율은 고속도로 8.6%, 지방도 32%, 국도 57.4%로 청주 - 충주간 36번 국도에 약 40개의 신호기, 지하통로 등이 있으나 교통량에 비해 교통안전시설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국토관리청 및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시설정비 및 지속적인 단속 실시

○금년도에 시간당 강우량이 50~80미리가 내렸고 8. 19~8. 20까지 109미리, 8.27일 286미리가 내려 8월중에 724미리가 내려 연평균 강우량 1,227미리의 57%가 내림

· 금번 수해로 742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교량 291개소 58.2㎞, 하천 265개소 64.9㎞, 시설물 302개소, 사방 77개소, 소규모 시설 1,849개소로

· 복구비는 586억원을 확보해서 항구복구중이며 소규모 피해는 원상복구지시, 대규모 피해는 도로 하천 등 기본계획 수립 복구 실시

○중앙으로 부터 복구비가 확정되면 공사의 중요도 및 설계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자체 또는 용역설계 등을 검토·시행하며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 철저와 우기전까지 복구완료토록 특단의 노력

○효율적인 지하 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로굴착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음

· 도로굴착시에는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를 분기별로 시군에서 시행

· 지하매설물 개별 관망도는 각 시군에서 매설물의 종류별로 작성하고 개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

· 우리 도 에서는 5.11일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대책 회의를 개회하여 지하매설물 종합관망도를 '96 12월말까지 작성계획임

· 앞으로 국립지리원에서 추진중인 GIS 지리정보시스템이 '96년 말까지 작성되면 동 자료를 활용해서 지하매설물 종합관망도를 전산화 작업에 적극 활용

기획경제위원회 김 재 근 의원

질 문 요 지

○주식회사 충청북도의 경쟁력 강화방안

· 한국경제연구원의 지방경쟁력 종합지표 해석 견해

· 충북이 뒤져있는 항목에 대한 경쟁력 확보방안

< 답변 : 부지사 나 기 정 >

○'97. 2월 청주공항 개항과 경부,중부,중앙,중부내륙 고속도로와 고속전철 건설로 획기적인 발전 예상

질 문 요 지

○ 도지사의 선거공약 실천계획에 대하여
· 불가능하거나 형평에 어긋난 공약은 과감히 철회
· 임기중 완료하거나 정상추진이 가능하도록 공약사항 재검토
○지방재정 확충방안
· 향후 지방재정 조정재원에 대한 적극적인 확보방안과 대책
· 자주재원 확보 방안
· 민자유치촉진특별법에 의한 투자 유인책 개발과 제3섹타의 과감한 추진
· 민자유치설명회 외에 실질적인 투자유치방안

< 답변 : 기획관리실장 김 광 홍 >

○도지사 공약사항은 10개분야 39개 실천사항으로서
· 임기 이후까지 추진될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으로 오송신도시 건설, 고속도로망 구축,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고 대전권과 연계한 전철화 사업은 공약에서 제외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준재정 수요액과 수입액을 산정하여 재정구조계획에 있는 단체만 교부하고 서울, 부산,경기 등 재정구조계획이 없는 단체는 지원하지 않고 있음

○특별교부세는 재해대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교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지난 4. 28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50대그룹 및 향토출신 출향기업 대표 100여명 초청하여 행사를 가져 상당한 호응을 얻었으나 기업마인드 위축, 주민과의 마찰등으로 충주과학산업단지,만뢰산지구 등을 제외하고는 추진이 부진한 실정임
· '96년 초에 수립예정인 앞으로 3년간의 충북 SOC 민자유치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겠음

질 문 요 지

○중원문화재연구소 설립 추진에 대하여
○도민과의 대화의 날 개선운영

< 답변 : 내무국장 최 경 주 >

○총무처, 문화체육부에 국가기관의 연구소 설립을 건의하고 관계부처를 직접 방문협의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음
· 문화재관리국은 새로운 기구 증설은 점진적으로 연구검토 하겠다는 답변임

○앞으로 지역별, 직업별, 현안사업별로 실시토록 개선

질 문 요 지

○충청북도 품질인증 추곡수매정책 도입에 대하여
 · 수매가 동결을 대신하여 소득지원을 해줄 수 있는 직접지불제도의 조속 도입
 ·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충청북도 품질인증의 추곡수매 도입 시행

< 답변 : 농정국장 박 만 순 >

○정부의 추곡수매정책은 품종별 차등가격 수매을 전제로 '93년부터 품종 구분 수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96년부터 품종별 가격 차등화 수매계획임
 · 따라서 농협이나 작목반에서 품질인증을 받아 생산판매토록 유도
 · 도에서 품질인증 쌀 생산을 위한 추곡수매제도 도입문제는 정부의 양곡정책과 수매자금 확보운영 등의 문제에 대하여 종합검토하고 또한 정부의 양정개혁방안이 양곡유통에 대한 정부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설립한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하여 더욱 발전시키겠음

기획경제위원회 박 용 인 의원

질 문 요 지

○지방재정 확충 방안
 ·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와 지방재정력 강화 방안
○쓰레기 처리에 관하여
 · 청주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과정과 매립장내 재활용쓰레기 재생공장 및 쓰레기 소각장 설치계획
 · 건축폐기물 쓰레기장 별도 설치계획
 ·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지도단속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
○세계화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통상관련 실적
○의료원 운영 부실에 따른 획기적 개선방안

< 답변 : 기획관리실장 김 광 홍 >

○지역특성에 맞는 신세원의 발굴을 위하여
 · 현재 지역개발세에서도 온천수, 지하수 등의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금액이 아주 미미한 실정이며, 관광세, 환경보전세 등 신세원 발굴과 국세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중
○경영수익 사업의 확대 등으로 세외수입 확충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확보 노력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지난 11. 7일 도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가 합의하여 당초 계획한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에 설치하고 재활용 선별시설도 설치하도록 함
○건축 폐기물은 다량 배출되므로 사업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하고 있어 별도의 건축물매립장 설치계획은 없음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불법배출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2,683건 적발 지도. 과태료를 797건 9,900만원 부과

○도민의식·행태의 선진화 추진은 질서, 친절, 청결, 정직, 봉사 등 5대 덕목을 생활화하고
○해외 상설 전시상담장을 로스엔젤레스, 뉴욕, 로테르담에 설치 운영하고 있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2회,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충북도 물산전 개최 등을 추진하여 10월말 현재 35억불을 수출하여 전년동기 23억불 대비 15% 신장을 기록

○민간병원의 비약적인 성장, 우수인력 확보지난, 시설 및 장비 노후, 비전문경영인에 의한 운영체계 등으로 인하여 적자폭이 심화되었음
○기획경제위원회 조사특별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경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질 문 요 지

○도정정책 방향에 대하여
· 취임후 반년간 충북 발전사업의 성과
· 오창과학산업단지 추진사항 및 보상책

< 답변 : 기획관리실장 김 광 홍 >

○반년간 도정성과와 관망도 작성 구체적인 추진상황은 서면 답변하겠음

< 답변 :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 창 국 >

○오창과학산업단지는 2개면 10개리 600여세대를 이주시켜야 하고 사업 기간도 '92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사업자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음
○주민요구 사항 14개중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민요구대로 해 주기로 협약이 되었으며 금년말까지 물건조사가 완료되면 바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 시작 전망

질 문 요 지

○상수도 업무에 대하여
 · 영운동 정수장 시설계획과 상하수도관 설계계획
 · 무심천변 공원화 계획

< 답변 : 기획관리실장 김 광 홍 >

○청주시 상수도 영운동 수원지는 무심천 공유수의 수질이 2급수로서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용암택지개발 등으로 수질악화 우려로 '94. 6. 4부터 일일3만톤의 대청댐 원수를 추가 이용하면서 영운동 무심천 취수장 중단

< 답변 : 건설교통국장 송 완 호 >

○도시계획 구역내의 하천관리는 관할 시장 책임하에 유지관리토록 되어 있어 도에서는 별도의 무심천변 공원화계획은 없음

질 문 요 지

○세정업무 추진에 대하여
 · 체납액을 일소하는 구체적인 징수계획과 거액체납자 언론 공개, 고의적인 장기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행정기구 개편에 대하여
 ·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재편할 용의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민숙원사항 해결 방안

< 답변 : 내무국장 최 경 주 >

○금년 9월말 현재 2,963억원 부과에 2,653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89%이며 체납액은 310억원임
 · 체납액중 골프장 체납액이 7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8%를 차지
○금년 2, 8, 10월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 운영
○1억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관허사업의 제한 등 행정제재 조치와 고질상습 체납자는 언론에 명단 공개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와 기능이 감소한 부서는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다각적인 연구를 하고 있고
○곧 조직개편안을 확정하여 법령개정 건의등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임

○도내 4개시군 5개면 16개리를 대상으로 지난 11.29, 30일 지역주민의 찬반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 행정구역 변경 찬성 지역은 16개마을중 4개마을임
- 해당 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시군의회 의결을 거쳐 내무부에 건의하여 경계조정 추진

질 문 요 지

○중소기업의 보호육성방안
- 중소기업 육성방안, 특히 부도예방책, 실업자 구제방안, 대기업 횡포에 대하여
- 중소기업 제품종합판매장 건립 추진실적

< 답변 : 지역경제국장 김 승 기 >

○우리도 중소기업 육성시책은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산학연 지역컨소시엄 구성, 산업기술정보센타 산업디자인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통상능력 배양을 위한 수출기업화 사업 추진과 아울러 28개국 주요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도출신 교포 50명을 국제우호명예대사로 위촉하여 도내 기업의 해외진출 및 현지 통상활동을 적극 지원
- 또한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행정 및 기술자문제를 운영중에 있음

○우리 도의 중소기업 운영상황은
- 우리 도의 부도율은 지난 6월에 2.48%까지 높아졌으나 10월말 현재로는 0.84%로 하락되어 거액의 부도여파가 진정되어 평상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음

○우리 도의 중소기업 보호육성대책중 가장 시급한 과제인 중소기업인이 겪고 있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와 중진공이 마련한 운전자금과 산업구조자금750억원도 연리7%로 지원하고 신용보증도 확대하고 있음

○대기업 침해방지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 정한 16개 분야 135개 업종에 대하여 대기업이 침해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침해한 대기업이 적발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행정조치하여 나가고 있음

○중기업제품 조합판매장 설치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질 문 요 지

○노점상에 대하여

· 청주시 서문교 "풍물시장"을 '96. 8. 30까지 철거 및 재래시장 신설계획

< 답변 : 지역경제국장 김 승 기 >

○서문교의 풍물시장은 청주시에서 노점상 생계안정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도록 하였고, 지난 '89년 초에 조성된 것으로서 내년 8월까지 시한부로 청주시에서 건립한 것임

○현재 140개의 노점상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 노점상의 각종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음

< 답변 : 건설교통국장 송 완 호 >

○청주시의 상설시장 15개중 재래시장은 서문시장과 북부시장 2개소로 개설된지 30년이상이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재해의 우려가 되어 재개발을 통하여 현대화 필요성은 인정되나 영세상인이 대거 입주하고 있어 중앙의 획기적인 자금지원이 없는 한 청주시의 재정만으로는 재개발이 어려워 민자유치를 통한 재개발이 수차에 걸쳐 검토된 바 있으나 수익성이 불확실하여 현재까지 재개발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재래시장에 대한 관리권은 시장군수에 있어 시장군수가 민자를 유치하거나 시장번형회 또는 상인조합에서 추진하여야 하나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유통근대화 시설자금의 지원이 있을시 적극 지원하겠음

질 문 요 지

○도시재개발 계획에 관하여

· 청주시 수동(달동네) 주거환경 개선계획

○교통행정에 대하여

· 주차공간 확충계획 및 주차장 시설계획

< 답변 : 건설교통국장 송 완 호 >

○수동지구 개발사업은 청주시가 계획수립 시행하는 사업지구로서

· 2,5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면적 13㎢이나 넓은 지역으로서 일시에 전체를 개발정비하는 지역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

· 청주시가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1,070m, 상하수도 1,740m, 가로등 등 기반시설을 일부 정비

· 수동지구 재개발사업은 우암산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개발보전 측면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토록하고 청주시에서 추진되면 도에서는 적극 지도하겠음

○자동차 보유대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도시의 과밀현상화에 따른 도심지 유입차량의 급속한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 건축물의 건축시에는 일정규모의 부설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 부설 주차장등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주차장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설치를 면제하고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도심지에서 합동주차장 설치는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높은 토지가격, 관련 주민의 활용불편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신개축 건물의 경우에 건축시기의 불일치, 건축물 규모와 용도에 따른 소요 주차대수의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볼 때 도심 인접 건축물에 대한 합동 주차장의 설치는 매우 지난
- 앞으로 인근 외곽지역에 노외 주차장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도심지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합동 유료주차장 및 공공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서 검토하겠음

□ 제4차 본회의 : 1995. 12. 2 (토)

○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교육사회위원회 유 재 철 의원

질 문 요 지

○환경부의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규제강화에 대하여

- 특별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도차원 대책
- 대청호 특별대책 고시개정안 철회 및 도 대처 방안
- 댐주변 지역의 환경시설 국도비 지원 확대
- 대청댐, 충주댐 어로설치 등 댐주변 생태계 보호대책 및 중앙협의

< 답변 : 부지사 나 기 정 >

○대청호는 지난 '90. 7. 19일 환경부에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고 이번에 규제강화 내용으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여 지역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음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11. 27일 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을 만나 재검토요청하여 충청북도와 해당시군의 의견제시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환경부장관의 답변이 있었음

< 답변 : 기획관리실장 김 광 홍 >

○현재 어로설치는 낙동강 하구언댐에 15억원을 투자하여 댐어로 공사중이고 환경부와 협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어로설치를 강력히 촉구하겠음

질 문 요 지

○대농민 정책에 대하여
· 보은군 등 낙후지역에 농업전문대 설립
·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마을도로 및 농로편입 토지에 대한 실질적 보상
· '93년 보은 산외면 수해피해 조사내용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

< 답변 : 기획관리실장 김 광 홍 >

○전문대학 설립은 막대한 시설비와 운영비 소요로 도립으로 설치는 어려운 실정임

< 답변 : 내무국장 최 경 주 >

○과거 새마을 사업시 희사한 토지는 총39,451필지 160만평으로 이중 97.7%는 등기이전 절차 완료

○미등기 2.3%인 759필지 38,505평이며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용지보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농로에 편입된 용지의 분할과 조세감면 문제는 농로에 편입된 부지는 '76년 내무부의 농로편입부지 이전등기 처리지침에 의거 분할 측량, 지적 정리후 시군소유 공공용 재산으로 등기이전

< 답변 : 농정국장 박 만 순 >

○'93년 7월중순부터 장기간 지속된 저온으로 우리 도에서는 1만여 농가 에서 6천여헥타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조사는 농업재해대책법의 기준에 따른 '93. 9. 15 ~ 10. 5까지 20일간 조사와 10. 11 ~ 10. 15까지 피해상황 재점검 실시

질 문 요 지

○도내 직행버스 정차문제에 대하여
· 보은 산외면 봉계리 직행버스 주차장 폐쇄이유와 이에 대한 보은군 의견 경위

< 답변 : 건설교통국장 송 완 호 >

○직행버스 정류소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의거 시외직행버스는 50㎞마다 정류소를 설치하여 운행하며 다만 공공복리상 또는 주민의 교통편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보다도 정류소를 적게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보은군 산외면 봉계리 시외버스 정류소 폐쇄사유는 '90. 2. 17일 정부 합동 감사시 감사반장 홍성원씨의 무작위 선정 확인결과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곳이며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90. 3. 16일자로 폐쇄 되었음

· 그러나 동 지역 주민들이 정류소를 다시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보은군으로 부터 의견을 받은 결과 정류소를 개설할 경우 농촌버스 업체 와의 마찰등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현행체제의 유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받았음

질 문 요 지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교외 생활지도, 문제학생지도 등 대책

· 유관기관과 연계회의, 세미나 정례화 등 합동으로 문제 해결

·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답변 : 가정복지국장 장 상 자 >

○11. 27일 대통령께서 내무부와 교육부장관에게 학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었고, 도에서는 11. 1 ~ '96. 1. 31까지 연말연시 청소년선도 격려사업으로 어려운 환경 청소년 위문격려와 시군별 30명 내외로 청소년 선도반 구성운영중

○정부차원의 세부계획과 정책연찬회에서 발표한 좋은 방안을 토대로 지방청소년 육성회의, 실무협의회 개최하겠음

< 답변 : 부교육감 김 근 학 >

○'95. 11. 23일 청주지방검찰청과 공동주관으로 교사, 학부모 등 3백여명이 참석하여 학교주변 폭력추방 대토론회 개최하였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학생선도협의회 구성 및 자원봉사자 연합회를 결성하여 학생선도 및 폭력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제도적 장치는 정부에서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추진중임

○지방공사 충청북도청주의료원 경영부실에 따른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건(원안가결)

○지방공사 충청북도청주의료원 경영부실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원안가결)

□ 제5차 본회의 : 1995. 12. 16 (토)

- ㅇ 충청북도의회 신완섭의원 사직의 건(부결)
- ㅇ 1996년도 충청북도예산안(수정가결)
- ㅇ 199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수정가결)
- ㅇ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ㅇ 충청북도 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ㅇ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원안가결)
- ㅇ 충청북도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ㅇ 199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ㅇ 199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제6차 본회의 : 1995. 12. 23 (토)

- ㅇ 1995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 ㅇ 199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 ㅇ 충청북도 시험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수정가결)
- ㅇ 충청북도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ㅇ '96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
- ㅇ 충청북도 청소년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ㅇ 대청호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대한 청원(부분채택)
- ㅇ 대청호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대한 현행환경부고시 폐지건의안(원안채택)

□ 제7차 본회의 : 1995. 12. 29 (금)

- ㅇ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ㅇ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ㅇ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ㅇ 충청북도 건강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안(원안가결)
- ㅇ 충청북도 수영장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ㅇ 충청북도 도서관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수정가결)
- ㅇ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ㅇ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 - 원안가결)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95. 11. 20(월) 14:02~14:13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 (평균)	26시간 08분 (3시간 44분)	
1차 (11. 20)	14 : 13 ~ 15 : 32	1시간 19분
2차 (11. 30)	10 : 03 ~ 18 : 45	8시간 42분
3차 (12. 1)	10 : 05 ~ 18 : 27	8시간 52분
4차 (12. 2)	10 : 06 ~ 14 : 48	4시간 42분
5차 (12. 16)	11 : 05 ~ 12 : 08	1시간 03분
6차 (12. 23)	11 : 04 ~ 11 : 41	37분
7차 (12. 29)	11 : 10 ~ 12 : 03	53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5.7%)

대상인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3	4	5	6	7	1	2	3	4	5	6	7
4 0 명	37	40	40	39	38	38	36	3	-	-	1	2	2	4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 상임위원회 '95. 11.20 ~ '95. 12. 29(40일간)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비고
의회운영 위원회	'95.11.28	1	○제120회 정기회 회기결정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95행정사무감사	
	'95.12. 7	1	○'96년도 당초예산예비심사 ○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기획경제 위원회	'95.11.21 ~ 11.28	1-6	○'95행정사무감사 ·공보관실, 감사실, 기획관리실,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지역경제국, 국제통상협력실	
	'95.12.4 ~ 6	1-3	○'96년도 당초예산예비심사	
	'95.12.18 ~19	4-5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예비심사	
	'95.12.26	6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청주의료원경영부실에관한조사발의이유서 ○청주의료원경영부실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	
내 무 위원회	'95.11.21 ~27	1-5	○'95행정사무감사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	
	'95.12. 4 ~ 6	1-3	○'96년도 당초예산예비심사	
	'95.12.18 ~19	4-5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예비심사	
	'95.12.26 ~27	6-7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 ○'96공유재산관리계획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비고
교육사회 위원회	'95.11.21 ~29	1-9	○'95행정사무감사	
	'95.12. 4 ~ 7	1-4	○'96년도당초예산예비심사	
	'95.12. 7	4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95.12.18 ~19	5-6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예비심사	
	'95.12.26 ~27	7-8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및특별종합대책고시개정(안)에대한철회건의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환경부고시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대책지역및특별종합대책에대한청원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에대한현행환경부고시폐지건의	
농림수산 위원회	'95.11.21 ~27	1-6	○'95행정사무감사	
	12. 4~6	1-3	○'96년도 당초예산예비심사	
	12.18	4	○'95년도제3회추경예산예산심사	
	12.20	5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	
건설교통 위원회	'95.11.21 ~27	6	○'95행정사무감사	
	12.4~6	1-2	○'96년도당초예산예비심사	
	12.18	3	○'95년도제3회추경예비심사	

□ 특별위원회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비 고
예 산 결 산 특별위원회	'95.12. 8 ~15	1-8	○ '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 ○ '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	
	'95.12.20	9	○ '95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 ○ '95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95.12.21	10	○ '9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2) 안건처리현황

위 원 회 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비 고
			가 결		부 결	보 류	기 타	
			원 안	수 정				
계	28	28	21	6	1			
의회운영위원회	2	2	2					
기획경제위원회	3	3	3					
내 무 위 원 회	5	5	4	1				
교육사회위원회	10	10	8	1	1			
농림수산위원회	2	2	2					
예산결산특별 위 원 회	6	6	2	4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기획경제위원회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가스관련부분

· 삭제 정리

- 고압가스제조(변경)허가와 관련된 업무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변경)허가와 관련된 업무
-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변경)허가와 관련된 업무
- 도시가스시공자 등록 등

· 신 설

- 액화석유가스 시공자에 대한 시정명령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청주의료원 경영부실에 관한 조사 발의

< 발의이유 >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청주의료원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3일 실시하였으나 1일의 기간으로는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본행정사무감사시 돌출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해 재조사 함으로써 청주의료원의 경영상의 문제점을 파헤쳐 주민들의 불신를 해소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하여 지역보건향상과 주민복지 증진에 일익을 도모하고자 임헌용의원외 22인의 발의를 통하여 조사키로 발의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청주의료원 경영부실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

< 주요내용 >

○ 대 상 기 관 :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 조사사무범위 : - 재무회계에 관한사항

- 의약품관리에 관한사항

- 의료장비에 관한사항

- 인사관리에 관한사항

- 영안실운영에 관한사항

- 예산과 결산에 관한사항

- 노조에 관한사항

- 기타 경영부실 규명에 필요한 사항

○ 조사위원편성 : 기획경제위원회위원 전원

○ 조 사 일 정 : '95. 12. 11 ~ '96. 2. 29 (81일간)

○ 조 사 방 법 : - 조사관련보고

- 서류제출

- 증인·참고인등의 증언청취

- 현장검증 등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 리 내 용					비 고
			가 결		부 결	보 류	기 타	
			원 안	수 정				
계	3	3	3					
조 례 안	1	1	1					
일반안건	2	2	2					

□ 내무위원회

◉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시험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시험수당 지급 기준액을 1996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액과 동일하게 개정

· 문제 출제 수당

- 객관식 (문항당) 2,300 → 3,000원

· 문제 채점 수당

- 주관식 ┌ 10부까지 기본료 25,000 → 30,000원
  └ 1부 초과 660 → 800원

· 면접시 종사원 수당(일당) 6,000 → 6,500원

· 감시 수당(일당)

- 평 일 6,000 → 6,500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및 요지

· 충청북도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시행과 관련하여 면접 및 실기시험의 종사원들에게 지급하는 감시수당 중 공휴일 수당액에 있어서 현행지급은 현실과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를 현실에 근접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동조례안 별표 시험 수당지급기준표중 공휴일 감시수당 "10,000원" 을 "20,000원" 으로 상향조정하여 수정의결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행정서사법이 행정사법으로 전면개정('95. 1. 5 법률제4874호)됨에 따라 위임조례 삭제

○ 농업기반시설관리 업무 중 목적외 사용 및 폐지권한 위임

○ 가격표시 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

○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 정비 및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사항 위임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96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화

· 정원증원 : 30명 (본청 29명, 직속기관 1명)

○ 재난관리기능 인력보강

· 정원증원 : 1명 (증평출장소)

○ 자치기획단의 시한만료

· 정원감축 : 5명 (본청)

○ 공영개발사업단의 시한연장

· 1995. 12. 31(25명) ⇒ 1996. 12. 31(25명)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공영개발사업단 시한연장

1995. 12. 31 ⇒ 1996. 12. 31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6 공유재산관리계획

○ 재산의 취득

· 잠업검사소, 종축장청사 및 부대시설 신축

- 통합청사 신축(청원군 북일면 구성리 132-7번지) 1,653m^2
- 부대서실 신축 2,248m^2

· 종축사료포 부지매입 및 부대시설 신축

- 사료포 부지매입(청원군 북일면 구성리 405번지 외 22필지) 39,110m^2
- 축사 및 부대시설 신축(청원군 북일면 구성리 132-7번지 외 12필지) 3,967m^2

· 음성 소방서 부지 기부채납 및 청사신축

- 부지 기부채납(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71-2번지 외 6필지) 3,570m^2
- 청사신축 2,640m^2

· 영동 황간소방파출소 부지 기부채납 및 청사신축

- 부지 기부채납(영동군 황간면 신흥리 262-7번지 1,554m^2
- 청사신축 495m^2

·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부지 매입 4,960m^2

○ 재산의 처분

· 농촌진흥원 잔여재산 매각

-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56번지 외 52필지 92,941m²

○ 재산의 교환

· 교환취득(청원군 북일면 구성리 413번지) 4,863m²

· 교환처분(청원군 북일면 구성리 439-3번지 외 4필지) 5,969m²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5	5	4	1				
조례안	5	5	4	1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검정고시에 관련된 제증명수수료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를 준용하여 징수

· 현행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1인당 시험 응시수수료를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하되, 실기과목 응시자는 35,000원으로 변경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의사국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조정함 (안 제2조제1항)

○ 의사과장의 직급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조정하고 그 밑에 의사계장과 의안계장을 두되 의사계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의안계장은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 의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14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함 (안 제4조)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기금의 예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는 규정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 "고율의 금융상품으로 예탁한다." 로 개정

○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 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운영관과 기금출납원" 으로 개정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현행 충청북도수영장이외에 청주, 충주수영장을 추가로 신설함에 따라 수영장의 명칭 및 위치를 별표로 규정함 (안 제2조)

○ 수영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수영장장의 직급을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하도록 함 (안 제4조)

○ 수영장중에서 실내수영장은 선수훈련용으로, 실외수영장은 학생 및 일반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던 원칙을 삭제함 (안 제6조)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도서관설치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옥천도서관의 위치란중 "삼양리163" 을 "금구리39-1" 로 변경함 (안 표)

○ 부칙으로 주소가 변경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

· 청주시 구설치로 위치란중 "청주시" 를 "청주시 상당구" 로,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의 위치란중 "청주시" 를 "청주시 상당구" 로 충북공업고등학교의 위치란 "청주시" 를 "청주시 흥덕구" 로 변경함 (안 부칙 제2항)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및 요지

· 타 조례 부칙에 의한 관련 조례의 제·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례안 부칙2항(청주시 구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규정을 삭제하고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개정시에 개정토록 함

◉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

< 주요골자 >

○ 기 능 : 오인광고 내용의 심의 (안 제3조)

· 주민건강의식 오인광고의 변경·금지명령·시정대상 심의

· 주민건강생활의 도민실천운동 추진

○ 구 성 : 위원장 포함 7인이내, 임기 3년 (안 제2조)

· 위원장 → 행정부지사, 부위원장 → 보사환경국장

· 간 사 → 보건과장

○ 회 의 : 회의는 제3조의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

○ 의견청취 : 관계공무원, 전문가, 관계자의 의견청취 또는 기관단체의 자료 필요시 협조요청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대청호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지정 및 특별종합 대책에 대한 현행환경부고시 폐지건의

< 주요내용 >

쾌적한 자연환경과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이제는 특별법 제정등을 통하여 중앙 정부의 수질보전정책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현행고시의 폐지 건의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0	10	8	1	1			
조례안	7	7	6	1				
건의.청원	3	3	2		1			

□ 농림수산위원회

◉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 주요골자 >

○ 기금의 조성 : 충청북도의 출연금, 기관 단체, 독지가의 성금, 회원의 회비

○ 기금 조성과 관리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 : 농촌진흥원장을위원장으로 하고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기금의 관리 : 적립 기금은 은행에 예치하고 그 증식금으로 사업추진

○ 운용기금의 사용 : 농촌후계세대 육성 및 농촌지도자 양성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

< 주요골자 >

○ 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폐지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2	2	2					
조례안	2	2	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95년도 제3회 충청북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 주요내용 >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소관별	예산액	제출예산액		수정내역	
		계	'95 3회	증	감
합계	611,594,227	611,594,227	611,594,227	46,766	46,766
기획경제위원회	62,265,495	62,218,726	62,218,726	-	-
공보관실	591,638	591,638	591,638	-	-
감사실	127,256	127,256	127,256	-	-
국제통상협력실	410,211	410,211	410,211	-	-
기획관리실	42,052,885	42,006,119	42,006,119	46,766	-
지역경제국	19,083,502	19,083,502	19,083,502	-	-
내무위원회	157,051,226	157,051,226	157,051,226	-	-
내무국	104,653,518	104,653,518	104,653,518	-	-
민방위국	384,218	384,218	384,218	-	-
소방본부	20,487,520	20,487,520	20,487,520	-	-
공무원교육원	1,458,126	1,458,126	1,458,126	-	-
도민교육원	1,239,114	1,239,114	1,239,114	-	-
증평출장소	28,828,730	28,828,730	28,828,730	-	-
교육사회위원회	89,836,644	89,836,644	89,836,644	-	-
보사환경국	61,330,617	61,330,617	61,330,617	-	-
보건환경연구원	1,850,244	1,850,244	1,850,244	-	-
가정복지국	26,655,783	26,655,783	26,655,783	-	-
농림수산위원회	135,063,684	135,063,684	135,155,587	-	-
농정국	117,155,587	117,155,587	117,155,587	-	-
농촌진흥원	17,908,097	17,908,097	17,908,097	-	-
건설교통위원회	164,511,905	164,558,671	164,558,671	-	46,766
건설교통국	164,511,905	164,558,671	164,558,671	-	46,766
의회운영위원회	2,865,276	2,865,276	2,865,276	-	-
의회사무처	2,865,276	2,865,276	2,865,276	-	-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제 출 예 산 액		수 정 내 역	
		계	'95. 3회	증	감
합 계	158,819,048	158,819,048	158,819,048	-	-
공기업특별회계	136,319,410	136,319,410	136,319,410	-	-
공 영 개 발	52,244,888	52,244,888	52,244,888	-	-
지역개발기금	84,074,522	84,074,522	84,074,522	-	-
기 타 특 별 회 계	22,499,638	22,499,638	22,499,638	-	-
의료보호기금	17,265,486	17,265,486	17,265,485	-	-
농 어 촌 소 득 개 발 기 금 운 영 관 리	3,323,626	3,323,626	3,323,626	-	-
대청호특별대책 지역환경기초 시설운영관리	1,910,526	1,910,526	1,910,526	-	-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및 요지

· 19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7,704억1,327만 5천원중 4,676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

◉ '9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 주요내용 >

○ 교육비특별회계 (단위 : 천원)

장 별	예 산 액	'95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내역		
		요구액	증	감
합 계	572,602,828	572,602,828	-	-
교육위원회	569,321	569,321	-	-
본 청	445,588,410	445,588,410	-	-
청주교육청	40,484,384	40,484,384	-	-
충주교육청	12,830,716	12,830,716	-	-
제천교육청	11,974,486	11,974,486	-	-
청원교육청	8,442,405	8,442,405	-	-
보은교육청	5,345,788	5,345,788	-	-
옥천교육청	5,226,788	5,226,788	-	-
영동교육청	8,222,807	8,232,807	-	-
진천교육청	6,090,822	6,090,822	-	-
괴산교육청	8,677,595	8,677,595	-	-
음성교육청	7,666,621	7,666,621	-	-
단양교육청	5,647,894	5,647,894	-	-
예 비 비	5,834,961	5,834,961	-	-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 주요내용 >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소관별	예산액	제출예산액		수정내역	
		당초	수정	증	감
합계	587,701,886	565,506,620	22,195,266	3,055,634	3,055,634
기획경제위원회	69,594,086	69,672,318	542,760	1,055,634	1,676,626
공보관실	586,253	641,953	2,400	-	58,100
감사실	156,644	156,644	0	-	-
국제통상협력실	213,391	244,607	61,000	-	92,216
기획관리실	54,306,691	55,747,953	1,915,386	1,055,634	581,510
지역경제국	14,331,107	12,881,161	2,394,746	-	944,800
내무위원회	154,815,829	151,036,742	3,166,067	900,000	286,980
내무국	101,515,031	99,869,321	952,440	900,000	206,730
민방위국	360,203	340,463	19,740	-	-
소방본부	23,285,629	23,285,629	0	-	-
공무원교육원	2,350,843	2,350,843	0	-	-
도민교육원	1,441,501	1,441,501	0	-	-
증평출장소	25,862,622	23,748,985	2,193,887	-	80,250
교육사회위원회	107,641,952	98,976,166	8,222,396	1,100,000	656,610
보사환경국	71,643,401	63,614,239	7,638,812	600,000	209,650
보건환경연구원	2,127,844	2,127,844	0	-	-
가정복지국	33,870,707	33,234,083	583,584	500,000	446,960
농림수산위원회	166,475,249	158,604,656	8,250,593	-	380,000
농정국	149,610,024	142,688,434	7,301,590	-	380,000
농촌진흥원	16,865,225	15,916,222	949,003	-	-
건설교통위원회	86,009,369	84,046,669	1,963,000	-	300
건설교통국	86,009,369	84,046,669	1,963,000	-	300
의회운영위원회	3,165,401	3,170,069	50,450	-	55,118
의회사무처	3,165,401	3,170,069	50,450	-	55,118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제 출 예 산 액		수 정 내 역	
		당 초	수 정	증	감
합 계	207,103,840	210,050,070	△ 2,946,230	273,766	273,766
공기업특별회계	186,524,660	186,524,660	0	273,766	273,766
공 영 개 발	57,306,536	57,306,536	0	273,766	273,766
지역개발기금	129,218,124	129,218,124	0	-	-
기타특별회계	20,579,180	23,525,410	△ 2,946,230	-	-
의료보호기금	15,820,457	18,766,687	△ 2,946,230	-	-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운영관리	2,558,723	2,558,723	0	-	-
대청호특별대책 지역환경기초 시설운영관리	2,200,000	2,200,000	0	-	-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요지

·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7,948억572만6천원 중 33억 2,940만원을 삭감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의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 '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 주요내용 >

○ 교육비특별회계 (단위 : 천원)

장 별	예 산 액	'95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내역		
		요 구 액	증	감
합 계	558,983,775	558,983,775	1,409,000	1,409,000
교육위원회	655,234	655,234	-	-
본 청	478,960,236	480,369,236	-	1,409,000
청주교육청	26,301,728	26,301,728	-	-
충주교육청	12,298,014	12,298,014	-	-
제천교육청	6,757,577	6,757,577	-	-
청원교육청	3,993,325	3,993,325	-	-
보은교육청	2,749,266	2,749,266	-	-
옥천교육청	2,432,543	2,432,543	-	-
영동교육청	5,638,854	5,638,854	-	-
진천교육청	2,583,925	2,583,925	-	-
괴산교육청	5,169,578	5,169,578	-	-
음성교육청	5,009,989	5,009,989	-	-
단양교육청	2,362,448	2,362,448	-	-
예 비 비	4,031,058	2,622,058	1,409,000	-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요지

· 199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요구액 5,589억8,377만5천원중 14억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 리 내 용					비 고
			가 결		부 결	보 류	기 타	
			원 안	수 정				
계	6	6	2	4				
예 산 안	6	6	2	4				

第 7 節 第121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21회 임시회는 김진학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96년 1월 3일 집회공고하고, '96년도 도정보고, 궐원된 교육위원 선출(1명)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1월 18일 오후 2시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1996. 1. 18 (목) ~ 1. 24 (수)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ㅇ 조례안 - 7건
- ㅇ 도정보고 (교육시책 포함)
- ㅇ 제2기 충청북도 교육위원 선출
  - · 청주시의회 추천 : 김정길후보 당선
- ㅇ 통일문제설명회('95. 1. 23　14:00~16:00)
  - · 주　제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남북관계전망, 북한실상(VTR)
  - · 강　사 : 통일원 통일연수원 윤병익교수

※ 회의록 서명의원 : 김춘식, 최종철의원

2) 의안처리현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승 인 안	건 의 안	기　타
10 건	7	.	.	.	3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1996. 1. 18 (목)

ㅇ 제1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원안가결)

· 회　기 : '96. 1. 18 ~ 1. 24 (7일간)

ㅇ 도정보고 (교육시책 포함)

□ 제2차 본회의 : 1996. 1. 23 (화)

○ 제2기 충청북도 궐원교육위원선출의 건

· 추천의회 : 청주시

· 후보자(2) : 최영수, 김정길

· 당 선 자 : 김정길 후보 (비경력)

□ 제3차 본회의 : 1996. 1. 24 (수)

○ 충청북도 농축산사업소 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 여비지급조례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5분 자유발언 (기획경제위원회 임헌용의원) : 충북정도100년 사업추진 관련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96. 1. 18(수) 14:03~14:13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 (평균)	2시간 17분 (46분)	
1차 (1. 18)	14 : 13 ~ 15 : 10	57분
2차 (1. 23)	11 : 06 ~ 11 : 59	53분
3차 (1. 24)	11 : 04 ~ 11 : 31	27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5.8%)

대 상 인 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3	1	2	3
4 0 명	38	39	38	2	1	2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 상임위원회 '96. 1. 18 ~ 1. 24 (7일간)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비고
의회운영 위원회	'95. 1.22	1	○업무보고 ○제12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	
기획경제 위원회	'96. 1.19 ~ 20	1-2	○업무보고	
	1.22	3	○업무보고	
내 무 위원회	'96. 1.19 ~ 20	1-2	○업무보고	
	1.22	3	○충청북도농축산사업소조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교육사회 위원회	'96. 1.19 ~20	1-2	○업무보고	
	1.22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농림수산 위원회	'96. 1.19	1	○업무보고	
	1.22	2	○업무보고	
건설교통 위원회	'96. 1.19 ~ 22	1-3	○업무보고	

2) 안건처리현황

위원회별	상정	처리	처리결과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8	8	8					
의회운영위원회	1	1	1					
내무위원회	5	5	5					
교육사회위원회	2	2	2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업무보고 주요내용

< 의회사무처 소관 >

○ 의회운영

○ 선진의정기반 조성

○ 의정홍보활동 강화

○ 의안 및 심의자료 제공

○ 「도민의 소리」 적극수렴

○ 의정 지원능력 배양

□ 기획경제위원회

◉ 업무보고 주요내용

< 공보관실 소관 >

○ 올바른 도정보도로 신뢰행정 구현

○ 격조높은 소식지 「새충북」 발간

○ 보고·느끼는 현장홍보 강화

○ 공직자「행정홍보기법」 교육

○ 정기간행물을 이용한 홍보

○ 「충북 100년」 행사의 내실있는 홍보

< 감사실 소관 >

○ 행정감사의 내실화 → 정기·기획감사

○ 공직기강 점검

○ 감사기능 활성화 추진

○ '96 자체감사기능 강화

<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

○ 국제자매도시간 교류의 내실화 추진

○「충청북도 명예대사」제 운영

○「충청북도 알리기」운동 전개

○「세계화 정보센타」운영

○ L.A 「충청북도 물산전」개최

○ 충북 100년 기념사업추진

○ 조사연구활동의 지속추진

< 기획관리실 소관 >

○「충북21세기위원회」 설치

○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

○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운영

○ 도지사 공약사항 실천 및 민자유치 적극 추진

○ 행정자료실 운영개선

○ 옥천공업전문대학 설립 추진

○ 전국자치복권 발행 및 지역개발기금 운영

○ 기업법령 정보지 발간

○ 자치법규 전산망 운영

○ 인터넷에 충북홍보관 설치

○ 근거리「 LAN 」통신망 운영

○ 정도 100년 기념사업 추진

· 충북도정 100년사 발간

· 21세기 비전 실현 대토론회

· 충북100년 기념 CD 타이틀 제작

< 청주의료원 소관 >

- ㅇ 환자진료
- ㅇ 정신질환자 특수병동 운영
- ㅇ 장의편의사업 운영
- ㅇ 건강관리사업
- ㅇ 괴산분원 운영 개선
- ㅇ 행태개선 및 운영관리부문 개선

< 충주의료원 소관 >

- ㅇ 신관건물 증축 공사 (공공의료 특화사업 확대실시)
- ㅇ 본관 건물외벽 타이루공사
- ㅇ 의료장비 보강

< 지역경제국 소관 >

- ㅇ 중소기업 전문화, 세계화 촉진 10가지 방안 추진
- ㅇ 21세기 지방공업내실 육성
- ㅇ 특색있는 내륙관광 기반조성
- ㅇ 지역경제 5대역점 업무 중점 추진
- ㅇ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 ㅇ '96전국기능경기대회개최 준비

□ 내무위원회

◉ 업무보고 주요내용

< 내무국 소관 >

- ㅇ 충북100년기념사업 추진
- ㅇ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수행
- ㅇ 지방자치발전의 기반강화
- ㅇ 충청북도 「도민대상」 제정
- ㅇ 주민등록증 경신사업(전자카드화) 추진
- ㅇ 종합정보통신망기반 구축
- ㅇ 「 도민의 새기상 창조 」 운동 전개

○ 고향농촌의 활력화

○ 자주재원의 확충

○ 외청, 사업소 이전 추진

○ 도민본위 「 참봉사 」 민원행정 구현

○ 문화예술의 창달

○ 문화유적의 보수 및 정비

○ 지방체육의 진흥

< 민방위국 소관 >

○ 민방위 조직의 활력화

○ 내실있는 민방위교육·훈련

○ 주민신고망 운영의 활성화

○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강화

○ 재난관리의 효율적 추진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강화

○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화

○ 효율적인 동원자원 관리

< 공무원교육원 소관 >

○ 우수교관 확보 및 교관자질 향상

○ 인성교육 강화

○ 충북인 정신 함양교육 강화

○ 참여식교육 확대 운영

○ 교육훈련평가 개선

○ 제4회 시군정 연구발표회 개최

< 소방본부 소관 >

- ○ 신설소방관서 청사 확보
- ○ 소방장비 보강
- ○ 소방관서 운영 정원증원
- ○ 소방공무원 사기앙양대책 추진
- ○ 새로운 소방공직자상 확립
- ○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
- ○ 대인 봉사기능 확대 및 화재예방의식 고취
- ○ 화재진압능력제고 및 대형사고 중점 예방
- ○ 재래시장 소방안전 대책강화
- ○ 민간소방조직 운영의 활성화
- ○ 소방용수시설보강 및 유지관리 강화
- ○ 긴급구조 구난체계 확립
- ○ 119 구급업무의 활성화
- ○ 긴급구조구난 본부상황실 운영체계 확립

< 도민교육원 소관 >

- ○ 도민의식교육 : 세계화·지방화에 부응하는 건전도민의식 함양
- ○ 영농기술교육 : 고소득·고부가품질 작목위주 최신영농기술 보급
- ○ 농기계교육 : 이론 및 실기교육 중점

< 증평출장소 소관 >

- ○ 주민위주의 봉사행정
- ○ 지방자치행정의 구현
- ○ 활기있는 복지농촌 건설
- ○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 ○ 활기찬 지역개발 촉진
- ○ 내실있는 주민복지 증진
- ○ 향토문화 기반의 내실화

◉ 충청북도농축산사업소조례

< 주요골자 >

○ 가축위생시험소, 종축장, 잠업검사소 폐지 ⇒ 농축산사업소로 개편

○ 농산물원종장 폐지 ⇒ 농촌진흥원 이관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명칭변경

· 보사환경국 → 보건환경국

· 가정복지국 → 사회복지국

· 지역경제국 → 공업경제국

· 민방위국 → 민방위재난관리국

○ 10실. 국. 본부의 분장사무 규정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정원조례의 개정

· 본 청 : 942명 → 940명

· 의회사무처 : 58명 → 65명

· 사 업 소 : 380명 → 373명

· 출 장 소 : 231명 → 232명

○ 산림환경연구소조례의 개정

· 명칭변경 : 산림환경연구소 → 산림환경사업소

· 도유림사업소폐지 → 산림환경사업소 이관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와 국내여비규정에서 중복되어 있는 조항의 삭제
제2조(여비의 종류), 제3조(여비정액), 제5조(이전비),
제6조(현장지도 여비)

○ 제7조(준용규정)을 제3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와 제4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으로 구분하여 개정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조)

○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함 (안 제15조 제1항)

○ 공무원의 건강진단을 할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 6호 및 제7호)

○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 제5항 제4호)

○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함 (안 제20조 제6항)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5	5	5					
조례안	5	5	5					

□ 교육사회위원회

◉ 업무보고 주요내용

< 보사환경국 소관 >

○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 도민의료수준의 질적향상

○ 공중·식품위생 안전관리

○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관리

○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

○ 문장대·용화온천 개발저지대책

○ 대청호특별종합대책고시 개정관련 추진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 신속·정확한 검사업무 추진

○ 시험검사 요원의 전문화

○ 민원제일위주의 봉사행정 강화

○ 창의적인 조사·연구 실적 거양

< 가정복지국 소관 >

○ 건전한 노후생활보장

○ 노인여가활동 및 노인복지 시설기능 보강

○ 화장장·납골당 이용권장

○ 보육시설확충 및 운영내실화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 가정보호

○ 모자보호 및 복지증진

○ 여성자원봉사센타운영 활성화

○ 건전한소비문화정착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배양

○ 청소년 보호 및 선도와 건전활동지원

○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참여분위기 확산

○ 여성전문기능인 양성

○ 여성 능력배양교실 운용 및 사회사업활동 정착

< 교육청 소관 >

○ 교육개혁 업무 추진

○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개편 업무 추진

○ 인재육성을 위한 교실의 선진화

○ 교과연구회 활동의 활성화

○ 사립학교교원 인사관리의 내실화

○ 학교시설 이용한 사회교육 실시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20년 이상 근속공무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신설학교 (청원군 오창고등학교외 5교)

○ 분교장개편 학교 (청원군 기암국외 6교)

○ 분교장폐지 학교 (제천시 금성국 장선분교장외 8교)

○ 지적정리에 따른 지번부여 학교 (청주시 교동국민학교외 3교)

○ 교명변경 학교 (청주시 산남국민학교)

○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변경 학교(청주시 주성국외 310교)

○ 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외 3건)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2	2	2					
조례안	2	2	2					

□ 농림수산위원회

◉ 업무보고 주요내용

< 농정국 소관 >

○ 미래농업을 선도할 농업전문인력의 육성

○ 식량수급의 안정대책추진

○ 지역특화작목의 육성

○ 가공, 유통시설의 확충

○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보급

○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 환경과 조화된 삶의 질적수준 향상

< 농촌진흥원 소관 >

○ 식량작물의 생산성과 자급율 향상

○ 주소득 작목의 기술과 경영혁신

○ 새소득작목의 개발보급과 수출 농업의 육성

○ 농업환경 보전과 안전 농산물 생산

○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경영개선

○ 농업전문인력의 효율적 육성

○ 첨단농업시대를 선도할 농민교육

○ 농촌문화생활 기반조성과 여성역할 증대

○ 기술농업정보의 신속확산

○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터 기능 완비

□ 건설교통위원회

◉ 업무보고 주요내용

< 건설교통국 소관 >

- ○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
- ○ 대전·청주 광역권 개발
- ○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
- ○ 도시가로망 정비
- ○ 택지개발 사업
- ○ 공업단지 조성
- ○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
- ○ 농촌주택 현대화 시범마을 조성
- ○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 ○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 ○ 하천 개수사업
- ○ 재해위험지구 개수사업
- ○ '95 수해복구사업
- ○ 충주호 수경공원 조성
- ○ 도로망 확충
- ○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 ○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 ○ 대중교통 지원확대 및 서비스 개선
- ○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추진
- ○ 이면도로 주차허가제 실시
- ○ 청주국제공항 조기개항
- ○ 경부고속전철 오송역 개통
- ○ 충북선 전철화사업

<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

- ○ 가경3지구 택지개발 사업
- ○ 가경3지구 제척지 발산부락 개발사업
- ○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

<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 >

- ○ 오창과학산업단지 추진
- ○ 충주과학산업단지 추진

第 8 節 第122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22회 임시회는 김진학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96년 1월 26일 집회공고하고 일본의 독도망언 규탄결의안, 충북100년 기념사업 추진계획 보고청취,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2월 26일 오후 2시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1996. 2. 26 (월) ~ 2. 29 (목)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ㅇ 조례안 - 6건
- ㅇ 일본의 독도망언규탄결의안
- ㅇ 충북100년 기념사업 추진계획 보고

※ 회의록 서명의원 : 이병두, 최영락의원

2) 의안처리현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결 의 안	건 의 안	기 타
9 건	6	·	1	·	2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1996. 2. 26 (월)

ㅇ 제1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원안가결)

· 회 기 : '96. 2. 26 ~ 2. 29 (4일간)

□ 제2차 본회의 : 1996. 2. 29 (목)

- ㅇ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ㅇ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ㅇ 충청북도개발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수정가결)
- ㅇ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ㅇ 충청북도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ㅇ 충청북도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ㅇ 일본의 독도망언 규탄결의안(원안채택)
- ㅇ 충북100년 기념사업 추진계획 보고

4) 회의진행시간

ㅇ 개회식 : '96. 2. 26(월) 14:06~14:15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 (평균)	1시간 8분 (34분)	
1차 (2. 26)	14 : 15 ~ 14 : 25	10분
2차 (2. 29)	11 : 07 ~ 12 : 05	58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3.8%)

대 상 인 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1	2
4 0 명	40	35	-	5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 상임위원회 '96. 2. 26 ~ 2. 29 (4일간)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비고
의회운영위원회	'96. 2.26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2.28	2	○제12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 ○일본의 독도망언에 대한 결의문 채택	
기획경제위원회	'96. 2.27	1	○충북개발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2.28	2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	
내 무 위원회	'96. 2.27	1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교육사회위원회	'96. 2.27	1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건설교통위원회	'96. 2.28	1	○제천, 수산 고명도로선형 개량공사에 따른잔여토지 매입요구 청원	

2) 안건처리현황

위원회별	상정	처리	처리결과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8	8	7	1				
의회운영위원회	4	4	4					
기획경제위원회	2	2	1	1				
내 무 위 원 회	1	1	1					
교육사회위원회	1	1	1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의 명칭을 '지역경제국'을 '공업경제국'으로, '민방위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보사환경국'을 '보건환경국'으로, '가정복지국'을 '사회복지국'으로 변경하고

○ 과단위로 하향조정된 국제통상협력실은 기획관리실에 통합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에 원격지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원격지회의 출석비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 회기중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회의 수당을 지급토록 함

○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숙박비 (20,700원 → 37,500원) 및 식비(11,000원 → 25,000원)을 상향 조정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한 결의

< 제안이유 >

○ 일본의 주장이 터무니없고 근거도 없는 생트집이라는 사실을 150만 도민 에게 널리 알리고 부당성을 지적 규탄함과 아울러,

○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한국영토임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한편 어떤 이유로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히고 관철하기를 촉구하기 위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4	4	4					
조례안	2	2	2					
건의안	1	1	1					
일반안건	1	1	1					

□ 기획경제위원회

◉ 충북개발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 주요골자 >

○ 설치 운영 : 연구원 설립에 관련된 근거 마련 (제2조)

○ 재무 관리 : 출연금, 기금관리, 운영경비, 예산·결산 등

○ 육성 및 감독

· 육 성 : 연구원을 지원·육성할 의무 규정

· 감 독 : 조사 또는 검사, 시정조치 또는 관계자 문책 규정 마련

○ 기타사항

· 준용규정 :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유연성 확보

· 규 칙 : 기타 필요사항 규칙으로 정함

· 부 칙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및 요지

· 본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조성에 있어 "도와 관내 각 시·군과 그외의 출연금, 타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고 되어 있는데 제8조 "연구원은 도지사가 부여하는 과제를 연구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로 도지사에게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향후 기금을 출연하는 각 시·군에게도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자 하여 제8조의 조문중 "도지사" 를 "지방자치단체가" 로 자구수정

◉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자금지원 범위를 구조조정, 경영안정지원에서 입지지원, 중소유통업구조개선, 특별지원지역, 종합지원센터 지원까지 포함 확대함(안 제5조 및 제9조)

○ 자금지원 대상 기업을 중소기업(제조업)에서 창업투자회사, 공장용지임대사업자,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자, 시장재개발사업자, 연쇄화사업직·가맹점, 상점가진흥조합, 상업협동조합 조합원까지 포함 확대함(안 제6조)

○ 융자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 위원장(지역경제국장)포함 7인 이내를 (규칙)

· 위원장(행정부지사)포함 10인 이내로 조정함 (안 제13조)

○ 기금관리공무원을 조정함 (안 제19조)

· 기금출납명령관 : 담당과장 기 금 운 용 관 : 사업담당국장

→

· 기 금 출 납 원 : 담당계장 기금분임운용관 : 담 당 과 장

기 금 출 납 원 : 담 당 계 장

○ 사업이 종료된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관리, 운영규정을 폐지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2	2	1	1				
조례안	2	2	1	1				

□ 내무위원회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도세의 면제 범위 확대

·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면제 범위에서 상이급수 3급 내지 5급 대상자 중 일부만 제외하던 것을 모두 면제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 면제 (안 제2조 제3항)

· 농가의 농외소득원 지원확대를 위해 농산물 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안 제18조 제1항 제2호)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면적의 초과부분에 관계없이 취득세 및등록세를 면제 (안 제19조 제1항)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례안	1	1	1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의 청주농업고등학교 위치란중 "청주시"를 "청주시 상당구"로 하고, 충청북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의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위치란중 "청주시"를 "청주시 상당구"로 충북공업고등학교 위치란중 "청주시"를 "청주시 흥덕구"로 변경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례안	1	1	1					

第 9節 第123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23회 임시회는 김진학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96년 2월 29일 집회공고하고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3월 12일 오후 2시에 개회되었다.

2. 會　　期 : 1996. 3. 12 (화) ~ 3. 16 (토)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o 조례안 - 5건

※ 충청북도 농촌소득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재의의 건
- 관련법령 위반조문 수정하여 가결

o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

※ 회의록 서명의원 : 이민희, 오성진의원

2) 의안처리현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승 인 안	건 의 안	기 타
6 건	5	·	·	·	1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1996. 3. 12 (화)

○ 제1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원안가결)

· 회 기 : '96. 3. 12 ~ 3. 16 (5일간)

○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원안채택)

□ 제2차 본회의 : 1996. 3. 16 (토)

○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충청북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부결)

○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 농촌소득전문인력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재의의 건 (수정가결)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96. 3. 12(화) 14:06~14:15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 (평균)	1시간 56분 (58분)	
1차 (3. 12)	14 : 15 ~ 14 : 55	40분
2차 (3. 16)	11 : 09 ~ 12 : 21	1시간 12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0.0%)

대 상 인 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1	2
4 0 명	34	38	6	2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 상임위원회 '96. 3. 12 ~ 3. 16 (5일간)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비고
의회운영 위 원 회	'96. 3.12	1	○제12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	
기획경제 위 원 회	'96. 3.13	1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	
내 무 위 원 회	'96. 3.13	1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자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	
건설교통 위 원 회	'96. 3.13	1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2) 안건처리현황

위 원 회 별	상정	처리	처 리 결 과					비고
			가 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5	5	3	1	1			
의회운영위원회	1	1	1					
기획경제위원회	1	1		1				
내 무 위 원 회	1	1	1					
건설교통위원회	2	2	1		1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기획경제위원회

◉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 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의료원 임원중 원장의 연임 횟수를 1회로 단축

· 2회 연임 → 1회 연임

· 연임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

○ 의료원장 면직요건을 변경

·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위원회의 해임 건의가 있을 경우

→ 당해 의료원 이사회의 해임 건의가 있을 경우를 추가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및 요지

· 충청북도 직제개편에 따라 청주의료원의 이사중 당연직이사가 예산담당관에서 공기업담당관으로 바뀌고 의료원 사무조사시 대두되었던 경영평가위탁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범위를 확대하며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어 버린 부칙 제2항을 삭제하여 의료원 경영을 개선하고자 제16조 제3항 단서를 '다만,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의 이사회는 이사(공기업담당관)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신설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례안	1	1		1				

□ 내무위원회

◉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

< 주요골자 >

○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

○ 잉여자금은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폐지 조례 부칙에 명시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례안	1	1	1					

□ 건설교통위원회

◉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견인료 인상

· 별표 제1호중 기본요금의 2.5톤 미만 "20,000원" 을 "30,000원" 으로

· 2.5톤 이상 6.5톤 미만 "25,000원" 을 "35,000원" 으로

· 6.5톤 이상 "40,000원" 을 "50,000원" 으로 인상

○ 불명확한 용어 정비

· 별표 제1호중 "기본요금(편도 5㎞까지)" 를 "기본요금(10㎞까지)" 로 하고 "추가요금(매 ㎞증가시)" 를 "추가요금(매 1㎞증가시)" 로 하며

· 별표 제2호중 "1회 주차권" 을 삭제함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요지

· 본 개정조례안 별표 제1호중 기본요금 2.5톤 미만 30,000원을 25,000원으로 2.5톤이상 6.5톤 미만 35,000원을 30,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

◉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80인 이내 → 120인 이내로 개정

○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 →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 대상금액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공사를 →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 개정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2	2	1		1			
조례안	2	2	1		1			

第 10 節 第124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24회 임시회는 김진학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96년 4월 4일 집회공고하고 도정질문과 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 '95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함은 물론, 현안사항의 현지확인 등을 위하여 4월 16일 오후2시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1996. 4. 16 (화) ~ 4. 27 (토)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조례안 - 8건
-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도정질문(교육시책 포함) - 7명
- 19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 현안 및 주요업무 현장시찰

※ 회의록 서명의원 : 차주용, 이향래의원

2) 의안처리현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승 인 안	건 의 안	기 타
1 6 건	8	2	1	-	5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1996. 4. 16 (화)

○ 제1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원안가결)

· 회 기 : '96. 4. 16 ~ 4. 27 (12일간)

○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가결)

□ 제2차 본회의 : 1996. 4. 22 (월))

○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교육사회위원회 송 옥 순 의원

질 문 요 지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기획부서에 두거나 21세기위원회에 여성분과위원회 설치용의

○여성공무원의 보직 순환등 혁신적인 인사정책은

○도청에 어린이집 설치 운영계획은

○여성직능단체 활성화 지원방안은

< 답변 : 도지사 주 병 덕 >

○1988. 6월 부녀복지과를 가정복지국으로 확대개편, 국장을 여성으로 보임하고 있고, 1996. 2월 조직개편시 부녀복지과를 여성복지과로 개편한 바 있음

○1996. 2. 1일 충북의 21세기위원회에 6개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여성전문가는 총60명중 9명이 위촉되어 활발히 활동중임

○여성의 상위직급으로는 도에는 국장 1명, 과장급 2명, 계장급 2명 시군에는 과장급 14명, 계장급 116명이 있음

< 답변 : 내무국장 최 경 주 >

○도내 여성공무원은 2,193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8%이며, 행정직의 경우 여성의 공채시험 합격률이 50%를 넘고, 여성채용목표제, 출산, 육아휴직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임

○공무원교육원이 금년 8월에 이전하면, 이를 활용하여 어린이집 설치를 검토중이며 시설비는 2억원이 소요됨

< 답변 : 사회복지국장 장 상 자 >

○조직력과 자생력을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운영, 재정확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단체를 적극 지원하겠음

질 문 요 지

○새마을 운동을 새마을 환경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 및 추진할 용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타를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단에 일원화하여 자원봉사단체에 위탁 통합 운영할 용의는

< 답변 : 내무국장 최 경 주 >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93년에 새마을 운동은 민간자율의 순수한 주민운동으로 추진한다는 방향을 설정하면서 농촌살리기운동과 환경살리기운동으로 추진중에 있음

< 답변 : 사회복지국장 장 상 자 >

○도에서는 '93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군출장소에 자원봉사센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자원봉사 활동인력은 2,900여명임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 재가봉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사회복지기관에서 전문가가 운영관리토록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음

질 문 요 지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도 전에 구성케 하여 조례 제정에 의한 정통성 시비문제를 발생케 한 경위는
○위원회 주체가 모호한 조례를 제출케 한 중앙부처에 요구한 대책은
○운영위원회를 철저한 사전홍보와 함께 조례제정후 새로 구성할 용의는
○상여금제도와 지급시기에 대해서 의회와 교육청간의 견해 차이와 도의회 횡포로 오도된 데 대한 진상은
○성과급제도의 보완을 위해서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수당지급 유보용의와 대안은

< 답변 : 교육감 김 영 세 >

○'95. 7. 26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96. 2. 2일 동법시행령 제정 공포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95년 시범운영을 거쳐, '96년 시지역 소재 국공립 초중고 실시, '97~'98년 읍이하 지역 소재 국공립 초·중·고에 실시할 계획임
○'96. 2. 16일 교육부의 운영지침에 의거 '96. 3. 8일 운영지침을 시달하였으나 자치법규인 관련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96. 3. 30조례공포시 까지 중지토록 조치하였음

○'95. 11월하순 교육부로부터 교원특별상여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이 시달되었고, '96. 2. 6일 교원특별상여수당 12억원을 포함하여 학생 수용시설 사업비등 320여 억원이 교부되었음

○수당지급은 제반 절차를 준수하기 위하여 집행을 보류하는 한편 '96. 3월 지연 사유 설명자료를 일선학교 교원들에게 보내 이해를 촉구하였음

교육사회위원회 유 재 철 의원

질 문 요 지

○집행부가 직접예산을 세워서 폐공처리할 의향은

○선우음료와 집행부가 합동으로 상수도시설을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가 단독으로 할 용의

< 답변 : 도지사 주 병 덕 >

○농업, 생활용수 취수공장은 1개공당 37~56만원씩 폐공처리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생수업체 개발 취수공은 1개공당 300만원씩 미리 폐공처리비를 예치하고 폐공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보은군 산외면 선우음료와 합동으로 상수도 개발은 군수가 추진할 사항으로 상수도시설에 따른 재산을 보은군에 헌납하도록 하겠음

질 문 요 지

○환경기초시설 인근농가에 차집관로를 설치하여 오폐수 처리와 각종 사업 허가로 소득증대 도모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대책은

○대청호 어로설치 촉구결과는 (120회 정기회 관련)

< 답변 : 보건환경국장 조 규 린 >

○'96. 4. 1일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고 환경부의 승인 하수도정비계획수립, 막대한 예산소요 등 어려움이 있으나 중앙부처에 다시 건의 촉구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해결을 기대하고 있고 주민숙원사업은 '96. 4. 1일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현재 총리실에서 관계부처와 협의중임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 수자원보호령에 댐의 경우는 어로설치 의무규정이 없고 100~2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 소요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나 어로를 설치하도록 계속 건의하겠음

질 문 요 지

○직행버스 정류장 설치에 있어 법을 준수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할 것인지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마을도로, 농로 편입토지 보상

< 답변 : 건설교통국장 송 완 호 >

○도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정류소는 현재 55개소이고 여객터미널법에 의한 여객버스 정류장은 15개소가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시군과 버스운송조합 합동으로 정류소 실태를 일제조사중이며 이 조사결과에 따라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정류소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음

○'95. 1. 31일 현재, 편입토지 등기이전현황은 대상 39,451필지 1,616,334평, 등기이전 완료 38,692필지 1,577,829평, 미등기 759필지 38,505평이며, 등기이전상황이 실제와 차이가 나는 것은 국가지원사업만 통계하였고 자체사업은 통계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임

○전수조사 및 잔여필지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편입토지 보상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중앙에 건의하여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음

○앞으로 사유지 편입시에는 보상을 하든가 자진 희사를 받아 등기이전까지 완료한 지역에 한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질 문 요 지

○교육행정관련 학생선도위원회 구성 및 청소년 지도운영 상황은
○도내 유치원교실 운영 추진현황은
○초등학교 명칭개정에 수반되는 비용처리 방법은

< 답변 : 교육감 김 영 세 >

○학생선도협의회는 도교육청에 22명과 각 지역교육청 선도협의회, 29개 고등학교의 학교별 선도협의회를 '95. 11월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96. 4월까지 124개기관 412명이 참여하였음

○학생폭력예방 자원봉사자연합회는 도교육청에 21명과 11개 지역교육청 자원봉사자연합회, 24개 고등학교 자원봉사자연합회를 '95. 11월 구성하여 '96. 4월까지 184명이 참여하였고, 합동 교외생활지도, 청소년선도 및 보호감찰활동, 등하교시 학생 보호, 불건전 대중매체로부터 학생보호등의 활동을 하였음

○도내 377개 유치원에서 1만8,904명이 취원하여 교육을 받고 있으며 본 도에서는 전국최초로 18개 유치원 독립원사를 신축한 바 있고 충청북도 유치원교육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 임 '96. 3월에는 도내 11개 유치원의 교실시설 설비개선에 1억6,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향후 4년간 계속 추진하여 유치원 교실의 시설설비를 현대화할 계획임

○국민학교의 초등학교로의 명칭변경은 '95. 1. 29일 개정된 교육법에 의거 '96. 1. 24일 충청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여 '96. 3. 1일부터 시행중이며, 소요비용은 학교당 33만원으로 간판 13만원, 직인 5만원, 교기 15만원 이며 학교자체 재원으로 집행토록 하였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동창회등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농림수산위원회 정 태 정 의원

질 문 요 지

○과학영농특화지구 지정배경 및 정의와 도내 타지역과 비교한 남부개발은
○사업내용이 농림수산통합사업 등 타 사업과 중복에 대한 설명
○3년의 사업기간으로 거둘 수 있는 효과와 '98년이후 사업 계속 계획은
○과학영농을 선도할 고급기술인력 양성계획으로 농고의 전문대학화 계획

< 답변 : 도지사 주 병 덕 >

○남부3군은 대청댐 상류지역으로 상수원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되어 사실상 농업 이외의 타 산업개발이 어려워 영농특화지구로 지정하여 지역개발을 추진중임

○지역간 균형개발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특화개발을 추진하겠음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타지역보다 우선순위로 두고 지방비 지원사업은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지원

○3년동안 과학영농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에 많은 투자가 되므로 상당한 성과가 기대되며 '98년 이후에 다시 추진방향을 재조정하여 계속추진

○농고의 전문대학화 추진은 국가재정 형편상 1시도당 1도립대학에 한하여 국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추가의 선정 지원은 어려움

질 문 요 지

○영동국악 육성, 악기발물관 건립등 영동을 문화도시로 육성계획은
○충북관광의 종합적인 개발정책 수립과 투자확대 의향은

< 답변 : 내무국장 최 경 주 >

○난계국악당을 건립하여 36명의 국악단을 상설 운영하고 19명은 상임화한 바 있으며, 운영비 일부를 도비지원하고 난계예술제 대상의 훈격을 대통령상으로 승격하였음

○악기박물관 건립은 영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20여점의 악기는 난계국악당이나 향토유물전시관에 전시를 하고, 전시할 악기가 많이 모아진 후에 건립함이 바람직함

< 답변 : 공업경제국장 김 승 기 >

○우리 도의 관광개발은 권역별로 특색있는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충주지역은 온천관광지로, 제천·단양지역은 산림감상관광지로, 보은지역은 속리산 등 역사 문화관광지로, 옥천.영동은 양산팔경 등 산악탐방 관광지로 개발하는 등 2대권역 25개 거점지역에 대한 관광권역별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중임

○민간자본 추진지구는 충주 칠금지역, 제천 교리지역 등 5개지구로 3,788억원 투자계획이며

○한천팔경은 관광개발 권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광지로 지정할 수 없어 자연발생 유원지 정비사업지구로 지정하여 도 및 군에서 2억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질 문 요 지

○농지에 공급하는 유기질 퇴비 제조의 규제 조건과 충북도의 관리 방법은

< 답변 : 농정국장 박 만 순 >

○유기질 비료인 부산물비료 생산업체는 도내에 16개소이며 원료명과 배합비율 명시, 비료관리법 시설기준 적합, 농업과학기술원 제1차 생산비료 시료검사 합격후 허가를 해주고 있음

질 문 요 지

○지역주민과의 갈등해결, 공동개발체계 강구 등 물한계곡 개발의지는
○민주지산 일대를 청소년수련관, 생태박물관, 산촌마을 조성등 생태관광지로 개발 정책은
○한천팔경을 관광지로 지정할 용의는

< 답변 : 공업경제국장 김 승 기 >

○물한계곡 문제는 '92년에 국토이용계획까지 완료가 되었으나 '94년 환경영향 평가중 보완요구 미이행 등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휴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진입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시설을 추진하고 있음

질 문 요 지

○용담댐 개발에 따른 예상되는 피해상황, 문제점과 계획은
○용담댐 완공후 농공업용수, 생활용수 확보계획 및 수량, 수질변화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 답변 : 건설교통국장 송 완 호 >

○용담댐은 전북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금강 상류에 연장 480m, 높이 70m 저수량 8억톤의 토사댐으로 사업비 9,506억원, 사업기간 '90~'99년으로서
○'93. 9. 17 ~ '94. 12. 12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충북대 건설연구소, 충남대 환경문제연구소와 수자원공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조사연구중
○용담댐 개발에 따른 생태계와 공업용수 피해는 수자원공사에서 기초조사 용역 시행중임
○용담댐 완공후 수량의 변화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용담댐 저수지내 수질오염 방지책으로는 44억원을 확보하여 오염 잔재물 제거,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으로 있음

질 문 요 지

○폐교의 임대료 없이 지역주민 이용, 예술단체 임대등의 공간으로 확보할 의향은
○폐교관리비 현실화 의향은

< 답변 : 교육감 김 영 세 >

○폐교매각 대금은 당해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재투자하고 있고

○현행 규정상 무상임대 방안은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영·공공용 공익사업에 사용시 무상임대 가능

○폐교관리비는 '95년 월 6만원을 '96년 12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앞으로 점차 현실화해 나가겠음

농림수산위원회 이 향 래 의원

질 문 요 지

○충북농민회관 건립 재조정

○과학영농특화지구인 보은에 농업전문대학 설립용의

< 답변 : 도지사 주 병 덕 >

○경영주체, 활용방법에 대한 문제로 전면 재검토중임

○1시도에 1도립대학만 국고지원한다는 교육부의 방침과 막대한 시설비, 운영비 소요로 도립전문대학 설립은 사실상 어려움

질 문 요 지

○무분별한 지하수의 취수로 인한 농촌지역 식수고갈에 대한 현황파악과 대책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지하수 사용시 1년마다 받고 있는 수질검사를 영세업자 불편해소와 검사료 부담경감을 위하여 매3년마다 실시할 용의는

○휴양지에서의 행락철 쓰레기 대책 및 화장실, 주차시설 확보대책은

○초등학교 예방접종시 예방접종 대금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용의는

< 답변 : 보건환경국장 조 규 린 >

○기이 개발 취수공 중 용도폐기된 취수공은 조사하여 폐공 조치하고 먹는물 제조판매도 계획성 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건의하여 환경부에서 시도의견을 수렴하여 검토중임

○가뭄으로 제한급수, 운반급수 지역중 95개 마을에 예비비를 투입해서 암반관정 개발하고, 기타지역은 광역상수도 공급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임

○식품접객업소는 많은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업소로서 주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겨올 수가 있고 확산되고 있는 오염지역등 제반 실정을 감안할 때 현행 검사기간 1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모든 유원지, 산과 계곡, 강과 하천변 등에 대한 대청소를 범도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유원지의 간이화장실, 주차장, 급수시설 등을 주기적 점검하여 정리, 수리, 정비하겠음

○국가에서는 예산사정 등으로 예방접종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결핵과 일본뇌염은 3~15세에 대하여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전액부담
-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등은 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종사자에게만 국비와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그외는 본인부담
- 앞으로 정부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접종료 지원을 확대하도록 건의하겠음

질 문 요 지

○통합실시요령 폐지와 요란한 쌀증산시책 이유는
○농민자율에 의한 식량증산과 시장기능에 의한 쌀값 조정을 위한 대안은
○미곡종합처리장의 추진상황, 문제점과 산물벼 수매계획은
○산간오지 유휴토지 활용방법과 휴경지의 영농대행 추진상황은

< 답변 : 농정국장 박 만 순 >

○국내 쌀생산 재고량이 급격히 줄어 금년 말에는 국민 한달의 소비량도 안되는 278만석으로 예상되고 있어 식량안보상 쌀 증산시책을 서두를 수 밖에 없음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은 '91~2000년까지 전국 400개소, 도내 23개소 건립계획으로 도내에는 지난해까지 15개소 설치, 금년에 음성농협 등 5개소 추진중임

○산물벼 수매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제도로 도내 수매물량 1만톤 중 50%는 정부수매가격, 50%는 농가와의 합의가격으로 10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매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현 수매제도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수립중임

○쌀 자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벼 재배면적 확보가 중요하여 논에 타 작물 재배시 정책자금 지원을 억제한다는 정부의 방침이나 실제 벼 재배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정책지원을 허용

○휴경논 영농대행 추진상황은 도내 휴경농 경작가능 면적은 전체 휴경논 2,237헥타의 67%인 1,491헥타이며, 휴경논 경작을 위하여 도와 시군에서 예비비 6억7,100만원을 경운 정지비 등으로 지원하였고 농협에서 종자대와 비료.농약대를 헥타당 24~40만원씩 지원

○소규모 기반정비 대책으로 정부추진 농지개량사업은 10헥타 이상 지구를 대상으로 일반경지정리사업 추진

질 문 요 지

○도시계획 조정시 사업지역으로 변경되지 않아 도시개발 및 미관을 해치고 있는바 도시기본계획 재검토 요구시 조정할 용의는

< 답변 : 건설교통국장 송 완 호 >

○도시계획 체계의 절차는 20년을 기간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과 10년 기간으로 하는 재정비계획으로 구분되어 있고 두 계획은 매5년마다 재검토 재정비하고 있으며, 하위계획으로 사업계획, 실시계획, 집행계획이 있음

○보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요구가 되었으나 보은읍에 상업지역이 과다하게 계획되었다 해서 부결된 지역이며, 보은인구가 '91년 18,000명에서 현재 12,777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분적인 용도지역 상향조정은 신중히 검토할 사항임

질 문 요 지

○우량품질 개발과 시험연구를 위한 연구직 충원계획은

○'94~'95 시범사업 중 국비.도비사업의 선정과정과 내역은

○사업선정의 근거와 기준은

< 답변 : 농촌진흥원장 이 상 석 >

○'92~'95년까지 농촌지도직 48명을 연구직으로 전환하여 연구직이 85명으로 증원되었음

○농촌지도기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새 기술을 바로 다수 농민에게 보급하여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사업으로 선정절차는 다양한 사전홍보와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 시군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사업지역과 농가를 선정

○'94~'95년 국비지원사업은 35개사업 9억6,400만원, 도비시범사업은 35개사업 27억1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사업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음

□ 제3차 본회의 : 1996. 4. 23 (화)

○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건설교통위원회 최 선 환 의원

질 문 요 지

○대청댐·충주댐 낚시터 수면허가 연장은 수자원공사의 수면사용 동의가 선행되어야 연장허가가 가능하나 수면사용을 부동의하고 있는 바 수면사용 동의를 위해 추진한 사항과 대책은

○농어촌 및 개발제한구역내 인문계 고교생 학비지원

< 답변 : 도지사 주 병 덕 >

○도내 가두리양식장은 대청호 16개소, 충주호 33개소 총 49개소이고 충주호 유료 낚시터는 10개소 임

○대청호·충주호 제한구역 설정에 대한 대책안과 댐물관리법 개정 건의안을 중앙부처에 제출하여 현재 검토중임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수면사용 동의를 받아 오겠음

○정부에서는 '90년부터 면지역 영세농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해 오고 있고 도내에는 지난해 7,200명 34억2천만원, 금년도 6,900명 38억7,000만원을 지원 할 계획임

○농촌과 개발제한구역 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지원대책은 중앙부처에 계속 강력건의 하겠음

질 문 요 지

○대청댐·충주댐의 보전지역, 보호구역 해제 조정

< 답변 : 보건환경국장 조 규 린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청댐 주변지역은 고시개정안 철회요구, 규제에 상응한 주민보상대책, 지역숙원사업 건의 등 현재 관계부처간에 협의 중임

○충주댐은 법률상 특별규제지역 고시나 상수도보호구역 제한은 없으나 댐의 물 보전차원에서 사실상 규제를 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특정다목적댐 개정, 물관리기본법 개정시 원인자, 수혜자 공동부담 규정을 넣기로 합의하여 추진중임

질 문 요 지

○1960년 충주비료공장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취수보로 인하여 충주시 동량면 일대는 해마다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본 지역을 답사 연구하여 철거 방안 강구와 취수탑 개수토록 건의할 용의

○충주댐은 당초 홍수위선 65.5m까지만 보상 조치되었으나 '95년도 홍수위선이 68m까지 상승되어 해마다 수문조절시 침수되고 있어 홍수위선 68m선까지 상향조정하여 보상추진 할 용의는

○'96년도에 하상정리 예산을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전 하천에 대하여 하상정리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대 계상할 용의는

○36번국도 보완포장

< 답변 : 건설교통국장 송 완 호 >

○1960년 충주비료공장의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설치되어 현재는 새한미디어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음

○'93. 9. 23일 충주댐관리소장으로부터 유수이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서 금년도 9. 8일까지 허가되어 현 시점에서 조속 제거는 지난한 실정이며, 피해방지를 위하여 대전국토관리청에서 '91년에 8억9천만원을 들여 제방 1,002m 축조하였고 이후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하겠음

○'95. 9. 11일 충주댐 하류지역의 농경지 피해방지 및 보상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수자원공사 사장에 건의하였고, 제방 미개수 지역인 동량제, 창동제, 가주제 제방공사에 해발 68m선까지 농경지보상, 수문조절 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금년에 85억2,600만원을 투자 4,427m의 제방공사 집행중이며 세부내역은 동량제 26억4,700만원 1,333m, 창동제 34억4,800만원 1,514m 가주제, 24억3,100만원 1,584m임

○하상정리사업은 하천의 잡초, 수목 또는 퇴적물의 제거 등으로 유수통행을 원활히 함으로써 수해에 사전 대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1억7,500만원, 시군비 1억2,500만원등 3억원을 예산 요구하였음

○도내 주요도로 콘크리트 포장현황은 경부고속도로 90.5㎞, 중부고속도로 55.8㎞, 중앙고속도로 9.9㎞, 국도 4호선 5.8㎞, 국도 5호선 28.3㎞등임

○콘크리트 포장은 겨울철 강설시 결빙으로 인한 안정성과 주행성 등이 다소 불리하지만 튼튼하고 내구성이 커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유리하고 준공후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데 비하여 아스팔트 포장은 주행성이 좋고 눈이 잘 녹으나 덧씌우기를 자주 해야 하므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됨

○국도36호선 재포장은 대전국토관리청에 건의하고 동절기 강설시에는 빠른 시일내에 제설작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기획경제위원회 박 만 순 의원

질 문 요 지

○도정대화의 날 운영 부진이유와 향후계획은
○공무원 안식휴가제도 활용 용의는

< 답변 : 도지사 주 병 덕 >

○도정대화는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더욱 알차게 되고 있음
○검토해서 총무처장관에게 건의하겠음

질 문 요 지

○충북 21세기 위원회 운영 및 활용실적
○2. 13일 조직개편시 공기업담당관실 공영개발계와 공영개발단의 업무중첩과 재난관리과 신설은 옥상옥이 아닌지
○시군의 도예산 지원시 시군간 형평성을 위하여 도 자체의 선정기준을 만들 용의는
○시군에 자본보조시 1~2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도 지정교부를 하는 것은 시군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예산편성시 경상경비 절감이나 예산절감하는 시군에 인센티브 부여 용의는

< 답변 : 기획관리실장 이 석 의 >

○자문 받은 내용은 도정 각 분야에 걸쳐 7개 실국에서 충북 100년 기념사업, 청주공항 건설 등 16개의 주요 현안사업을 자문 받은 바 있고
○출향인사 참여에 대하여는 차기 선임시 참고하여 방안 강구

○공영개발계와 공영개발사업단과의 업무 중첩성은 공영개발계는 경영수익사업의 기획 발굴, 민관공동출자 사업 추진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추진하거나 해야할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공영개발사업단은 택지의 조성 및 분양, 공단의 조성과 분양등 집행
○두 부서의 관계는 산림과와 산림환경연구소, 축산과와 농축산사업소의 관계와 유사함

○재난관리과의 옥상옥 여부는

·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계획의 수립, 재난의 사전 예방과 사후수습 대책, 재난관리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안전도 등 총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도의 일반회계 예산 5,877억원중 자체 사업비는 17%에 해당되는 988억원에 불과하며, 이중 도 집행 514억원, 시군보조 집행은 474억원임

○시군에 1~2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비 지원은 지방행정의 복잡,다양성으로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며 시군의 자율성을 저해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것은 아님

○내무부가 지방교부세를 각 자치단체에 교부하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고 있고, 내무부와 15개 시도가 공동으로 모든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재정진단 모형을 마련중에 있어 인센티브 부여 방안 시행을 기대하고 있음

질 문 요 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과 의식교육 실천의 구체적인 사례는

○세금부과시 산출방법 및 기초를 납세자에게 제시해 주고 전산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할 용의는

○고지서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은데서 발생하는 체납세금의 개선대책은

< 답변 : 내무국장 최 경 주 >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으로 20년이상 근속공무원 격려, 보훈대상 공무원 격려, 기능직이하 현업부서 공무원 격려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공무원 의식개혁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교육원 정신교육 분야를 20%에서 25%로 확대 운영중이며, 충북강좌, 직원보수교육을 이용하여 교육

○지방세는 세목이 많은 데다 세목별 과세 객체의 종류와 과세물건과 과액이 다양하고 과표의 산출, 세율의 적용이 복잡하여 과오납금의 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근절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사례중심의 실무교육과 업무 연찬을 지속 실시하고, 지방세 부과징수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과세표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음

○납세고지서는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달이 원칙이나 유동인구의 급증,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금년 하반기 부터 통리장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고지서를 전달할 계획임. 경기도의 시행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에 도입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하겠음

질 문 요 지

○도내 관광객 감소 원인과 대책은
○충주호권 10개지구 관광개발계획 중 8개지구의 개발계획 무산여부와 이 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은

< 답변 : 공업경제국장 김 승 기 >

○우리 도를 찾은 관광객은 '94년 1,840만명, '95년 1,860만명으로 1.2%증가, '96년 1/4분기 210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5%감소 하였으며, 감소원인으로는 선거에 따른 단체관광 자제, 학생 수학여행의 심신단련시설 이용방침, 대만해협 긴장 등 국제정세의 영향 등으로 사료됨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시설 확충, 먹거리, 볼거리, 할거리 등 관광여건 조성, 관광지 연결 각종 도로망 완비 추진 등과 함께 경부고속도로 청원IC에 충북관광홍보판 설치, 관광지 진입 주요도로의 관광안내 표지판 및 관광안내판 일제 점검실시
○충주호주변 10대거점지구 관광개발사업은 4개지구는 추진중이며, 6개지구는 미착수 상태임
○미착수 6개지구는 '86년부터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충주호 수질등급이 현재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후 개발 검토한다는 관계부처의 통보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에서는 충주호 수질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소규모로 개발하여 관광지를 벨트형태로 개발할 계획임.

질 문 요 지

○청주국제공항, 오창테크노빌, 오송고속전철역,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 오송신도시, 현도 내륙컨테이너기지 등의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 및 이에 따른 청주시의 연결교통망 계획과 사업비에 대한 도의 대책은
○청주 고속버스,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 답변 : 건설교통국장 송 완 호 >

○청주국제공항은 2000년대의 중부권 항공수요에 대비한 거점공항으로서 지난 '91년 착공하여 내년 3월에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음

○오창테크노빌은 오창면과 옥산면 일원에 285만평의 규모로 '92년부터 계획을 수립.착수하여 2001년에 완공을 목표로 6,571억원을 투입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164개 업체가 입주하게 되고 상주인구는 5만명을 수용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설은 현재 약 3만평의 부지에 청사신축공사의 교각 및 슬라브를 시공중에 있으며 경부고속철도가 운행을 시작하는 2002년에 동시에 개통 되도록 노력

○충북선 전철화 사업은 조치원에서 제천-봉양간 115㎞ 구간의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에서 총 사업비 2,439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 4월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용역 완료계획, '97년도에 기본계획 및 투자계획을 결정하여 사업 착수 예정

○보건의료과학단지는 보건복지부 산하 5개 정부기관과 신약,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민간연구소 및 보건복지부 산하 산업체, 보건의료 관련 대학 등을 집단화하여 의료과학 분야의 총 본산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송신도시지역의 강외면 오송리 일원에 약 300만평의 국가공단을 2001년까지 약 7천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할 계획임

○오송신도시 건설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 시행하되 위치는 청원군 강외·강내면 일원에 총 규모 2,262만평의 부지에 계획인구 30만명을 수용, 청주광역권의 개발을 주도하는 신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며 '95년부터 2001년까지 약 3조510억원을 투자하는 개발계획을 추진중이며, 1단계 사업은 '95년부터 2001년까지 보건의료과학단지 300만평과 역세권 개발 234만평이주단지 50만평 등 584만평에 2조150억원을 투자하고, 2단계 사업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잔여지 1조36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작년 1월에 발주하여 금년 12월에 완료하고 '97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수립 지난 4. 1일 오송신도시건설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중임

○내륙컨테이너기지는 청원군 부용면 향산리 일원에 약 20만평 부지에 '96년부터 '98년까지 7,033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하는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기지로서 국내 화물의 집하 및 포장.배송.배관.보관.기능 등을 담당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현지조사가 완료되었고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그 기본계획이 금년 11월까지 완료되면 본격 추진

○청주주변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망 확충방안은 청주공항 진입로인 청주에서 오창간 9.7㎞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총 사업비 970억원을 투자하여 청주-공항간 4.5㎞는 6차선으로 오창-공항간 5.2㎞는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95. 11월 착공, 공항-중부고속도로 오창IC간 연결도로 공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150억원을 투자 '96년 착공하여 '98년 준공계획으로 추진중, 오창IC-미호천간 2.8㎞구간은 한국토지개발공사 에서 사업비 245억원을 투자하여 6월에 착공해서 98년에 준공, 미호천 구간 IC 1.2㎞와 청주공항-IC간 4.5㎞는 대전국토관리청에서 630억원을 투자하고 공항IC-공항간 2㎞는 공항청에서 '94년도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이며, 공항과 과학단지 연결도로인 지방도 510호선의 오창-증평간 11.1㎞는 총 사업비 547억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64억원을 투자하여 1.4㎞ 공사중이며 '98년까지 준공계획이고, 과학산업단지 연결도로 508호선, 오창-옥산간 11㎞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비 174억원을 투자하여 '98년 준공예정이며, 오송신도시 연결도로인 옥산-오송간 8.2㎞는 오송신도시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추진할 계획임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은 청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청주시장이 추진하는 도시계획사업이며, '88년 청주시에서 종합터미널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92년 공영개발단에서 가경2지구 택지개발부지 조성사업 완료되어 본격추진중 당초 가경2지구에 고속터미널 11,900평중 6천평을 시외버스터미널로 계획하였으나 협소하여 별도로 가경3지구에 만평의 시외버스터미널부지를 지정하여 6천평은 터미널 시설을, 4천평은 부대시설을 할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단계에 있음

○그러나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동시이전이 안될 경우 승객의 감소에 따른 경영손실을 이유로 이전을 기피하고 있음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은 가경3지구내의 부지매입을 공영개발사업단과 계약체결 완료되었고 사업자인 성환백화점으로 하여금 즉시 터미널 공사를 착공하게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가 되도록 촉구하겠음

내무위원회 김 동 진 의원

질 문 요 지

ㅇ충북1백년 기념사업을 지역의 역사성을 살리고 각 시군의 실정에 맞는 기간을 정하여 전 도민의 행사가 되도록 계획의 재조정

ㅇ도민전체의 참여와 도청소재지 문화재 복원등 내실있는 사업 추진과 기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추진방향은

ㅇ청소년문제 해결방안과 여가선용시설 설치 등 건전한 생활공간 마련으로 청소년의 밝은 미래상 정립을 위한 대책과 방안

ㅇ대기업과 지방업체 공동계약 공사의 경우 지방업체의 출자비율을 현재의 10%에서 40%이상으로 의무화 하는 등 지방업체의 대형공사 참여기회 확대 추진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은

ㅇ특수세원 지방세화, 토지.건물과표 현실화,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 등 지방세의 안정적 확충방안과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유료화 및 현실화

ㅇ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향상

ㅇ지방세원 관리의 전산화

ㅇ지방재정 구조개선 및 자주재원 확보방안

< 답변 : 내무국장 최 경 주 >

ㅇ기념사업계획은 18개 기념사업 대부분이 도내 전역과 관련되어 추진되도록 했으며 15개의 시군 주관사업은 시군의 특색과 실정에 맞게 선정하여 도내 전역에서 도민 모두가 참여하고 경축하는 분위기에 역점

ㅇ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은 9~24세까지로 도내 인구의 31%인 44만1천명으로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올바른 정서 함양, 호연지기와 진취적 기상 제고, 더불어 사는 지혜와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수련활동과 봉사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며 청소년들이 찾아갈 생활권 인근의 1일 수련터전과 방학기간에 가정과 사회를 떠나 찾아갈 자연속의 수련터전 마련이 시급함. 현재 도내에 48개소인 청소년 수련시설등을 2001년까지 219개소로 확충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장기종합계획을 추진중임

ㅇ도에서는 지난해 11. 1일부터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에 따라서 추정가격 50억원 이하의 일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도내 업체들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 입찰방식을 집행하고 있으며

ㅇ업체간의 출자비율은 도급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협정에 의해서 정하여져야 할 사항으로 행정기관에서 40%이상 하도록 의무화할 수는 없음

○그동안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자원을 최대한 세원화하고자 관광세, 광고세 등의 신세원을 발굴,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나 신세원이 개발되더라도 실질적인 세수는 40억원 정도로 극히 미미할 뿐 오히려 주민의 담세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공영개발사업 발굴과 시군 자체의 택지개발, 지방공단 조성 등 공영개발사업을 활발히 전개

○지방세원 관리의 종합적인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 토지거래허가, 자동차등록 등 일련의 과세자료를 온라인화하는 종합전산망을 구축, 지방세정의 완전한 전산화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질 문 요 지

○실버산업 육성을 위하여 설립운영자금의 장기저리 융자알선, 세제상 혜택 부여 등을 통한 실버산업 활성화 방안 및 충북도의 의지는

< 답변 : 사회복지국장 장 상 자 >

○도내 노인인구는 12만1천명으로 도 인구의 8.4%를 차지하고 있고 2000년에는 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들의 복지욕구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정부에서는 지난 '93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민간의 복지투자활성화를 유도 하였고 제도개선으로 사회복지기부금의 법적 기부금으로의 전환과 조세감면 수준 확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치매 특별대책으로 '97년까지 시군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2000년까지 치매전문병원 16개소, 2005년까지 치매요양시설 17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음

○우리 도에서도 실버산업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도 시행하고 있으나 실버산업에 대한 민간의 관심도와 이윤의 기대치가 낮아 아직까지 민간투자가 거의 없는 실정임

□ 제4차 본회의 : 1996. 4. 27 (토)

- o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 o 199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원안가결)
- o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o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o 충청북도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o 충청북도 도민대상 조례안(수정가결)
- o '96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원안가결)
- o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o 충청북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o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o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o 5분 자유발언 (윤병태의원)
  -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제정에 따른 당부
- o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 · 김진학의원과 이희복의원의 퇴직
  - · 위원선임 ┌내 무 위 원 회 권영관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이선호 의원
  - · 활동기간 - 전임자의 잔임기간('97. 1. 7까지)
- o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
  - · 김준석의원 선출(37명중 24표)

4) 회의진행시간

o 개회식 : '96. 4. 16(화) 14:02~14:11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 (평균)	18시간 10분 (4시간 32분)	
1차 (4. 16)	14 : 11 ~ 14 : 40	29분
2차 (4. 22)	10 : 04 ~ 19 : 16	9시간 12분
3차 (4. 23)	11 : 05 ~ 18 : 06	7시간 01분
4차 (4. 27)	10 : 35 ~ 12 : 03	1시간 28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6.7%)

대 상 인 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3	4	1	2	3	4
38명	37	37	36	37	1	1	2	1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 상임위원회 '96. 4. 16 ~ 4. 27 (12일간)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비고
의회운영 위원회	'96. 4.16	1	○제12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 의사일정협의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기획경제 위원회	'96. 4.17 ~ 18 '96. 4.19	1	○명예연구소 등 현지방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 정조례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	
내 무 위원회	'96. 4.18 4.19	1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문화재정비 및 보존실태현지답사 (괴산관내)	
교육사회 위원회	'96. 4.17 ~ 19 4.19 4.20	1-3 3 4	○'96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 정예산예비심사 ○'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 비지출 승인예비심사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 에관한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 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	
농림수산 위원회	'96. 4.17 4.18 4.19		○농촌진흥원 현지 방문 ○조령산 자연휴양림 현지 방문 ○봉황자연휴양림 현지방문	
건설교통 위원회	'96. 4.17 4.18 4.19	1	○제천시 수산면 고명도로 선형개량공 사에 따른 잔여토지 매입요구 청원 ○청주국제공항 건설현장방문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 개정조례	

□ 특별위원회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비 고
예 산 결 산 특별위원회	'96. 4.24 ~ 4.26	1-3	○ '9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종합심사 ○ '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 비지출승인 종합심사	

2) 안건처리현황

위 원 회 별	상정	처리	처 리 결 과					비고
			가 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3	13	10	3				
의회운영위원회	2	2	2					
기획경제위원회	3	3	3					
내 무 위 원 회	2	2	1	1				
교육사회위원회	3	3	2	1				
건설교통위원회	1	1	1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	2	1	1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기획경제위원회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직속기관(지방공무원 교육원) : 정원 감축 1명(5급)

○ 본 청 : 정원 증원 1명(4급)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일반회계의 지역개발기금 의무출연규정(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을 당해 년도 기금운용 여건을 감안하여 10% 범위내에서 출연하도록 조정 (안 제3조제2항)

○ 위원회 정비에 따른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폐지하고 동 기능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함(안 제14조, 제15조)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	도정조정위원회통합운영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정비

· 도매센타의 개설허가 심의기능 추가

· 대규모 소매점 개설자에 대한 권고기능 삭제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직명 변경

· 위원장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농어촌개발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을 각각 농정국장, 공업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

· 간사 상정과장을 경제과장으로 개정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3	3	3					
조례안	3	3	3					

□ 내무위원회

◉ 충청북도민대상조례

< 주요골자 >

○ 현행 10종 59개 이상 → 1종 8개 이상(8개부문)으로 통폐합

○ 충청북도문화상조례 ○ 충청북도장한여성대상조례 ○ 충청북도청소년대상조례 ○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 포상조례 ○ 기타 대상격 일반상훈 6종	→	< 충청북도도민대상 1종 8개상 > ○ 학술부문 ○ 여성부문 ○ 문·예부문 ○ 청소년부문 ○ 지역발전부문 ○ 농어민부문 ○ 교육, 체육부문 ○ 산업, 근로부문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요지

· 충청북도도민에게 수여코자 하는 도민대상으로서의 상훈의 신뢰성 확립과 전문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

안 제5조제1항 조문중 위원수 "각4인" 을 "각5인" 으로 자구수정

◉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 주요골자 >

○ 재산의 취득

· 농촌출신학생 기숙사 신축

- 청주시 지북동 (도유지) 6,600㎡

·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 지방공사 청주의료원내 2,530㎡

· 음성시설채소시험장 온실 신축

-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6-1 727㎡

· 농촌진흥원 이전부지 진입로 매입 및 시험시설 신축

- 진입로 및 시험포지 추가 매입 30,883㎡
- 시험시설 신축 11,359㎡

· 농산물원종생산 토지매입

-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일원 6,950㎡

○소규모 잡종재산의 처분

· 창원군 옥산면 오산리 688-74외 13필지(대지) 5,280.6㎡
· 괴산군 감물면 매전리 369-17외 36필지(전) 34,143㎡
·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 242-8외 20필지(답) 8,469㎡
· 영동군 양강면 가동리 588-4외 5필지(임야) 1,474㎡
·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166-37(도로) 23.1㎡

○국유재산과 교환

· 교환취득

-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173-4(전) 2,152㎡
-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173-6외 1필지(답) 1,332㎡
-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546-16외 1필지(대지) 1,117.4㎡
- 충남 아산시 모종동 562-4외 2필지(대지) 4,366.4㎡

· 교환처분

-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59-1외 15필지(대지, 전) 23,153㎡
- 위 지상 건물 10동 2,919.55㎡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2	2	1	1				
조례안	1	1		1				
일반안건	1	1	1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 주요골자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운영위원회 설치특례(안 제2조)

· 소규모학교 (6급이하 또는 학생수 100명이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결정

○ 학부모 및 교육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전일까지 선출(안 제3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개시일은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 조례안 제5조, 제7조, 제9조, 제14조, 부칙규정 등 조례안 전반에 대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법령상의 모순점이 있는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 주체를 신설하는 등으로 제정하고자 함

○ 수정요지

· 제5조 : 단서규정 삭제

· 제7조 : "(위원의 자격상실)"를 "(위원의 퇴임등)"으로 하고, "그 자격을 상실한다"를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로 자구수정

· 제7조1호 : "학생의 및 교원의"를 "학부모 위원의 학생이 및 교원위원의"로 자구수정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는 자구삽입

· 제7조2호 :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는 자구삽입

· 제9조 : "교원의"의 자구삽입

· 제14조 :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를 "운영위원회는 교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로 자구수정

· 부칙 제3조 신설 제3조(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회의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편도거리 60킬로미터 이상)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 원격지 회의출석비를 회의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토록 함

○ 회기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함

○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의 국내·외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액을 상향조정하여 현실화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토양오염 물질의 사용량 증가와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의한 토양오염 요인이 점증되고 있어

○ 토양오염의 효율적·사전예방관리와 오염토양에 대한 대책강구 및 개선사업 추진 등 토양환경보전업무를 신속하고 합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신고, 대집행 및 과태료 부과등에 관하여 시장·군수·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임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3	3	2	1				
조례안	3	3	2	1				

□ 건설교통위원회

◉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시건설종합계획(안) 심의를 추가

- 상위법령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개정되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시건설종합계획(안)을 도심의회 심의후 승인토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

○ 도 직제개편으로 변경된 위원회 직명 정비

-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 지역경제국장을 "공업경제국장"으로
-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 종전의 간사(지역계획과장) 및 서기(지역계획과 지역계획계장)을 "심의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장" 및 "업무주관 계장"으로 각각 정비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례안	1	1	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9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 주요내용 >

(단위 : 천원)

장 별	예 산 액	'95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내역		
		요구액	증	감
합 계	627,561,246	627,561,246	806,401	806,401
교육위원회	737,175	755,175	-	18,000
본 청	515,444,541	516,232,942	-	788,401
청주교육청	34,510,439	34,510,439	-	-
충주교육청	18,322,813	18,322,813	-	-
제천교육청	10,760,199	10,760,199	-	-
청원교육청	6,825,209	6,825,209	-	-
보은교육청	4,737,017	4,737,017	-	-
옥천교육청	3,728,234	3,728,234	-	-
영동교육청	7,830,305	7,830,305	-	-
진천교육청	4,099,427	4,099,427	-	-
괴산교육청	7,950,709	7,950,709	-	-
음성교육청	6,704,973	6,704,973	-	-
단양교육청	3,222,817	3,222,817	-	-
예 비 비	2,687,388	1,880,987	806,401	-

< 심사결과 > 수정의결

○ 수정요지

· 1996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요구액 6,275억 6,124만 6천원 중 8억 640만 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예산(안) 조정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수정의결

◉ '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

< 주요내용 >

(단위 : 천원)

건 명	지출결정일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액	비고
계		138,783	138,783	0	
공무상 재해보상 부족분 지원	'95. 7. 10	50,783	50,783	0	
중부지방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비 지원	'95. 9. 5	88,000	88,000	0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2	2	1	1				
예산안	1	1		1				
승인안	1	1	1					

第 11 節 第125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25회 임시회는 김준석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5월 13일 집회공고하고,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5월 21일 오후2시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1996. 5. 21 (화) ~ 5. 30 (목)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조례안 - 9건

○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 '95년도 충청북도 및 교육청 결산검사위원 선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변경)선임

※ 김준석의원 → 김춘식의원으로 변경선임

○ 5분자유발언

· 농림수산위원회 정태정의원 : 용담댐건설 관련

· 건설교통위원회 한상문의원 : 행정구역조정 관련

· 건설교통위원회 김원식의원 : 문화제행사 및 제천역 열차관광 보도 관련

· 건설교통위원회 최선환의원 : 하상정리 수목제거예산 미책정 관련
(수해대비책 미흡)

○ 의원연찬회

· 일　시 : '96. 5. 21 15:00~17:00

· 주　제 : 예산·결산심사기법 등

· 강　사 : 국회 의정연수원 신해룡 교수

※ 회의록 서명의원 : 차주용, 이향래의원

2) 의안처리현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승 인 안	건 의 안	기 타
1 3 건	9	1	·	1	2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1996. 5. 21 (화)

○ 제1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원안가결)

· 회 기 : '96. 5. 21 ~ 5. 30 (10일간)

○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변경)선임

· 김준석의원 → 김춘식의원으로 변경선임

○ 5분 자유발언

· 농림수산위원회 정태정의원

- 용담댐건설에 따른 도민의 관심촉구

· 건설교통위원회 한상문의원

- 행정구역 조정관련

※ 의원연찬회

· 일 시 : '96. 5. 21. 15:00~17:00

· 주 제 : 예산·결산심사기법 등

· 강 사 : 국회 의정연수원 신해룡 교수

□ 제2차 본회의 : 1996. 5. 30 (목)

○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수정가결)

○ 충청북도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충청북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 1지역 1명품 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안(원안가결)

○ 개발제한구역 조정건의안

· 발 의 - 건설교통위원회 이민희의원 외 8인

※ 의회운영위원회에 재회부하기로 의결(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0조)

○ 1995년도 충청북도 및 교육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 5분 자유발언

· 건설교통위원회 김원식의원

- 각종 문화제 행사시 시정할 부분
- 제천역 열차관광 보도에 관한 소견

· 건설교통위원회 최선환의원

- 하상정리 수목제거 예산 미책정

※ 수해대비책 미흡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96. 5. 21(화) 14:03~14:12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 (평균)	1시간 51분 (55분)	
1차 (5. 21)	14 : 13 ~ 14 : 51	38분
2차 (5. 30)	11 : 09 ~ 12 : 22	1시간 13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6.1%)

대 상 인 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1	2
4 0 명	37	36	1	2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 상임위원회 '96. 5. 21 ~ 5. 30 (10일간)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비고
의회운영 위원회	'96. 5.21	1	○제125회 임시회회기결정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9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협의	
기획경제 위원회	'96. 5.22	1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예비심사	
	5.23	2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예비심사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내 무 위원회	'96. 5.21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	
	5.22	2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 및분양에관한조례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 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5.23	3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예비심사	
	5.27	4	○행정구역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 (진천 문백 도하리 → 청원 오창면)	
	5.28	5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교육사회 위원회	'96. 5.22	1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23	2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	
농림수산 위원회	'96. 5.22	1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 조례	
	5.23	2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29		○농정 유관기관 현장 방문	
건설교통 위원회	'96. 5.22 ~ 23	1-2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96. 5.25	3	○개발제한구역조정 건의	
	'96. 5.29		○유관단체와의 간담회	

□ 특별위원회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비 고
예 산 결 산 특별위원회	'96. 5.27 ~ 29	1-3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종합심사	

2) 안건처리현황

위 원 회 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비 고
			가 결		부 결	보 류	기 타	
			원 안	수 정				
계	11	11	6	5				
의회운영위원회	1	1	1					
기획경제위원회	1	1	1					
내 무 위 원 회	5	5	2	3				
교육사회위원회	1	1	1					
농림수산위원회	1	1	1					
건설교통위원회	1	1		1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1	1		1				

3) 주요안건심사경과 및 결과

□ 기획경제위원회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본청의 정원 4명을 증원 : 6급 2명, 7급 2명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 리 내 용					비 고
			가 결		부 결	보 류	기 타	
			원 안	수 정				
계	1	1	1					
조 례 안	1	1	1					

□ 내무위원회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 주요골자 >

○ 공업단지조성과 분양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사업의 시행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장 또는 위탁 시행

· 토지매입, 사업비의 결정, 공업용지의 조성 및 사용

○ 공업단지 심의위원회 운영

· 설치, 구성, 기능, 회의소집, 사무처리

○ 용지분양

· 입주자격, 분양가 결정, 분양절차 이행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 지방공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애매한 자구의 표현을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수정요지

· "지장물" → "지상권"(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과 제6조 제2호의 조문중 자구수정)

· "제28조" → "제29조"(안 제28조(규칙) 조항의 일련번호 조정)

· "본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입주업체와의 용지분양 계약체결이 전체 분양면적의 70%이상일 경우에 시행한다"(안 제28조로 조문 신설)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 주요골자 >

○ 세입 내역 : 보조금, 기채, 선수금, 기타 수입금등

○ 세출 내역 :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이주대책비, 조성사업의 공사비,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 조성에 직접 소요되는 기채이자·정산금·이주대책 소요 사업비 및 기타 공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 전 입 : 독립채산 원칙(세출부족액 발생시 일반회계 전입)

○ 준용 규정 : 조례이외의 내용은 일반회계 준용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수정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96년 2월 조직개편 및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사무관장부서의 경비

○ 도지사 권한 사무중 시장, 군수, 출장소장이 처리함이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사무위임

○ 관계법 개정으로 업무폐지 및 위임조항 정비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요지

· 시.군으로 위임하는 행정사무위임 내용의 사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시행상의 착오를 줄여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위법 조항을 명시하여 위임범위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 수질관리과 소관 사무 제2호 (가)항에 단서 자구을 삽입하여 수정의결함.

◉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용어의 정리 및 조문정리

· 내부위임규정 ⇒ 위임규칙 · 자진신고납부 ⇒ 신고납부

·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 30일 ⇒ 30일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6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 결정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토지관련 조문 삭제

○ 세무공무원의 현금 수납범위 신설

·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가산금 제외)이 500천원이하인 도세를 징수하는 경우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임대주택사업자 및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지원 확대

· 공동주택 건축주가 공동주택을 건축후 미분양등의 사유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매입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분양받은후 2월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일부 조문의 보완 및 정리

· 1가구 1주택의 개념 정리(안 제13조제3항)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정리(안 제14조)

· 농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범위 정리(안 제19조제1항)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중복감면 배제(안 제25조)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5	5	2	3				
조례안	5	5	2	3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제6조제3항 : 운영위원 내무국장 → 보건환경국장

○ 제6조제4항 : 간사 국민운동지원과장 → 환경관리과장

○ 제9조(별표 : 시설사용료) : 전국 평균수준으로 상향조정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례안	1	1	1					

□ 농림수산위원회

◉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

< 주요골자 >

○ 기금의 재원 마련 및 관리·운용

· 내무부 교부세와 도비로 기금 조성

· 금융기관과 협약체결로 위탁관리 및 융자지원

○ 기금의 지원범위 및 융자대상사업 선정

· 기금은 명품으로 선정된 품목에 한하여 지원

· 선정된 명품중에서 시장·군수의 추천에 의해 도에서 심의 확정

○ 융자금의 대출한도 및 조건

· 기 준 : - 농특산물, 민·공예품 → 개소당 1억원 이내

- 향토전통음식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 조 건 :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금리는 연 2%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례안	1	1	1					

□ 건설교통위원회

◉ 개발제한구역조정건의

< 제안이유 >

○ 그린벨트 지역의 낙후 및 재산권 제한

○ 개발제한 구역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재산손실

○ 개발제한 구역내 주민불편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 건의 취지와 목적은 달성하되 15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충청북도의회 명의로 대외에 건의하는 것은 외교문서와도 같아서 표현의 문구를 다듬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건의안	1	1		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 주요내용 >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소관별	예산액	제출예산액		수정내역	
		계	'96. 제1회	증	감
합계	652,952,861	652,952,861	65,250,975	771,538	771,538
기획경제위원회	80,892,578	80,848,040	7,978,754	771,538	361,000
공보관실	584,753	586,753	500	-	2,000
감사실	173,684	175,184	18,540	-	1,500
기획관리실	62,486,834	62,025,296	4,596,014	771,538	310,000
공업경제국	17,647,307	17,694,807	3,363,700	-	47,500
내무위원회	174,351,647	171,605,885	22,540,514	-	254,238
내무국	103,273,992	103,499,810	7,715,079	-	225,818
민방위재난관리국	988,192	989,692	649,647	-	1,500
소방본부	26,877,359	26,877,359	3,591,730	-	-
공무원교육원	2,351,003	2,352,003	1,160	-	1,000
도민교육원	1,441,501	1,441,501	0	-	-
증평출장소	36,419,600	36,445,520	10,582,898	-	25,920
교육사회위원회	103,198,074	103,202,474	5,592,611	-	4,400
보건환경국	39,306,310	39,309,210	3,741,434	-	2,900
보건환경연구원	2,223,939	2,223,939	96,095	-	-
사회복지국	61,667,825	61,669,325	1,692,082	-	1,500
농림수산위원회	186,636,283	186,775,783	14,345,697	-	139,500
농정국	170,116,086	170,193,186	15,360,784	-	77,100
농촌진흥원	16,520,197	16,582,597	△1,015,087	-	62,400
건설교통위원회	107,311,538	107,316,438	14,451,559	-	4,900
건설교통국	107,311,538	107,316,438	14,451,559	-	4,900
의회운영위원회	3,562,741	3,570,241	404,840	-	7,500
의회사무처	3,562,741	3,570,241	404,840	-	7,500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제 출 예 산 액		수 정 내 역	
		계	'96. 제1회	증	감
합 계	233,916,654	233,916,654	26,812,814	9,000	9,000
공기업특별회계	201,468,742	201,468,742	14,944,082	9,000	9,000
공 영 개 발	62,034,710	62,034,710	4,728,174	9,000	9,000
지역개발기금	139,434,032	139,434,032	10,315,908	-	-
기타특별회계	32,447,912	32,447,912	11,868,732	-	-
의료보호기금	19,0005,612	19,005,612	3,185,155	-	-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운영관리	3,558,723	3,558,723	1,000,000	-	-
대청호특별대책 지역환경기초 시설운영관리	2,083,577	2,083,577	△ 116,423	-	-
증평지방공업 단지조성사업	7,800,000	7,800,000	7,800,000	-	-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요지

·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8,868억6,951만5천원중 7억8,053만8천원을 삭감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의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 리 내 용					비 고
			가 결		부 결	보 류	기 타	
			원 안	수 정				
계	1	1		1				
예 산 안	1	1		1				

第 12 節 第126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26회 임시회는 김준석의원외 13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96년 6월 10일 집회공고하고 주요사업현지확인과 사회단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6월 17일 오후2시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1996. 6. 17 (월) ~ 6. 22 (토)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조례안 - 1건

· 충청북도 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 (내무위원회 제안)

○ 개발제한구역 조정건의안 (이민희의원 외 8인 발의)

· 의회운영위원회 재회부 심사 후 본회의 부의사항임.

○ 낙농가 특별지원에 관한 건의안(농림수산위원회 제안)

○ 5분 자유발언

· 건설교통위원회 김원식의원 : 도민체전 개최지 관련

· 농림수산위원회 이향래의원 : 관광특구지정 관련

· 농림수산위원회 박온섭의원 : 2002년 월드컵 개최관련

※ 회의록 서명의원 : 김대호, 박온섭의원

2) 의안처리현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승 인 안	건 의 안	기 타
4 건	1	·	·	2	1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1996. 6. 17 (월)

○ 제1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원안가결)

· 회 기 : '96. 6. 17 ~ 6. 22 (6일간)

○ 5분 자유발언

· 건설교통위원회 김원식의원 : 도민체전개최지 관련

· 농림수산위원회 이향래의원 : 관광특구지정 관련

□ 제2차 본회의 : 1996. 6. 22 (토)

○ 충청북도 청소리옴부즈만 조례안 (원안가결)

○ 개발제한구역 조정건의안 (수정가결)

○ 낙농가 특별지원에 관한 건의안 (수정가결)

○ 5분 자유발언 (농림수산위원회 박온섭의원)

· 2002년 월드컵개최 관련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96. 6. 17(월) 14:07~14:16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 (평균)	1시간 04분 (32분)	
1차 (6. 17)	14 : 17 ~ 14 : 34	17분
2차 (6. 22)	11 : 05 ~ 11 : 52	47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7.4%)

대 상 인 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1	2
38명	37	37	1	1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 상임위원회 '96. 6. 17 ~ 6. 22 (6일간)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비고
의회운영 위원회	'96. 6.17	1	○제126회 임시회 회기결정	
내 무 위원회	'96. 6.18 ~ 20 6.21	1-3 4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 ○행정구역조정촉구건의 ○생활체육협의회 업무현황 청취	
농림수산 위원회	'96. 6.18 ~ 19	1-2	○농정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낙농가특별지원에관한건의	
건설교통 위원회	'96. 6.18 ~ 21		○현지방문	

2) 안건처리현황

위원회별	상정	처리	처리결과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4	4	2	1		1		
의회운영위원회	1	1	1					
내무위원회	2	2	1			1		
농림수산위원회	1	1		1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내무위원회

◉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

< 주요골자 >

○ 청소리옴부즈만 설치

· 충청북도지사 소속하에 독립 구성

○ 청소리옴부즈만의 직무 책무

· 도정에 관한 고충, 비위등의 조사, 권고, 의견표명, 공표

○ 청소리옴부즈만의 조직 구성

· 사회적 신망과 지방행정의 식견이 풍부한 청소리옴부즈만 대표1인을 포함한 3인 이내로 구성

· 청소리옴부즈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 조사 및 연구 업무수행을 위한 정원 조정

○ 고충처리 신청 및 절차, 조사방법 명시

○ 시정조치 권고 및 의견표명과 조치결과 통보등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행정구역조정촉구건의

< 제안이유 >

○ 주민불편 해소

○ 행정수행의 효율성, 합리성 확보

○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지역 이기주의 해소

< 심사결과 > 보류(지방자치단체간 의견 불일치)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2	2	1			1		
조례안	1	1	1					
건의안	1	1				1		

□ 농림수산위원회

◉ 낙농가 특별지원에 관한 건의

< 제안이유 >

○ WTO 체제 출범과 무분별한 수입 유제품으로 도내 낙농가는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또한 우유 소비 감소와 서주산업(주)의 부도로 인하여 도내 원유납품 낙농가는 생계에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낙농가가 희망과 용기를 갖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 국회의장직이 공석인 상태로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실 양편으로 건의함이 타당하여 건의처 확대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건의안	1	1		1				

第 13 節 第127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27회 임시회는 김준석의원외 13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96년 7월 9일 공고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6 상반기 주요사업추진상황 보고 청취, 그리고 조례안의 심의의결 등을 위하여 7월 18일 오후2시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1996. 7. 18 (목) ~ 7. 24 (수)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 조례안 - 4건
- ○ 도정보고 (교육시책 포함)
- ○ 용담댐하류 수질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수량조절 건의안
- ○ 도농복합형태의 시 특별지원 약속이행촉구 결의안
- ○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 5분자유발언
  - · 기획경제위원회 김재근의원 : 내륙운하건설 관련
  - · 건설교통위원회 최종철의원 : 청주민영방송국 창설방향 관련
  - · 건설교통위원회 최선환의원 : 충주호주변 쓰레기처리방안 관련

※ 회의록 서명의원 : 유명호, 박제국의원

2) 의안처리현황

계	조 례 안	건 의 안	결 의 안	승 인 안	기 타
9 건	4	1	2	·	2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1996. 7. 18 (목)

○ 제1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원안가결)

· 회 기 : '96. 7. 18 ~ 7. 24 (7일간)

○ 5분 자유발언

· 기획경제위원회 김재근의원 : 내륙운하건설 관련

□ 제2차 본회의 : 1996. 7. 24 (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 건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원안가결)

○ 용담댐 하류수질 및 생태계보존을 위한 수량조절 건의안(수정가결)

○ 도농복합형태의 시 특별지원약속이행촉구 결의안(원안가결)

○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가결)

○ 5분 자유발언

· 건설교통위원회 최종철의원 : 청주민영방송국 창설방향 관련

· 건설교통위원회 최선환의원 : 충주호주변 쓰레기처리방안 관련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96. 7. 18(목) 14:04~14:14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 (평균)	2시간 15분 (1시간 08분)	
1차 (7. 18)	14 : 14 ~ 15 : 17	1시간 03분
2차 (7. 24)	11 : 06 ~ 12 : 18	1시간 12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7.4%)

대 상 인 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1	2
3 8 명	38	36	-	2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 상임위원회 '96. 7. 18 ~ 7. 24 (7일간)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비고
의회운영 위 원 회	'96. 7.18	1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 ○업무보고 ○제127회 임시회 회기결정	
기획경제 위 원 회	'96. 7.19 ~7.20 7.22~3	1 2 3-4	○업무보고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업무보고	
내 무 위 원 회	'96. 7.19 '96. 7.20 ~7.23	1 2-4	○도농복합형태의시·특별지원약속이행촉구결의 ○업무보고	
교육사회 위 원 회	'96. 7.19 7.20 7.22 7.23	1 2 3 4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업무보고 ○용담댐하류수질및생태계보존을위한수량조절건의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농림수산 위 원 회	'96. 7.20 ~ 23	1	○업무보고	
건설교통 위 원 회	'96. 7.19 7.20	1 2	○업무보고 ○충청북도건축조례	

2) 안건처리현황

위 원 회 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비 고
			가 결		부 결	보 류	기 타	
			원 안	수 정				
계	8	8	7	1				
의회운영위원회	2	2	2					
기획경제위원회	1	1	1					
내 무 위 원 회	1	1	1					
교육사회위원회	3	3	2	1				
건설교통위원회	1	1	1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업무보고 주요내용

< 의회사무처 소관 >

- ㅇ 의회운영
- ㅇ 선진의정 기반조성
- ㅇ 의정홍보 활동강화
- ㅇ 의정자료의 관리
- ㅇ 의안 및 심의자료 제공
- ㅇ 「도민의 소리」 적극 수렴
- ㅇ 의정지원 능력배양

◉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구성

< 제안이유 >

- ㅇ 댐건설로 수도권·충남지역의 홍수 피해방지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국가경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반면,
- ㅇ 이로인한 주민의 재산권 피해
- ㅇ 지방세 수입원의 감소,
- ㅇ 수질보호를 위한 시설운영비등의 재정부담,
- ㅇ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만 많고 혜택이 없어 주민피해 의식이 날로 고조되고 있어 그 대책을 강구코자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ㅇ 교육사회(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위원과 댐인근 지역의원 12명이내로 구성 결의
- ㅇ '97년 6월말까지 운영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일반안건	1	1	1					

□ 기획경제위원회

◉ 업무보고 주요내용

< 공보관실 소관 >

○ 올바른 도정보도 「 언론매체, 유선방송매체 」

○ 격조높은 소식지 「 새충북 」 발간

○ 공직자 「 행정홍보기법 」 교육

○ 정기간행물을 이용한 홍보

○ 보고·느끼는 현장 홍보강화

○ 「 충북100년 」 행사의 내실있는 홍보

< 공업경제국 소관 >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기업애로 적극해결

○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건립

○ 중소기업기술·정보지원 강화

○ 공예산업 육성

○ 노사화합안정 실현 및 기능훈련 강화

○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 감사실 소관 >

○ 정기 및 기획, 특별감사 실시

○ 감사기능 활성화 추진

○ 공직기강 확립

< 청주의료원 소관 >

○ 병원사업 추진 실적

○ 정신질환자 특수병동 운영

○ 장의 편의 사업운영

○ 건강관리 사업

< 충주의료원 소관 >

○ 치과 개설

○ 의료장비 보강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본청의 정원 8명을 감축 : 3급 1명, 4급 7명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례안	1	1	1					

□ 내무위원회

◉ 업무보고 주요내용

< 내무국 소관 >

○ 충북 100년 기념사업 추진
○ 충청북도 「 도민대상 」 제정
○ 「 도민 새기상 창조 」 운동 전개
○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수행
○ 지방자치기반 강화
○ 주민등록증 갱신사업 (전자카드화) 추진
○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
○ 초고속 행정통신망 구축
○ 자주재원 확충
○ 세출예산 효율적 집행 및 외청사업소 이전
○ 즉결민원 전산화 본격추진
○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 추진
○ 문화예술의 창달
○ 문화유산의 보수 및 정비
○ 지방 체육의 진흥
○ 청소년 보호 및 선도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청주오송유치
○ 청원종합경마타운 유치

<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

- ○ 민방위대 편성운영 및 민방위교육훈련
- ○ 인력동원 자원관리 및 주민신고망 조직관리
- ○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강화
- ○ 충무계획의 수립조정및 동원자원관리
- ○ 을지연습, 전시대비훈련실시 및 예비군관리
- ○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보고체계 확립
- ○ 각종재난대비 교육훈련 및 홍보

< 소방본부 소관 >

- ○ 소방장비 보강
- ○ 소방관서 운영 정원 증원 및 직급 조정
- ○ 새로운 소방공직사상 정립
- ○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
- ○ 대민봉사기능 확대 및 화재예방의식 고취
- ○ 화재진압 능력제고 및 대형사고 중점예방
- ○ 재래시장 소방안전대책 강화
- ○ 민간소방조직 운영의 활성화
- ○ 소방용수시설 보강 및 유지관리 강화
- ○ 긴급구조 구난체계확립
- ○ 119 구급업무의 활성화
- ○ 긴급구조상황실 신설 및 지령전산망 구성

< 공무원교육원 소관 >

- ○ 교관교수능력 향상
- ○ 인성교육강화
- ○ 도정역점시책 교육
- ○ 체험식, 참여식교육 운영
- ○ 교육원청사 이전

< 도민교육원 소관 >

○ 도민의식교육 → 새로이 함께 사는 지혜

○ 영농기술교육 → 새로운 작목별 영농기술 발굴 보급

○ 농기계훈련교육 → 농기계조작 및 자가정비 능력배양

< 증평출장소 소관 >

○ 주민본위의 봉사행정

○ 지방자치행정의 구현

○ 활기있는 복지농촌 건설

○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 활기찬 지역개발 촉진

○ 내실있는 주민복지 증진

○ 향토문화 기반의 내실화

○ 증평토지 구획정리 사업

○ 증평공업단지 조성사업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 도 농복합형태의 시·특별지원 약속이행 촉구 결의

< 제안이유 >

○ 도·농복합형태의시 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의 대통령령을 조속히 제정함과

○ 민의전달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조제2항중 도의원 정수를 현행 기준대로 유지토록하고,

○ 도·농복합당시 약속한 특별지원의 조속한 이행을 통하여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결의안	1	1	1					

□ 교육사회위원회

◉ 업무보고 주요내용

< 보건환경국 소관 >

○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 관리

○ 맑은물 공급 및 수질 보전

○ 도민의료수준의 질적 향상

○ 공중, 식품위생 안전관리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 신속·정확한 검사업무 추진

○ 시험검사요원의 전문화

○ 민원제일위주의 봉사행정 강화

○ 창의적인 조사연구 실적 거양

< 사회복지국 소관 >

○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 사회복지시설 확충

○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시설 확충

○ 의료보장사업의 내실운영

○ 노인 여가활동 지원 및 시설기능 보강

○ 노인복지회관 건립

○ 아동복지건설 기능보강

○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가정 보호

○ 여성자원봉사센타운영 활성화

○ 건전소비문화정착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 충청북도 여성회관 신축

○ 여성전문기능인 양성

○ 건전사회활동의 정착

<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

○ 교육개혁업무 추진

○ 교육행정 전산화 추진

○ 인재육성을 위한 교단의 선진화

○ 교단선진화을 위한 교단연구회 활성화

○ 민주시민에 필요한 품성과 기능육성

○ 전문지식을 연마하고 일반적교양 높이며 개성에 맞는 진로결정 능력 신장

○ 교실의 현대화 및 균형있는 학교발전 도모

○ 교육복지시설 확충

◉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제1조(목적)

"환경보전법 제11조" 를 →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로

○ 제3조제2항(구성)

위원장은 "부지사" 를 →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로

○ 제8조(간사와 서기)

간사는 "환경보호과장" 을 → 간사는 "환경관리과장" 으로 변경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 주요골자 >

○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하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중 10인의 당연직위원과 교육감이 위촉하는 5인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부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됨

·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함

· 지방교육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 회　　의

·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함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도록 함

○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관계기관, 부서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용담댐 하류수질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수량조절 건의**

< 제안이유 >

○ 환경보전을 위해 계획방류량 증가를 요망하며, 최소한 수량을 전주권으로 방류하여 충청권의 기득수리권을 보장하고, 수질관리 비용 및 피해지역 주민 생계비에 대한 국비지원을 바람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장준호 의원외 11인에 의해 제안된 건의안으로 수정의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3	3	2	1				
조례안	2	2	2					
일반안건	1	1		1				

□ 농림수산위원회

◉ 업무보고 주요내용

<농촌진흥원 소관 >

○ 쌀의 생산성과 자급율 향상

○ 주 소득작목의 기술과 경역혁신

○ 새 소득작목 개발보급과 수출농업 육성

○ 농업환경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

○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경영개선

○ 주요농산물 원종생산

○ 농업전문인력의 효율적 육성

○ 첨단 농업시대를 선도할 농업인 교육

○ 농촌문화생활기반조성과 여성역할 증대

○ 「농촌지도소의 지역농업개발 센터」화 운영

< 농정국 소관 >

○ 농특산물의 수출진흥대책 추진

○ 식량수급의 안정대책 추진

○ 농업전문인력의 육성

○ 지역별 특화품목의 육성

○ 가공, 유통시설의 확충

○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운동」 전개

○ 농촌휴양시설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 축산업 경쟁력 제고

○ 산림의 환경 자원화

□ 건설교통위원회

◉ 업무보고 주요내용

< 건설교통국 소관 >

○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
○ 대전, 청주 광역권개발
○ 도시계획재정비계획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
○ 도시가로망정비 및 택지개발사업
○ 공업단지 개발사업
○ 효율적인 토지 및 지적 관리
○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하천개수사업
○ 재해위험지구 개수사업
○ '95 수해복구사업
○ 도로망 확충
○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 지방도 유지관리
○ 대중교통 지원확대 및 서비스 개선
○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추진
○ 도시주차난 해소

<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

○ 가경 2지구 택지개발사업 마무리
○ 부용공업단지 조성사업
○ 가경 3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 가경 3지구 제척지 발산 부락 개발사업
○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

<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 >

○ 보상 및 주민이주
○ 분묘개장
○ 공장용지분양
○ 하수종말처리시설 추진
○ 「충주과학산업단지」 추진

◉ 충청북도건축조례

< 주요골자 >

○ 충청북도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구 성 :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되며 총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의 자격 : 도의 관계공무원과 건축관계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 위원의 임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 기 능 : 건축허가 사전승인 및 도시설계에 대한 심의 등

· 회 의

- 회의소집 : 심의 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충청북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회 의 : 회의소집 및 의결방법과 기타 운영사항은 건축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

· 비용부담 : 분쟁의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 규정 등

- 감정, 진단, 시험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 검사,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 분쟁의 각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행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규정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례안	1	1	1					

第 14 節 第128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28회 임시회는 김준석의원외 13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96년 8월 16일 집회공고하고, 도정질문과 청원,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8월 28일 오후 2시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1996. 8. 28 (수) ~ 9. 5 (목)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조례안 - 5건

※ 충청북도 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 재의결

○ 도정질문 (교육시책 포함)

· 농림수산위원회 : 박온섭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 최종철, 장준호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 임헌용, 김대호의원

· 내 무 위 원 회 : 성기덕, 유명호의원

· 교육사회위원회 : 김인식, 이길하의원

○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청원에 관한 건

○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 송옥순, 김동진의원

2) 의안처리현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승 인 안	건 의 안	결 의 안	기　타
8 건	5	-	-	-	-	3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1996. 8. 28 (수)

○ 제1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원안가결)

· 회 기 : '96. 8. 28 ~ 9. 5 (9일간)

○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가결)

· 일 시 : '96. 9. 2~9. 4 (3일간)

· 장 소 : 본회의장

· 대 상 :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실·국·원장, 본부장, 단장, 증평출장소장 이상의 간부공무원

○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청원에 관한 건(원안가결)

※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 제2차 본회의 : 1996. 9. 2 (월)

○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농림수산위원회 박 온 섭 의원

질 문 요 지

○도청을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은

< 답변 : 도지사 주 병 덕 >

○충청북도 도청이 1937년 현 위치로 이전, 현재의 도청이 청주시의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의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민원인이 도청을 방문할 때 주차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도청은 우리 도의 상징이며 수부이기 때문에 도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와 다수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은 물론 이전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조달 문제 등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해야할 충북지역의 중요사안임

○따라서 현재로서는 주차장 이용이 다소 불편할 뿐 도청을 이전해야 될 긴급성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검토한 바 없으며, 당분간 도청이전 문제는 거론하지 않을 방침임

질 문 요 지

○도내 휴경지에 대한 다목적 활용방안과 유휴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소득보장 및 유휴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은
○수입개방에 대처한 건실한 축산농가의 보호육성을 위한 축산정책은
○전문화시대에 부응하는 전문축산인 양성계획은
○수의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증원계획은
○각종 질병으로 폐사 발생 농가에 대한 보상가의 현실화 및 대책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후 잎담배 경작 농경지의 활용 및 대체작목에 대한 대책은
○도와 시군에 잎담배 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 및 추진상황과 문제점은
○향후 외국 농축산물 수입개방 정책과 대응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대책은

< 답변 : 농정국장 김 승 기 >

○도에서는 쌀 생산대책의 핵심과제인 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하여 도내 전체 휴경논 2,237헥타 가운데 생산화가 가능한 1,523헥타를 선정하여 이중 741헥타는 소유자가 경작하고 782헥타는 영농대행자를 선정 경작토록 함
○금년도에는 도 및 시군비로 헥타당 45만원씩의 경운정지비와 농협에서 종자·비료·농약대 등 40만원씩을 지원하였으며 생산된 벼는 우선 수매함으로써 최대한 소득보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현재 휴경이 예상되는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1997년도부터 2~10헥타 규모의 지역에 대해서도 경지정리, 경작로 개설 농업용수 개발 등 간이기반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경작이 용이하고 생산비가 절감되도록 할 계획임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항코자 전업화와 시설현대화로 경쟁능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양축농가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630호에 390억원을 지원하고 축산물의 품질고급화와 유통혁신 및 가축방역 검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한우개량사업 23개소,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 4만두, 가축예방 및 검진사업 56만두 등에 68억원을 투자하고 있음
○본도에서는 충북대학교 축산학과와 수의학과에서 매년 70명과 농업고등학교에서 120명의 축산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며 특히 본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농축산사업소에서 매년 2회에 670명의 가축인공수정사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축산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수의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공개업 수의사 및 공무 수의사 120명과 긴급시는 수의학과 대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

○가축공제금은 가축시장 매매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일반 가축공제금이 30만원에서 46만원으로는 현실적인 보상이 미흡하다고 보아 가축폐사에 따른 손실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특수 가축공제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음

○그리고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검역업무는 현재 농림부 산하 국립동물검역소 14개소, 수의사 241명이 엄격하게 수출입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우리 도는 황색종 잎담배 생산에 적합한 기후와 토질, 재배기술 등 타시·도보다 우수한 생산기반의 이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담배제조업체와의 계약재배를 우선 추진토록 노력하면서 잎담배 생산농가의 전업화 및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가되

○대체작물 재배가 불가피한 면적에 대하여는 수익성이 높은 지역특화 작목을 농촌지도기관, 담배인삼공사 및 엽연초 생산조합과 협조하여 농가 스스로 자율 선택토록 하여 정부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우리도 자체추진 지역특화작목과 연계하여 대체작목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음

○도와 시군의 잎담배 전담기구 설치 용의에 대하여는 지난 7월 1일부터 인삼업무가 자율경쟁체제로 전환되어 재정경제원에서 농림부로 담배인삼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인삼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인삼 등 특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보강을 위하여 내무부와 인력증원 문제를 협의중에 있음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는 수입 농산물 189개 품목과 국산 농산물 227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고 금년 7. 1일부터 농수산 가공식품 54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면서 매월 1회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금년도 단속실적은 도시군, 농산물검사소, 농촌지도소, 경찰과 공조체제로 753회에 걸쳐 8,825업소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 199건이 적발되어 고발 및 과태료 1,700여만원을 부과한 바 있음

○축산물에 대하여는 1997년도부터 모든 식육판매업소에서 부위별, 등급별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에 대하여도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중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추진중임

질 문 요 지

○청주공항과 연계한 청주역과 오근장역을 확장 발전시키기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자체 계획은

○홍수에 대비한 항구적인 하천정비계획과 대책은

○도 경계마을 개발을 위한 생활환경구조 개선자금 지원계획은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시멘트원료 생산지역을 확장하여 승인해 준 이유는

< 답변 : 건설교통국장 송 완 호 >

○대전지방철도청의 청주역과 오근장역의 확장시설계획은 청주역은 이용객 감소와 현 시설능력을 감안하여 확장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근장역은 청주공항 개항에 대비하여 대합실을 54㎡에서 1,500㎡로 확장하고 1회 처리능력 70명을 700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1996년도 3월에 철도청에 건의 검토중에 있음

○우리 도에서는 충북선의 전철화 사업을 조기 착공하기 위하여 중앙에 건의하여 철도청에서 1996년도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철화 사업 타당성 용역을 1997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임

○1997년에 철도청에서 전철화 사업의 기본 용역비 21억원을 현재 요구중에 있음

○정부에서는 재해대책 업무를 관장하는 내무부 방재국에 재해복구과를 신설하고 1995. 1. 5일자로 소하천정비법을 신설하고 1996. 6. 22일자로 소하천정비법시행령을 정비하여 각종 사항을 법에 규정함과 동시에 소하천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을 마련

○본도의 금년도 추진사항으로는 양여금 3개소, 시군사업 4개소, 수해복구사업 649개소 등 총 656개소에 국비 104억원, 도비 34억원, 시군비 78억원 등 216억원을 투자하여 11만9,500m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정비율은 29%가 됨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금년에는 3개사업에 410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현재 추진중임

○구체적 사업내용은 농촌지역의 불량 주택 6만1,924동으로 1995년까지 2만9,962동을 이미 개량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95년 주택개량 동수보다 80%가 증가된 2,850동을 계획하여 2,110동을 착수하였으며 동당 1,600만원을 연리 5.5%로 융자 지원하고 있음

○잔여물량 74동에 대하여는 도비 부담액 40억원 정도를 확보하여 계속추진할 계획임

○도내 부엌, 화장실 개량사업은 9만626동으로, 1995년까지 5만9,138동을 개량하였고 금년에는 1995년도 대비 70% 증가된 3,250동을 기 확정하여 현재 추진중임

○이는 동당 16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총 대상 807개 마을중 1995년까지 363개마을을 개선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는 11개마을에 21억원을 마을당 1~5억원의 사업규모에 따라서 차등 보조지원하여 현재 추진중임

○성신양회 공장증설은 입안권자인 단양군수가 신청한 사항으로 금번 공장증설 예정부지는 1972. 6. 2일 건설부고시 239호에 도시계획상 이미 공업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이며 기존공장과 인접하여 약 3만평의 부지에 330만톤의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금년에 착공하여 '98. 6월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임

○지난 2. 11일 부터 26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지난 3. 9일 제5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3. 11일 본도에 신청되었음

○본도에서는 의견수렴, 현장방문등을 통하여 입안권자인 단양군수의 의견을 다시 묻고 사업자의 민원해결 의지를 재확인한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유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4. 4일과 17일에 입안권자인 단양군수에게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 하였으며

○사업자인 성신양회 측에서 단양군, 군의회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이익의 사회환원 방안에 대하여 공증인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 해결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판단되어 4. 10일 개최된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게 되었음

질 문 요 지

○교사들에 대한 사명감과 자질향상을 위한 대책은

< 답변 : 교육감 김 영 세 >

○최근 일선학교의 일부 교원이 공직자로서의 도덕과 윤리를 실추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를 야기시킨 당자자와 감독자는 징계, 해임 또는 인사조치 등으로 일벌백계로 교직사회의 경각심을 심어주었으며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연수 및 다수의 집회시 정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의식개혁을 통한 자발적 실천분위기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음

건설교통위원회 최 종 철 의원

질 문 요 지

○용화온천 개발강행시 폐수관을 경북으로 설치하고 용화지역 부근을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여 자연보존학습장으로 활용방안은

○용화온천 개발에 따른 피해 발생시 대책은

< 답변 : 도지사 주 병 덕 >

○용화지구 온천개발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단결하여 행정쟁송과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는 등 법적 저지투쟁을 진행중에 있으며 도에서도 20여회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저지 대책을 협의하는 등 온천개발 저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지난 8. 30일 괴산과 상주지역의 양 지역 주민 간에 몸싸움이 일어남에 따라 그날 오후 내무부와 환경부에 가해자 수사처벌과 온천개발 중지 조치를 재건의 하였음

○온천개발 저지대책은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으로 상황의 추이에 따라 단호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임

질 문 요 지

○명실상부한 연구기관으로서 충북개발연구원의 활성화 대책은

< 답변 : 기획관리실장 김 동 기 >

○충북개발연구원은 충북의 싱크탱크로서의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미 제도적 운영적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음

○우선 1단계로 정관개정과 이사진을 개편하고 기구를 1실 3부로 확대하였으며 2단계로 연구원의 제반 운영규정 17건을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충북개발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3단계로 충북은행 중앙지점의 본관과 별관에 각각 분산 배치되어 있는 사무실을 통합하겠으며 장기적으로 별도의 독립청사를 확보해 나갈 계획임

○또한 기금적립은 매년 도에서 5억원 이상을 출연한 바 있고 '97년도 부터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시군 및 민간의 출연을 유도하면서 연구원 자체로 용역사업 등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금을 확충해 나갈 계획임

질 문 요 지

○충북전역에 걸쳐 역사유물분포도 작성 용의는

○청주고인쇄박물관을 다시 도 사업소로 환원할 용의는

< 답변 : 내무국장 박 경 국 >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문화유적의 훼손 및 멸실 방지를 위하여 전국 문화유적분포도 작성사업을 연차적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도에서도 문화유적에 대한 문헌조사 및 학술조사 등을 실시하여 도내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재에 대한 분포지도를 작성하여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청주고인쇄박물관은 흥덕사지내에 1991년에 건립되어 도에서 관리하여 오다가 지난 '94. 8. 1일 재산관리 및 운영권을 청주시로 이관한 것임

○그간 청주시에서는 미국내에 순회전시 등 해외전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관리운영 면에서도 적극 노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더욱이 '97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국비 30억원 시비 50억원을 투자하여 경내에 청주종합인쇄박물관을 건립 추진중임

○도사업소로 다시 환원하는 문제는 운영상의 효율성과 그동안 도와 청주시간의 재원부담상황, 재산권이전 가능성여부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그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지만 현재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현 체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질 문 요 지

○'96년도에 5개업체에 대한 먹는물 제조업 허가경위는
○지하수 취수제한 법적근거와 이의 평가 전문가 및 전문기관 현황은
○물관리 일원화 및 물 공개념 도입에 대한 대책은
○지역의 물 문제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은
○도의 상수도 보급률 저조이유와 전국 평균치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충주댐 광역상수도 설치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대상지역과 조동천유입하천수 정화대책은

< 답변 : 보건환경국장 조 규 린 >

○도에서는 지하수의 공개념화 즉 일정 깊이의 지하수는 국가 소유로 해서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그 지하수의 양과 수맥 수질을 정확히 측정한 다음 필요한 양만 빼서 주민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공개념화를 위한 법 개정을 작년 9월이후 계속 건의해 왔으며, 정부에서 최근 입법예고한 법 개정안에는 이 건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음

○다음 먹는물 제조업 허가는 현행법 규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금년에 주민들이 동의한 지역 5개업체에 대해서 허가를 한 바 있으며, 그외에 주민반발이 심한 5개업체는 불가피하게 불허처분 내지 유보해서 행정·사법심판에 계류중임

○다음 지하수 취수에 따른 영향조사는 금강환경관리청과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영향조사 대응책을 지정해 실시하고 있고, 여기에 환경 전문위원들은 34명인데 우리 도에 교수 또는 단체의 물관리 전문위원들이 11명이 소속돼 있음

○다음은 물관리 체계의 일원화와 향후 물부족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댐건설등 대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도의 대책을 신중하게 강구하되 우리 도 자체적으로 계곡수의 보호라든가 저수지 하천등 각 수원의 보호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겠음

○'95년도말 우리 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약 64%로 서울과 5대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의 평균 67%보다 다소 낮은 실정임

○이의 해결을 위해서 2004년까지 29개 지방상수도를 신설해서 상수도 보급률을 81%까지 높일 계획이며 9개소는 이미 사업을 추진중임

○충주댐 광역상수도 설치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제는 원수의 수질보호를 위해서 일부 지역의 지정은 불가피하지만 충주시 의견을 들어서 인구밀집 취락지구는 차집관 등을 설치하고 보호구역지정 차집관 등을 설치해서 보호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다음으로 조동천의 수질이 좋지 않은 것은 동량면 소재의 생활하수 때문이므로 동량면 소재 생활하수가 광역상수도 취수구 하류쪽으로 흐르도록 시설공사를 추진중임

질 문 요 지

○자연휴양림 신설용의 및 우리 도의 특색있는 조림.육림정책은

○생명의 숲과 연계한 산림육성계획은

< 답변 : 농정국장 김 승 기 >

○현재 우리 도에는 조령산 휴양림 등 5개소의 휴양림이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 이를 확대하고자 '97년도에도 2개소의 휴양림 조성사업을 산림청에 지원요청하고 있으며, 산림욕장은 현재 2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97년도에도 1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연차적으로 6개소를 확대 조성함으로써 자연을 통한 도민의 정서함양 및 휴양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음

○조림,육림사업은 이제까지는 경제성이 없는 활잡목의 갱신을 위하여 낙엽송, 잣나무 위주의 조림에서 느티나무, 자작나무 등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화백, 흑코드 등 새로운 경제수종을 시험조림후 확대 실시하겠음

○그리고 생명의 숲 조성운동은 지구의 온난화 등 심각한 자연환경 파괴에 대처하기 위한 환경보존운동 차원에서 산소발생이 많고 공기정화 능력이 우수하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복자기나무, 고로쇠나무 등 11개 수종을 선정하여 도시근교, 생활주변, 관광지, 도로변 등에 나무심기 운동을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외에도 산촌마을의 정주권조성 개발사업과 표고 및 장래삼 재배, 두릅나무 조림 등 산지를 활용한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질 문 요 지

○개별입지공장의 집단화 방안과 오폐수 처리실태는

< 답변 : 공업경제국장 박 만 순 >

○도에서는 집단화를 유도하고 개별입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11월에 농공단지의 규모를 적게하고 보조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단 기간에 쉽게 많은 곳에 조성하여 집단화를 촉진시키고자 농공단지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국비개발보조금 비율을 높여 증액 지원하는 방안과 산발적인 공장의 입지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하였음

○이에 대한 중앙조치 결과는 금년부터 조성하는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국비보조금을 현재 지원율보다 50%로 상향 조정되었고 산발적인 공장의 입주로 환경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입주를 금지하고자 하는 건의에 대하여는 정부의 기업규제완화 조치 결과 별다른 개선대책이 없음

○금년도 6. 30현재 도, 시군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업소로 관리중인 개별입지공장은 2,411개소이며 이중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는 57%인 1,376개소이며 지도점검결과 총 36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110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사법조치를 경고하였음

○위반내역은 기준초과가 174건, 비정상가동 31건, 무허가 13건, 기타 151건 등임

○배출되는 폐수중 농지에 직접 유입되는 폐수는 없으나 향후 지도점검과정에서도 농지유입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점 지도하겠음

질 문 요 지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유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호남고속철도 오송유치추진위원회 지원 내용은

○사고다발지역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상황 및 해결책은

○시지역 방사형 교통체계 강구 용의는

○금년도 청천, 연풍 도시계획 재정비계획과 나머지 44개도시 재정비 방안은

○무질서한 도시계획의 표본인 일부 준공업지구 주민불편 해결 방안은

< 답변 : 건설교통국장 송 완 호 >

○건설교통부에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용역을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94. 8월부터 노선과 정차역 등에 대하여 용역중이며 9월에 서울에서 6개도시가 참여하는 전국 공청회 실시후 최종보고서가 10월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우리 도에서도 오송역 기점역의 타당성을 '95. 10. 7일 건설교통부와 철도청, 교통개발연구원에 건의하였고

○'96. 6. 7일 대한국토도시학회가 주관하여 서울에서 고속철도 지역발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96. 6. 19일 본도에선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학자,시군·도의회 의원이 참석하여 지자체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여론과 우리 도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음

○7. 16일 충북대 건설기술연구소와 호서문화연구소의 주관으로 청주로얄관광호텔에서 호남고속도철도와 지역발전 역사유적 보존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또한 민간자율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추진위원회가 '95. 11. 4일 발족되어 중앙에 건의는 물론 대전광역시, 강원도의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는 유치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오송기점역 타당성 논리개발 용역비에 2,600만원과 세미나 비용 7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청주시와 청원군 지역업체의 재정격려가 답지한 것으로 알고 있음

○도에서도 의회, 오송역추진위원회, 민간단체와 학계, 언론은 물론 대전광역시, 강원도 등 관련도와도 적극 협조하는 한편 9월말경 중앙 전국공청회 전에 9월 중순 사전준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앞으로 있을 중앙 공청회에 적극 대비하고 중앙의 노선결정시 우리 도민의 열망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금년도 교통사고줄이기 추진방침은 도로교통 안전시설의 정비확충, 도로 및 부속시설의 장비 확충, 운수업체 관리 및 종사원의 교육, 교통안전의식 개혁의 전개, 철도건널목의 입체화 등에 역점을 두었음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개선 99개소 93억2,100만원, 도로교통 안전시설 확충 1,361개소 392억원4,600만원, 철도건널목 입체화 3개사업 61억2,900만원, 기타 교통안전시설 장비확충 5,346개소 33억4,000만원, 운수업체 및 안전관리에 따른 사업용 차량 일제점검 14,000대, 운수종사원의 교육 145,393명 등을 실시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개혁을 연중 실시하고 있음

○7월말 현재 우리 도의 주차장 보유현황은 총 5,101개소에 13만4천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가용 자동차의 수에 비하여 주차장 확보율은 50%에 불과한 실정임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금년도에 노외주차장 13개소에 500면을 새로이 설치하고 노상 및 노외주차장 140개소에 5,739면을 유료화하며 지역여건에 따라서 인도와 차도에 걸쳐 주차할 수 있는 개구리식 주차를 청주시와 충주시에 추진중에 있음

○이면도로의 주차가능 공간을 거주지 주차허가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96. 5월에 시군에 시달하여 추진중이며

○주차질서 위반행위 단속실적은 7월말 현재 28,626건을 적발하여 619건은 견인조치하고 28,700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13억4,200만원을 부과하였고 시·군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용하여 '96년도에 11억원의 세입을 확보하여 주차장 시설투자에 사용토록 하고 있음

○금후대책은 지속적인 공용주차장 확충, 지역별·시간대별 주차요금의 차등적용으로 주차수요의 억제, 공공기관 부서의 주차장 유료화, 주거주차의 허가제 운영, 불법주차의 지속적인 단속, 시군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확충으로 역점을 두어 주민의 주차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음

○금년도 본도의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은 12개 도시로서 현재 옥천읍 도시계획 재정비를 포함한 10개 지역은 재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청천면과 연풍면 도시계획 재정비는 괴산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 재정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도 2회추경 또는 '97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음

○현재 우리도의 도시계획 재정비 대상지역은 매 5년을 주기로 재정비하여 왔으며 '97년도에는 14개 도시, '98년에는 7개도시, '99년에는 7개도시, 2천년에는 4개 도시를 정비하여 2천년까지 44개도시를 모두 마칠 계획임

○청주 신봉동 준공업지역은 지난 '76. 3. 27일 준공업지역으로 결정되었고 '92. 11월부터 '93. 7월까지 청주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에 신봉동 준공업지역 정비용역을 실시하여 '93. 7월부터 '95. 5월까지 아파트 건설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해 왔음

○이 지역의 열악한 공공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소요사업비는 284억원이 확보되어야 하나 아직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여 현재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임

질 문 요 지

○지금까지의 인성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은

○학원폭력 근절대책과 사교육비 부담증가 해결방안은

< 답변 : 교육감 김 영 세 >

○참다운 인성교육을 위하여 가정통신문, 학부모교실 운영 등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하여 자녀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각급 학교에 강조하였고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을 통하여 종래의 주지주의적, 관념적 인성교육 방침을 지양하고 있으며 학생등의 다양한 적성 및 소질개발과 원만한 인성발달에 역점을 두고 학교별로 과외활동, 특별활동 프로그램, 열린교실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본도 교육시책의 4대덕목중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최상위 목표로 하여 인성교육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였고 인성교육자율시범학교 18개교를 지정운영하는 등 인성교육의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례발표회 개최, 논문집 발간, 전문직 특별연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인성교육 지도 자료를 발간하여 매일 지도하도록 하고 있음

○학원폭력 근절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서는 도덕성 함양을 통한 인성교육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기본예절 지도와 고운말 쓰기 등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공중도덕 지키기, 준법정신 함양 등 민주시민 교육생활화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인성교육 자료를 활용, 조회와 종례시간을 통해 매일 지도하도록 하여 올바른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있음

○사교육비 부담증가 해결방안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한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순수한 희망학생에 한하여 보충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학습장소 제공과 자료제시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양질의 보충수업을 실시함으로써 학원이나 개인과외로 몰리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최대한 수용하여 사교육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또한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영어회화, 컴퓨터, 예능과목 등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여 방과후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막대한 과외비 지출을 막기 위하여 지도능력이나 특기가 뛰어난 현직교사 또는 유능한 외부강사나 명예교사 등을 위촉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학생들의 재능이나 취미, 소질 등을 개발하도록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수익자 부담 소요경비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가능한한 극소화 하도록 하고 있음

건설교통위원회 장 준 호 의원

질 문 요 지

○도의 물관리 종합계획과 향후 용담댐 건설에 따른 대책 및 상수원보호 방안은

○개별입주공단 집단화 및 집단 축산단지 조성으로 실개천 및 상수원 보호 대책은

< 답변 : 도지사 주 병 덕 >

○물에 대한 종합대책은 물관리 기능의 일원화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마련중인 정부대책이 확정 발표되면 우리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용담댐 건설에 따른 대책은 향후 대청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의 수량만 전북지역으로 방류하여 달라는 등의 대책을 지난 6. 5일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건의한 바 있음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가축의 방목이나 수영, 목욕 등 상수원을 오염시킬수 있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지역에는 10㎞이내에 개별적인 공장입지를 제한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특히 상수원의 근간이 되는 도내 산간계곡 78개소의 계곡수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겠음

○또한 실개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개별공장이나 축사 신축은 가능한한 집단화해 나가고, 축산단지는 농민들의 생계수단이고 또한 중요한 소득원임을 감안하여 10개소에 공동 축산폐수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바 5개소의 축산단지는 완료하고 5개소는 아직 건설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임

질 문 요 지

○도민체전의 종목별 시상제 추진 및 도민체전 시군별 경비의 도비지원 등 개선방안은

○수시 산발적인 체육대회의 종합적 통제조정과 각 자치단체별 체육진흥기금 조례제정 의향은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급기관에 권장할 용의는

< 답변 : 내무국장 박 경 국 >

○종합시상제에서는 선수와 재정여건이 좋은 시군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군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회 경기운영 내규로 10만 이하의 시·군을 대상으로 대진추첨시 한개 경기에 대하여 부전승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여 도민체전을 개최하고 있음

○시군 출전경비까지 지원하기에는 도 재정형편상 불가능하며 민간단체 주관으로 열리는 대회를 도에서 획일적으로 종합 통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

○도에서는 '95. 5. 17일 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예산 출연금과 각계의 성금 및 기부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토록 하였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예산에서의 기금출연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체육성금이나 독지가의 기부금에 의존해 오던중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강화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한 바 있음

○매년 지방예산의 일정금액을 출연토록 하는 체육진흥기금설치조례의 제정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각적인 대책을 연구하겠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으며 특히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서는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량을 조정해서라도 물가변동에 따른 댓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리 도에서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부실공사의 예방을 위하여 지난해 2건, 금년도에 4건 등 6건의 공사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바 있음

○앞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부실공사 예방과 업체보호 차원에서 명확한 근거자료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도록 하겠으며, 시군 출장소에서는 본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적극 이해시켜 권장해 나가겠음

질 문 요 지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 규모 및 조성현황과 대상자별 지급현황, 특별장학금 지급내용은

○기금목표액 확대와 장학금 지급한도액 인상지급 용의는

< 답변 : 사회복지국장 장 상 자 >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저소득가정의 자녀로서 중고생에게 학비지원 대책으로 충청북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하여 10억원을 목표로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2억원씩 적립하였으며 그 이자 발생액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씩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가정의 중고생 자녀중에 성적이 상위 50%이내인 자를 선정하여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생은 15만원을 지급하며 그중 성적이 10%이내인 우수한 학생에게는 중학생 15만원, 고등학생 20만원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92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지급실적은 2,835명에게 3억6,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 대상별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2,351명이고, 영세농어민이 334명, 기타 저소득 가정의 자녀가 140명이고 그중 특별장학금 수혜자는 242명임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자녀학비 지원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에서 중고 입학시 입학금과 분기별로 정기 지급되는 수업료는 고등학교 1급지 가지역의 경우 연간 76만8,000원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은 정기 지원하는 지원금 외에 도비를 투자하여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장학기금의 추가적립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인상지급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급대상 학생수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장학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질 문 요 지

○경기, 경남, 광주는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설립 운영중이고, 기타 8개시·도에서도 설립계획서 제출 등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도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설립 의향은

○항공수요 확대방안으로 특색있는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의향은

○충북의 특화관광지 대상지역과 특화개발 의향은

○양산 8경 및 천태산을 도에서 개발할 용의는

< 답변 : 공업경제국장 박 만 순 >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은 '95년도에 통상산업부에서 구상한 특수시책으로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연고기업, 그리고 지역금융기관에서 각각 50억원씩 출연, 시도별로 200억원을 조성하여 '95년도중에 2, 3개 지역을 우선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 추진계획이었으나 나머지 도에서는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설립추진을 보류하고 있음

○우리 도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였으나 재정경제원에서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국비지원을 거부하고 있고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항임

○앞으로 우리 도에서 영업중인 기존의 신용보증기금을 도내 업체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도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60여 종목의 관광기념 상품중 우수한 상품을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한국관광공사의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고 공예품 개발을 위하여 공예품경진대회를 개최하고 20개 업체에 우수공예인, 우수업체로 지정하여 상품개발을 촉진하고 금년도에 무극도예, 보은 도실염주를 명예연구소로 지정하는등 공예품을 지역특화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 있음

○특화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지난 6. 15일 충북개발연구원에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용역 연구중에 있음

○송호관광지를 거점으로 한 양산 8경권은 영동권의 가족단위 청소년의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자연생태계, 자연탐방, 관찰코스 정비를 비롯하여 숙박휴양시설 등의 편익시설에 중점을 두어 개발할 계획이며 현재 용역중인 지구별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음

○천태산지구는 '92년부터 지방비 8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식수대 등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휴양위락시설을 위한 민자사업은 토지 소유주의 반대로 어려움이 있어 산지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위치를 조정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음

질 문 요 지

○교장초빙제가 본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97년 교사초빙제 시행을 대비하여 영동읍 초중고를 농진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시행할 용의는
○학교급식 자체기금을 확보한 학교에 대하여 급식학교로 우선 지정할 용의는
○급식비 총액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시설비와 운영비만 국고 보조하고 급식비는 수요자 부담으로 한다고 하는데 삭감 이유는
○'87년 중고등학교 통폐합 학교에 대한 그간의 지원현황과 앞으로의 지원대책은

< 답변 : 교육감 김 영 세 >

○학교장 초빙제는 교육의 자율성 신장에 기여하고 학부모 등 교육수용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학교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초빙교장 근무기간은 4년단위이며 현행 교장임기제의 1차 중임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초빙교장은 학교운영의 결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으므로 중임하는 교장보다 1년이상 4년까지 더 근무할 수 있어 오히려 혜택을 보게됨
○교육경력이 부족하여 교장승진후보자 명단에 들지 못한 자가 초빙교장을 신청하는 것은 교육부 지침에 교장자격증만 소지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들이 초빙교장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기는 곤란하며 초빙교장은 당해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초빙요건을 설정하여 희망자의 자격 및 학교경영능력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복수로 추천하면 도 교육청에서는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을 하고 있고 문제점은 앞으로 보완실시 하겠음
○농업진흥지역 학교지정은 교통이 불편하고 의료면이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와 학교 규모가 작아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학교로서 교사들이 전보를 기피하는 학교를 해당 시군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이 추천하면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게 됨
○따라서 '97. 3. 1일부터 시행되는 교사초빙제 기피방지를 위한 구제책으로 영동읍내 소재 초중고의 농업진흥지역 지정여부에 대하여는 타 시군 및 타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 할때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시행결과에 따라서 미비점을 보완 하겠음

○농촌지역 중고등학교의 급식은 현재 영동 심천중학교, 괴산 북중, 진천중학교 등 3개교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시책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99년부터는 전면 실시할 예정임

○학부모, 동창회 등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급식학교 운영을 위한 자체기금 확보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확대 지정시에 우선 반영하겠음

○또한 예산에서 지원하는 식품지원비의 수혜자부담 전환 문제는 매년 급식학교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국고지원 없이 지방교육 재정에서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부담이 가중되므로 지금까지 농촌 및 벽지학교 학생들에게 식품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학부모가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어려운 농촌사정을 감안하여 계속 지원을 고려중임

○통합후 현재까지 영동중학교에는 1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교실 및 과학관 신축 및 화장실 등을 증개축하였고 영동고등학교에 5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교실 및 화장실을 증개축하는 등 교육시설 사업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음

○현재 본도의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일시에 개선하는 것은 어렵지만 부족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

□ **제3차 본회의 : 1996. 9. 3 (화)**

○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기획경제위원회 임 헌 용 의원

질 문 요 지

○시빌미니멈 도입과 충북의 삶의 지표에 대한 설정과 추진과정은

< 답변 : 도지사 주 병 덕 >

○시빌미니멈제도는 아직 추진하거나 시행을 검토한 바 없는 생소한 제도이며,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우리나라와 판이한 외국의 제도를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즉석에서 시행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려움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의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의 정도를 헤아리는 복지수준의 측정수단으로서 시빌미니멈제도의 도입과 시행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질 문 요 지

○중기투자계획과 재정계획의 도의회 사전 심의 방안은
○투자지표의 생산에 필요한 교육, 치안, SOC 등의 지방공공재 수요예측의 지속적인 추진방안은
○중점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성 사전평가와 사후적 투자효과의 평가체계의 확립과 복지환경, 문화체육 부문의 획기적인 예산투자 방안은
○일용직 공무원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은
○한시기구인 오창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공영개발사업단의 폐쇄후 대비책은
○의회 입법조사관의 설치용의는
○명예대사를 교두보로 한 해외개척공사의 설치 용의는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구성 용의는

< 답변 : 기획관리실장 김 동 기 >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분야별 투자계획 등 지방재정 계획 수립과정에서 의원님들과 폭넓게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강구하겠음

○현재에도 지방재정계획 수립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5년간의 인구와 산업등의 변화추이와 공공투자 상황등 지방재정여건을 기초로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현행 사전적 평가체제로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를 통하여 사업비가 10억이상 20억미만의 사업은 시군에서, 20억이상 100억미만의 사업은 도에서 그리고 10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각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의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음

○복지환경, 문화체육 분야의 금년도 예산과 지난해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47%, 환경관리분야가 45%, 문화체육분야가 15%, 각각 대폭 증액되었고 앞으로 지방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회복지 및 환경관리, 문화체육 등에 최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우리 도의 일용직 근로자는 총309명으로 도로보수를 담당하는 수로원, 청사의 환경미화 작업을 담당하는 환경미화요원 등 연중 고용이 불가피한 상용근로자가 280명이나 되고 있고, 또한 업무성격상 일시 고용한 근로자는 29명이 되고 있음

○일용 근로자의 관리대책은 상용 근로자의 증원을 가급적 억제하고 자연 감소되었거나 민간위탁된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채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일시 고용 근로자는 특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채용하는 것으로서 사업종료후에는 채용을 해지토록 하고 있음

○우리 도의 한시사업소는 2개사업소로 존폐 및 기능전환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검토후 결정토록 하겠음

○입법조사관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무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음

○우리 도에서는 도정의 세계화 추진과 미래지향적인 국제관계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특수시책으로 32개국 58개지역에서 60여명의 충청북도 명예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음

○해외개척공사의 설립은 기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무역회사와 기능이 유사하나 그 운영실적을 보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거나 관계공무원의 인건비를 포함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

○명예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각종 자료수집, 지역특산품 홍보 등 도정수행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명예대사를 해외주재 해외개척공사 직원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는 정보화추진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정보화추진협의회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 소속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

○그리고 내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국장, 시도 부시장·부지사, 전문가, 교수 등 21명을 위원으로 하는 지방자치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행정부지사가 위촉위원으로 되어 있음

○우리 도에서는 내무부의 지방자치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지역정보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북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임

질 문 요 지

○도유재산의 매각관행을 버리고 적극적인 보존, 상응한 재산 확보 위주로 전환할 의향은

< 답변 : 내무국장 박 경 국 >

○도유재산 관리의 기본방침은 장래 행정수요 및 주민복지 수요에 대비해서 보존을 원칙으로 매각을 억제하고 있음

○다만 위치, 규모, 형태,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이 불가피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에 한하여 매각하여 대체재산 조성에 재투자하고 있음

○앞으로 도유재산은 보존을 원칙으로 관리하되 보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은 처분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종래의 유지, 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확대, 활용 위주의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질 문 요 지

○지출수요에 대한 현금 가용성의 적절한 유지 및 현금 잔고규모 설정방안은

○여유자금의 관리 방안은

○회계년도내의 실제적인 현금예산 편성과 자금운용계획서 작성 의향은

○집중계좌의 잔액을 0으로 하는 영계좌제도의 도입 의향은

< 답변 : 내무국장 박 경 국 >

○유휴자금의 활용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현금의 가용성과 여유 자금으로 인한 수익간의 상충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임

○'96년도의 이자수입은 상반기까지 53억원이며 연말까지는 80여억원으로 예상되어 '95년도보다 175%증가가 예상됨

○자금관리의 연간목표 설정은 복잡·다양한 재정구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지난 수년간의 자금운용 상황을 토대로 적정한 잔고유지와 자금관리 목표를 설정 운영하고 있음

○현금예산의 편성은 자본예산이 도입되지 않은 관계 등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됨

○영계좌 도입은 현급지출 시기가 정확하게 예측되어야 하고 현금지출 시기를 일정하게 조정하거나 통일해야 함. 그러나 각 시군에서 징수 송금되는 지방세 및 국고보조금의 송금일 등이 상이함으로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금년말 금고의 재계약은 대외적인 신용도, 금융상품별 운용수익, 자산운용의 건전성, 재정상태, 지역기여도 등을 분석하여 금고은행 계약할 계획임

< 답변 : 교육감 김 영 세 >

○교육재정의 국고의존율이 92%이며 자체수입중 수업료 수입은 6%에 불과한 형편으로 재정자립도가 극히 열악한 편이나 전국이 대동소이한 실정으로서 교육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교육예산의 70%가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로 이자수입 증대 등 세입증대방안에 활용할 수 없고 대부분이 중앙지원 자금에 의존하는 관계와 일선 교육기관인 초중고 469개 학교가 면소재지 이하 지역에까지 산재하고 있어 교육재정의 송금 및 중고 수업료 징수업무 등 자금운용에 특수성이 있는 관계로 교육금고의 선정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함

기획경제위원회 김 대 호 의원

질 문 요 지

○지방상수도 사업의 특정 시군에 편중 배정 이유와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로 교체에 따르는 예산전액을 국비지원 방안은

○문장대·용화온천 개발 저지를 위한 도의 활동상황과 저지대책은

< 답변 : 보건환경국장 조 규 린 >

○현재 우리도의 64%인 상수도 보급률을 최대한 높여 나가기 위해 대청댐 충주댐 광역상수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노후된 정수장과 상수도관의 교체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다만 이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관계 중앙부처에 지원계획과 연계하여 연차별로 추진중임

○'94년부터 '96년까지 지방상수도 사업비의 시군 배정이 특정 시군에 배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구, 지형 등 해당지역의 급수여건을 감안한 중앙의 재정형편에 따른 불가피한 지원계획과 시장, 군수의 요구에 따라 추진하는 관계 즉 사업시행이 빠르고 늦은 차이일뿐 불균형한 점은 2004년까지 각 시군별로 골고루 지원되도록 하겠음

○특히 면지역의 상수도 사업비가 50억원 미만이 되는 지역은 그 우선순위가 빨리 앞당겨지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50억원 이상이 되는 사업지역도 가능한한 전액 국고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음

○그간 도가 추진한 사항은 '92년부터 현재까지 국무총리실 등 중앙부처에 20여회에 걸쳐 개발저지 및 사업착수 중지를 건의하는 등 행정적 대응 조치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국립공원 지역의 온천개발과 집단취락시설 등은 금지해야 된다는 법규정 즉 환경영향평가법과 자연공원법 등의 법률 개정도 건의 협의중에 있음

○특히 '96. 5월에는 관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환경영향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게 하고 또 그렇게 실시를 하여 전면적인 보완이 없이는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결론을 얻어내 향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됨

○금명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등 문장대·용화지구 온천개발 저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질 문 요 지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지구의 관정개발 계획은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 보조금의 부담비율 조정은

○농지개량계에서 가입한 소류지 및 양수장을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거나 농지개량조합에 편입시켜 운영하는 방안은

< 답변 : 농정국장 김 승 기 >

○일반 경지정리 사업은 지금까지 농업용수가 확보된 10헥타이상 규모화된 지역을 실시하여 대상면적 4만9,000헥타중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96년까지 80%인 3만9,000헥타가 완료 되었음

○금년 가을부터 우리 도에서는 10헥타미만의 소규모 지구도 시범사업지구로 2개지구를 시행할 예정이며 '97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농림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중임

○이와 관련하여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129억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11개소, 양수장 2개소, 관정 5개소 등 20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저수지, 양수장 설치사업비 이외에 10헥타 미만의 소규모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농림부에 50개소로 관정개발 사업비 15억원을 지원 요청하고 있으며 농업용수 미확보로 경지정리 사업이 어려운 지역에 우선 투자 되도록 노력하겠음

○경지정리사업의 보조금 지원방식은 정액보조로서 대구획지구는 국고80% 교부세 20%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일반지구는 '96년도에 ha당 기준사업비를 2,410만원으로 책정하고 국고 80%, 도비 10%, 시군비 10%를 부담하되 정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해당 시군에서 추가 부담토록 하고 있어

○사업여건이 좋은 평야지역에서는 국고보조율의 상향조정, 총 사업에 대한 정률지원 등 중앙에 누차 건의하였으나 재정형편상 반영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건의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농지개량조합 구역외에 농업기반시설중 수혜자 5인이상, 면적이 5ha 이상인 682개소에서 농지개량계를 설치하고, 계원들이 경비를 분담하고 있으며, 농지개량조합비는 89년 조합비 경감조치에 따라 단보당벼 5kg으로 대폭 인하하고 부족분은 국고로 지원하고 있어 농지개량계가 농지개량 조합비보다 부담을 더하는 곳은 181개소가 있고, 부담을 적게하는 곳이 501개소가 있음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농지개량계는 시장, 군수와 농지개량조합 구역에 인접하거나 규모가 크고 관리가 쉬운 구역은 편입이 용이하지만 농지구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수리시설이 불량한 농지개량계를 편입할 경우 농조의 관리비용이 크게 증가하므로 농조에서 일부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이나 시군과 농조가 긴밀히 협조토록 하여 앞으로 편입을 추진해 나가겠음

○그리고 농지개량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물의 유지 보수비가 지원되도록 계속 중앙과 협의, 건의를 해 나가겠음

질 문 요 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을 확보하고 현재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이유는

○중소유통업자의 자생력을 길러줄 대책은

○중소기업체의 자금 융자에 있어서 융자결정된 업체중 융자받은 현황은

○담보없는 업체의 융자대책은

< 답변 : 공업경제국장 박 만 순 >

○금년도에 22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초부터 계획된 사업추진을 하여 왔으나 건물주와 입주 상인간 그리고 상인간의 상권변동에 따른 이해관계 등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사업신청자가 없어 부진한 실정임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시장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자금의 융자한도를 20억원에서 50억원까지 늘리고 융자기간도 3년거치 5년 상환에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대폭 연장하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재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관리자인 시장, 군수가 수년전부터 민자유치를 통한 재개발사업을 검토 추진한 바 있으나 재개발에 따른 수익성이 불확실하여 추진하지 못하던중 금년부터 중소기업 유통자금을 지원하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인간의 합의도출이 없을 시 행정기관의 지원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중소유통업자의 자생력을 길러줄 대책에 대하여는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40개소의 재래시장 재개발을 계획하였으나 추진상 어려움이 많은 실정을 알고 중소기업의규조개선및경제안정지원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입법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중소기업구조개선및경제안정지원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도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의 운영실적은 '94년부터 '95년까지 390억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15%의 융자 실효율을 감안해서 161개 업체에 331억원이 대출되었으며 미대출 잔액 59억원은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시설기간 연장 그리고 시설의 축소, 담보부족 등으로 금년도로 이월하여 지원하고 있음

○물적 담보가 부족한 유망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에 대하여는 근본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이 담보위주에서 신용대출로 바뀌는 제도개선이 과제일 것이나 이는 현실적으로 단기간내에 개선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정부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연대보증에 의한 인적보증이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에 의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비재무 항목에 대한 기업평가 방법의 개선과 특허권이나 신기술 담보로 대출하는 기술담보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등 신용대출 비중을 점차 높여 나가고 있음

질 문 요 지

○폐교부지를 지역주민(마을)에 무상임대 및 매각시 기증한 주민에게 보상하는 방안은

< 답변 : 교육감 김 영 세 >

○폐교부지에 대하여는 현재 각종 사회교육 및 수련시설과 지역주민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공해가 적은 생산업체에 유상임대를 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에게 무상임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임대 희망이 없는 폐교시설은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부지매각시 최초 기증한 분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학교의 설립 당시 기부채납 학교부지는 이미 공유재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며 폐교재산은 공유재산의 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므로 부지매각시 기증한 분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곤란함

내무위원회 성 기 덕 의원

질 문 요 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오송유치를 위하여 경기장 및 부대시설 구비 등 구상하고 있는 유치전략은

○경기유치를 위한 추진상황과 대책은

○시민의식 계도대책은

< 답변 : 행정부지사 나 기 정 >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청주 - 오송을 후보도시로 '94년 9월 유치위원회에 신청하였으며 지난 '95년 8월에는 도의회에서도 유치지지 결의문을 채택하여 유치위원회와 FIFA에 제출한 바 있고 경기장도 축구 전용구장인 돔구장으로 기본설계를 완료해 놓은 상태임

○또한 월드컵 오송유치를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계, 관계, 종교계 각종 사회단체 등 총3,800명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신경식 국회의원을 추대하였으며 지난 8. 30일에는 창립총회를 성대하게 개최한 바 있음

○앞으로 FIFA등 관계요로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유치위원회 분과별 사업계획을 수립케 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경기장 건립, 호텔건립, 경기장 주변의 도로망 확충에도 최선을 다할 것임

○경기장에서의 무질서와 공중도덕을 살리기 위하여 이미 연초부터 도민 새기상 창조운동을 전개하여 정직, 친절, 청결이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뿌리내리도록 범도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질 문 요 지

○공무원 사기앙양과 인사적체 해소방안으로 복수직급제 도입 용의는

< 답변 : 기획관리실장 김 동 기 >

○복수직급제는 실질적인 직급인상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고 정원의 증원없이 직원의 사기앙양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현행 규정상 정원의 범위내에서 직급별로 분포비율을 법규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규정의 개정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이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따라서 앞으로 복수직급제의 도입을 위하여 관련법규의 개정을 내무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음

질 문 요 지

○지방세 체납액 급증 이유와 체납액 일소대책은

○'95년이후 체납 및 결손 처분내역은

○모범내조자의 선발기준 및 20년이상 근속공무원이 선발되지 못한 인원수와 이에 대한 대책은

○청원경찰의 외곽방호와 재난상황실의 주야간 상황근무와 관련하여 일·숙직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방안은

< 답변 : 내무국장 박 경 국 >

○'96. 7. 30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2,978억원 부과에 2,619억원을 징수하여 88%를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356억원이고, 체납액 중 과년도 체납액이 249억원이고 금년도분 체납액은 107억원임

○금년도 체납액이 증가한 이유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와 무단전출로 인한 체납자 확인불능,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무단폐차 등으로 분리되고 있음

○도에서는 이와 같이 누증되고 있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9월 한 달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합동징수반 운영과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재산을 공매 대행업체인 성업공사와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한 공매를 요청하는 한편 고액, 고질 체납자의 언론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최선을 다하고 있음

○체납처분은 16,413건에 186억원을 압류조치하여 이중 54억원은 징수되었으며 미징수된 8,600건 132억원중 197건은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공매의뢰하지 않은 압류물건에 대하여는 징수계획에 의하여 징수토록 할 계획임

○'96. 7현재 결손처분은 9억7,600만원으로 무재산 5억8,300만원, 행방불명 2억8,500만원, 소멸시효 1억800만원 등임

○지방세 결손처분은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였으나 징수할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관계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게 된 것임

○모범내조자 선발표창은 '90년부터 공무원 사기앙양 진작책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선발기준은 장기근속한 공직자 부인을 우선하여 전국포상업무지침 및 충청북도표창업무지침에 충실한 내조와 검소한 생활로 화목한 가정을 이룩한 부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표창선발시 장기근속자로서 이미 선발기준상 고려사항은 되나 그 외에도 포상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며 참고로 도의 경우에 5급이하 총 1,368명중 20년이상 장기근속자는 388명이며 모범내조자로 선발되어 표창받은 인원은 97명임

○또한 다른 종류의 표창을 받아 부여하는 제주도 산업시찰 혜택을 받은 공무원은 203명으로 남은 인원은 88명에 불과하며 이들에게는 향후 연차적으로 선발기준에 따라 계속 실시할 계획임

○청원경찰은 청사를 불순분자등 외부의 무단침입자로부터 방어하는 단순기능이고, 재난관리상황실은 주야간 도내 모든 긴급상황을 파악하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황관리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당직제도는 일과시간후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취약시간대와 공휴일의 일반상황 긴급상황 각종 민원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며 위기상황 발생시 상하 유관기관단체 등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도 고유기능 수행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는 제도임

○그러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이 모든 근무자를 종합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익일 지사님께 반드시 지휘보고토록 하여 당직등 근무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고 있음

○'96. 6월말 현재 우리 도의 진료비 지급현황은 청구액이 148억원에 지급액은 105억원이고 43억원의 진료비가 부족하여 각 진료기관별로 약 2~3개월씩 진료비를 지연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진료비 부족액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중앙에서도 각 시도에 국고보조금을 수시로 추가 배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중에 우리 도에도 23억원의 국고보조비와 도비부담금으로 29억1,700만원을 추가 집행하였음

○진료비 체불에 따른 환자 진료 기피현황은 우리 도에서는 확인된 바는 없지만 앞으로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으며

○현재 체불액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국고보조금을 추가 배정받아 진료비 체불액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음

질 문 요 지

○관내 지방도 7개노선이 국도가 되어야 하는데 국가지원 지방도로 된 이유와 이에따른 지원대책은

< 답변 : 건설교통국장 송 완 호 >

○국도의 지정기준은 도로법 제13조에 의거 주요도시, 지정항만, 주요한 비행장 또는 관광지를 연결하여 고속도로와 함께 국가 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도로법을 '95. 12. 6일 개정하여 국가지원 지방도가 추진되었음

○시행령은 '96. 7. 1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 우리 도에서는 7개노선에 269㎞, 구단양-영춘간 50.2㎞, 부강-청원IC간 7.3㎞, 용화-앙성간 111.9㎞, 강내-옥산간 20.2㎞, 양산-황간간 12.4㎞, 광혜원-오생간 20.7㎞가 지정되었음

○국가지원 지방도의 투자내역은 국가는 공사비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용지비를 부담하여 시행하도록 되었고, 노선별 투자계획은 현재 건교부에서 투자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질 문 요 지

○재난위험시설물 감소이유 및 E급 시설물 감소이유와 앞으로의 시설물 관리대책은

○도내 민방공 경보사이렌 가청률은, 노후시설 11개소 교체외 경보망 시설의 체계 개선 방안은

질 문 요 지

○지방세 비리 사전예방 대책과 '95년이후 지방세 비리 적발 공무원 현황은

< 답변 : 감사실장 권 청 사 >

○지방세 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근원적 대책으로 '95년부터 지방세 부서를 이원화하여 부과업무와 징수부서를 분리 시행하고 있으며, 각 시군 공히 지방세에 대한 전산화를 의무화하여 세금부과 액수부터 징수에 이르기까지 전산처리 함으로써 예년에 수작업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비리 소지를 없애는 한편 매일 일일 결산을 확행하고 있음

○또한 감사실의 지방세 전문감사 요원을 세무6급으로 배치해서 전문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리고 '95년도 이후에 지방세 비리로 적발된 공무원은 금년도 5월에 전시·군을 대상으로 재산세와 종토세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하여 준 청주시 관계공무원 2명을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수사중에 있는 사건 이외에는 여타 시군에서는 비리로 적발된 공무원이 없음

질 문 요 지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영세민 1,228가구 3,623명에 대한 생계보호 특별대책 강구 및 지원용의는

○생활보호자 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체불을 명목으로 진료를 기피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 답변 : 사회복지국장 장 상 자 >

○우리 도의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1,228가구 3,623명에 대해서 재정형편상 특별지원을 하기는 어려우나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인 단독세대 13,739세대와 오지거주 영세민 3,047세대 총 16,768세대에 의료보험료중 50%를 경감 해주고 있음

○아울러 시군에서 별도의 자체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시를 하였고, 일부 시군에서는 내년도부터 자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의료보호 진료비의 재원은 국비보조금 80%, 도비부담금 20%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나 매년 진료수가 인상, 진료기간의 연장 등으로 진료비의 수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진료수가 인상분 17.6%에도 못미치는 매년 10% 내외에서 증가를 하고 있음

< 답변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윤 태 무 >

○우리 도에서는 연초에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총 191개소를 그중에 E급이 23개소를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하고 관리해 왔음

○그동안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100억원을 투자하여 32개소에 대하여는 개보수를 완료함으로써 재난위험물 관리대상 시설물에서 제외되었고, 이중 E급 9개소가 포함되어 줄게 되었음

○앞으로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연차적 개보수를 할 계획이며 현재 시군에 3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0개소에 대하여 개보수를 추진중에 있음

○우리 도에 설치된 경보시설은 중앙통제소 경보장비와 동일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경보전달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유선 두절사태를 대비하여 무선경보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월1회이상 정기적으로 철저한 점검과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음

○민방공 경보사이렌은 1980년도부터 1990년까지 도내 읍지역 이상에 2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그중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되어 금년도에 1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11대를 전자식 앰프사이렌으로 교체 추진중에 있고, 11대는 '97년에 교체할 계획임

○또한 면단위 이하 사이렌이 설치되지 않아 그 지역에는 경보전달을 할 수 있는 자동 경보수신기 345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KBS지방방송사에 설치되어 있으며 각종 재난발생시 KBS라디오 방송전파를 이용하여 경보 안내방송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경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음

○아울러 현재 우리 도 도민의 경보사이렌 가청율은 85%임

□ **제4차 본회의 : 1996. 9. 4 (수)**

○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내무위원회 유 명 호 의원

질 문 요 지

○국제통상 활성화 방안

< 답변 : 행정부지사 나 기 정 >

○첫째, 국제통상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세계화 정보센타를 대한무역진흥공사 등의 종합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고, 다양한 상품 소개 책자를 제작 활용할 계획임

○둘째, 해외시장 개척활동의 적극지원을 위하여 해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지원 그리고 해외상설 전시판매장의 운영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대외 교역능력을 배양하고 해외시장의 다변화를 유도해 나가겠음

○셋째, 수출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학연 컨소시엄을 계속해서 더욱 확대해 나가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디자인실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해외기술 연수를 통하여 선진기술을 습득시키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음

○일본 야마나시현과는 '92. 3. 27일 자매결연 이후 행정, 청소년, 문화예술 그리고 스포츠와 기술, 경제 등 다방면에 걸친 활발한 교류를 전개하고 있으며

○중국 흑룡강성과도 행정과 스포츠, 청소년, 경제교류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상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9. 18일 우리 도와 흑룡강성과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고 각 분야에 걸쳐 교류를 내실화해 나갈 계획임

○앞으로 일본, 중국과의 교류에 머물지 않고 세계의 중요국가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교류를 확대하고 각 분야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내실있는 교류를 추진하여 세계속의 충청북도로 부각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음

질 문 요 지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재정부담 대책은

< 답변 : 기획관리실장 김 동 기 >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은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임

○'94년부터 '97년까지 우리도의 지방직 전환인원은 도 265명, 시군 704명으로 총969명이고, 이중 435명은 이미 지방직으로 전환하였고 내년도에 534명이 전환될 예정으로 있음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라 도 13억원, 시군 35억원 등 연간 48억원이 추가 소요되어 이에 따른 재원대책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 하고 있어 내무부가 현재 교부세율 인상 또는 증액교부금으로 보존하는 재원대책을 재경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음

○계속해서 내무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국비로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 문 요 지

○'95년이후 중앙정부 사무중 도에 이관 또는 위임사무 현황과 이에 따른 재정부담액과 그 대책은

○도의 광역행정에 시군의 협조가 미흡하거나 안되고 있는데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도의 대처방안과 향후대책은

< 답변 : 내무국장 박 경 국 >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 자율권을 높이기 위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도에서는 그간 200건의 사무를 발굴하여 시도로 이양하여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음

○그 결과 '95년과 '96년에 110건의 국가사무를 시도에 이양하기로 확정하였는데 '95년이후 실제 법령개정에 의해 이양된 사무는 68개 사무로서 분야별로 보면 내무분야가 18개사무, 농림수산분야가 40개사무, 통상산업 분야가 6개사무, 환경 및 보건분야가 4개사무임

○이들 사무에 대하여는 이행대상이 단순 인허가 사무등으로 사업비가 들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이양된 사무를 보면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업무와 지도확인등 현지 집행적 성격으로 이양 이전에도 도에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던 사무가 대부분으로 사업비 부담이나 인력의 추가소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나 위임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경우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단계부터 사업의 이행과 예산조치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중앙에 건의하겠음

○그동안 지방자치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기주의와 지역중심에 편중된 시각으로 인해 일부 국도정 시책이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음

○그러나 최근의 대체적인 시각과 방향은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가의 이익이나 우리 도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으며 도차원에서도 지역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나 우리 도 전체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별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음

질 문 요 지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과 대책

< 답변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윤 태 무 >

○우리 도에서는 현재 인위재난은 재난관리국과 재난상황실에서, 풍수해등 자연재해는 치수과 방재상황실에서 산불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과가 신설되고 재난상황실을 설치할 때에 치수과 방재상황실 및 산림과 산불상황실 모두 재난관리상황실에서 통합운영코자 검토했었으나

○자연재해는 치수과에 무전장비등은 산림과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를 이전하려면 많은 예산과 기구의 개편등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재난관리상황실에서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시군과 신속한 운영체제로 되어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됨

○공사진행기록 공개제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95. 12. 7일 도지사 특별지시를 통하여 시장군수와 도 사업소장에게 세부지침을 시달하여 모든 건설공사 준공시에는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감독자, 현장배치 기술자, 준공검사자 등의 이름을 화강암에 새겨서 설치토록하고 있음

○공사진행기록 공개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도와 비교연구해서 시행토록 연구하겠음

질 문 요 지

○방화관리 및 소방점검과 관련한 소방업무 미비점 개선대책

< 답변 : 소방본부장 이 용 태 >

○우암상가 붕괴사고가 '93. 1. 7일 01:08경 동건물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 01:50 초기진화 완료후 02:10붕괴된 사고로 화재발생이후 1시간여만에 건물이 붕괴

○금번 민사소송을 제기한 분들은 소방법 제2조제7항에 규정된 우암상가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서 소방법 제8조의2에 근거하여 소방훈련을 스스로 실시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분들임

○다만 이들이 행정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소방검사권, 개수명령권, 소방시설 설치명령권, 화재경계지구 지정권, 방화관리자 해임권고권이 있으나 이는 행정상의 의무와는 구별되는 것이 행정법상 통설로 알고 있음

○소방검사 요원들이 우암상가 점검과정에서 고장난 소방시설을 작동되는 것처럼 복명서를 작성하는 등 공직자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며 또한 우리 도와 청주시 그리고 언론사가 중심이 되어 30억원의 성금을 모금 그분들에게 전달한 바 있음

○앞으로 소방검사권은 강력하게 행사하고, 개수명령권은 신중을 기해 적용하겠으며,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는 '93. 12. 27일 소방법규를 개정하여 방화관리자가 직접 점검관리하거나 시설주가 점검업체에 용역을 주어 점검 하도록 민간업무로 이양한 바 있음

○또한 청주 서문시장과 석교동 상가밀집지역, 충주공설시장 등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곳은 정기적인 소방통로 확보훈련과 순찰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방관관리자 교육은 소방안전협회에 위탁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음

질 문 요 지

○학생봉사활동 의무화에 대한 효율화 방안

< 답변 : 교육감 김 영 세 >

○학생봉사활동은 학교교육이 성적지상주의에서 탈피하여 지성과 인성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한 전인교육에 충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학생 개개인의 자발적인 의도에서 단체 또는 개인이 타인을 돕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무보수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말함

○그러나 봉사활동이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학생과 학부모 및 사회각층에서 생소하게 느껴지고 이해가 부족하여 점수를 얻기위한 의무적 활동이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극히 일부에서는 형식적이고 실적위주의 활동으로 잘못 전개되고 있는 사례도 있지만 조속히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봉사활동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의에 의해서 남을 돕고 더불어 사는 기회를 배우기 위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하여 봉사하는 것으로 인성교육을 위한 권장사항이며 점수화하는 것은 아님

○차후 봉사활동에 대하여 일부 시행착오 되었던 점들을 점검분석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음

교육사회위원회 김 인 식 의원

질 문 요 지

○청원, 괴산, 단양 등의 진료과목 보강과 보은 등 낙후지역 의료진 보강 등 지역간 의료혜택 편중 해소방안은

< 답변 : 행정부지사 나 기 정 >

○한방진료실 설치는 우리 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의 특수사업으로서 '97년부터 도내의 12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의료인력을 한의사협회 충북지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주2일 정도 진료할 계획임

○금년 6월에 사업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시군보건소에 사업계획을 시달하였으며 한의사 인력문제는 이미 한의사협회 충북지부와 무료지원토록 협의를 마쳤으며, '98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계획임

○병의원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서 읍면지역간의 의료혜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며, 앞으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교통경제 등 제반여건으로 비춰볼 때 민간의료 자본투자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앞으로 농촌지역의 중추적 의료기관인 보건지소를 의원급 정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장하고 장비나 인력을 대폭 보강해 나가고 민간의료자본의 유치 또한 민간 공공 의료기관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등 4년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임

질 문 요 지

○제천, 충주 통합시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 촉구는

○분뇨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상태와 향후대책은

○공무원의 전문성 미흡에 대한 향후대책은

○도내 폐광주변 오염문제에 대한 처리대책과 환경오염 신고센터의 신고접수 현황과 추진효과는

< 답변 : 기획관리실장 김 동 기 >

○통합시에 대하여는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에관한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통합후 5년간은 통합전과 똑같이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시행중에 있음

○특히 재정지원 측면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종전 군지역의 특정단위 및 단위비용을 다른 군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통합전 군지역의 군도도 종전과 같이 군도포장계획에 포함하여 지원을 하고 있음

○또한 정주권개발사업 등 농촌지역에 투자하는 각종 사업비도 종전과 다름없이 배분하고 있으나, 사업성격상 시군마다 1개소 밖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리고 충주·제천시에는 통합기념사업비로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2차년도에 걸쳐 20억원씩 모두 4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한 바 있음

○통합시 지원에 계속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음

○도내 설치된 14개 분뇨처리장중 청주, 충주, 옥천, 영동처리장 등 6개소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그 외에 80년 초에 설립한 제천, 보은, 진천, 괴산, 음성, 증평처리장은 기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임

○미흡한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98년까지 지방양여금 지원을 받아 시설을 조속히 보완하는 한편 환경기초시설의 전문직 확보는 14개 분뇨처리장중 9개소에는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나 나머지 5개소는 환경직 또는 보건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자격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계속 보강해 나가겠음

○도내 폐금속 광산은 소규모 광산으로서 오염 우려는 없으나 주변지역에 대한 확인과 오염도 측정에 의한 오염방지 조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음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부실시공 사업의 예방을 목적으로 금년 5. 13일부터 환경오염 방지시설 부실시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신고 건수는 없음

질 문 요 지

○청주지역 광역시가 될 때 기타 시군 존속 및 통폐합에 대한 견해 및 청주에 인구억제책을 쓸 용의는

< 답변 : 내무국장 박 경 국 >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는 명문화된 법적 요건은 없으나 통상 도시인구가 100만명을 상회하게 되면 국토의 균형발전 및 도시기능, 지역정서 등 제반행정여건과 잔여도세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우리 도의 지역여건상 청주의 광역시화는 범도민적인 합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며, 청주시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대도시화 추세 및 인구집중현상을 인위적으로 억제할 수는 없는 것임

○우리 도에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북부권에는 충주테크노타운의 건설, 제천 왕암공단 조성, 단양 관광개발 등을 중점 추진해 왔으며 남부권은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개발로 과학영농특화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내 각 지역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살려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음

질 문 요 지

○한방진료실, 치매상담센터, 전문병원, 요양시설 등 현재의 준비상황은

< 답변 : 사회복지국장 장 상 자 >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발생 예방과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97년까지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관련부처와 협의 추진중에 있으며

○노인전문병원은 일반 노인을 위한 전문치료시설로서 보건복지부에서 2000년까지 시도별 한개씩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민간의 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93년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 융자알선 등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60억원 한도의 설치비 및 장비보강 사업비의 80%까지 연 이율 3%, 상환기간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추진하고 있음

○우리 도에서도 민간사업자를 모색하여 2000년 이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치매 요양시설은 저소득 노인을 무료로 요양치료해 주는 시설로서 보건복지부에서는 2005년까지 전국에 70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음

○우리 도에서도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신청중에 있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98년까지는 건설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임

질 문 요 지

○농산물 가공률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지원과 대책은

○외래어종 생태계 파괴에 대한 대책은

< 답변 : 농정국장 김 승 기 >

○'89년부터 산지가공공장 설치지원을 전개하고 있음

○'95년말까지 전국식품 37개소, 산지가공 23개소, 특별단지 18개소, 소득개발기금 지원 6개소 등 89개소에 53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21개소에 47억원을 지원 육성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앞으로 신규 가공공장시설 지원대상업체의 선정시 투자의 규모, 경영능력, 제품의 시장경쟁력, 지역농산물 이용도 등을 보다 심도있게 종합검토 선정토록 하고

○기존공장에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내고장 큰장터와 같은 도 자체 이벤트 행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와 판매의 기회를 확대하고 중앙단위 행사와 국제박람회 및 해외시장 개척단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가공상품의 상설전시판매장 설치를 지원하고 특히 가격동향 및 수출 등 판로 확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경영주들이 건실한 기업으로 육성 발전하도록 유관기관 단체와 적극적인 협조하에 최선을 다하겠음

○외래어종에는 향어, 부르길, 베스 등 8종과 양서류인 황소개구리 등이 있으며, 이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루길, 베스, 황소개구리이며 본도의 경우 부르길이 가장 넓게 대량 서식하고 있고 베스와 황소개구리도 일부 수면에서 서식하고 있음

○외래어종을 없애기 위하여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외래어종 서식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들 외래어종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범도민적인 외래어종 없애기 운동의 전개를 위하여 본도 민원실과 내수면개발시험장에 외래어종 표본실을 전시하고 전단 1,000매를 유료낚시터, 사찰, 어업하는 자 등에 배포하여 외래어종은 반드시 포획하고 방생을 하지 말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이 운동을 더 확산하기 위하여 포스터 1,000매를 추가로 유인하고 행정관서 민원실, 낚시터 등에 부착할 계획이며 또한 어업하는 자들로 하여금 외래어종 포획행사를 실시토록 지도하겠음

질 문 요 지

○교구확보를 분석한 결과와 향후 교구확보 계획은

< 답변 : 중등교육국장 송 대 헌 >

○교구 확보율은 초등학교 95.4%, 중학교 90.2%, 고등학교 84%, 평균 확보율 93.2%를 98년까지 100%를 확보하여 과학교육을 실험실습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초등학교의 컴퓨터 보유현황은 '95년까지 2인 1대 기준으로 초중고에 한 학급분을 100% 보급하였으나 '96년부터 컴퓨터 교육의 강화를 위해 1인 1대 추가보급계획을 수립하여 '96년에 586급 기종으로 초등학교 1,032대, 중학교 682대, 고등학교 543대, 합계 2,257대를 보급시켰으며 '97년 64%, '98년 72%,'99년 80%, 2000년 100% 보급계획임

○실업계 고등학교에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현황은 '96년에 농업계 55% 공업계 62.6%, 상업계 68.4% 평균 62.2%인 것을 '97년 70%, '98년 81%, '99년 91%, 목표년도인 2000년 100%를 확보하여 실업교육을 실험실습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음

교육사회위원회 이 길 하 의원

질 문 요 지

○충북대학교의 국책대학 추진 부진과 '97년도 국책대 지정철회 및 국고예산 지원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데 도의 예산지원 약속이행 용의와 대책은

< 답변 : 행정부지사 나 기 정 >

○정부의 국책대학 지정 육성사업은 지난 '94년도에 전국 8개 대학을 국책대학으로 지정하고 대학별 특정분야의 기술개발 체제를 확립하여 관련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중에 있는 사업임

○충북대학교에서 최근에 학연산 공동기술연구원 건립비로 30억원, 산학협력연구비로 30억원, 합계 60억원의 도비지원 요청이 있었으며

○충북대학교를 국책대학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학연산 공동기술연구원의 설립과 충북대학교 제2캠퍼스 설립 문제를 충북대학교에서 지원요청을 하여 도에서는 오창테크노빌 용지내에 부지제공을 해줄 것을 검토하고 교육부에 요청 하도록 동의된 바 있음

○충북대학교에서 테크노빌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충북대학교 구내에 산학연공동기술연구소를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고 100억원을 지원요청 하다가 60억원을 요청한 바 있음

○도립옥천공업전문대학을 추진중에 있는데 막대한 건설비와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고 금년부터 매년 도세의 2.6%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 당초예산에 이미 34억원이 계상되어 있음

○충북대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100억원은 여러가지 재정형편상 사실상 지원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

○다만, 도내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학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도 예산으로 8억7,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더욱 확대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임

질 문 요 지

○'95년 전문직 임용시 추천대상에서 해당 교사들을 제외하고 현직 교감을 우선 임용한 이유와 '96년에는 우수하고 참신한 인재를 임용할 계획은

○교육전문직 승진과정과 석사과정 이수 교원의 현장 교육에 공헌할 제도적 장치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의 전문직 임용 등 제도적 장치는

○교원성과급제 폐지

< 답변 : 교육감 김 영 세 >

○교육전문직 임용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및 교육전문직임용규정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으로서 임용대상자 선정을 위한 전형에서 교사를 제외 하도록 한 규정은 없음

○'95년 첫 공개 전형에서 중등의 경우 응시자 53명중 교사가 19명이 시험을 보았는데 교사로서 교감자격증 소지자,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특별한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추천을 받아 전형에 응시토록 문호를 대폭 개방했음

○지난 7월에 실시한 중등교육 전문직 임용 전형시 박사학위 소지자 4명이 응시해서 전원 합격이 됐음

○지금까지 교육전문직은 이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고 지도력이나 능력을 갖춘 교원중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음

○한국교원대학교에 교사를 파견하여 석사과정을 이수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 계속 더 많은 교원을 파견하여 수준 높은 학문과 교육기법을 이수케 하여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겠으며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석박사 학위 소지자는 전문직 임용에 많이 발탁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시행하여 전문직의 기능향상 및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여 나가겠음

○공무원의 특별상여수당 지급은 공무원수당규정과 총무처 예규 및 교육공무원 특별상여수당지급지침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대상자가 교육공무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능력에 따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 시키기 위한 국가시책으로 문제점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음

○앞으로도 개선 방안은 교육부에 건의하겠고 수당지급 폐지에 대하여는 이 제도가 상위법규인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에서 폐지를 결정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는 없으며 중앙정부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며, 아직 시행 초기단계이므로 성과급의 장단점이나 효과를 가늠하기가 어려우며 특별상여수당은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유독 교육공무원만 제외 될 수는 없는 것으로 폐지를 건의하기는 곤란한 실정임

질 문 요 지

○초등학교 교과 전담교사 운영 개선

< 답변 : 초등교육국장 조 성 근 >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교육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교과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고학년 담임교사의 수업부담을 경감시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 학급 담임교사 외에 음악, 미술, 체육,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하여 학교별로 4학년이상 매 3학급마다 0.75인씩 두는 교과전담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 규정에 의하여 우리 도에는 현재 순회 전담교사 92명, 교내 전담교사 422명, 모두 514명이 자연계 체육과 음악과 미술과 실과 등 5개과목을 전담하고 있음

○이러한 교과전담제의 운영은 학급 담임제를 근간으로 하고 고학년 일부 교과를 전담제로 운영함으로써 실기비중이 큰 체육, 음악, 미술, 자연,실과 등의 교과에서 교과전담 교사가 교과의 특성을 살린 지도를 함으로써 학습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현재 학급 담임교사에게는 담임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교과전담 교사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

○교과전담 교사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담임수당에 상응하는 교과연구 수당을 지급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겠음

질 문 요 지

○학교에 보급된 교육용 컴퓨터 현황과 최근 2년간 교육정보화 시설 투자 실적 및 향후 투자계획은
○모든 교원의 컴퓨터 전문요원화 계획 및 부족한 연수기관에 대한 대책은
○농촌지역의 상치교사 해소방안
○보충수업 관리수당 개선
○교사대상 환경교육 실적과 자격증 소지자 현황은

< 답변 : 중등교육국장 송 대 헌 >

○교육용 컴퓨터 보급현황은 2인 1대 기준으로 현재 100% 14,173대를 보급하였고, '96년부터 1인 1대 기준으로 586급 신기종을 보급하여 16,430대, '97년 64%, '98년 72%, '99년 80%, 2000년 100% 완료계획으로 약 1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임

○최근 2년간 교육용 컴퓨터 2,893대 31억5,000만원, 멀티미디어실 17실 25억8,000만원을 투자하였고, 앞으로 '98년까지 지역과학관 4실과 실업 고등학교 19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고, '97년에 약 27억4,000만원을 투 자하여 교육청과 전 학교간에 전산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임

○교원 컴퓨터 연수현황은 7년간 '90년부터 '96년까지 기초과정 5,446명, 심화과정 2,006명, 전문과정 962명, 소프트웨어과정 127명, 행정가 연수 1,184명 등 모두 9,725명을 실시 전 교원의 82%을 연수하였음

○현재 교원 컴퓨터연수는 11개지역 교육청에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충북상고에서는 고등학교 교원의 기초과정, 심화과정, 전문과정, 소프트웨어 과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과학교육원에서는 전문과정을 연수하고 있어 현재로는 연수기관이 부족한 편이 아니나 앞으로 연수인원의 확대 등에는 연수기관의 부족이 예상될 때 도내 대학기관을 활용토록 하겠음

○현실적으로 학급수에 따라 교사 정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에는 전 교과목별로 교사를 배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의 교육과정에 일부 한문교과의 이수과정이 있고 국어과와 한문과는 인접과목으로 학문적으로 여러가지 관련이 있어 국어과 교사가 한문을 지도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었던 것도 사실임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한문교과가 필수교과이었으나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선택교과로 개정되었고, 고등학교는 과정별 필수교과로 축소되고 있는 형편임

○'97학년도부터 신규교사 임용시 도내 소규모 학교의 교사 수급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규자원을 확보하고 순회교사제 등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음

○보충수업의 운영비는 소요지도비의 20내지 25%로 할당하고 있으며 이는 보충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각종 수용비, 교재 제작비, 전기료, 연료비 등과 같은 수용비와 보충수업을 위해 운영관리에 참여한 교장, 교감과 보충수업비 관리 등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서무담당자 및 기능직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보충수업이 이루어지려면 교사에 의한 수업활동 뿐만아니라 교육과정 편성, 교재지원, 청소업무 등 관리자의 관리활동이 수반될 수 밖에 없어 관리비는 이에 대한 지원비적 성격을 띠고 있음

○교사들의 보충수업 수당은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으며 청주시의 경우 국영수 등 주요과목 담당교사는 월 30만원에서 60만원의 규모내에서 받고 있고, 지역간의 차이가 있어 소규모 학교에서는 대단히 적게 받고 있는 실정임

○전국적으로 보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상급학교 진학이 치열한 경쟁체제에 있는 한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의 노고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환경교육과정은 우리 삶의 터전인 환경에 대한 이해와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함양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도 가능한 과학, 사회, 실업교과 등 관련 교과교사가 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교과의 배치를 위하여 교육부 주관 환경 부전공 연수를 전국농업계 교사를 대상으로 '97년까지 연간 50명씩 150명, 충북대 사대부설 중등교원연수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본도에서는 '95년에 7명이 연수를 이수하였고 '96년 현재 7명이 연수중에 있음

○환경관련 교과분석을 통한 환경교육 내용을 체계화하고 지도시 환경교육 자료의 적의 활용으로 자연생태 파괴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간접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데 주력하며 지역이나 학교실정을 고려하여 폐품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설치, 교내실습포, 꽃길 조성 등 다양한 현장학습 프로그램도 개발 적용하고 있음

○미래지향적인 환경교육을 위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세우도록 지도하고 학생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의 활성화, 환경관련 서클활동, 학교의 미화운동, 환경보전 봉사활동, 학부모와의 연계지도 등 지속적인 개발 적용으로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실천의지의 교육활동이 되도록 지도하겠음

□ 제5차 본회의 : 1996. 9. 5 (목)

○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충청북도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충청북도 청소리 옴부즈만조례안 재의의 건(원안가결)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96. 8. 28(수) 14:04~14:13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 (평균)	22시간 43분 (4시간 32분)	
1차 (8. 28)	14 : 13 ~ 14 : 35	22분
2차 (9. 2)	10 : 35 ~ 17 : 10	6시간 35분
3차 (9. 3)	10 : 36 ~ 16 : 30	5시간 54분
4차 (9. 4)	10 : 35 ~ 19 : 39	9시간 04분
5차 (9. 5)	11 : 05 ~ 11 : 53	48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5.8%)

대상인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3	4	5	1	2	3	4	5
38명	34	37	38	35	38	4	1	-	3	-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 상임위원회 '96. 8. 28 ~ 9. 5 (9일간)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비고
의회운영 위 원 회	'96. 8.22	1	○제128회 임시회 회기결정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기획경제 위 원 회	'96. 8.29 8.30	1 2	○'96 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 례	
내 무 위 원 회	'96. 8.29	1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중개정조례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재의 요구	
교육사회 위 원 회	'96. 8.29	1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	
건설교통 위 원 회	'96. 8.29 8.30	1	○충청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 조례 ○현지확인	

□ 특별위원회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비 고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96. 8.26	1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정청원에 관한건	

2) 안건처리현황

위원회별	상정	처리	처리결과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9	9	6	2	1			
의회운영위원회	2	2	2					
기획경제위원회	2	2	1		1			
내무위원회	2	2	1	1				
교육사회위원회	1	1	1					
건설교통위원회	1	1		1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1	1	1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기획경제위원회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본청 정원 18명을 증원 : 5급 4명, 6급이하 및 기능 14명

· 경보통제소 - 5명(6급이하 및 기능 5)

· 재난관리실상황실 - 5명(5급 3, 6급이하 2)

· 안전점검기동반 - 8명(5급 1, 6급이하 및 기능 7)

< 심사결과 > 부결

◉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당연직 위원중 각 국장을 각 실국장,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직명 변경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개폐는 충청북도조례·규칙심의회에서 처리하므로 삭제

○ 간행물 발간은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간행물 발간 등록으로 대체됨으로 삭제

○ 농촌공장 유치에 관한 사항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시장, 군수 승인사항임으로 삭제

○ 위원회를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최

○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의 관련분야 정리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2	2	1		1			
조례안	2	2	1		1			

□ 내무위원회

◉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

< 주요골자 >

○ 현행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 목적의 설치근거가 되는 조문 개정 (안 제1조)

· 청소년기본법 제13조제1항 → 청소년기본법 제13조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7조 → 삭 제

○ 지방청소년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출과 위원 위촉 방법을 개정(안 제2조)

· 부위원장 :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 → 위원회에서 위원중 호선

· 위 원 :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

○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간사를 두도록 조항 신설 (안 제4조, 제5조, 제7조)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및 요지

·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3조①항과 동조항6호의 자문을 구하는 대상을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아

·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제3조①항중 "①"을 삭제하고 "위원장의"를 "도지사의"로 동조항6호중 "위원장이"를 "도지사가"로 수정하여 의결

◉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재의요구

< 재의요구 사유 >

○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과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

· 유사제도와 기능의 중복으로 인하여 실효성 확보곤란

- 본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청소리옴부즈만의 관할과 그 직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현행 개별법상의 기존제도와 그 기능이 중복되고 유사하여 업무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변경등을 구하는 제도로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개별법에 의한 이의신청등이 있고, 또한 집행기관의 자체 사무감사, 조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 또한 지방의회의 청원심사 처리기능(지방자치법 제65조이하)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동법 제36조)에 근거하여 고충해결이 가능하며,
- 본 조례안과 같이 집행기관에 또다른 별도의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기능의 중첩으로 업무의 혼선과 비능률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특히 본 조례안에 의한 제도와 유사한 현행 집행기관의 감사기관에 접수된 청원, 진정건수가 11건('96.1.1~6.18)에 불과한 현실에서 동 제도가 어느정도 효과를 발휘할지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 또한 본 조례안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려면 새로운 기구신설과 더불어 15명의 추가 인력이 소요되고 연간 약5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는 곧 도민에게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국가의 작은 정부구현시책에 배치

- 본 조례안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옴부즈만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려면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동 조례안 제9조제5항에 의한 4급이상 공무원으로의 정원 조정이나 동 조례안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 12명을 증원하려면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나,
- 이는 국가의 작은 정부구현시책에 비추어 내무부장관의 승인 여부가 불투명하며 비록 동 조례안이 공포된다 하여도 그 시행이 곤란하기 때문임

· 설치근거 및 소속기관에 대한 타당성 문제

-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제도는 의회의 집행부통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스웨덴등 서구선진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각국에서는 헌법으로 동제도의 운영을 명문화하고 있고, 옴부즈만을 의회의 소속기관으로 설치하여 그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 우리나라에서는 동제도 설치에 대한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어 국회에서도 동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동제도를 조례로서 도입하는 것은 그 근거규정이 취약할 뿐 아니라,
- 조례로서 도입한다 하더라도 본 조례안 제3조에서는 청소리옴부즈만을 도지사 소속하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가 도민의 고충처리와 도정의 감시등을 위한 것이므로, 성격상 동제도에 의한 옴부즈만이 독립된 지위에서 명실상부하게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동기구를 집행부에 설치하는 것보다,

- 지방의회에 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방자치법등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마련한 후, 의회의 소속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제한

-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권한으로 의결권(동법제35조)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동법 제36조)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공무원 임용에 대한 의회의 동의권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 전통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집행부의 고유권한으로 인정하는 현행 권력체제하에서, 동조례안 제9조제3항에서 옴부즈만 구성원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권한배분원리에 어긋나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 배치됨

< 재의결결과 > 원안가결

※내무부장관 제소에 의한 대법원판결결과 : 피고패소('97. 4. 11)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 리 내 용					비 고
			가 결		부 결	보 류	기 타	
			원 안	수 정				
계	2	2	1	1				
조 례 안	2	2	1	1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제4조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 및 제4조와 관련된 별표의 조정가액별 수수료 산출표중 "알선, 조정" 외에 "증거보전신청"을 추가

○ 별표중 "분쟁조정신청수수료"를 "수수료"로, "환경오염피해청구액"을 "조정가액"으로 용어를 정립

○ 별표중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본 경우, 추후 산정이 가능하게 될 때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 리 내 용					비 고
			가 결		부 결	보 류	기 타	
			원 안	수 정				
계	1	1	1					
조 례 안	1	1	1					

□ 건설교통위원회

◉ 충청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 주요골자 >

○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

·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

·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자연재해대책업무 담당국장, 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도 관련 공무원과 관계기관의 파견된 자 등

○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구성

·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 이상의 공무원

(충청북도,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육군 5019부대, 1987부대, 공군 3579부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체신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전.영주지방철도청, 청주지방노동사무소, 청주기상대, 기타 재해관련기관)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 자연재해 발생은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연중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므로 재해기간을 하절기(6. 15~10. 15)로 명시하여 지방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요청을 제한하는 것은 하절기 이외의 기간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능동적 대처가 지난하므로 재해기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례안	1	1		1				

□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정청원에관한건

< 제안이유 >

○ 생활용수, 농·공업용수등을 확보하여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댐은 건설되어져야 함

○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신체적, 정신적, 재산관리상 피해를 받고 있으며, 규제에 상응한 보상없이 일방적으로 규제만 하는 것은 댐 주변 주민들의 헌법상 평등권,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제약하는 것임

○ 수자원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맑은 물을 보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일반안건	1	1	1					

第 15 節 第129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29회 임시회는 김준석의원외 13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96년 9월 6일 집회공고하고, 도 및 교육청의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9월 16일 오후 2시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1996. 9. 16 (월) ~ 9. 20 (금)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 199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 ○ 1995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 199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 박학래, 이종국의원

2) 의안처리현황

계	조 례 안	결 산 안	승 인 안	건 의 안	기　타
4건	-	2	1	-	1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1996. 9. 16 (월)

- ○ 제1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원안가결)
  - · 회　기 : '96. 9. 16 ~ 9. 20 (5일간)
- ○ 5분 자유발언 (건설교통위원회 김원식의원)
  - · 국립공원 운영관련

□ 제2차 본회의 : 1996. 9. 20 (금)

○ 199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원안가결)

○ 1995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원안가결)

○ 199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원안가결)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96. 9. 16(월) 14:06~14:13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 (평균)	26분 (13분)	
1차 (9. 16)	14 : 13 ~ 14 : 24	11분
2차 (9. 20)	11 : 06 ~ 11 : 21	15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85.5%)

대 상 인 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1	2
3 8 명	34	31	4	7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 상임위원회 '96. 9. 16 ~ 9. 20 (5일간)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비고
의회운영 위 원 회	'96. 9.16	1	○ 제129회 임시회 회기결정 ○ '95년도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심사	
기획경제 위 원 회	'96. 9.17 ~9.18	1-2	○ '9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심사	
내 무 위 원 회	'96. 9.17 9.18	1	○ '9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심사 ○ 문화재정비 보존실태 현지답사	
교육사회 위 원 회	'96. 9.17 ~18	1-2	○ '9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심사	
농림수산 위 원 회	'96. 9.17	1	○ '9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심사	
건설교통 위 원 회	'96. 9.17	1	○ '9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심사	

□ 특별위원회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비고
예 산 결 산 특별위원회	'96. 9.19	1	○ '9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 ○ '95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 승인 ○ '95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2) 안건처리현황

위 원 회 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비 고
			가 결		부 결	보 류	기 타	
			원 안	수 정				
계	4	4	4					
의회운영위원회	1	1	1					
예산결산특별 위 원 회	3	3	3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9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

< 주요내용 >

○ 세입·세출결산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현액 ①	세입결산액 ②	세출결산액 ③	세계잉여금
합계	946,079,354	978,547,267	816,009,879	162,537,388
일반회계	666,697,152	701,026,590	588,437,378	112,589,212
특별회계	279,382,202	277,520,677	227,572,501	49,948,176
공영개발사업	172,808,042	167,558,142	139,880,815	27,677,327
지역개발기금	84,074,522	87,462,663	65,653,888	21,808,775
의료보호기금	17,265,486	17,264,176	16,857,272	406,904
농어촌소득개발기금	3,323,626	3,323,626	3,270,000	53,626
대청호대책	1,190,526	1,912,070	1,910,526	1,544

○ 세입결산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 ③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계	946,079,354	998,547,835	978,547,267	331,820	19,220,748
일반회계	666,697,152	720,361,958	701,026,590	331,820	19,003,548
특별회계	279,382,202	277,737,877	277,520,677	-	217,200
· 공기업	256,882,564	255,238,005	255,020,805	-	217,200
- 공영개발사업	172,808,042	167,775,342	167,558,142	-	217,200
- 지역개발기금	84,074,522	87,462,663	87,462,663	-	-
· 의료보호기금	17,265,486	17,264,175	17,264,176	-	-
· 농어촌소득개발기금	3,323,626	3,323,626	3,323,626	-	-
· 대청호대책	1,910,526	1,912,071	1,912,070	-	-

○세출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①	지출원인 행 위 액 ②	지 출 액 ③	다음년도 이 월 액 ④	불 용 액
합 계	946,079,354	871,860,533	816,009,879	87,326,155	42,743,320
일 반 회 계	666,697,152	637,631,282	588,437,378	63,489,803	14,769,971
특 별 회 계	279,382,202	234,229,251	277,572,501	23,836,352	27,973,349
· 공 기 업	256,882,564	212,191,453	205,534,703	23,836,352	27,511,509
- 공영개발사업	172,808,042	146,537,564	139,880,815	23,836,352	9,090,875
- 지역개발기금	84,074,522	65,653,889	65,653,889	-	18,420,634
· 의료보호기금	17,265,486	16,857,272	16,857,272	-	408,214
· 농어촌소득개발기금	3,323,626	3,270,000	3,270,000	-	53,626
· 대청호대책	1,910,526	1,910,526	1,910,526	-	-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 주요내용 >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 관 별	예 산 액 (1)	징수결정액 (2)	수납액 (3)	불 납 결손액 (4)	미징수액 (2-3-4)
합 계	572,602,828	596,385,812	596,353,089	32,723	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7,040,302	407,040,301	407,040,301	0	0
지 방 교 육 양 여 금	94,144,680	94,144,680	94,144,301	0	0
국 고 지 원 금	7,247,662	7,241,966	7,241,966	0	0
비 법 정 전 입 금	2,077,684	2,115,340	2,115,340	0	0
지 원 금	32,438	32,438	32,438	0	0
재 산 수 입	6,259,168	6,467,317	6,467,317	0	0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32,068,172	32,307,440	32,274,717	32,723	0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332,417	357,867	357,867	0	0
잡 수 입	4,818,180	5,478,044	5,478,044	0	0
이 월 금	18,457,325	41,035,219	41,035,219	0	0
주 민 부 담 금	124,800	165,200	165,200	0	0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분 / 관별	예산액 ①	예산결정후증감 전년도이월액 ②	예산결정후증감 예비비지출액 ③	예산결정후증감 전용액 ④	예산결정후증감 이용및이체 ⑤	예산현액 ⑥=①-⑤	지출액 ⑦	다음년도이월액 ⑧	불용액 ⑨=⑥-⑦-⑧
합 계	572,602,828	22,577,889	0	0	0	595,180,717	539,017,692	40,059,776	16,103,249
교육위원회비	569,321	0	0	0	0	569,321	514,491	0	54,830
교육행정비	28,004,231	30,000	0	0	0	28,034,231	27,463,507	0	570,724
교육사업비	17,785,825	0	50,783	341,711 △341,711	0	17,836,608	16.395.418	657,222	783,968
학교비	378,993,729	30,000	0	0	0	379,667,130	374,667,130	45,268	4,311,331
사학지원비	35,394,304	0	53,000	0	0	35,447,304	33,088,316	1,090,077	1,268,911
시설비	106,020,454	22,517,889	35,000	0	0	128,573,343	86,888,830	38,267,209	3,417,304
제지출경비	3	0	0	0	0	3	0	0	3
예비비	5,834,961	0	△138,783	0	0	5,696,178	0	0	5,696,178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5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

< 주요내용 >

○ 예비비지출내역 (단위 : 천원)

과목			지출	지출액	불용액	예비비 지출사유
세항	세세항	사업명				
합계 (22건)			4,715,404	4,505,876	206,528	
일반회계 (21건)			4,706,313	4,499,785	206,528	
본청 (19건)			4,680,131	4,475,229	204,902	
2111 기관운영	1 기관공통 운영	유족보상금	54,792	54,792		도민교육원에 재직중 순직한 고 김용구의 보상금
2126 법무관리	2 소송사무 처리	소송위탁 수수료	5,500	5,500		민사소송 증가에 따른 소송위탁수수료 부족분
2311 서무관리	2 의전관리	도지사 이·취임식경비	19,500	15,280	4,200	도지사 이,취임식행사에 따른 소요경비
4111 농어촌 관리	3 유통구조 관리	위탁사업비 (국제식품 음료박람 회)	6,750	6,750		'95 일본국제식품음료박람회 행사의 일환인 한국수출농림수산물 일본 특별기획전 행사참여를 위한 전시장 임대료
		위탁사업비 (광복50주년 농수산식품 대축제)	20,000	20,000		광복50주년을 기념하여 농림수산부 주최로 우리 농수산식품대축제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도별 농특산물관운영에 따른 참가분담금
4114 농업기반 조성	5 한해대책	가뭄대책비 (암반관정 사업)	1,575,000	1,575,000		겨울가뭄대책용 생활 및 농업용수겸용 암반관정 개발사업
		가뭄대책비 (양수저류 사업)	300,000	300,000		겨울가뭄계속으로 남부 3개군의 저수율이 낮아 영농기 용수공급을 위하여 사전에 인근 하천에서 양수저류코자함
		가뭄대책비 (도비부담 금)	511,000	511,000		'95가뭄대책 국고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가뭄대책비 (영농분야 사업)	245,307	179,697	65,610	가뭄극복을 위한 예비 못자리설치 논물가두기 자재등 영농분야사업비
4116 도민교육 원운영	1 사업소 운영	수해복구비	151,757	130,136	21,621	'95. 8.25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교육원 시설물 수해복구비

과목			지출	지출액	불용액	예비비 지출사유
세항	세세항	사업명				
4221 조림관리	2 조림관리	광복50주년 기념사업	6,300	6,300		광복50주년기념 남산소나무 복원사업비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분
5212 도로건설	3 지방도	배상금	994	994		지방도(충주시 앙성~단암 간) 확포장공사편입 용지수 용재결처분취소청구소송 패 소에 따른 소송비용
5213 도로유지 관리	3 지방도	위험교량 정비	430,000	343,000	87,000	지방도상에 가설된 청풍교가 교량상판 이음부처짐교체, 전 반적 균열등 내구성과 구조 안전성이 크게 저하되어 기 존교량의 구조보강및 2차선 교량신설
5213 도로관리 사업소 운영	1 본소운영	배상금	49,525	49,525	1	청원군 오창면 주성리앞 지 방도로 소파보수 작업중 이 륜차 교통사고로 사망한 유 근관의 가족이 제소한 손해 배상청구 소송결과 판결금
		보상금	17,881	17,881		지방도보수공사중 사망한 지 방도수로원 허중회의 유족보 상금및장제비
5314 재해대책	2 재해예방	재해예방 (소류지정 비)	249,850	249,850		재해위험소류지 긴급보수비
		수해복구비	529,000	502,550	26,450	'95하천수해복구지구 내 하천 정비 기본계획 및 수해복구 실시설계용역비
6211 체육진흥	3 체육시설 확충	월드컵유치 사업	406,000	406,000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경기 장기본설계를 '95. 6월말까지 유치위에 제출토록 되어 있 으나 예산미확보로 착수치 못하고 있어 기한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집행
8111 지방채상 환	3 국외차입 금상환	지방채상환	100,975	100,975		IBRD군도개발차관원리금 상 환액 부족분
증 평 (2건)			26,182	24,556	1,626	
4114 농업기반	5 한해대책	가뭄대책비 (영농분야 사업)	6,182	4,559	1,623	가뭄극복을 위한 예비못자리 설치 논물가두기 자재등 영 농사업비

과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예비비 지출사유
세항	세세항	사업명				
5314 재해대책조성	1 재해복구	수해복구비	20,000	19,997	3,000	'95. 8.25 증평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응급복구비
공기업특별회계(1건)			9,901	9,091		
710 영업비용	712 지급이자 및 지방채 취급제비용	지역개발공체제조대금	9,901	9,091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3	3	3					
결산안	2	2	2					
승인안	1	1	1					

第 16 節 第130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30회 임시회는 김준석의원외 13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96년 9월 24일 집회공고하고, 정기회에 대비한 의원연찬회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10월 7일 오후2시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1996. 10. 7 (월) ~ 10. 17 (목)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ㅇ 충청북도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안
- ㅇ 농특산물 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안
- ㅇ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ㅇ 의원연찬회
  - · 일　시 : '96. 10. 15 ~ 10. 16 (2일간)
  - · 장　소 : 2층 소회의실
  - · 과　목 - 예산안 심의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국제화시대 도의원의 역할

※ 회의록 서명의원 : 박용인, 김춘식의원

2) 의안처리현황

계	조 례 안	건 의 안	승 인 안	예 산 안	기　타
4 건	1	1	1	·	1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1996. 10. 7 (월)

○ 제1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원안가결)

· 회 기 : '96. 10. 7 ~ 10. 17 (11일간)

□ 제2차 본회의 : 1996. 10. 17 (목)

○ 충청북도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안(수정가결)

○ 농특산물 수매가인상에 관한 건의안(원안가결)

○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원안가결)

· 기 간 : '96. 11. 21~11. 29(9일간)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96. 10. 7(월) 14:04~14:11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 (평균)	28분 (14분)	
1차 (10. 7)	14 : 11 ~ 14 : 17	6분
2차 (10. 17)	11 : 06 ~ 11 : 28	22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89.5%)

대상인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1	2
38 명	34	34	4	4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 상임위원회 '96. 10. 7 ~ 10. 17(11일간)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비 고
의회운영 위 원 회	'96.10. 7 '96.10.14	1 2	○제130회 임시회 회기결정 ○'96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	
기획경제 위 원 회	'96.10.11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내 무 위 원 회	'96.10. 9 10.14	1 2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 ○제77회 전국체전충북선수단 방문 격려 ○업무현황청취	
교육사회 위 원 회	'96.10. 9	1	○'96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현장 방문	
농림수산 위 원 회	'96.10.12	1	○농특산물 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안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 ○현장방문	
건설교통 위 원 회	'96.10.1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 ○현장방문	

2) 안건처리현황

위 원 회 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비 고
			가 결		부 결	보 류	기 타	
			원 안	수 정				
계	5	5	2	1	2			
의회운영위원회	1	1	1					
기획경제위원회	3	3		1	2			
농림수산위원회	1	1	1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기획경제위원회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본청 정원 20명 증원 (3급 1, 4급 1, 5급 4, 6급이하 14)

· 기 구 신 설 : 2명(3급 1명 문화관공국장 요원,
4급 1명 인삼특작과장 요원)

· 경 보 통 제 소 : 5명(6급이하 및 기능 5)

· 재난관리 상황실 : 5명(5급 3, 6급 이하 2)

· 안전점검기동반 : 8명(5급 1, 6급 이하 및 기능 7)

○ 증평출장소 1명 증원(건축물대장 관리요원 7급)

○ 기관간 정원 조정 : 사업소 △3명 → 본청 3명

< 심사결과 > 부 결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문화관광국을 신설하고, 다음 사무를 분장

· 문화예술의 육성

· 문화재, 천연기념물, 종교, 음반판매업소 관련 업무

· 체육진흥 및 관련 시설의 관리

· 관광의 진흥

· 청소년 관련 업무

○ 문화관광국 신설에 따라 현재의 내무국 및 공업경제국 분장사무중 중복이 되는 다음 업무를 삭제

· 내 무 국 : 문화예술 육성, 문화재 보존관리 및 체육진흥, 청소년 관련 업무

· 공업경제국 : 관광의 진흥

< 심사결과 > 부 결

◉ 충청북도제정운영상황공개조례

< 주요골자 >

○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재정운영계획 및 결산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임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및 요지

·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의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포괄적으로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둔다는 것은 본 조례의 복적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어 (안) 제5조제2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의 조문을 삭제 수정하고 의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3	3		1	2			
조례안	3	3		1	2			

□ 농림수산위원회

◉ 농특산물 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

< 제안이유 >

○ 금년은 벼농사를 비롯한 채소류의 농작물이 대풍작이 예상되고 있으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이 심화되고 있음

○ 수년째 동결되어온 추곡수매가, 잎담배수매가로 경작 농업인은 영농의 욕을 상실하고 영농에 포기하여야 할 실정에 있음

○ 농업인들이 이러한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생력을 가지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건의안	1	1	1					

第 17 節 第131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31회 임시회는 정기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1997년도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10월 21일 공고하고 10월 29일 오후 2시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1996. 10. 29 (화) ~ 11. 2 (토)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수안보지역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청원

○ 충청북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 주식회사 충북해외개척공사 설치조례안

-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나, 조례제정에 따른 관련법령의 절차상의 보완 등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 상정 보류

※ 보궐선거 및 재선거 당선의원 선거

- 제천(4) 박상수, 옥천(2) 안철호의원

※ 회의록 서명의원 : 최종철, 임헌용의원

2) 의안처리현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승 인 안	건 의 안	청　　원	기　타
4 건	-	-	1	-	1	2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1996. 10. 29 (화)

- ㅇ 의원(박상수, 안철호)선서 및 인사
- ㅇ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박상수의원 : 내무위원회
  - · 안철호의원 : 농림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ㅇ 제1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 · 회 기 : '96. 10. 29 ~ 11. 2 (5일간)

□ 제2차 본회의 : 1996. 11. 2 (토)

- ㅇ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수정가결)
- ㅇ 수안보지역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청원(원안채택)
- ㅇ 충청북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 주식회사 충북해외개척공사 설치조례안

- 조례제정에 따른 관련법령의 절차상의 보완 등 검토가 필요, 본회의 상정 보류

4) 회의진행시간

ㅇ 개회식 : '96. 10. 29(화) 14:05~14:12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 (평균)	2시간 13분 (1시간 7분)	
1차 (10. 29)	14 : 12 ~ 14 : 23	11분
2차 (11. 2)	11 : 07 ~ 13 : 09	2시간 02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3.6%)

대상인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1	2
3 8 명	37	36	2	3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 상임위원회 '96. 10. 29 ~ 11. 2(5일간)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비 고
의회운영 위 원 회	'96.10.29	1	○제131회 임시회 회기결정	
기획경제 위 원 회	'96.10.30 ~11.1		○관광지 개발사업 현장방문 -청원, 영동, 단양, 제천지구	
내 무 위 원 회	'96.10.29 10.30 10.31 11. 1	1 2 3	○위원회 의사일정결정 ○수안보지역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청원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문화재 현지답사	
교육사회 위 원 회	'96.10.31		○현지방문	
농림수산 위 원 회	'96.10.30	1	○위원회 의사일정결정 ○수매현장 현지방문	
건설교통 위 원 회	'96.10.29 '96.10.30	1	○위원회 의사일정결정 ○간담회 및 시설방문	

2) 안건처리현황

위 원 회 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비 고
			가 결		부 결	보 류	기 타	
			원 안	수 정				
계	2	2	1	1				
의회운영위원회	1	1	1					
내 무 위 원 회	1	1		1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내무위원회

◉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주요골자 >

○ 재산의 취득

· 장애인체육관 부지매입 및 신축

- 부지매입(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623-5번지외 1필지) 6,157㎡

체육관 신축 2,976㎡

· 농업인회관 신축(청원군 오창면 괴정리 444번지) 2,640㎡

· 증평예비군 종합훈련장 신축(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489번지) 1,007㎡

· 도립옥천공업전문대학 신축(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80-1번지) 7,835㎡

○ 재산의 처분

·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663-6번지(전) 1,022㎡

·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144-16번지(대지) 410㎡

· 위 지상건물(1동) 167.30㎡

· 증평예비군 종합훈련장 건물 기부(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489번지) 1,007㎡

○ 재산의 교환

· 교환취득

-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80-1번지(학교용지) 21,845㎡중 8,000㎡

· 교환처분

-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789번지(체육용지) 750㎡

-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807번지(체육용지) 2,603㎡

-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590-3번지(학교용지) 4,929㎡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및 요지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외청·사업소 이전재원을 조달코자 잡종재산중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144-16번지 410㎡ 및 위 지상건물(1동) 167.3㎡의 재산을 매각코자하는 것은

· '91. 5월 농협과 교환 취득한 재산으로 지가가 높고 생활체육시설 활용등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매각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정 의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일반안건	1	1		1				

第 18 節 第132回 定期會

1. 開會背景

제132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6. 11. 12 집회공고하고, 1997년도 예산안과 19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96. 11. 20 오후2시에 개회되었다.

2. 會　　期 : 1996. 11. 20 (화) ~ 12. 28 (토)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조례안 - 17건

○ 1997년도 예산안(도, 교육청)

○ 19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도, 교육청)

○ 도정질문 (12. 2 ~ 12. 3, 2일간, 5명)

※ 이병철의원 선서(제천, 제3선거구)

※ 회의록 서명의원 : 박만순, 김인식의원

2) 의안처리현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승 인 안	결 의 안	건 의 안	기　타
2 7 건	17	4	-	-	-	6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1996. 11. 20 (수)

○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 회　　기 : 1996. 11. 20 ~ 12. 28(39일간)

○ 199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제안설명 포함)

○ 199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교육시책연설(제안설명 포함)

○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가결)

□ 제2차 본회의 : 1996. 12. 2 (월)

○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건설교통위원회 한 상 문 의원

질 문 요 지

○행정구역 조정의지

< 답변 : 도지사 주 병 덕 >

○지방지단체간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법적 필수절차로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반드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 위법으로 무효가 되도록 한 현행법상 도지사가 직권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명문 규정도 없음

○'95. 7월 내무부 발행 행정구역개편 백서에는 시도간 경계조정이 11개 지역중 1개지역, 시군간 경계조정이 42개지역중 15개지역이며, 이들 지역은 당해지역의 기초의회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구역을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내무부에서 행정구역 조정을 건의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임

○그러나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의 경우, 지역주민은 찬성하고 있으나 음성군의회와 음성군수가 반대하여 법적 필수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해당지역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아직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임

○행정구역 조정은 자치권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매우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임

○앞으로 행정구역 조정은 재론하지 않을 방침임

질 문 요 지

○도기구 및 공무원 효율적 관리

< 답변 : 기획관리실장 김 동 기 >

○그동안 지방조직은 작고 강력한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자 불요불급한 기구 인력증설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체 조직진단을 통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

○금년 2월 조직개편시에는 행정수요가 감소된 종축장과 잠업검사소, 가축위생시험소를 농축산사업소로 도유림사업소와 산림환경사업소는 산림환경사업소로 각각 통합하였으며, 기능이 유사한 원종장을 농촌진흥원으로 이관하는 등 1차산업 부서를 개편한 바 있음

○현재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차원에서 도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산하 사업소를 포함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주요 개편내용은 공영개발사업단과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은 통합운영하고 공무원교육원과 도민교육원을 통합하는 등 도정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중임

○구체적인 개편내용에 대해서는 12월 중순경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음

질 문 요 지

○위생매립지 확보 및 음식물 쓰레기 대책

< 답변 : 보건환경국장 조 규 린 >

○도내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위생매립장으로 교체해야만 되는 실정임

○시군당 1개소 이상이 되는 위생매립장을 '99년까지 확보한다는 목표로 현재 운영중인 6개소 외에 충주 살미 등 3개소는 금년도에 완공하고 청주 광역매립장 등 4개소는 올해 착공하는 한편 제천, 영동, 단양 등 3개시군은 '97년에 착공할 계획임

○현재 운영중에 있는 31개소에서 나오는 침출수 6개소는 관로매설 또는 차량을 이용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연계 처리하고 나머지 25개소는 부득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식에 의하여 처리하겠음

○음식물쓰레기 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서 지난 11. 19일 시군 관계공무원이 토론을 실시하고, 12월중에는 환경보전자문위원들과 여성단체, 음식업협회 대표들과도 협의할 계획임

○감량화 방법은 일반음식점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식단제를 실시하는 방안, 적은 수의 반찬, 적은 양의 음식만 제공하거나 뷔페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으나 주민 모두가 필요성을 절감하고 솔선수범할 때만 가능함

○재활용방법은 현재로서는 퇴비 또는 가축사료로 만드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염분때문에 많은 제품을 사용하기가 곤란한 실정이고, 이를 위해서는 일반쓰레기나 음식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수거가 이루어져야 하나 주민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곤란함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해결을 위하여 환경부에 건의한 재활용공장 건설비 지원과 염분제거방안 연구와 범도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음

질 문 요 지

○농산물 품질인증제 및 진천쌀 차별화 대책

< 답변 : 농정국장 김 승 기 >

○진천쌀이 '92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전국에서 가장 질좋은 쌀로 인정을 받은 영광을 차지하여 전국 각지에서 진천쌀에 대한 명성과 선호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음

○그 결과 생산량에 비하여 수요가 많아지자 일부 쌀 도정판매업체에서 진천쌀이라는 상표로 판매하는 양곡에 진천지역 이외에서 생산되는 쌀을 일부 구입하여 포장재 하단의 원산지란에만 그 산지명을 표기함으로써 선량한 소비자가 오인 구매하는 등으로 진천쌀의 명성에 흠을 내는 결과를 가져 왔음

○이와 같은 표기 및 유통방법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나 브랜드화된 우수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생산자,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법 취지에는 어긋난다고 보아 앞으로 농산물검사소, 농협 및 미곡종합처리업체들과 유기적인 협조 및 행정지도를 통하여 상표를 사용하는 포장쌀에는 외지쌀을 사용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음

질 문 요 지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 답변 : 건설교통국장 송 완 호 >

○부실공사는 건설공사제도 및 공사의 관행, 기술 등의 책임의식 결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다고 판단됨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감리, 시공 등 전 과정에서 내재되어 있는 부실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예방대책으로 건설공사 현장점검요령 등을 도내 전 공사관련부서에 시달하여 시공 및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사감리, 사업장의 재해예방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토록 했음

○지난 3/4분기말 현재 210개소에 대하여 시도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바, 총 247건을 지적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또한 설계변경 등 기타 재시공에 대한 조치를 했음

○또한 건설공사 후에는 실명제 실시로 당해 공사에 대한 감독공무원, 시공업체, 설계자, 감리자, 준공검사자, 시공기간, 사업개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준공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여 공사감독자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더욱 고취토록 하고 있으며

○시군 읍면에서 시행한 소규모 사업은 설계시 현장여건과 예산범위에 맞추어 거푸집 사용횟수, 레미콘 대금, 잡비율, 이윤 등 품셈 적용이 잘못 된 점이 발견된 사례가 있음

○앞으로 도에서 시·군, 읍·면 공사관련부서의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품셈적용과 설계요령, 공사감독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규정이하의 설계 또는 부실시공 등이 되지 않도록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음

기획경제위원회 김 재 근 의원

질 문 요 지

○해외개척공사 검토 등 의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은

< 답변 : 도지사 주 병 덕 >

○도 단위의 해외개척공사를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가지 방면으로 연구를 해왔으나 이미 해외개척공사를 두고 있는 시도도 제대로 수지적자를 맞추지 못하고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임

질 문 요 지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과 테마파크 개발

< 답변 : 공업경제국장 박 만 순 >

○충북에 수안보, 속리산 2개지구의 관광특구 지정은 거의 확정적이며 다수 도민들이 이익과 혜택을 받도록 도내 내륙순환 도로를 따라서 관광지를 개발할 계획임

○관광특구 지역의 테마파크 전략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으나 관광특구 육성계획 수립시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들어 관광특구 지정지역의 성격에 부합하는 방안을 계획에 반영하겠음

질 문 요 지

○통합전 중원군 지역에 대한 개발촉진지구 지정 준비와 추진상황은
○내륙운하 건설과 5대강 수계통합 부당
○무분별한 온천개발 문제
○자전거도로의 확충방안

< 답변 : 건설교통국장 송 완 호 >

○개발촉진지구는 '94. 1. 7일 제정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개발촉진지구의 유형은 낙후지역형과 도농통합형으로 구분되어 있음

○우리 도의 경우 보은군과 영동군이 낙후지역으로 선정되어 보은군은 금년 4. 12일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 받아 '96년도 도로사업 실시설계비와 농지보상비 16억8,400만원을 지원해서 시행중임

○현재 충주시와 제천시에서는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중이며, 앞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조속히 건설교통부에 진달하여 지역균형 개발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내륙운하 건설에 관련한 학계의 흐름을 파악하여 충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 것이고 정부차원에서 정책으로 구체화된 것은 아님

○최근 국민의 소득증가와 여가선용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가되는 추세로 현행 온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도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지하 심층수가 해당되어 전국적으로 온천수 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우리 도에는 현재 12개 지역에 온천이 발견되어 이중 수안보 온천이 개발완료되어 영업중에 있고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개발계획 사업추진 중지중인 지구는 충주 앙성면 충원온천내 2개소이고,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도록 관계법령에 절차이행중인 지구는 중원온천을 비롯한 6개지구가 있고 음성 대소와 보은 장내지역은 온천반포 신고지역으로 되어 있고 추진은 안되고 있는 상태임

○우리 도의 온천시책은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용화·문장대 온천의 저지와 관련하여 온천개발은 전면 유보하겠으며, 앞으로 주변여건의 변화가 있을 시에는 신중히 검토하겠음

○자전거도로의 설치는 자동차 중심 교통을 자전거 중심으로 전환하여 심각한 도시교통의 체증과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을 해결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내무부의 주요사업 시책으로 현재 추진중임

○자전거도로를 신개발지, 공원, 하천 고수부지 등 레저 스포츠용과 생활권 중심의 자전거도로를 병행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학교주변 통학로, 공단주변 통근로, 철도역 및 대중교통의 연결순서로 연차적으로 확장하겠으며

○또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연계성 확보와 보도 턱 낮추기, 도로변의 포장재료를 개선하여 평탄성을 확보하고 신개발지는 가급적 차도와 보도를 분리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안정성 있게 확보해 나가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등은 계속 확충해 나가겠음

질 문 요 지

○충주과학산업단지 추진 미흡

< 답변 :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 창 국 >

○충주과학산업단지는 '94. 7. 27일 충주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도에서 그해 9. 12일 개발계획 구상용역을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금년도 2월에 납품 받았음

○그러나 정부에서 농업진흥지역 전용억제시책이 발표되면서 단지편입 예정지역내에 전체면적의 25%에 해당되는 42만7,000평의 경지정리된 농지가 포함돼 있어서 대체작업을 해야하는 문제점이 발견돼서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발주처인 국토개발연구원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임

○이건이 완료되면 충주시장 주관하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내무위원회 윤 병 태 의원

질 문 요 지

○정보의 종합관리 및 중앙로비 강화

< 답변 : 도지사 주 병 덕 >

○도정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것이고 부지사, 실국장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별도의 로비스트를 두고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별로 뜻이 없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됨

○또한 충북발전후원회 결성방안도 부수되는 문제점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준조세적인 비용부담을 수반하게 됨으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질 문 요 지

○자주재원 확충방안

·고속도로, 청주공항 등에 휴게장 및 판매장을 확보하여 농·공산품을 판매할 의향은

< 답변 : 기획관리실장 김 동 기 >

○고속도로 농산물판매장, 관내 고속도로 구간에 시군 농협과 협조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6개소에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을 설치하여 우리 도의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음

○아울러 내년 3월 개항 예정인 청주국제공항 구내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업의 생산품과 농특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판매장을 설치운영하는 문제를 한국공항공단과 현재 협의중에 있음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장을 고속도로 휴게소와 청주국제공항에 직접 설치운영하는 문제는 사업성격상 광역행정기관인 도에서 직접 추진하기보다는 생산자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함

질 문 요 지

○자주재원 확충방안

· 비영리법인 부동산 취득 일제조사로 세수증대 의향 및 지방세관리 종합전산화 대책은

○인사운영개선

< 답변 : 내무국장 박 경 국 >

○종교단체, 각급학교 및 법인, 농수축협 등 비영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90조 및 제291조에 의해서 비과세되거나 혹은 50%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앞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 외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비과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겠음

○'95. 7. 1일부터 도내 전 시군이 전산화를 완료하여 지방세의 부과, 징수 전과정을 전산처리하고 있으나, 아직 운영의 초기단계에 있어 과세자료의 종합전산망 구축 등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임

○이는 전국적 공통인 사항으로 내무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관계자료의 종합적인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음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년 이내의 전보를 제한하고 있고 특히 통계, 호적, 주민등록 등의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 감사, 병사, 세무, 법무, 공시지가 업무 종사자는 2년, 국제전문가는 3년간 전보를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 교관요원의 경우에는 2년간 전보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의 전보는 담당직위의 근무여건과 개인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그목적이 있음

○대부분의 민원관련 분야가 기술직으로서 해당 직렬에 적합해야 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인사운영에 제한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람

질 문 요 지

○공산품에 대한 도의 품질보증과 상표판매제 검토 등 자주재원 확충 방안은

< 답변 : 공업경제국장 박 만 순 >

○공산품에 대하여는 산업표시화법에 의한 'KS'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자를 표시하는 등 각종 공산품에 대한 품질규격은 개별법에 따라 국가에서 인증하는 품질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도 자체로 품질보증을 통한 상표권 판매는 현행 규정상 어려움이 있으며

○품질보증표시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제품에 원가상승 요인으로 반영되어 타지역 제품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공산품에 대한 품질보증 상표권 판매, 수수료 부과방안은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할 사항임

질 문 요 지

○학교주변 조직폭력배 근절대책

< 답변 : 교육감 김 영 세 >

○인성교육과 다양한 체험학습 추진으로 주체적 자세 확립방안에 대하여 인성교육 자료로 마음 밭을 읽으면, 바르게살기, 슬기 등의 책자를 개발·보급하여 참다운 인간이 될 수 있는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학교폭력추방대책협의회 운영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추방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추방대책본부를, 지역교육청에 대책반을, 각급학교에는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 활동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별로 교외생활지도 제도도 실시하고 있음

○각급학교의 학교폭력추방대책위원회는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교사와 학부모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으로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함과 함께 등하교길의 학생보호,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오락실, 만화가게, 유흥업소 등에서 청소년 탈선행위 선도 및 야간 합동 교외생활지도를 계속 추진하여 즐겁고 자유로운 교육환경을 가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제3차 본회의 : 1996. 12. 3 (화)

○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교육사회위원회 김 준 석 의원

질 문 요 지

○물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 답변 : 도지사 주 병 덕 >

○지표수 관리는 전국 중요 수계를 대상으로 국가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11년까지의 수자원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물관리를 하고 있음

○충북은 한강과 금강 수계의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어 충주호와 대청댐의 용수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충주댐과 대청댐의 광역상수도사업이 확충되면 충분한 생활용수와 산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음

○이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대청댐상수도 2단계사업과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도에서는 지역하천 수계별 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한 중장기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질 문 요 지

○먹는샘물(지하수) 관리문제

○계곡수 활용 및 보전방안

< 답변 : 보건환경국장 조 규 린 >

○전국토의 지하수를 일목요연하게 조사한 자료는 없으며, 이 문제는 지하수 실태조사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지하수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청원 초정지구와 미원지구에 대한 지하수 실태조사를 청원군으로 하여금 실시토록 조치하여 용역계약을 추진중임

○작년 5. 1일 먹는물관리법 제정시행 이전에 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추진중인 업체는 보은 반석음료, 옥천 금천게르마늄, 옥천 현대식품, 장수촌샘물 등 4개업체로서, 이들 업체에 대한 허가는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가서 패소할 경우에 허가를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며,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임

○도내 계곡수를 조사하여 우선 금년도에 전국 처음으로 78개 계곡을 1차 보호 계곡수로 지정하고 관리조례 제정, 안내판설치, 명예감시원 지정, 휴식년제 실시 등 후속조치를 추진중이며, 연차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임

○미래에는 심산 맑은 계곡수를 주민과 행정당국이 연계해서 개발하여 주민도 유용하게 이용하고 지방세도 확충하는 방안이 긴요하므로 계속 연구해 나가겠음

○계곡수의 보호관리에 먹는물관리법을 적용하는 문제는 먹는물관리법은 지하수를 뽑아서 먹는 샘물로 제조해서 판매하는 법률인 관계로 이법의 적용은 곤란하며,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등 개별법에 의거 보호하고 건의를 해서 이법을 개정해 나가겠음

질 문 요 지

○초등학교 영어 조기교육 대비

< 답변 : 교육감 김 영 세 >

○어학실 설치현황은 도내 초등학교 279개 학교중에 18개 학교이며, 초등학교의 어학시설은 어학실습기, 텔레비젼, 비디오 등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도내 602학급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학급당 130만원씩 8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현재 도내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영어교육 활동을 실시하는 학교는 전체 학교의 50%인 140개 학교이며 1인당 경비는 평균 16,000원이며

○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은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학교장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실시하고 있음

농림수산위원회 차 주 용 의원

질 문 요 지

○농업정보화 농민교육계획

< 답변 : 농정국장 김 승 기 >

○농업의 정보화는 농업정보의 수집과 교류, 농업경영의 전산화로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필수적인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우리 도에서는 금년 3월에 농업의 정책, 경작 및 생산현황 등 각종 통계 농산물 시세, 유통정보, 무역정보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농림수산정보망에 가입하였으며, 시군읍면동까지 PC통신망을 구축하고 충북 농업방을 개설하여 각종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이를 활용하기 위해 금년에 담당공무원 180명을 농림수산 정보센타에 2박 3일간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 지역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3,400여대이고 '97년도에는 이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97년도 당초예산안에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나가겠음

질 문 요 지

○농업정보화 농민교육계획

< 답변 : 농촌진흥원장 이 상 석 >

○농업정보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90년도부터 각도 농촌진흥원과 시군 농촌지도소를 전산망으로 연결하여 농업기술 종합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93년도부터 이들 정보를 데이콤 전산망에 제공하여 PC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어느 곳에서나 이용할 수 있음

○도 농촌진흥원에서도 농업인 전산교육 및 농업정보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 '89년도부터 경영기록장 분석프로그램, 신속정확하게 경영설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축산시범농장 전산화 프로그램, 지역간 유효 작목 도출을 위한 프로그램, 농가관리 프로그램, 농기계 부품관리 프로그램, 위탁영농회사 운영관리 프로그램등 8개의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활용하고 있으며, 새해 영농설계 교육시 보은군 농촌지도소에서는 보은우체국 컴퓨터교실을 이용해 농민 245명을 교육시킨 바 있고, 영동군 농촌지도소에서는 53농가를 대상으로 하이텔 단말기 이용방법을 교육시킨 바 있음

○그리고 '96. 4. 8일부터 4. 16까지 농촌지도사 15명과 전산이용 시범농가 27명을 대상으로 남부는 보은군 농촌지도소, 중부는 진천군 농촌지도소, 북부는 제천시 농촌지도소에 설치되어 있는 PC를 활용해 농업기술정보이용법, 각종 농업관련 프로그램 이용법 등을 순회하면서 교육시킨 바 있음

질 문 요 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 문제점

< 답변 :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 창 국 >

○현재까지 토지보상 실적은 8월 보상개시후 약 100일동안 총 285만6,000평 중 171만8,000평이 완료되어 61%이며, 단지내 거주주민 377가구중 151가구인 40%가 완료되었고, 공단입주 계약은 40%인 32만평을 완료하였음

○보상가 결정은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사와 토지공사가 지정한 감정평가사 1/2씩 함동 참여해서 결정된 것이며, 이 지역은 주민조직이 7회나 바뀌었고 현재도 3개나 있어 어려움이 많이 있음

○영농보상 등 기타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의 권한과 책임하에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영농보상은 단지내에 거주하고 있는 실경작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규정상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사리에도 맞지 않으며 외지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통작거리내의 실경작자에게는 줘야 되며

○물건조사는 보상대상 물건을 확정하고자 함에 있고 보상대상 물건 확정시 시행자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서명, 열람공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공사에서는 물건조사후 지난 3. 13일 열람공고를 하고 주민에게 알렸으며 조사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지금도 현지조사하여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보상을 해주고 있음

○보상금 지급공고와 통보는 일간신문과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하였으며 물건조사 완료후에 '96. 3. 13일 내외경제신문과 중부매일신문에 보상대상 물건 열람공고 및 개별통지를 하였으며, '96. 8. 5일 매일경제신문과 동양일보에 보상계획 공고와 1차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며, '96. 10월 및 11월에도 재차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한바 있음

○본 사업은 추진계획상 '96년도중에는 보상개시와 공사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마도 '96년도 중에는 착공만은 해야 한다는 의미 같음

○감정평가는 사업인정고시가 '95. 6. 24일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95. 1. 1일 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평가결과는 평당 평균으로 전이 공시지가의 175%인 6만6,000원이고, 답은 공시지가의 190%인 6만9,000원, 대지는 공시지가의 210%인 13만5,000원, 임야는 공시지가의 190%인 4만1,000원임

○참고로 타지역의 공시지가 대비 보상 실례는 광주 첨단 114%, 대전 농우지구 156%, 청주 하복대지구 138%로 오창단지보다는 낮은 수준임

○토지공사측에서는 타 사업지구보다 보상가가 너무 높다고 사업시행 여부를 놓고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오창단지의 보상가 400여억원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감사기관의 지적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음

□ 제4차 본회의 : 1996. 12. 16 (월)

○ 의원(이병철)선서 및 인사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병철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 1997년도 충청북도예산안(수정가결)

○ 199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수정가결)

○ 충청북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 도민교육원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개발사업소 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199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199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제5차 본회의 : 1996. 12. 23 (월)

○ 199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 199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 충청북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 교육연구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 학생회관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 도서관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97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원안가결)

□ 제6차 본회의 : 1996. 12. 28 (토)

○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 : 원안가결)
-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보고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96. 11. 20(수) 14:06~14:16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 (평균)	14시간 23분 (2시간 24분)	
1차 (11. 20)	14 : 16 ~ 15 : 19	1시간 03분
2차 (12. 2)	10 : 08 ~ 16 : 03	5시간 55분
3차 (12. 3)	10 : 07 ~ 15 : 21	5시간 14분
4차 (12. 16)	14 : 36 ~ 15 : 32	56분
5차 (12. 23)	14 : 06 ~ 14 : 31	25분
6차 (12. 29)	11 : 07 ~ 11 : 57	50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7.1%)

대상인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3	4	5	6	1	2	3	4	5	6
40명	36	39	39	39	38	39	3	-	-	1	2	1

※ 제4차 본회의 (이병철의원 선서)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 상임위원회 '96. 11. 20 ~ 12. 29(39일간)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비 고
의회운영 위 원 회	'96.11.29	1	○제132회 정기회 회기결정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 ○'96행정사무감사	
	12. 7	2	○'97당초예산예비심사(의회사무처)	
	12.16	3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제133회 임시회 회기결정	
	12.18	4	○'96 제2차 추경예산심사	
	12.27	5	○'9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기획경제 위 원 회	'96.11.21 ~ 28	1-7	○'96 행정사무감사	
	'96.12. 4 ~ 7	1-4	○'97 당초예산예비심사	
	'96.12.12	5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 ○충청북도개발사업소조례	
	'96.12.17	6	○'96 제2차 추경예산예비심사	
	'96.12.18	7	○'97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 ○'9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내 무 위 원 회	'96.11.21 ~ 27	1-7	○'96 행정사무감사	
	'96.12. 4 ~ 7	1-4	○'97 당초예산예비심사	
	'96.12.17 ~ 18	5-6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예비심사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비 고
내 무 위 원 회	'96.12.24 ~ 26	7-9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 ○'9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교육사회 위 원 회	'96.11.21 ~ 29	1-8	○'96 행정사무감사	
	'96.11.30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	
	'96.12. 4 ~ 7	2-5	○'97 당초예산예비심사 ○'97 교육비특별회계예산예비심사	
	'96.12.17 ~ 18	6-7	○'96 제2회 추경예산예비심사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96.12.24	8	○'9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농림수산 위 원 회	'96.11.21 ~ 28	1-8	○'96 행정사무감사	
	'96.12. 4 ~ 7	1-4	○'97 당초예산예비심사	
	'96.12.17 ~ 18	5-6	○'96 제2회 추경예산예비심사	
	'96.12.24	7	○'9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설교통 위 원 회	'96.11.21 ~ 27	1-7	○'96 행정사무감사	
	'96.12. 4 ~ 7	1-4	○'97 당초예산예비심사	
	'96.12.17 ~ 18	5-6	○'96 제2회 추경예산예비심사	
	'96.12.26	7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96.12.27	8	○'9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특별위원회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비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96.12. 9 ~ 14	1-6	○ '97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심사 ○ '97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심사	
	'96.12.19 ~ 21	7-9	○ '96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입세출추가경정예산심사 ○ '96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심사	

2) 안건처리현황

위원회별	상정	처리	처리결과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25	25	21	4				
의회운영위원회	4	4	4					
기획경제위원회	5	5	4	1				
내무위원회	5	5	5					
교육사회위원회	4	4	4					
건설교통위원회	3	3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4	4	1	3				

□ 의회운영위원회

◉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중 "내무국" 다음에 "문화관광국"을 삽입하고

○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중 "공영개발사업단, 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을 "충청북도개발사업소"로 명칭 변경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4	4	4					
조례안	1	1	1					
일반안건	3	3	3					

□ 기획경제위원회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문화관광국을 신설하여 다음 분장사무를 명시

· 문화예술의 육성

· 문화재 보존관리

· 체육진흥 및 청소년 관련업무

·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조정

· 관광지도 및 관광지 개발업무

○ 문화관광국 신설에 따라 현재의 내무국 및 공업경제국 분장사무중 중복이 되는 다음 업무를 삭제

· 내무국 - 문화예술의 육성, 문화재 보존관리및체육진흥, 청소년관련업무

· 공업경제국 - 관광의 진흥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정원조정 내용〉

○ 총감축 정원 78명 (도본청 △20, 의회 △6, 직속기관 증 22, 사업소 △71, 출장소 △3)
· 23명은 순감축 조치 - 기증원 승인받은 재난관리요원 23명과 상계조정 (도본청 20, 출장소 3)
· 본청 40명과 사업소 15명은 유보정원 관리

○ 도본청 : 937명 ⇒ 977명(유보정원 40명)

○ 의회사무처 : 65명 ⇒ 59명(감 6명)

○ 직속기관 : 981명 ⇒ 1,003명(도민교육원 정원이관 22명)

※ 공무원교육원 49명 → 71명(증 22명)

○ 사업소 : 352명 ⇒ 296명(감 56명)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및 요지

·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 작업에 적극 찬성을 하는 바이지만, 평소 의원보좌기능 강화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도전체 감원비율에 비해 사무처 감원비율이 크고 타 시·도에 현존하는 계를 없앨 경우 업무 추진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안 제2조2호중 의회사무처 59명을 64명으로 수정의결

◉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

< 주요골자 >

○ 도민교육원을 폐지하고 공무원교육원에 도민교육과 신설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개발사업소조례

< 주요골자 >

○ 주요업무

· 국책사업관련 도추진사업

- 보건의료과학단지조성, 경부고속전철오송역설치, 복합화물터미널건설

· 도특수시책사업

- 월드컵종합타운건설, 호남고속전철오송역설치

· 오송신도시건설기본계획수립추진

· 택지개발사업

· 산업단지조성사업등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7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

< 주요골자 >

○ 발행주체 :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 판매지역 : 전국

○ 발행규모 : 2,400억원

○ 발행형식 및 발행액

· 즉석식 : 1,200억원 (매월 100억원)

· 추첨식 : 1,200억원 (매주 24억원)

○ 발행기간 : '97. 1. 1 ~ 12. 31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5	5	4	1				
조례안	4	4	3	1				
일반안건	1	1	1					

□ 내무위원회

◉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수수료 항목신설 : 11개항목

·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신규 5,000원, 재교부 3,000)

· 체육시설업 관련항목(최고 200,000원 ~ 최저 10,000원)

- 골프장, 스키장업,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사항

- 체육시설업 신고사항 등

○ 수수료 삭제항목 : 6개항목(시·군조례로 규정)

· 공연장 설치허가, 변경허가, 허가증재교부

· 음란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등록, 변경등록, 등록증 재교부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종전에 호텔, 시장, 백화점, 유흥음식점, 지하의 위생접객업, 지하의 식품접객업, 소극장, 노래연습장등에 대하여 사용금지하던 이동식난로 금지업소를 비디오물 감상실업, 단란주점까지 확대하는 것임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면접 및 실기시험 수당

· 5급 이상 (일당) 30,000원 → 40,000원

· 6급 이하 (일당) 15,000원 → 20,000원

· 종 사 원 (일당) 6,500원 → 10,000원

○ 문제 편집·편찬 수당

· 일 당 7,000원 → 10,000원

○ 문제선정 심의수당

· 과 목 당 35,000원 → 45,000원

○ 감시 수당 (일당)

· 평 일 6,500원 → 10,000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현행 위임조례의 관장부서 재분류 및 위임체제를 재정비하여 전면개정

○ 관계법령의 개정, 폐지 등에 따른 사무의 위임근거 일치

○ 기존 위임된 사무중 업무성격상 도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사무 환원

○ 도지사 권한 사무중 시장·군수·출장소장이 처리하는 것이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사무 신규 위임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소모품의 범위기준중 취득단가 상향조정

물품의 분류에서 비품과 소모품의 품종구분 기준중 소모품의 범위기준을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단가 상향조정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5	5	5					
조례안	5	5	5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

< 주요골자 >

○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중 강의실을 따로두지 않을 수 있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으로 정함(안 제2조제3항)

○ 학원간 자유로운 경쟁 체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원의 시설 규모를 입시 종합은 시지역 330㎡·읍지역 198㎡를, 시지역 210㎡·기타지역 150㎡로, 입시 단과 교습과정을 신설하여 시지역 90㎡·기타지역 60㎡로, 어학은 198㎡를 90㎡로, 독서실은 165㎡를, 시지역 120㎡, 기타지역 60㎡로, 그외 컴퓨터, 음악, 주산은 99㎡를 60㎡로 완화함 (안 제2조제1항 별표1)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에 대하여 교습과정 특성상 일반적 기준이 필요한 교습과정에 한하여 기준을 정하고,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이 정하여 있지 않은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학원의 설립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설비 및 교구가 당해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등록 기준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제2항)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반당정원을 시설규모 완화에 따라 일부 조정하고, 시설면적 증가에 따라 학원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증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증원할 경우에는 설비 및 교구를 적정하게 추가로 갖추도록 함 (안 제3조제1항 별표 3 및 제3조제2항)

○ 학원의 부제 교습횟수를 1시간 이내 교습과정은 8부제 이하에서 12부제 이하로, 교습소는 일률적으로 4부제에서 1시간 이내 교습은 8부제, 2시간 이내는 4부제, 3시간 이내는 3부제, 3시간 초과 교습은 2부제 이하로 완화함 (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

○ 학원과 유해업소와의 인접한 장소의 범위를 학원과 유해업소가 각각 지상 1층의 경우에는 학원과 유해업소간의 수평거리가 20미터 이내인 장소와 위 이외의 장소인 경우에는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인 수평층과 직근상층 및 직근하층의 장소로 정함 (안 제6조)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강사 및 생활지도사를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해임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안 제7조제1항, 제2항)

○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수강료등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10일전에 관할교육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된 수강료등은 교습과정 변경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함 (안 제8조제1항 제2호)

○ 동일 건물안에는 동일 교습과정의 학원을 설립할 수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설립자 요건, 설립자 변경, 강사 자격, 수강료 징수는 법령에 규정하였으므로 삭제

○ 행정처분의 대상, 기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 조례 시행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함 (안 제10조)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교육연구원의 설치 목적중 "교육평가 등을 실시함으로써"를 "교육자료개발 등을 실시함으로써"로 함 (안 제1조)

○ 교육연구원 하부조직에 "교육평가부"를 "교육자료부"로 함 (안 제3조제1항)

○ "교육평가 도구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부에서 함 (안 제4조제3호)

○ 지도보급부의 업무에서 "시청각 재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2호)을 삭제하고, "연구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을 "연구·실험·시범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4호)으로 함

○ 진로교육부 업무에서 "진로교육 연구·시범·실험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안 제6조 제5호)

○ 교육자료부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안 제7조)

· 각종 교육자료 수집,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교육기자재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교육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

· 교육자료실 현장 지도에 관한 사항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중앙도서관장의 보직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서기관"에서 "지방사서서기관"으로 변경하고, 제천도서관의 폐지로 "제천도서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하고"를 삭제하며, 기타 도서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를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로 변경함 (안 제4조)

○ 【 별표 】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중 제천도서관란을 삭제하고, 보은도서관의 위치 "교사리 390-1"을 "삼산리 125-1"로 하고, 영동도서관의 위치 "계산리 697-25"를 "부용리 20-3"으로 한다.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ㅇ 제명중 "충청북도학생회관"을 "충청북도립학생회관"으로 변경함
- ㅇ 현행 충청북도학생회관 이외에 제천학생회관을 설치함에 따라 학생회관의 명칭 및 위치를 별표로 규정함 (안 제2조)
- ㅇ 회관의 운영중 "체육활동의 공간 제공"을 추가함 (안 제3조)
- ㅇ 학생회관의 관장 "지방서기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복수직화함 (안 제4조)
- ㅇ 총무과의 하부조직에 "서무계, 관리계"를 두는 것을 삭제함 (안 제7조)
- ㅇ 운영과의 분장업무중 "전시실, 토의실, 음악실, 상담실, 회의실, 서예실 운영"을 "전시실, 특별활동실, 회의실, 수영장, 로울러스케이트장 운영"으로 변경함 (안 제8조)
- ㅇ 학생회관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정기휴관일 지정을 삭제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정하도록 하며,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사전에 예고한 다음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를 "회관 시설의 수리, 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임시휴관일은 관장이 정한다"로 개정 (안 제16조)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4	4	4					
조례안	4	4	4					

□ 건설교통위원회

◉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 주요골자 >

○ 기금의 운용관리

· 도지사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국채, 공채 매입 또는 금융기관)으로 예탁관리하고

·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담금으로 원활하게 운용 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심의회장 직명 조정

· 현행 심의회장인 "도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함

○ 회장 조정으로 발생한 당연직위원 1인을 "보건환경국장"을 위촉함

· 당연직위원(현재) :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공업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 당연직위원(조정) : 기획관리실장, 보건환경국장, 공업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도로점용료 산정금액 절사 기준 상향조정 (조례 제3조제5항)

· 10원 미만 → 100원 미만

○ 점용물의 종류중 수도관 및 기타관의 직경구분을 세분화 (별표 1)

· 『직경 1m초과』 → 『직경 1.0m초과 ~ 2.0m이하, 직경 2.0m초과 ~ 3.0m이하, 직경 3.0m초과』로 세분

○ 돌출간판을 간판에 포함 명문화 (별표 1)

○ 소액 부징수 기준상향조정 (조례 제5조)

· 500원 미만 → 5,000원 미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3	3	3					
조례안	3	3	3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97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 주요내용 >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제 출 예 산 액	수 정 내 역	
			증	감
합 계	694,662,942	694,662,942	3,481,788	3,481,788
기획경제위원회	67,918,108	66,392,880	3,481,788	1,963,960
공 보 관 실	498,632	621,292	-	122,660
감 사 실	171,942	171,942	-	-
기 획 관 리 실	53,576,993	51,883,805	3,481,788	1,796,000
공 업 경 제 국	13,670,541	13,715,841	-	45,300
내 무 위 원 회	171,032,776	171,282,484	-	249,708
내 무 국	106,198,138	106,403,546	-	205,408
민방위재난관리국	469,667	473,167	-	3,500
소 방 본 부	25,647,627	25,647,627	-	-
공무원 교육원	2,151,423	2,154,423	-	3,000
도 민 교 육 원	1,443,022	1,443,022	-	-
증 평 출 장 소	35,122,899	35,160,699	-	37,800
교육사회위원회	128,792,731	129,401,891	-	609,160
보 건 환 경 국	55,759,279	55,859,279	-	100,000
보건환경연구원	2,434,681	2,434,681	-	-
사 회 복 지 국	70,598,771	71,107,931	-	509,160
농림수산위원회	188,294,924	188,470,546	-	220,622
농 정 국	171,426,761	171,647,383	-	220,622
농 촌 진 흥 원	16,823,163	16,823,163	-	-
건설교통위원회	135,026,798	135,423,248	-	369,450
건 설 교 통 국	120,356,117	120,715,417	-	359,300
과학산업단지	14,670,681	14,707,831	-	37,150
의회운영위원회	3,650,005	3,691,893	-	41,888
의 회 사 무 처	3,650,005	3,691,893	-	41,888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제출예산액	수정내역	
		계	증	감
합 계	218,624,199	218,624,199	6,278	6,278
공기업특별회계	181,354,803	181,354,803	6,278	6,278
공영개발	56,114,500	56,114,500	-	-
지역개발기금	125,240,303	125,240,303	-	-
기타특별회계	37,269,396	37,269,396	-	-
의료보호기금	23,137,336	23,137,336	-	-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	4,304,126	4,304,126	-	-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	2,291,934	2,291,934	-	-
증평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7,500,000	7,500,000	-	-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요지

·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9,132억8,714만1천원중 34억8천8백6만6천원을 삭감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가결

◉ '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 주요내용 >

○ 교육비특별회계 (단위 : 천원)

장 별	예 산 액	'97 예산(안) 조정내역		
		요 구 액	증	감
합 계	659,429,116	695,429,116	2,315,140	2,315,140
교육위원회	712,540	712,540	-	-
본 청	554,567,424	556,882,564	-	2,315,140
청주교육청	54,180,455	54,180,455	-	-
충주교육청	15,147,895	15,147,895	-	-
제천교육청	10,108,373	10,108,373	-	-
청원교육청	9,049,384	9,049,384	-	-
보은교육청	5,217,588	5,217,588	-	-
옥천교육청	4,928,880	4,928,880	-	-
영동교육청	7,953,209	7,953,209	-	-
진천교육청	5,057,756	5,057,756	-	-
괴산교육청	9,285,812	9,285,812	-	-
음성교육청	9,647,264	9,647,264	-	-
단양교육청	4,535,489	4,535,489	-	-
예 비 비	5,037,047	2,721,907	2,315,140	-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요지

· 19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요구액 6954억2천9백1십1만6천원중 23억1,51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수정의결

◉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 주요내용 >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소관별	예산액	제출예산액		수정내역	
		계	'96 제2회	증	감
합계	677,031,922	677,031,922	677,031,922	137,558	137,558
기획경제위원회	82,034,658	81,897,100	81,897,100	137,558	-
공보관실	602,753	602,753	602,753	-	-
감사실	188,684	188,684	188,684	-	-
기획관리실	63,610,010	63,472,452	63,472,452	137,558	-
공업경제국	17,633,211	17,633,211	17,633,211	-	-
내무위원회	168,841,474	168,902,282	168,902,282	-	60,808
내무국	104,561,747	104,622,555	104,622,555	-	60,808
민방위재난관리국	1,033,492	1,033,492	1,033,492	-	-
소방본부	25,993,359	25,993,359	25,993,359	-	-
공무원교육원	2,351,003	2,351,003	2,351,003	-	-
도민교육원	1,441,501	1,441,501	1,441,501	-	-
증평출장소	33,460,372	33,460,372	33,460,372	-	-
교육사회위원회	106,547,483	106,547,483	106,547,483	-	-
보건환경국	41,225,583	41,225,583	41,225,583	-	-
보건환경연구원	2,233,139	2,233,139	2,233,139	-	-
사회복지국	63,088,761	63,088,761	63,088,761	-	-
농림수산위원회	185,882,754	185,959,504	185,959,504	-	76,750
농정국	169,349,131	169,425,881	169,425,881	-	76,750
농촌진흥원	16,533,623	16,533,623	16,533,623	-	-
건설교통위원회	130,136,017	130,136,017	130,136,017	-	-
건설교통국	130,136,017	130,136,017	130,136,017	-	-
의회운영위원회	3,589,536	3,589,536	3,589,536	-	-
의회사무처	3,589,536	3,589,536	3,589,536	-	-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제 출 예 산 액		수 정 내 역	
		계	'96. 제2회	증	감
합 계	238,600,326	238,600,326	238,600,326	-	-
공기업특별회계	204,554,484	204,554,484	204,554,484	-	-
공 영 개 발	61,120,452	61,120,452	61,120,452	-	-
지 역 개 발 기 금	143,434,032	143,434,032	143,434,032	-	-
기 타 특 별 회 계	34,045,842	34,045,842	34,045,842	-	-
의 료 보 호 기 금	20,544,385	20,544,385	20,544,385	-	-
농 어 촌 소 득 개 발 기 금 운 영 관 리	3,617,880	3,617,880	3,617,880	-	-
대청호특별대책 지역환경기초 시설운영관리	2,083,577	2,083,577	2,083,577	-	-
증평지방공업 지 조 성 사 업	7,800,000	7,800,000	7,800,000	-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요지

· 199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9,156억3,224만8천원 중 1억3,755만8천원을 삭감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

◉ '96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 주요내용 >

○ 교육비특별회계 (단위 : 천원)

장 별	예 산 액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요구액	증	감
합 계	659,983,424	695,983,424	-	-
교육위원회	737,175	737,175	-	-
본 청	530,155,545	530,155,545	-	-
청주교육청	36,181,590	36,181,590	-	-
충주교육청	19,159,151	19,159,151	-	-
제천교육청	11,722,728	11,722,728	-	-
청원교육청	7,765,769	7,765,769	-	-
보은교육청	4,943,817	4,943,817	-	-
옥천교육청	4,475,934	4,475,934	-	-
영동교육청	8,272,393	8,272,393	-	-
진천교육청	7,914,809	7,914,809	-	-
괴산교육청	8,733,670	8,733,670	-	-
음성교육청	7,256,188	7,256,188	-	-
단양교육청	3,471,777	3,471,777	-	-
예 비 비	9,192,878	9,192,878	-	-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 리 내 용					비 고
			가 결		부 결	보 류	기 타	
			원 안	수 정				
계	4	4	1	3				
예 산 안	4	4	1	3				

第３章　行政事務監査

第１節　行政事務監査　概要

第２節　1995年度 行政事務監査

第３節　1996年度 行政事務監査

第 1 節 行政事務監査 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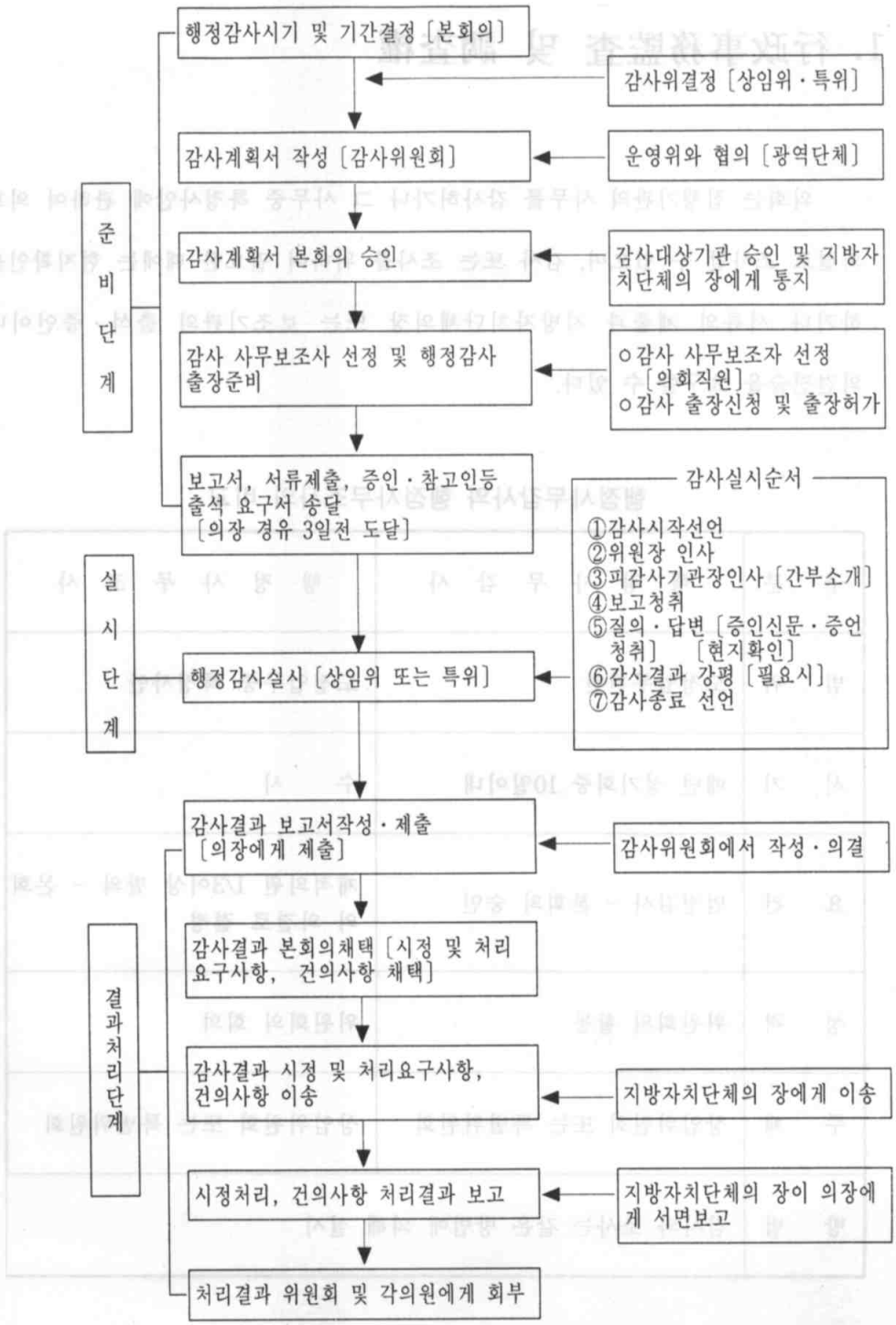
1.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權

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사허가나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의회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의 비교

구 분	행 정 사 무 감 사	행 정 사 무 조 사
범 위	도정업무전반	도정업무중 특정사안
시 기	매년 정기회중 10일이내	수 시
요 건	법정감사 - 본회의 승인	재적의원 1/3이상 발의 - 본회의 의결로 결정
성 격	위원회의 활동	위원회의 회의
주 체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방 법	감사와 조사는 같은 방법에 의해 실시	

□ 감사과정 및 절차


준비단계
행정감사시기 및 기간결정〔본회의〕
감사위결정〔상임위·특위〕
감사계획서 작성〔감사위원회〕
운영위와 협의〔광역단체〕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기관 승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감사 사무보조사 선정 및 행정감사 출장준비
○감사 사무보조자 선정〔의회직원〕
○감사 출장신청 및 출장허가
보고서, 서류제출, 증인·참고인등 출석 요구서 송달〔의장 경유 3일전 도달〕
감사실시순서
①감사시작선언
②위원장 인사
③피감사기관장인사〔간부소개〕
④보고청취
⑤질의·답변〔증인신문·증언청취〕〔현지확인〕
⑥감사결과 강평〔필요시〕
⑦감사종료 선언
실시단계
행정감사실시〔상임위 또는 특위〕
감사결과 보고서작성·제출〔의장에게 제출〕
감사위원회에서 작성·의결
결과처리단계
감사결과 본회의채택〔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채택〕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이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시정처리,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장에게 서면보고
처리결과 위원회 및 각의원에게 회부

第 2 節 1995年度 行政事務監査

1. 監査의 目的

199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자치입법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의 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 그리고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요구함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심의 기능을 통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있음

2. 監査期間

○ 1995. 11. 21 ~ 11. 29 (9일간)

※ 각 위원회와 같음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사무처

○ 기획경제위원회 : 기획관리실, 국제통상협력실, 감사실, 공보관실, 지역경제국, 지방공사의료원(청주, 충주)

○ 내 무 위 원 회 :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

○ 교육사회위원회 :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여성회관

○ 농림수산위원회 : 농정국(사업소 포함), 농촌진흥원(시험장 포함)

○ 건설교통위원회 : 건설교통국(도로관리사업소 포함), 공영개발사업단,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4. 監査班 編成

○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반장) 김진학

(감사반원) 장준호, 임헌용, 김대호, 윤병태, 김준석, 이길하, 차주용, 이희복, 김원식

(전문위원) 우병수

○ 기획경제위원회

(감사반장) 송재주

(감사반원) 임헌용, 박용인, 박만순, 김재근, 이병두, 김대호, 신완섭

(전문위원) 김재평

○ 내 무 위 원 회

(감사반장) 성기덕

(감사반원) 윤병태, 김춘식, 권영관, 김진학,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

(전문위원) 오창환

○ 교육사회위원회

(감사반장) 유재철

(감사반원)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전문위원) 김영만

○ 농림수산위원회

(감사반장) 안재원

(감사반원) 이희복, 이선호, 최영락, 차주용, 이향래, 정태정, 박온섭

(전문위원) 이병생

○ 건설교통위원회

(감사반장) 한상문

(감사반원) 김원식, 최종철, 최선환,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

(전문위원) 오병천

5. 監査日程 및 場所

위원회별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의회운영위원회	11. 28 ~ 29	· 의회사무처	위원회 회의실
기획경제위원회	11. 21 10 : 00	· 공보관실 · 감 사 실	위원회 회의실
	11. 22 10 : 00	· 기획관실	위원회 회의실
	11. 23 10 : 00	· 청주의료원	청 주 의 료 원
	11. 24 10 : 00	· 충주의료원	충 주 의 료 원
	11. 27 10 : 00	· 지역경제국	위원회 회의실
	11. 28 10 : 00	· 국제통상협력실	위원회 회의실
	11. 29 10 : 00	·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교환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내 무 위 원 회	11. 21 11 : 00	· 내 무 국	위원회 회의실
	11. 22 11 : 00	· 민방위국 · 소방본부	위원회 회의실
	11. 23 11 : 00	·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 회 의 실
	11. 24 11 : 00	· 도민교육원	도민교육원회의실
	11. 27 11 : 00	· 증평출장소	증평출장소회의실
	11. 28 ~ 29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교육사회위원회	11. 21 10 : 00	· 보사환경국	위원회 회의실
	11. 22 10 : 00	· 보사환경국	보사환경국소관 사 업 현 장

위 원 회 별	일 시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	11. 23 10 : 00	· 가정복지국	위원회 회의실
	11. 24 10 : 00	·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국소관 사 업 현 장
	11. 25 10 : 00	· 여성회관	피감사기관
	11. 27 10 : 00	· 보건환경연구원	피감사기관
	11. 28 10 : 00	· 보사환경국 · 가정복지국	위원회 회의실
	11. 29 10 : 00	· 보건환경연구원 · 여성회관 · 감사결과보고서작성 및 의결	위원회 회의실
농림수산위원회	11. 21 ~ 22	· 농정국	위원회 회의실
	11. 23	· 농촌진흥원	위원회 회의실
	11. 24 ~ 25	· 현지확인	현 지
	11. 27 ~ 29	· 종합검토 (감사결과보고서작성)	위원회 회의실
건설교통위원회	11. 21 ~ 22	·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포함)	위원회 회의실
	11. 23 10 : 00 14 : 00	· 공영개발사업단 · 과학산업단지건설기 획단	위원회 회의실
	11. 24 ~ 25	· 건설교통국 사업현장 확인	위원회 회의실
	11. 27 10 : 00	· 공영개발사업단 · 과학산업단지건설기 획단 사업현장확인	건 설 현 장
	11. 28 ~ 29 10 : 00	· 감사결과 시정, 촉구 건의사항 논의 및 감사보고서 작성	위원회 회의실

6. 委員會別 指摘事項

구분 / 위원회별	계	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건의
계	211 건	134 건	77 건
의회운영위원회	7	6	1
기획경제위원회	34	24	10
내무위원회	78	57	21
교육사회위원회	20	11	9
농림수산위원회	43	26	17
건설교통위원회	29	10	19

7. 主要 指摘內容

1) 의회운영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

< 의회사무처 >

- ㅇ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조기 배부토록 대책 강구
- ㅇ 기존 예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불용액 발생 최소화
- ㅇ 대외 홍보 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활동 강화
- ㅇ 의정자료실 여직원 충원 요망
- ㅇ 의회간부와 집행부간의 월1회 정도 간담회 개최
- ㅇ 의원들이 자료열람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임위별 소관 관련법규 및 조례목록 비치

□ 건 의

< 의회사무처 >

- ㅇ 의정활동의 원활한 보좌를 위하여 민원홍보담당관제를 신설하거나 사무처의 기구개편과 직급조정을 하여 전문위원실 보좌관 1인을 더 배치토록 대책 강구

2) 기획경제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

< 공보관실 >

○ 새충북 월간지에 도정의 홍보에 비해 지사의 활동내용이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는데 홍보지에 걸맞는 도정정책의 게재 요망

○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도정홍보를 하고 있지만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나 있다. 홍보효과의 계량화 방안 강구(충북개발연구원 자료 참조)

< 기획관리실 >

○ 도정의 경영화 정책이 현재 중단되어 있는데 책임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하루 아침에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민본도정의 실현은 어려울 것임. 정책의 연계성, 지속적 추진방안 강구

○ 지역개발기금을 연말에 배정하는 것은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적기에 융자 지원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지역개발기금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출연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의 개선방안

○ 행정전산망과 관련하여 장비유지비, 장비구입비등 집행상황을 보면 사유 미발생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방안 강구

○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임의보조단체)이 객관적인 기준없이 임의대로 지원되고 있는데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 요망

○ 의료원의 장비 중 다수의 장비가 사장되고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예산지원 요청시 철저한 사전검증을 거치고 감독기관의 역할 충실히 이행

○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객관적인 기준없이 임의대로 보조되고 있는데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지원되도록 방안 강구

○ 많은 예산투자해서 청내에 전자결재시스템을 설치하였는데 활용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활용 방안 모색

○ 행정전산화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우왕좌왕 하는 것 같다. 전문회사나 전문기관에 기술자문을 받아서 발전방향으로 유도되도록 방안 강구

○ 지사의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보면 지역적으로 편중된 것 같은데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수립 이행

○ 지리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투자된데 비하여 대민서비스 등 활용율이 미흡하다. 주민들이 편하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지역경제국 >

○ 충주호 유람선 사고 이후, 관광객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강구

○ 충북 북부권에 광산이 산재해 있는데 영업부진등 사회환경 변화로 폐광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

○ 지사공약사항의 철저이행(괴산 괴강 → 서원간 교량)

○ 산·학·연 컨소시엄개발 과제가 레미콘으로 편중 되었는데 타업종과의 연계방안 모색

○ 관광개발 사업내역을 보면 사업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주변여건을 최대한 반영 사업계획 수립

< 국제통상협력실 >

○ 국제통상 관련 자료수집 및 정보제공 실적이 미흡한데 명실공히 통상관련 전담부서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충주의료원 >

○ 현재 진료의가 없어 진료를 하지 못하는 과가 있다.

조속한 시일내 진료의를 확보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사장되는 장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자수, 활용도등을 고려한 장비구입

○ 의약품 및 장비구입 입찰시 공명정대한 경쟁이 될 수 있는 방안 강구 (낙찰율 : 99.5%, 99.7%)

○ 이사회가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사회의 적극적 활용방안

○ 전산장비의 적극적 활용으로 인력절감 유도

□ 건 의

< 공보관실 >

○ 난시청 지역의 TV수신료 면제방안 강구 (도내)

○ 청주 청원지역의 국민홍보위원 증원대책

< 감사실 >

○ 자체 감사결과를 사례별로 사례집을 만들어 공직자들이 항상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강구

○ 처벌위주에서 예방, 계도, 격려등 관용심사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 유도

< 기획관리실 >

○ 도민들이 도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은 도정방향 설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도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모색

○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집행계획 수립하여 반환되는 사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지역경제국 >

- ㅇ 행정규제완화 정책이 업체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획기적인 완화방안 강구
- ㅇ 중소기업보호육성 방안 강구
- ㅇ 가스용량의 정량화를 위한 방안모색
- ㅇ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 구조조정자금 기수혜 업체는 굳이 이 자금을 받지 않아도 될 재무구조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무구조가 다소 취약하더라도 생산성, 기술개발성, 장래성 등을 참작하여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

3) 내무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

< 내무국>

- ㅇ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및 업무보고 내용에 있어 답습적, 관례적 불성실한 보고로 인한 현황의 차이등 일관성이 없는 보고내용에 정확을 기할 것
- ㅇ 자주재원 확충의 구체적 방안 및 계획을 수립할 것
- ㅇ 재화유통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세무직 전문화 방안 및 대책을 강구할 것
- ㅇ 세정관리분야의 유착비리 근절 및 비리의 항구적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ㅇ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ㅇ 재무국소관 독립의 필요성과 지방화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기할 것
- ㅇ 과다용역비 지출억제를 위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
- ㅇ 시.군통합시 군단위의 공과금을 차등부과 하겠다는 공약사항에 반하여 공과금을 인상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공약사항인 만큼 실천해 나가므로서 주민들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할 것
- ㅇ 관용심사위원회 및 민원조정심의위원회 운영면에 있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할 것
- ㅇ 도민체전 출전종목 선택에 신중을 기할 것
- ㅇ 민간기업의 실업팀 구성에 만전을 기하여 충북체육의 발전을 도모할 것
- ㅇ 민원처리대장상에 처리결과의 가.부의 결과를 표시 기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볼 것

< 민방위국>

- ㅇ 민방위강사 위촉방법과 자질향상을 위한 구체적 실시방안을 모색할 것
- ㅇ 민방위훈련의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것
- ㅇ 읍.면단위에 설치된 비상벨에 대해 평상시에도 비상소집의 필요성이 있을 때 활용가능토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ㅇ 선진 민방위제도의 도입을 위한 해외연수계획수립시에 만전을 기하여 보다 발전하는 민방위훈련 및 시설보완에 힘 쓸 것
- ㅇ 민방위교육 실시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
- ㅇ 직장방위업무 담당인 수위와 청경의 소속을 총무과로 재조정 편성함으로써 민방위국의 실질행정력에 비해 비대해 보이는 조직의 형태를 개선할 것
- ㅇ 성격이 유사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통합운영하는 개선책을 고려해 볼 것
- ㅇ 재난시 긴급소집을 위한 소집경로의 정비 및 체제를 구축할 것
- ㅇ 필요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민방위 장비 보유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ㅇ 전시행정 차원의 민방위행정 방식을 지양할 것
- ㅇ 전시대비 장비의 확보계획을 사전 수립하여 대처해 나갈 것
- ㅇ 내용있는 민방위 소양교육을 통하여 애향심과 자주방위 태세를 갖출 수 있는 민방위체계가 이루워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

< 소방본부 >

- ㅇ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 할 것
- ㅇ 소방안전시설의 완전한 점검으로 사용가능한 것이 부착되어 있도록 지도 확인에 철저를 기할 것
- ㅇ 의용소방대 구성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구성운영과 예산의 지원폭, 방법 등에 대해 명문규정화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것
- ㅇ 차량구입시 의무적으로 구급약품 및 소화장비 등을 비치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것
- ㅇ 이원화 소방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일원화 의지 및 필요성에 대한 대책을 수립 강구해 갈 것

< 공무원교육원 >

- 교관요원 임용시 현행방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교관요원의 충원시 고시 출신자들을 우선 배치하는 인사제도 확립방안을 모색할 것
- 공무원교육원 근무요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할 것
- 해외연수 내실을 위한 개선방법을 모색해 볼 것
- 외래강사 초빙시 답습교육방식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파트별 다각적인 초빙으로 교육생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
- 연구논문 발표제도에 있어 발표로 끝내지 말고 현실과 적용 부합시켜 실농정 등에 활용함으로써 소득의 증대와 해외시장 등의 판로개척에 행정기관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품목 생산유도 및 계속적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발전시켜 나갈 것
- 교육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창안연구수당 지급제도 및 기타 활성화를 위한 조례규정화 필요성을 검토 추진할 것
- 세대간 격차해소를 위해 주입식, 답습적 교육방법을 지양하고 창의력 배양의 교육방식이 되도록 할 교육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
- 교안교재의 편제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교육내용으로 개선해 나갈 것

< 도민교육원 >

- 영농기술교육시 실습교육을 위해 타기관 또는 타지역의 현장을 빌어 현지실습을 하고 있는데 이에대해 개선책을 연구검토하여 기술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
- 신농정기술교육 교관이 별정7급내지 6급으로 편성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할 것
- 교육계획의 수립시 의식개혁 및 신기술분야의 과감한 도입적용과 도민의식 교육방식 또는 분야에 있어서도 지방화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
- 교육방침의 수립에 있어 도민을 위한 참된 교육의 장이 되도록 유도할 것
- '96년도 교육계획 및 내용부터는 도민의식 고취방안 및 교육후 충북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내용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교재발간에 더욱 신중하고 짜임새있게 편집하여 내용면에 있어 더욱 충실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갈 것

< 증평출장소 >

○ 장기종합개발기본계획 수립 이후 수정사유 발생시는 적기조정으로 발전하는 미래의 청사진 조감에 만전을 기할 것

○ 증평시 승격을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현실적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갈 것

○ 증평의 시승격에 대비 행정적 측면만의 지원책 뿐만아니라 재정적 지원대책 및 재정적 독립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

○ 순환보직 등을 통한 공무원 사기앙양책을 모색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증평의 시승격을 위해 행정구역의 분리.편입에 의한 군으로의 설치보다는 주민의 여망인 시승격이 최우선적 과제임을 감안 신중한 결정 및 추진으로 소기성과 거양에 노력하고 주민편익에 만전을 기할 것

○ 증평지역 아파트 미분양사례 방지를 위해 소규모 아파트 건축을 유도하여 미분양요인을 제거하고 인구유입 정책방안을 세워 나갈 것

○ 보강천 맑은물 흐르기 운동을 시민운동화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것

○ 증평산하 3개지소에 경보기의 설치 후에도 이를 미활용하는 실태이며 숙직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긴급상황 대처방안을 재구상토록 하고 첨단기자재의 적극활용 방안을 검토해 볼 것

○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시 특정업체를 소외 시키지 말고 전업소에 대한 단속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하천 수질검사의 월별실시로 정확한 수질오염 실태를 점검해 나갈 것

○ 농업진흥지역에 공장이 유치되었다든지 법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있었는지 없는지 재검토하여 시정해 나갈 것

○ 경노당 운영지원 대책강구 및 자매결연 추진등으로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보강천의 수질검사 수치를 게시판에 게시 또는 기록하여 주민들이 항시 볼 수 있도록 할 것

○ 출장소 직원의 자질 및 실력 향상을 위한 대책 및 방안을 모색하여 지방화에 부응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해 나갈 것

□ 건 의

< 내 무 국 >

- ㅇ 현 전산화 과정의 담당인원이 주로 일용직 또는 기능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향에 대해 전문교육을 거친 정규직으로의 배치할 것을 요망
- ㅇ 민원담당관의 직급을 타부서의 과장의 직급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여 민원처리에 성의를 다하는 이미지를 보여줄 것을 요망
- ㅇ 전국체전을 대비 구체적 전략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96년도에는 10위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대책강구 요망
- ㅇ 도민체전시 단체경기에 도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길 요망

< 민방위국 >

- ㅇ 평상시 방공호 위치등에 대한 안내판 및 유도표시 등의 설치로 비상시 대피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망
- ㅇ 방독면의 필요 수요량 확보에 대해 의무화방안 및 주민계도 홍보대책 수립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할 것을 요망

< 소방본부 >

- ㅇ 소방공무원의 경우 정년 잔여기간 2년미만자의 승진제한 지침의 개선건의 또는 본부장의 소신있는 인사행정을 정착시킬 의지의 표면화 요망
- ㅇ 119구급대의 면지역 배치로 오지마을의 수혜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망
- ㅇ 소방차 문제해결방안을 모색 노숙차량 방치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요망

< 공무원교육원 >

- ㅇ 교육비수기를 활용 공무원 자녀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컴퓨터교육을 통.반장자녀들에게까지 확대하여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도록 검토 요망
- ㅇ 교육원 청사의 신축공사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 노력 및 좋은시설, 교육환경, 분위기 개선을 위해 노력 요망
- ㅇ 외래강사 초빙계획 및 방법에 신중을 기하여 산교육장이 되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애향심, 애국심, 국가관 등의 정신교육 함양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망
- ㅇ 교육생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망

< 도민교육원 >

○ 이동 주부대학의 교육내용과 운영방법등을 향상 발전시켜 나가고 운영 등의 교육계획에 대해 TV와 홍보매체를 통한 대대적 홍보로 전도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 할 것을 요망

○ 도민교육원 교육내용중 영농기술분야는 농촌진흥원으로 이관하는 등 행정시책과 분리시켜 영농기술을 더한층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망

○ 교육생 입소에 있어 차출식으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자율적 참여방식에 의한 교육생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교육성과의 극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줄것을 요망

< 증평출장소 >

○ 시.군의원과 자문기관이 없는 증평출장소의 의견수렴 통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목소리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망

○ 시승격을 위한 추진은 소장이하 전공무원과 주민모두의 단합된 의지의 결과에 의해 결정될 문제로서 단합방안을 모색하여 소기성과 거양에 가일층 힘써 증평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기를 요망

○ 증평에 농촌지도소 등 농사관련 기구가 없어 영농가구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은 바 이에 대한 기구의 유치에 노력하여 농민편익을 도모해 줄 것을 요망

○ 경로당 노인들에게 가내 수공예 품목을 개발하여 소일거리 및 수익제고 방안을 연구 개발해 줄 것을 요망

○ 증평 세외수익 증대방안으로 담배 판매수익 등의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재정수익증대에 노력할 것을 요망

4) 교육사회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

< 각 국 공 통 >

○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

< 보사환경국 >

○ 향후 환경보전 중장기계획을 충청북도 중장기개발계획에 포함시켜 행정력, 도비지출 등의 2중적 낭비요인이 없도록 추진

○ 무허가 생수(먹는 물)를 판매금지 시킬 것

○ 도내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 관리 철저

○ 식품진흥기금을 위반 영세업소에 저리융자하여 시설개선 등을 통하여 재발을 방지 하도록 강구

< 가정복지국 >

○ 도 청소년상담실과 위탁기관과의 이원화된 책임운영을 일원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

○ 가정복지국, 청소년상담실, 여성회관 상호 협조체제의 일원화 추진

○ 공부방 운영에 있어 자금의 운영, 운영상태, 운영자세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효과적인 공부방 지원을 기할 것

< 보건환경연구원 >

○ 자동대기오염 측정장치 선정위치 시정조치

○ 수계별, 위치별, 계절별로 환경오염도를 측정 집행기관과의 수질오염 방지 대책 강구

< 여 성 회 관 >

○ 결원되어 있는 별정직 공무원의 충원 및 예산운용

□ 건 의

< 보사환경국 >

○ 도공무원의 전공과목을 조사하여 환경분야 전공 공무원을 배치 환경지도 업무추진

○ 환경지도 업무를 강화시켜 추진

< 가정복지국 >

○ 도 청소년상담실을 도에서 직영하는 방안 강구

○ 화장장, 납골당을 청주시, 남부지역에도 설치 요구

○ 가족묘지를 권장하여 집단화 추진

< 보건환경연구원 >

○ 각종 수질오염 및 상수도원 정수에 대한 검사를 도 및 해당 시·군에서 적극 검사의뢰토록 하여 상호연계성을 가져주길 바람

○ 보건환경 업무가 민원처리업무에 치중되고 있으므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연구분야에도 힘써야 할 것

< 여 성 회 관 >

○ 도 여성회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시군 여성회관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

○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컴퓨터 교육을 확대해 추진할 것

5) 농림수산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

< 농 정 국 >

○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

○ 농어촌발전심의회 구성 인원을 농민 위주로 재구성 할 것

○ 순환수렵장 수익금이 시·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

○ 관광농원 육성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할 것

○ 임도사업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경관을 해치고, 수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임도 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

○ 전업농 선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배정하여 지정할 것

○ 농어촌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현실에 맞게 사업 추진할 것

○ 농어민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할 것

○ 한해, 수해지역 피해 조사시 조사에 철저를 기할 것

○ 추곡수매량 시·군별 배정에 공정을 기할 것

○ 각종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할 것

○ 산림환경연구소 이전 사업에 철저를 기할 것

○ 잠업검사소 및 종축장 이전 사업에 철저를 기할 것

○ 가두리 양식장 육상전환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

○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대상지 선정에 철저를 기할 것

○ 농산물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특히 읍,면단위 단속에 철저를 기할것

○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할 것

< 농촌진흥원 >

○ 농업최고경영자 과정의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할 것

○ 4-H 가 영농 4-H가 아닌 학생 4-H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바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할 것

○ 전문교육이수자 지도직 공무원의 부서 배치에 신중을 기할 것

○ 내고장 새기술 보급사업이 농민의 신청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줄것

○ 양잠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약용누에 개발에 전념할 것

○ 시험장 시험기기를 확보하여 시험,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지도소에서 선정하는 발전업농의 선정에 철저를 기할 것

○ 지역농업개발센타 육성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

○ 농촌지도 공무원 해외연수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

□ 건 의

< 농정국 >

- ㅇ 임도사업의 10% 자부담율을 도비로 지원하여 줄 것
- ㅇ 진흥지역 농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여 줄 것
- ㅇ 농어촌생활용수 및 지하수 개발 사업을 농업진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
- ㅇ 양돈 파동이 우려되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 추진할 것
- ㅇ 농지전용 허가 및 규제를 완화하여 줄 것
- ㅇ 농정 분야의 불필요한 기구와 인원을 재조정할 것
- ㅇ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지원자금의 시·군 배정에 공정을 기할 것
- ㅇ 국제농업교류를 강화하고 해외농업 투자 지원을 담당할 전담기구(수출계)를 설치할것
- ㅇ 농산물 가공공장에 대한 지원자금을 늘려줄 것
- ㅇ 청주 농산물물류센타 건설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

< 농촌진흥원 >

- ㅇ 세계화에 대비한 지역 특용작물을 개발, 보급하여 줄 것
- ㅇ 증평출장소 지역이 농촌지도사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 ㅇ 음성 시설채소시험장 준공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
- ㅇ 진흥원 이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
- ㅇ 충북지역의 특색을 살린 전통 식품을 연구, 개발하여 줄 것
- ㅇ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
- ㅇ 신개발 작목이 아닌 기존에 보급되어 생산, 판매 단계에 있는 사업은 시범사업 선정을 지양할 것

6) 건설교통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

< 건설교통국 >

- ○ 하천편입 사유토지 조속히 보상
- ○ 반복적 수해발생지는 개량 복구로 적극 추진
- ○ 현도지방공단사무소 설치후 관리 철저
- ○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토분이 섞인 육상골재 채취허가 금지
- ○ 타시군간 통행 시내버스 요금체계 정비
- ○ 청원 남일 쌍수 휴식시설 보수

<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

- ○ 단지내 사유토지 조속보상 추진
- ○ 주민요구 7개항이 토개공측과 원만히 해결되도록 대책 강구

< 공영개발사업단 >

- ○ 차입금 및 공채발행시 불필요한 이자지급이 없도록 예산편성
- ○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 사업시행에 있어 분양계획을 수립후 사업시행

□ 건 의

< 건설교통국 >

- ○ 댐 수몰이주민에게 융자된 국민주택자금 상환 납부방법 개선
- ○ GB지역 지원방안과 규제완화 건의 및 규제완화 조치 내용의 주민홍보 실시
- ○ 과적차량 과징금이 지방재정으로 귀속되도록 방안 강구
- ○ 선착장, 주정차단속, 과적차량 단속 등에 공익근무요원을 확충하여 업무과중 해소와 예산절감 효과 제고
- ○ 하천공사시 자연석이 반출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강화
- ○ 전세버스 잡부금 근절대책 강구

○ 각종 공사시 도급자, 감독자, 설계자 등의 명단을 표지판에 기재하여 공사실명제 정착

○ 강우기 수해복구공사 집행 지양

○ 면 단위의 도시계획 재정비 조속 실시

○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설치를 위한 객관적인 타당성을 중앙부처에 건의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품질조사 강화 및 시험실 인력 보강

○ 오지벽지노선 지원확대 실시

○ 각종 공사의 책임감리제 활성화

○ 교량 특별점검에 필요한 장비 확보

○ 도로연장에 따른 수로원 증원

<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

○ 오창과학산업단지 건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실시

○ 업체에 분양되는 용지 재매각 금지기간 설정 및 특정업체에 과다한 용지분양 지양

○ 단지내 폐기물처리 대책 강구

< 공영개발사업단 >

○ 가경3지구 및 부용공단 미분양 용지 대책 강구

第 3 節 1996年度 行政事務監査

1. 監査의 目的

1997년도 예산(안) 심사 및 자치입법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의 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 그리고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요구함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심의 기능을 통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있음.

2. 監査期間

○ 1996. 11. 21 ~ 11. 29 (9일간)

※ 각 위원회와 같음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사무처

○ 기획경제위원회 : 기획관리실, 감사실, 공보관실, 공업경제국, 지방공사 의료원(청주, 충주)

○ 내 무 위 원 회 : 내무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

○ 교육사회위원회 : 보건환경국, 사회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여성회관, 자연학습원

○ 농림수산위원회 : 농정국(사업소 포함), 농촌진흥원(시험장 포함)

○ 건설교통위원회 : 건설교통국(도로관리사업소포함), 공영개발사업단,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4. 監査班 編成

○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반장) 김준석

(감사반원) 장준호, 임헌용, 김대호, 권영관, 윤병태, 이길하, 이선호, 차주용, 최종철

(전문위원) 우병수

○ 기획경제위원회

(감사반장) 송재주

(감사반원) 임헌용, 박용인, 박만순, 김재근, 이병두, 김대호, 신완섭

(전문위원) 김재평

○ 내 무 위 원 회

(감사반장) 성기덕

(감사반원) 윤병태, 김춘식, 권영관, 박상수,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

(전문위원) 오창환

○ 교육사회위원회

(감사반장) 유재철

(감사반원)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전문위원) 김영만

○ 농림수산위원회

(감사반장) 안재원

(감사반원) 이선호, 최영락, 차주용, 이향래, 안철호, 정태정, 박온섭

(전문위원) 이병생

○ 건설교통위원회

(감사반장) 한상문

(감사반원) 최종철, 최선환,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

(전문위원) 오병천

5. 監査日程 및 場所

위 원 회 별	일 시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11. 28 ~ 29	· 의회사무처	위원회 회의실
기획경제위원회	11. 21 10 : 00	· 공보관실	위원회 회의실
	11. 22 10 : 00	· 감사실	위원회회의실
	11. 25 10 : 00	· 기획관리실	위원회 회의실
	11. 26 10 : 00	· 청주의료원	위원회 회의실
	11. 27 10 : 00	· 충주의료원	위원회 회의실
	11. 28 10 : 00	· 공업경제국	위원회 회의실
	11. 29 10 : 00	·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교환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내 무 위 원 회	11. 21 11 : 00	· 내 무 국	위원회 회의실
	11. 22 11 : 00	· 민방위재난관리국 · 소방본부	위원회 회의실
	11. 25 11 : 00	·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 회 의 실
	11. 26 11 : 00	· 도민교육원	도민교육원회의실
	11. 27 11 : 00	· 증평출장소	증평출장소회의실
	11. 28 ~ 29	·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교환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교육사회위원회	11. 21 10 : 00	· 보건환경국	위원회 회의실
	11. 22 11 : 00 14 : 00	· 건강관리협회 · 자연학습원	보건환경국소관 관련단체 방문 피감사 기관

위 원 회 별	일 시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	11. 23 10 : 30	· 보건환경연구원	피감사기관
	11. 25 10 : 00	· 사회복지국	위원회 회의실
	11. 26 10 : 00	·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소관 사 업 현 장
	11. 27 10 : 00	· 여성회관	피감사기관
	11. 28 10 : 00	· 보건환경국 (자연학습원) · 보건환경연구원	위원회 회의실
	11. 29 10 : 00	· 사회복지국 · 여성회관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위원회 회의실
농림수산위원회	11. 21	· 농 정 국 · 농촌진흥원	위원회 회의실
	11. 22 ~ 26	· 현 지 확 인	현 지
	11. 27	· 농 정 국	위원회 회의실
	11. 28	· 농촌진흥원	위원회 회의실
	11. 29	· 종합검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위원회 회의실
건설교통위원회	11. 21 ~ 23 10 : 00	·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포함)	위원회 회의실
	11. 25 10 : 00	· 건설교통국소관 사업현장 확인	건 설 현 장
	11. 26 10 : 00	· 공영개발사업단 ·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 사업현장 확인	건 설 현 장
	11. 27 10 : 00	· 공영개발사업단 ·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 소관	위원회 회의실
	11. 28 ~ 29 10 : 00	· 감사결과 시정, 촉구 건의사항 논의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6. 委員會別 指摘事項

구분 / 위원회별	계	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건의
계	138 건	114 건	69 건
의회운영위원회	5	3	2
기획경제위원회	12	11	1
내무위원회	81	58	23
교육사회위원회	11	7	4
농림수산위원회	45	28	17
건설교통위원회	29	7	22

7. 主要 指摘內容

1) 의회운영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

< 의회사무처 >

○ 의회 회의록은 의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므로 기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의정홍보는 가급적 전의원의 의정활동을 빠짐없이 홍보토록 할 것

○ 특위구성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 공간확보 요망

□ 건 의

< 의회사무처 >

○ 의회사무처장 및 담당관, 전문위원의 직급을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에 상응토록 상향조정 검토

○ 각상임위별로 회의시에도 지장이 없도록 속기사를 확보할 것

2) 기획경제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

< 공보관실 >

○ 새충북지에 게재하는 내용중 도정과 전혀 관계없는 사진이 게재되어 있는데 공보인 점을 감안 특정 사업체가 게재되는 것 방지

○ 새충북지에 게재하는 내용을 도정의 어려운점, 충북의 문제점, 도민들이 협조해 주어야 할 부분들도 함께 수록하여 도정을 도민과 함께 이끌어 간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하겠음

< 기획관리실 >

○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업추진 적정으로 심사한 사업중에서 '97년도 본예산에 미계상된 사업이 있는데 정책의 연계성, 일관성있는 추진방안 강구

○ 대통령 및 지사의 공약사항 이행 실적에서 정상추진이라고 분류한 사업중 실제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
약속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정책수립 이행

○ 국제교류에 있어 인적자원의 교류에서 탈피, 통상관련 부분에 비중을 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정책추진이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계획따로, 실행따로라면 도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할 것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철저한 자료준비와 검토요망

○ 행정전산화와 관련 다른 분야보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에 반해 효과면에서는 뚜렷한 실적이 없는 것 같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나 단순한 인기성에 치우치지 않는 우리 도의 현실에 맞는 독자적인 정책추진이 절실히 요구됨

○ 도비보조금에 있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시, 군 지역개발이 낙후된 지역등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도비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하겠음

< 청주의료원 >

○ '95년도에 이어 '96년도에도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미수금 확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는데 향후 채권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줄 것

○ 제규정 미숙지로 인사발령시 직원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재판까지 가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청주·충주의료원 >

○ 전문의의 결원기간이 상당기간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의료원의 수입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옴. 전문의의 결원시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건 의

< 공업경제국 >

○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경영안정자금등의 지원에 있어 담보가 부족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업체중 생산성, 기술성, 경쟁성등을 참작하여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

3) 내무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

< 내무국 >

○ 행정감사시 업무추진상황 내용 및 자료제출에 있어 답습적·관례적 불성실한 보고로 인한 현황의 차이 누락등 일관성 없는 보고 내용에 정확을 기할 것

○ 종축장부지, 소방훈련장, 보건환경연구원 이전부지등 공유재산을 소홀히 관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공무원 포상시 주무부서보다 대민관계가 많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

- 문화예술행사비 지원에 있어 지급기준을 마련하는등 지원에 있어서 형평을 기하도록 신중을 기할 것
- 세무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 철저와 청소년상담실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 강구하여 정상화 시킬 개선방안을 만들 것
- 지방세 과오납 환불실태를 보면 착오부과, 신고오납, 오류입력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 조치할 것
-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는등 체납액 일소 방안을 만들 것
- 문화재 보수에 있어서 사전 충분한 고증을 거친후 복원이 이루어지도록 보완 할 것
- 도금고 지정에 있어서 재계약시마다 선정기준이 다른데 선정기준을 제도화 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
-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후견인제도 운영에 미흡한 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 할것
- 시·군 행정구역조정은 도에서 책임의식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주민의 뜻이 관철되도록 조속히 대책을 강구 할 것
- 농촌출신 학생기숙사 건립사업의 추진이 부진하므로 사업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할 것

< 민방위재난관리국 >

-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에서 보듯이 주민신고가 중요한데 유사시를 대비하여 주민신고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만들 것
- 민방위기능 및 역할에 대해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대안을 강구 할 것
- 재난위험시설물관리에 있어 밀집상가 및 수동 대성아파트 등 취약분야의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

○ 민방위 강사를 고정강사로 초빙하고 있어 형식적인 교육이 실시됨으로, 다양한 우수강사로 교체방안을 강구 할 것

○ 민방위재난관리국이 각종 재난대비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 대책을 모색해 나갈 것

○ 재난대비 등 필수실무요원 증원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충원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할 것

○ 민방위 각종 교육시 참석 또는 불참자에 대한 파악을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할 것

○ 주민신고망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재산 및 생활저해 사범에 대한 주민신고시 전화요금 감면혜택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주민신고 실적이 저조하므로 반회보 게재등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토록 강구 할 것

○ 충북경보통제소의 현지확인 결과 업무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소방본부 >

○ 율량동에 있는 소방훈련장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데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민간 소방조직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의용소방대원이 각종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마을단위 자율 의용소방대 조직 방안을 모색할 것

○ 소방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사기앙양 대책방안을 연구해 볼 것

○ 소방시설물에 대한 검사를 위한 전문소방 검사요원의 증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 광역 소방운영 체계에 따라 오지지역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

○ 진로백화점의 소방안전 시설점검 결과, 비상구 통로에 각종박스 비치, 구조변경, 소화기 설치, 지하2층 비상구 타용도 사용 등이 지적되어 동절기에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한 일제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

< 공무원교육원 >

○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운영 방안을 강구 할 것

○ 젊은 세대간 격차 해소를 위해 주입식·답습적교육 방법을 지양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종전보다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대책을 수립 실시할 것

○ 현재 공무원들이 통일방안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오니 통일정책의 내용은 매 과정시간에 배정하는 계획을 연구하여 볼 것

○ 교육원에 근무하는 교관에 대한 가점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사제도를 확립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교육원에서 경영화 내용이 많이 있는데 지방화시대에 중요한 경영화 분야를 많이 연구하고 논문을 작성하여 좋은 사례를 책으로 발간하여 도의회에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교육생 성적평가 결과 고득점이 많이 나왔는데 평가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일반 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있어 도정 역점시책에 대한 홍보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노력할 것

○ 교육원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새마을 방식으로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일선행정업무 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

○ 외래강사를 선정하고 초빙할 시는 교육효과를 분석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결정 방안을 강구할 것

< 도민교육원 >

○ 신농정 영농기술 교육과정에도 도민의식이 중요함으로 도민의식 시간을 편성하여교육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새기상 창조 및 생명의 숲 조성운동 등 도정 역점시책 중요성 인식에 대하여 교육시킬 수 있도록 교과목 편성 운영할 것

○ 교육내용중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한 내용이 다양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종전의 관례 답습적으로 교육과목을 편성하는 것을 지양 하도록 검토할 것

○ 영농기술교육시 기계조작 및 운전·수리능력을 배양하고 있는데, 충분한 기술습득과 지역농촌의 실정에 맞도록 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것

○ 분야별 교육실적중 도민 의식교육에 있어 신규이장반, 여자반장반, 신영농기술교육반에 입교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참석하는 일이 없도록 차출에 철저를 기할 것

< 증평출장소 >

○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자료제출이 관례·답습적이고 내용이 불충분하며 언론과 사회지도층 등 각계각층에서 문제가 제기된 제반사항에 관하여 심층분석하고 대책과 건의내용을 업무보고 사항에 포함하는 등 정확을 기할 것

○ 시승격을 대비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

○ 출장소의 기구 및 정원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지방화에 부응하는 원활한 업무추진 체계가 되도록 하고 또한 직원 자질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갈 것

○ 국·도변 주변에 여관이 증가되는 것은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 건축물이므로 허가시에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출장소에서는 신중히 처리할 것

○ 교통질서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단속이 미약한데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체증이 없도록 할 것

○ 오폐수 처리 검사의뢰 및 방류일지 등에 대한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보강천 수질을 잘 보전되도록 할 것

○ 증평출장소의 예식장 운영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할 것

○ 학교폭력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사전계도 및 홍보에 주력하여 근절대책을 강구 조치할 것

○ 도안 농공단지 현지확인 결과 오·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가동시키고 있는데, 장마시·야간등을 이용하여 오폐수가 방류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출장소 관내에 있는 위험교량 및 도로에 대한 수시점검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불감증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축산농가의 폐수처리 문제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보강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증평출장소에서는 각종사업의 분야별, 사업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

○ 지역특화작목 육성농가에 대해서는 소득향상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에 집중 육성시켜 나갈 것

○ 증평지역은 도시근교 농업이므로 농촌을 소외시키지 말고, 영농지도 및 지원을 강화할 것

○ 증평지역의 교통체증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주차공간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 증평공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융자금을 기채 및 입주업체 사전신청으로 선수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추진상황이 저조하므로 강력히 추진대책 강구할 것

□ 건 의

< 내 무 국 >

○ 도의원의 각종행사등 공식행사 참석시 예우 및 의전에 관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강구 요망

○ 수안보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있어 도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줄 것을 요망

○ 충북도민대상 선정에 있어서 일부부문에서는 추천대상이 없고 8개부문중 4개부문만 시상이 결정되었는데, 앞으로 전대상에 시상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요망

○ 청주흥덕사지의 직지심체요절이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97년도는 문화유산의 해이므로 반환 대책을 강구하여 되찾아 오는 대안수립 요망

○ 도민체전의 운영방법을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생활체육대회와 같이 점수제가 아닌 메달제 또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도민체전이 한마음이 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망

○ 국고보조금 내시가 충북이 전국에서 최하위에 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요망

< 민방위재난관리국 >

○ 적십자 봉사단체의 응급조치 자격증 소지자가 다수 있는데 이들을 민방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망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에 있어 통제관리 체제의 일원화가 필요한데 대책방안을 요망

○ 유사시 대비 방독면이 각가정마다 비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민계도와 홍보를 통하여 확대 보급하여 주길 요망

< 소방본부 >

o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주민자치시대에 변화가 요구되는데, 소양교육을 통하여 공무원 자질향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요망

o 아파트등 건물고층화에 따른 사다리차 소방장비 공급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망

< 공무원교육원 >

o 공무원교육원이 새청사로 이전하였으니, 도내 전공무원을 정신교육시킬 방안 검토 요망

o 교육원에서는 교육생에게 받은 교육비와 타시도 위탁교육비 관리를 철저히 해 줄것 요망

o 우수한 교관이 교육원에 많이 모여 있는데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연구논문을 많이 만들어 교육생에게도 활용하고 도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 요망

o 교육원에서 교육생 영양관리와 의무실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망

o 교육원 청사가 원거리에 있어서 통근시간에 어려움이 있으니 '97년도에는 합숙교육을 많이 책정하여 줄 것을 요망

< 도민교육원 >

o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하여 농촌지역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97년도 전과정에 교과목을 배정하여 교육운영 요망

o 도민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농기술분야를 농촌진흥원으로 이관하여 실시하고 도민 의식교육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망

o 도민의식 교육생들은 이장·반장·새마을지도자등 지역 여론 형성층이므로 국·도정 역점시책을 교육하여 이들이 지역에 돌아가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요망

< 증평출장소 >

○ 증평출장소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사업 추진 및 행사관계 등 사전에 도 의회와 협의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활한 협조체제 확립하여 줄 것을 요망

○ 시승격을 위한 인구증가 대책도 중요하지만 소장이하 전공무원과 주민모두 단합된 의지를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색하여 가일층 힘써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기를 요망

○ 증평출장소가 시승격을 대비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 담배판매 수익등 경영수익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 마련을 요망

○ 증평의 창변경찰 운영을 활성화시켜 주민의 올바른 의식을 정립 시키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줄 것을 요망

4) 교육사회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

< 보건환경국 >

○ 난전에 장사하는 상인들을 위해 공중변소를 설치해 주는 방안 강구

○ 태아 성감별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

○ 병원 적출물 처리 지도 단속 철저

< 사회복지국 >

○ 양로시설에 최소한의 의료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법적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보건환경연구원 >

○ 업무추진에 있어 검사·연구만 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 보건환경국과 연계해 능동적인 행정추진을 하여 주기 바람

< 자연학습원 >

○ 경영화 방안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자연학습을 위한 대주민 서비스 차원으로 전환해 나갈 방안도 강구해 볼 것

< 여 성 회 관 >

○ 시·군 여성회관과의 연계 및 도 전체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수교육,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 여성회관의 역할 제고 당부

□ 건 의

< 보건환경국 >

○ 지하수 개발과정에서 파생하는 폐공처리를 함에 있어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항구적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

·지하수 개발시 폐공처리 비용예치 등을 통해 행정기관 주도로 처리하는 방안 강구

○ '97년 6월 환경선언문 발표때 음식물쓰레기 감량 운동 등을 선언문 속에 포함시켜 주기 바람

< 사회복지국 >

○ 창변경찰제 제명을 바꾸어 주민들의 거부감을 불식하고, 업무추진에 활성화를 기할 것

< 보건환경연구원 >

○ 장비보강 및 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검사·연구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람

5) 농림수산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

< 농 정 국 >

- ○ 간이집하장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융자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
- ○ 전업농의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 시설채소단지 지원 사업이 사후관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
- ○ 양축농가에 보급 되는 톱밥이 부족한데 보급에 철저를 기할 것
- ○ 유실수마을 조성사업을 확대 실시할 것
- ○ 폐농기계 수거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
- ○ 축산전산화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농가 보상비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
- ○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할 것
- ○ 개량마스크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
- ○ 각종 정부지원사업의 사후 평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
- ○ 농민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내실있게 집행 될 수 있도록 할 것
- ○ 각종 보상금의 불용액이 과다하다.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
- ○ 농축산사업소 지소의 검사장비를 확충하여 검사에 철저를 기할 것
- ○ 축산분뇨, 오폐수처리와 톱밥, 농업 부산물을 이용한 퇴비화와 유기농산물의 연계방안을 강구할 것
- ○ 밭기반정비 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
- ○ 임도시설 시설보수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 농촌진흥원 >

- 각종 연구·시범·지도사업이 소득에 연계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할 것
- 옥천 육용토끼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 해외연수 농업인이 연수후 습득한 지식을 농가에 보급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
- 농민 조직이 품목별로 조직되어 내실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할 것
- 기존 농업생산 시설을 활용한 저투자 소득증대방안을 연구할 것
- 약초 주산단지의 한약제 규격화와 관련 안정적 소득기반 구축에 대한 방안을 연구할 것
- 지역농업개발센타의 각종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
- 각종 시범사업의 사업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할 것
- 문화생활관 지원사업 종료후 대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
- 농촌진흥원이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건 의

< 농 정 국 >

- 전업농 지정시 지역 실정에 맞게 품목을 지정할 것
-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예산을 농민단체 지원을 지양하고, 전농업인이 참석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 치어 방양을 댐지역에만 국한하지 말고 계곡이나 소류지에도 방양할 것
- 버섯 가격하락시 버섯재배사를 타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사전대책을 세워줄 것
- 영동산골 오징어 사업이 지역특색사업으로 육성 될 수 있도록 할 것
- 대리 경작자 지정을 확대하여 실시하여 줄 것
- 농정국과 사업소의 행정직공무원 배치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
- 농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 대책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
- 과수 수출단지의 사과이중봉지 공급등 수출지원을 위한 사후 관리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여 줄 것
- 지역에서 생산된 사과를 농민들이 자력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 줄 것

< 농촌진흥원 >

- ㅇ 연구, 시범사업을 충북의 농업실정에 맞도록 추진하여 줄 것
- ㅇ 농기계수리센타의 임시직원을 기능직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
- ㅇ 농민상담소의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 ㅇ 시·군별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현원에 차이가 있다. 조정하여 시행하여 줄 것
- ㅇ 흑미 과잉생산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 ㅇ 옥천시설포도시험장의 포도재배기술 교재의 인쇄비를 확보하여 교재가 포도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할 것
- ㅇ 도와 자매결연 도시의 종자를 수입하여 농산물품종 개량 방안을 연구하여 줄 것

6) 건설교통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

< 건설교통국 >

- ㅇ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은 활용도가 높은 지역 선정(도심과 주택지간 연결도로에 우선실시)
- ㅇ 재해취약지 제방 축조는 착공년도에 준공토록 예산집중투자
- ㅇ 오송 신도시 건설예정지 침수 예상지역이 없도록 조치
- ㅇ 오송 신도시 건설예정지 철도 이설과 교통망체계 및 하수처리대책의 종합대책수립
- ㅇ 510번 지방도 증평IC ~ 오창구간 4차선 확 포장은 중부고속도로 오창IC 신설로 교통분산이 예상되어 예산 투자에서 이 구간보다 우선되는 지역 먼저 투자
- ㅇ 건축사협회 입회비 대폭 경감 및 설계비 예치제도 시정

< 공영개발사업단 >

- ㅇ 36번 국도와 가경2, 3지구 진입 교차로 설치

□ 건 의

< 건설교통국 >

- ㅇ 수해복구사업 현장확인 확행
- ㅇ 대형건축물 주차시설(기계식 주차시설) 운영관리 강화
- ㅇ 공영주차장 유료화 이행
- ㅇ 청주, 청원 영업용택시 사업구역 통합전에 사업자 대표 주민과의 공청회를 실시 의견 수렴
- ㅇ 하천도로부지 점용허가 철저로 세수증대 및 관리효율화 방안 강구
- ㅇ 개구리 주차시설 도입
- ㅇ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선정의 객관성 유지
- ㅇ 건축사 지도감독 확행
- ㅇ 부족한 건축직공무원 조속히 증원
- ㅇ 소규모 수의계약 공사는 지방연고 업체가 수주토록 조치
- ㅇ 510번 지방도 증평IC ~ 증평의 전 구간이 보강천을 따라 건설됨이 타당
- ㅇ 청주국제공항의 점포입주에 있어서 도민이 반드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
- ㅇ 청주국제공항에 농산물 및 토산물 판매장 설치

< 공영개발사업단 >

- ㅇ 택지조성시 보도블록, 가로수·경계석 등의 건설비용은 예치후 주택, 상가 등이 건축된 후 설치하여 예산낭비 요소가 없도록 조치
- ㅇ 공영빌딩 신축부지 매각
- ㅇ 가경3지구내 발산부락 도로공사 조속히 매듭
- ㅇ 가경2지구내 공영주차장 조속히 건설
- ㅇ 택지개발시 주거지역내 도로의 연계성 확보

<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

- ㅇ 단지내 공업용수, 생활오수 관리 일원화
- ㅇ 오창 테크노빌 지구 영세주민 생계책 마련
- ㅇ 목령산 토성을 공원으로 조성
- ㅇ 오창과학산업단지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내용 적극 반영

第4章　請願 및 陳情處理

第1節　請　願

第2節　陳　情

第 1 節 請 願

1. 處理槪要

○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주소, 성명,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청원서와 의원소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전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한다. 이때 심사과정에서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고,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위원회에서 심의된 청원은 본회의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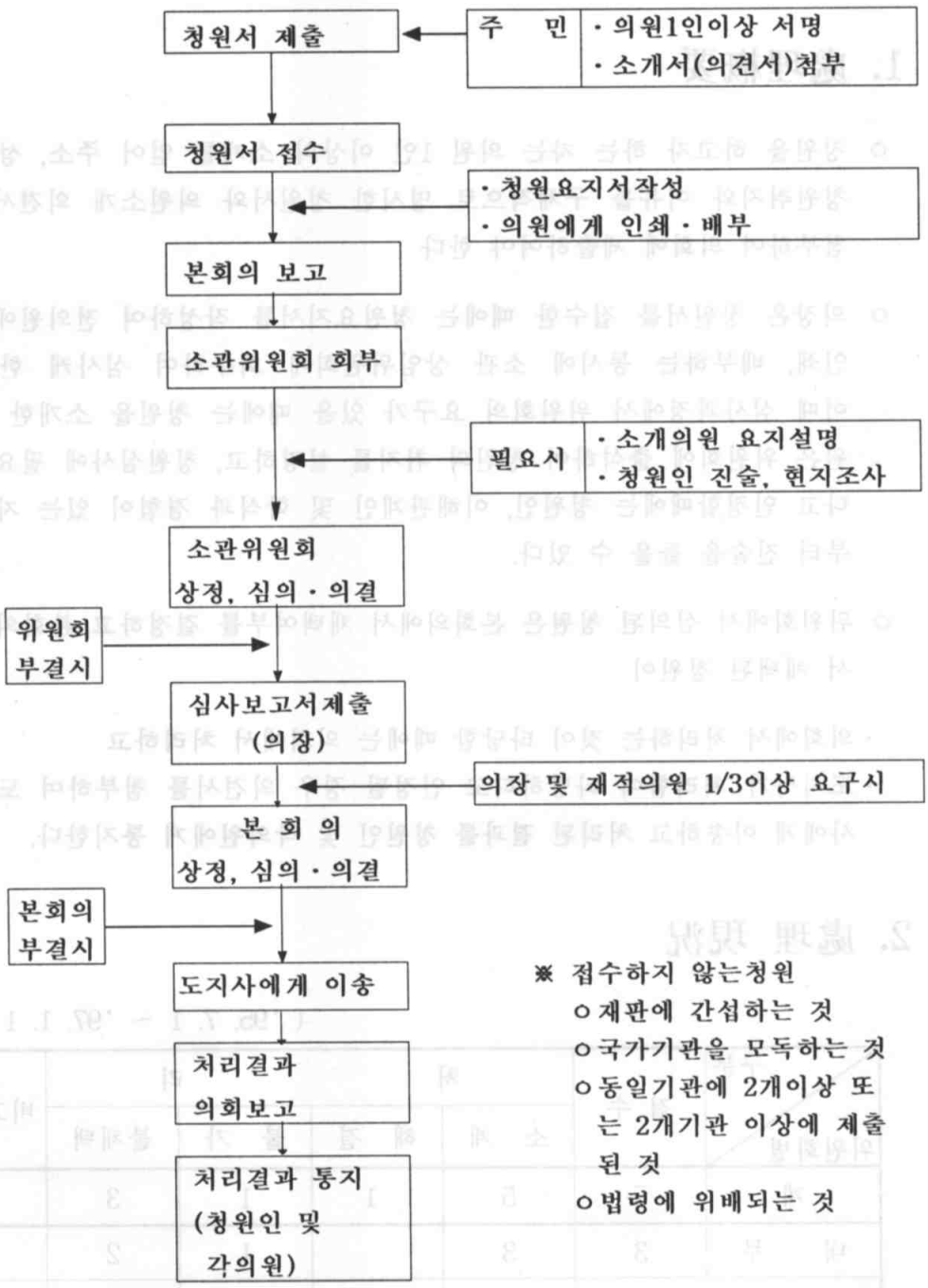
·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때에는 의회에서 처리하고
·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처리된 결과를 청원인 및 각의원에게 통지한다.

2. 處理 現況

('95. 7. 1 ~ '97. 1. 1)

구분 / 위원회별	접 수	처리				비고
		소 계	해 결	불 가	불채택	
계	5	5	1	1	3	
내 무	3	3		1	2	
교육사회	1	1	1			
건설교통	1	1			1	

3. 處理節次



※ 접수하지 않는청원
- ㅇ재판에 간섭하는 것
- ㅇ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ㅇ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ㅇ법령에 위배되는 것

4. 處理內容

1) 정춘수동상 연내철거에 관한 청원

□ 청원 개요

○ 접수 일자 : '95. 9. 25

○ 청 원 인 :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 360-8 정진동외 3,638인

○ 소개 의원 : 김 춘 식 의원

○ 소관위원회 : 내무위원회

○ 청원 요지

· 3. 1공원에 세워져 있는 정춘수동상은 1919년 3월1일 당시 민족대표 33인중 한사람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 1938년 흥업구락부 사건을 계기로 친일로 전향하여 민족의 독립에 해악을 끼쳤음

· 청원인은 수차에 걸쳐 충북도에 공문을 제출하고 거리시민 서명, 3. 1절시 동상철거 시도, 도지사 면담을 통하여 동상철거를 전개하였고 독립기념관에서는 정춘수, 최린, 박희도를 친일파로 규정하여 사진을 철거한 바도 있음

· 해방 5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 청산작업과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하여 정확한 역사적 고증이 결여된 정춘수동상은 연내, 철거하여 충절의 고장이란 명예스런 이름이 바로설 수 있기를 요망하는 내용임

□ 처리 결과 - 불채택

○ 회신 일자 : '95. 10. 20

○ 회신 내용

· 철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토지소유권 및 관리권과 시행등의 모든 승인 및 결정권이 청주시 권한에 속하는 바 도의회에서 다루기 보다는 청주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청원을 채택하지 않기로 의결

2)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청원

□ 청원 개요

○ 접수 일자 : '95. 10. 9

○ 청 원 인 : 옥천군 청성면 마장리 79-2 육대근외 384인

○ 소개 의원 : 유 재 철 의원

○ 소관위원회 : 내무위원회

○ 청원 요지

· 옥천군 청성면 능월리 망월, 신기, 두룽, 마장, 도곡 5개부락 인구 813명은 보은군 삼승면 원남리와 접하고 있는 부락으로 수십년간을 이웃과 같이 지내고 있어 이번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조정되기를 요망

- 청성면 능월리 망월외 4개부락은 보은군 삼승면 소재지(원남리)와는 불과 1km에 인접하고 있으나 청성면 소재지와는 8km가 떨어져 있어 민원업무의 추진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학교문제에 있어서도 국민학교는 옥천, 청성, 능월국교로 중학교는 보은, 삼승, 원남중학교로 다니는 등 행정구역과 학구가 불일치되고
- 대부분 주민들이 삼승면 원남리 5일장과 한전, 농협, 전화, 시내버스 등 보은지역의 행정편의를 받고 있음
- 행정구역개편 민원이 진행되면서 옥천군수가 이 지역에 청성면출장소를 개설하여 행정편의를 도모한다고 하지만 이는 행정감독기관만 증가하고 실질적인 생활권, 학구, 경제권을 도모할 수 없는 것임

□ 처리 결과 - 불채택

○ 회신 일자 : '95. 11. 8

○ 회신 내용

· 행정구역 조정은 지역주민의 의견합의와 당해 군의회의 의견수렴등의 절차적 수순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본 청원을 채택하지 않기로 의결

3) 환경부고시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대책지역및특별종합대책"에 대한 청원

□ 청원 개요

○ 접수 일자 : '95. 12. 6

○ 청 원 인 : 옥천군 청성면 대안리 147-5 신한중외 1,308인

○ 소개 의원 : 유재철, 송재주, 이민희, 이희복 의원

○ 소관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

○ 청원 요지

· '90. 7. 19 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을 근거로 환경부고시(90-5)16호에 의거 지정된 대청호상수원 수질보전대책지역과 권역지정에 따른 특별종합대책의 마련으로 주민의 피해의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

· 수질보전특별대책을 지정고시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법에 근거로 고시할 수 있으나 이번 환경부고시안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을 위배하고 있음

· 그러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근거를 두고 마련한 특별대책지역과 대책 내용은 위법으로 환경부고시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청원으로

· 주요 청원사항은

- 환경부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고시한 대청호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에 대하여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 특별종합대책에 명시된 지원대책에 '90년도 수준으로 피해대책지역에 연차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환경조성사업, 주민소득증대사업에 투자된 내역을 밝혀주고 지원되지 않았다면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엄중문책

- 재산권 사용을 제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인 규제만 강요하는 본 고시개정안의 폐지를 요구

□ 처리 결과 - 일부해결

○ 의회 의결 : '95. 12. 23

○ 의결내용 및 추진사항

· 위법성 여부 — 불채택

- 위법성 여부는 의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므로 청원인이 국회 및 헌법기관을 통하여 해결할 사항으로 청원을 수용치 않음이 타당함

· 특별대책지역 지원대책

-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지원 사업내역('90~'94) : 32,690백만원

  ┌ 수질보전기초시설 : 10,606백만원
  ├ 생활환경조성사업 : 19,513백만원
  └ 소득원개발사업 : 2,571백만원

(기본계획, 관계부처협의·건의사항, 국고지원 : 별책보고)

· 공무원 문책

- 특별종합대책 고시내용에 해당지역 지원사업 재원기준은 '90년 예산 기준인 23,920백만원 이상으로 연차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 '91~'94 까지 기준이상의 예산지원이 되도록 98,010백만원(연평균 24,502백만원)을 도 기본계획에 수립하였고,
- 예산요구액도 198,629백만원 (연평균 49,658백만원)을 소관부처에 매년 요구 하였으나
- 중앙 소관부처에서 이를 기본계획대비 12%, 요구액 대비 6%인 11,728백만원('90지원분 제외)만을 예산배정하여 도의 관련공무원 문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현행 고시 폐지 — 건의문 채택

- 현행 고시 폐지에 대하여는 청원인 및 소개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의회 차원에서 폐지 건의안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제120회 정기회 제6차 본의회('95. 12. 23)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환경부장관에게 건의('95. 12. 26)

4) 제천, 수산 고명도로 선형개량공사에 따른 잔여토지 매입에 관한 청원

□ 청원 개요

○ 접수 일자 : '96. 1. 24

○ 청 원 인 : 제천시 수산면 고명리 100 유 승 인

○ 소개 의원 : 김 진 학 의원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청원 요지

· 청원인의 소유토지 약 1,200평(지적도상 5필지)을 농기계를 이용, 편리하게 농사를 지어 왔으나 고명도로 선형개량공사('95. 6월~'96. 6월)로 인하여 잔여토지 3필지가 발생, 토지이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에 잔여토지 매입을 요구하였으나 현지

확인도 없이 매입, 보상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음

〔회신 내용〕

- 고명리 123-8와 123-6은 본공사와 무관하여 보상할 수 없고
- 고명리 123-2은 잔여면적이 190평으로 매입이 어려움

· 잔여필지의 현재 위치로 보아 농로개설이 불가능하고 개설이 된다고 해도 급경사로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잔여토지의 매입을 요망하는 내용임

※ 매입요구 토지(3필지)

제천시 수산면 고명리 123-8(전) 74㎡
123-2(전) 630㎡
123-6(답) 296㎡

□ 처리 결과 — 불채택

○ 회 신 일 자 : '96. 4. 26

○ 회 신 내 용

청원인이 요구하는 잔여토지의 매입요구는 본래 목적(농업)활용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채택하기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

5) 수안보지역 자연사 박물관 건립에 관한 청원

□ 청원 개요

○ 접수 일자 : '96. 10. 15

○ 청 원 인 : 충주시 상모면 235-48 이만옥외 48인

○ 소개 의원 : 김재근 의원

○ 소관위원회 : 내무위원회

○ 청원 요지

· 수안보지역 자연사 박물관 건립은 '94. 4. 8 충청북도지사(김덕영)가 자연역사자료수집가인 한국운석광물연구소장인 김동섭 박사(충주 출신)로부터 세계 130개 국가에서 수집, 소장하고 있는 10만여점의 자연역사 자료를 기증 받아 수안보 조산공원에 박물관을 건립(충북도는 부지, 건물제공)키로 하고

· '95. 2. 9 수안보 조산공원의 국·공유지를 교환하여 박물관 부지를 마련(충주시장 등기)하고 사업비 6억(기본설계, 실시설계비)을 확보하여

수안보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 점차 규모가 축소되어 명칭(박물관→전시관), 사업비(179억→85억), 건축규모(3,500평→1,060평), 사업기간('97년→'99년)이 조정되더니 설계용역비 6억원 마저도 집행·유보되어 반납하고 말았다는 보도가 있으며 현재는 사업이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수안보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관광협의회(민간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하여 분골쇄신 노력하고 있으며 자연인이 아닌 공인(충청북도지사)의 발언을 신뢰하고 있는 바 충주시 재정으로는 도저히 자연사박물관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니 당초 계획대로 충청북도가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여 주기를 요망하는 내용임

□ 처리 결과 - 불 가

○ 회신 일자 : '96. 11. 9

○ 회신 내용

자연사 박물관 건립은 충주시장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민자유치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충청북도지사가 촉구함

第 2 節 陳　　情

1. 處理槪要

○ 진정은 의원의 소개를 필요치 않으며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의견서등 다양한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된 민원을 말하며 재판에 간섭하거나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그리고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내용이 불분명한 것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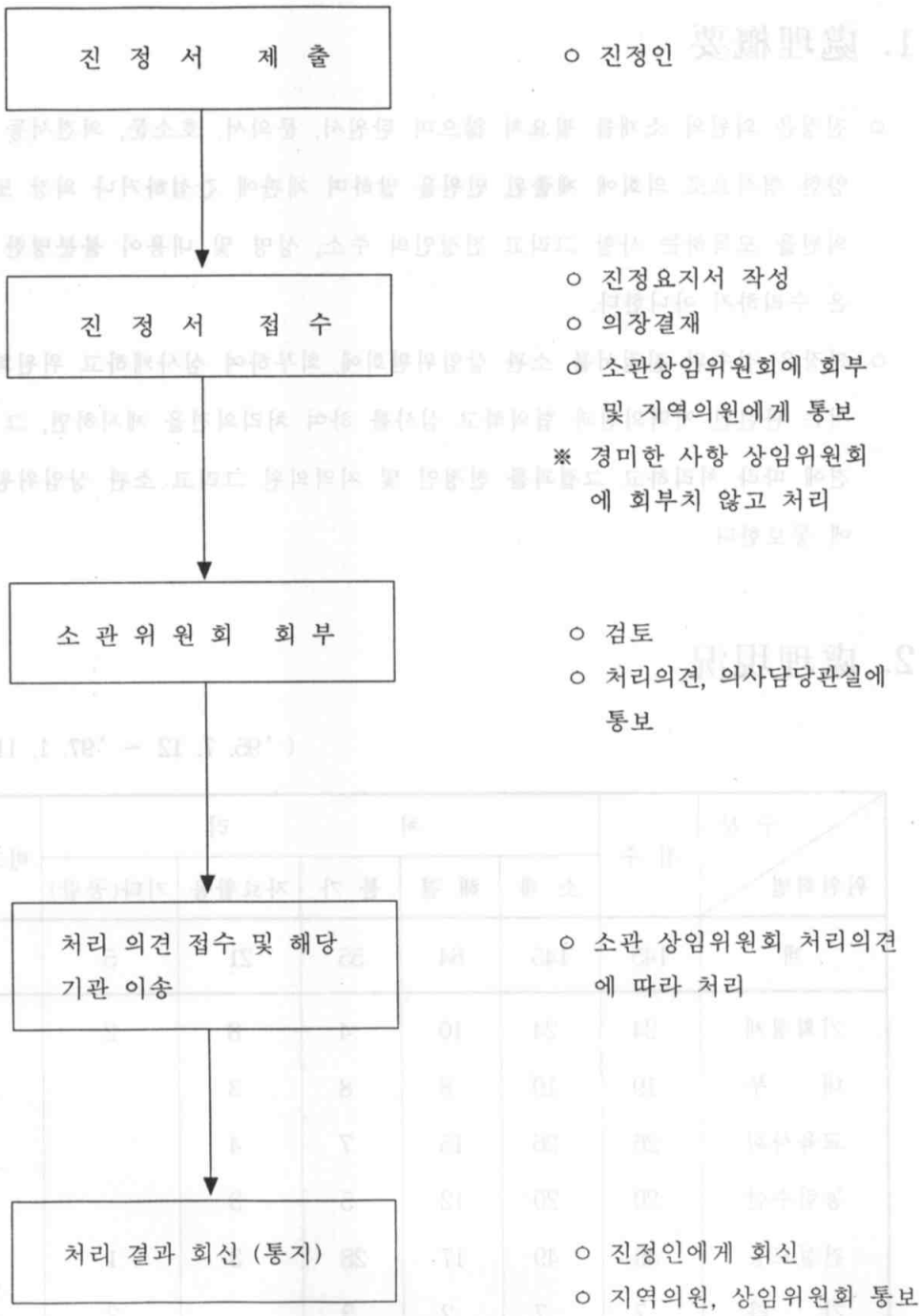
○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하고 위원회에서는 관련된 지역의원과 협의하고 심사를 하여 처리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에 따라 처리하고 그결과를 진정인 및 지역의원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한다

2. 處理現況

('95. 7. 12 ~ '97. 1. 11)

구분 / 위원회별	접수	처리					비고
		소계	해결	불가	자료활용	기타(공람)	
계	145	145	64	55	21	5	
기획경제	24	24	10	4	8	2	
내　　무	19	19	8	8	3		
교육사회	26	26	15	7	4		
농림수산	20	20	12	5	3		
건설교통	49	49	17	28	3	1	
기　　타	7	7	2	3		2	

3. 處理 節次


진 정 서 제 출
○ 진정인
진 정 서 접 수
○ 진정요지서 작성
○ 의장결재
○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 및 지역의원에게 통보
※ 경미한 사항 상임위원회에 회부치 않고 처리
소 관 위 원 회 회 부
○ 검토
○ 처리의견, 의사담당관실에 통보
처리 의견 접수 및 해당 기관 이송
○ 소관 상임위원회 처리의견에 따라 처리
처리 결과 회신 (통지)
○ 진정인에게 회신
○ 지역의원, 상임위원회 통보

4. 處理 內容

1) 기획경제위원회

('95. 7. 12 ~ '97. 1. 11)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주 소	성 명		
<'95년도>			
청원군 강외면 호계리621	김우식	1.산업용 전력공급시설(전주) 설치에 관한 제현황 보고	· 기획경제위원회에 송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함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70-1 (주)흥업백화점	(주)흥업 백화점임 직원일동	2.파산위기 백화점지원 요망	· 백화점 부채문제는 채권자가 채권에 관한 권리행사시 제재를 가하거나 막을수 있는 제도나 법이 없는 관계로 장기신용은행이나 충북투자금융에 협조문을 발송하여 백화점 회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105	용암한우리타운입주자대표1, 494인	3.용암열병합발전소 건립반대	· 용암2지구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설치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주시 및 주민대표등과 대체부지확보를 위하여 협의 추진중에 있음 - 청주시 개신동에 추진중임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369	오창환외 39인	4.노동조합탄압에 대한 진정 조사 요망	· 충청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재판에 관계되는 사항은 수리할 수 없어 회사대표에게 상호간 관계개선을 위한 협조 당부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571	이종득외 20인	5.아스콘공장 설립허가 억제 요망	· 아스콘공장 설립은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업종으로 지정,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고 공장설립시 기존공장과의 거리제한이나 공장수를 제한할 수 없으나 · 공장이 과다하여 신·증설될 경우 경영악화가 우려되어 시장군수로 하여 공장설립시 입지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

진정인		건명	처리내용
주소	성명		
<'96년도> 청주의료원 前 간호과장 前약제과장	이상숙 박해자	6.부당한 인사조치 규명요망	· 보직해임은 청주의료원 인사규정에서 정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 행사로 의료원 자체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국자동차노조 충북지부 속리산고속분회	김현구 외 147인	7.(주) 속리산고속버스 노동조합 조합원의 해명요구	· 기획경제위원회에 송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함
(주)청주도시가스	최병만 외 76인	8.청주 열병합 발전소 건립의견서	· 기획경제위원회 및 지역의원에게 송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함
청원군 옥산면 환희1리 471		9.공장설치로 인한 도로반환 및 잠수교 설치요망	· 도로반환은 92년 공장입지 승인시 도로를 용도폐지하는 대신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적법하게 승인, 현재 우회도로가 개설완료 · 잠수교 설치는 병천천 수위를 고려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음
(주)청주도시가스		10.청주열병합 발전소 사용연료에 대한 의견서	· 기획경제위원회 및 지역의원에게 송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 하도록 함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매포읍 번영회장	11.(주)성신양회 공장증설에 따른 매포읍민의 의견	· 기획경제위원회및 지역의원에게 송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함
괴산군의회의장		12.지방공사 청주의료원 괴산 분원 폐원결정 철회 건의	· 청주의료원 괴산분원에 대한 폐원결정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경영악화에 있는 의료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임
청주시 상당구 수동 441-19	한기동 외 396인	13.수동 일일 인력시장 이전 요망	·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인력시장의 이전은 어려우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임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주 소	성 명		
미국샌프란시스코 충북동포 대표단	권성주 외 10인	14.충청북도 국제우호 명예대사 임명에 대한 해명요구	· 명예대사의 선발위촉은 해외공관,한인회,충청도민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신원조회를 필한 후 자체심의를 거쳐 위촉 수락 동의를 받아 임명하고 있음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456 흰돌감리교회	목사 임복만	15.주유소 허가 취소 요망	· 2회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청주시장에게 제출하여 회신 받은 사항으로서 본진정도 같은 내용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회신을 생략함을 알림
청원군 남이면 석판리 186	박용준 외 83인	16.열병합 발전소 사용연료 대체요망	· 청주지역에서 사용할 연료는 서울등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황함유량이 0.3%이하인 저황왁스유로써 정부가 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 LNG로 사용연료를 대체하겠음을 회신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674-60	김현문	17.도지사 탈당광고료 지출여부및 행정사무감사시 조치사항 공개요망	· 정당한 지출여부의 유권해석을 판단할수 있는 기관이 감사원과 내무부로서 의회에서는 정당한 지출여부를 판단할수 없고 ·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후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충청북도에 별도로 서류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99-1	조용문	18.청주의료원 존치 요망	· 기획경제위원회에 송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함
사단법인 한국경제인 동우회		19.'97년도 경제정책에 대한 건의	· 기획경제위원회및 각의원에게 송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함

2) 내 무 위 원 회

('95. 7. 12 ~ '97. 1. 1)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주 소	성 명		
<'95년도> 진천군 문백면 도하3리	강원삼 외 주민일동	1.행정구역조정 요망 (문백,도하3리→청원군)	· 금년도 2단계 행정구역조정 지침을 수립,시군에 시달하여 그동안 건의되었던 민원사항을 포함하여 주민편의 위주로 행정구역조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미조정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합천부락 1반	함찬술 외 6인	2.행정구역조정 요망 (산척,석천리 합천부락 → 제천시)	· 제반사항을 종합검토한 결과 주민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추진상 어려움이 있어 향후 주민의견이 일치되었을때 재검토 추진할 계획임
청원군 북이면 금대2리 56	김우찬 외 182인	3.행정구역조정 요망 (북이, 옥수리외 4개마을 → 증평읍)	· 행정구역조정 대상지인 북이면 금대리외 4개부락에 대하여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충청북도에 제출,현재 행정구역조정을 추진중에 있음 - 미조정
진천군 초평면 은암1리 230	김사성 외 11인	4.행정구역조정 요망 (초평면 용기리외 4개마을 → 증평읍)	· 지역주민대표 50명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반대37,찬성13) 행정구역조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수주민들의 의견이 성숙될 때까지 시·군간 경계조정이 불필요함을 회신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79-2	육대근	5."행정구역조정청원"에 대한 이의 진정 (청성, 능월리 망월 외 4개마을 → 보은군)	· 본 진정은 의회의사 13107-564 ('95.11.8)호로 회신한 사항으로 재심의할 이유가 없으며 · 충청북도에서 11.30까지 도내 전지역이 행정구역조정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묻는 등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음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주 소	성 명		
제주시의회의장		6.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관한 건의	· 내무위원회에 송부,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함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126-5	이장단 대표 이종학 외 26인	7.행정구역 존치 요망 (대소면 대풍1리→음성군)	· 행정구역조정은 관할 자치단체인 음성군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안임
청원군 현도면 우록리 13	안기찬 외 22인	8.경마장 후보지 반대요망	· 연간 100억원의 세수확충이 예상되는 중부권 경마장 설치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현 단계에서는 경마장 건설은 구상단계로서 청원군 지역으로 확장된 바 없음
<'96년도>			
괴산군 증평읍 초중리 7-4	증평 시민회	9.증평 시(군)으로 독립요망	· 제4대 의회에서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계속적으로 다루었던 사안으로 현시점에서는 주민등록인구가 5만이 안되어 어려우나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행·재정적 지원을 모색, 주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233	박용직 외 1,185인	10.행정구역 존치 요망	· 행정구역조정은 우선 관할 자치단체에서 검토,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인접 자치단체간 지역이기주의나 이해 득실을 취해서는 않되며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민 의견이 존중되고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함
음성군 대소면 대풍1리	신사섭	11.대소면 대풍1리, 진천군 편입요망	· 행정구역조정문제는 관련 자치단체간의 이해가 상충되고 지역간의 갈등이 야기되는 등 민감한 사안으로서 우선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구역조정이 추진되어야하며 일방적으로 도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님

진정인		건명	처리내용
주소	성명		
청원군 옥산면 동림리	유태용 외 693인	12.옥산 뉴 - 청주 골프장 건설반대	· 주민들이 우려하는 수질(대기)오염, 산사태(토사유출), 생활용수, 농약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진천군의회의장		13.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 건의	·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를 청원군으로의 편입과 음성군 대소면 대풍1리의 진천군으로의 편입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여 ·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를 청원군으로의 편입을 위한 경계구역조정 의견을 상정하지 않기로 함
제천시의회의장		14.지방 교부세율 법정교부율 인상 건의	· 내무위원회 및 각 의원에게 송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함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현대APT 103동 1405호	최경희 외 357인	15.청주 실내수영장 운영개선 건의	· 수영장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청소인력을 확보하고 무인청소기를 구입할 예정이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우나실을 보수할 계획임
괴산군 도안면 광덕2리 광덕사 주지	이계영 외 95인	16.문화재 보호대책 요망	· 광덕사 석조여래입상의 보호각 건립을 위하여 '97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3억3천만원)를 요구하여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임
한국예총충북도지회장	임해순	17.도 문화상 시상제도 독립 시행 요망	·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시상제도를 시행코져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 각종 상훈 명칭이 각양각색이고 시기도 산발적 시행되는 등 일관성이 없어 '96년부터 도민대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시행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대전시 유성구의회의장		18.공무원 연금제도 개선건의	· 각 의원에게 송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함
음성군의회의장		19.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관한 건의	· 의용소방대의 기본경비 부담 및 정원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준칙이 개선되도록 내무부에 건의

3) 교육사회위원회

('95. 7. 12 ~ '97. 1. 11)

진정인		건 명	처리내용
주 소	성 명		
<'95년도>			
청원군 가덕면 한계리	조원창 외 9인	1.생수생산시설 공장설치 반대 진정	· 도내에 시설된 기존업체는 물론 신규 허가업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도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하여 사전 주민의견 수렴 및 적법하게 처리하였는지를 확인·감독토록하겠음
단양군 매포읍 상시리	유수열 외 13인	2.소음,분진등으로 인한 주거대책 중재 요망	· 현지방문하여 민원인과 회사가 공존할수 있도록 대화유도 및 해결협조 요청하고 의회에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수행하겠음
충주시 교현동 410-3 충주환경연합	대표, 연제식 전병철	3.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 분리설치에 따른 대책건의 및 새한미디어 공해대책	· 새한미디어 공해대책은 의회가 현지방문,질의를 통하여 환경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협조요청하고 ·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에 기지원된 47억원을 반납해야 하며 통합설치시 설치비용200억원, 운영비가 연7천만원이상 소요되어 환경부의 최종 결정대로 분리 설치함이 타당함을 회신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산 22-1	이원구 외 90인	4.생수개발 허가취소 요망	· 도에서는 생수허가 신청시 수원컴퓨터테이프와 환경영향조사서를 정밀검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 의회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생수허가처리과정을 보고토록하여 주민의견 수렴 여부를 확인감독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음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주 소	성 명		
제천시 중앙로 2가 66-17	제천농고 총동문회	5.제천농고 본관신축 이전 요망	· 본관 건물의 내구연한(15년)이 도래되지 않아 철거가 어렵고 환경개선사업등 여건변동으로 본관 건물 개축이 이루어질 때 철거하고 학교교육을 위하여 과선교가 설치될수 있도록 시행청에 협조 당부
제천시 신백동 203-123	제천 피아노 과외교습소 연합회	6."학원설립운영에 관한조례" 개정 요망	·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시행령이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96.2월중에 개정될 예정으로 ·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개정을 검토,추진중에 있음-'96.12.16 조례개정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위생관리용역협회 충북지회	회 장 목영천	7.대형건물(공장) 위생관리용역업체 선정시 도내업체 선정 배려요망	· 대형건물(공장)에 있어 위생관리용역계약은 업체간의 자율경쟁하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해당건물소유자에게 협조,요청하는등 자구적인 방법을 통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함
청원군 강내면 탑연리 218-1 청주 광역쓰레기매립장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 이화영, 송해만	8.도시계획사업(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 공고에 대한 이의진정	·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한 공고는 청주시와 해당부처의 각종 인·허가를 함에 있어서 허위가 없었으며 · 매립장후보지가 당초 미원,옥화→강내,학천으로 변경된 것은 침출수처리장 건설과 원거리등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하였고

진정인		건 명	처 리 내 용
주 소	성 명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시 주민들의 의무화에 있어 민원인이 제기하는 변경2㎞의 주민동의의무화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의거 불필요함
청원군 남일면 고은리 361 남일면 이장단	회 장 박성희 외 21인	9.청원군 남일면 "청정지역고시" 철회 요망	· 환경부가 고시한 청정지역은 공장등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폐수처리 허용기준을 정하여 하천 및 농업용 수질오염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주민생활 규제가 아님
<'96년도>			
청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반대 강내지역 목회모임	권석은 외 8인	10.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추진 계획 취소요망	· 쓰레기매립장및소각장 건설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청주시·청원군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 금번 설치하는 매립장과 소각장은 최신 위생시설 설치와 매립후 공원조성등 주민편익 시설지구로 개발할 예정임
청주시 상당구 수동 112-7	이 명 수	11.생계대책 요망	· 진정인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여 2회에 걸쳐 불우이웃돕기성금(36만원)이 지원되었기에 동일 사안에 대하여 계속적인 지원은 합당치 않음
괴산군의회의장		12.문장대·용화온천 확대개발 저지 건의	· 도의회에서도 '92년부터 현지답사, 대정부건의, 대책회의등을 통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향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칠 것임
보은군 산외면 원평리 148	공정웅 외 313인	13.무허가 생수업체 폐쇄요망	· 현재 환경부지침에 따라 (주)선우음료가 '95.11.1 먹는샘물 제조업허가 신청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하여 처리중에 있어 폐쇄는 유보하되-허가처리

진정인		건명	처리내용
주소	성명		
			· 주민들이 요구하는 암반관정 설치를 업체와 보은군이 약속하였음-관정설치
보은군 회남면 산수리	오대수 외 1,324인	14.대청댐 수원특별대책 고시(안) 철폐요망	· 도의회에서도 환경부고시 폐지건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환경부장관에게 건의('95.12.23)하였으며 계속적으로 고시안이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초정약수보존회	회장 최태영	15.초정약수 보전 건의	· 세계3대 광천수중에 하나인 초정약수가 보존이 되도록 충청북도에 촉구함은 물론 향후 관련사항을 철저히 보고토록 하는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노력하고 있음
청원군 가덕면 금거리	신건식 외 385인	16.생수공장 허가 불허처분 요망	· 충청북도에선 관계전문가 및 교수들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생수의 채수량을 제한하는 등 농업용수고갈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관계법령 개정추진중)하고 있으며
			· 피진정인의 먹는샘물 제조허가 신청이 없음을 회신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315	노병선 외 1,158인	17.생수개발 저지요망	· 본 진정은 '95.9.25 이원구외 90인이 제출한 사항과 동일내용으로 의회의사 13107-499 ('95.10.13)호로 기회신하였으며
			· 도의회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충청북도의 향후 생수처리과정을 보고토록 하는등 의정활동을 통해 노력하겠음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주 소	성 명		
청원군 낭성면 관정2리	이 장 신동호 외 174인	18.생수공장 허가 불허처분 요망	·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향후 생수허가처리과정을 충청북도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는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노력할 것임
청원군 북일면 초정리	초정약수 보 존 회	19.초정약수 보전에 따른 건의	· 도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촉구하는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초정약수 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한국세탁업중앙회 충북지회장		20.세탁업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 답변요망	· 세탁소의 무신고 여부는 신고수리된 영업소로서 무신고 업소가 아니며 · 세탁업 소재지 변경신고규정을 위반한 금강크리닝과 경희세탁소에 대하여 영업정지2월의 행정처분함
청주광역쓰레기매립장 반대추진위원장	이화영 외 10인	21.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백지화 요망	·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청주시, 청원군에서는 쓰레기처리장을 설치 운영할 책임이 있고 · 처리장 조성시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오염, 생활불편등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및소각장 반대추진위원장	송영호 외 597인	22.청주7권 광역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반대	· 본 진정은 5회에 걸쳐 관련단체나 주민일동이 도의회에 제출했던 사항으로 -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는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청주시,청원군에서는 설치 운영 할 책임이 있고 - 본시설 설치시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오염 생활불편등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진정인		건명	처리내용
주소	성명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18	김 동 수	23.유흥음식점 허가 자유화 요망	· 유흥음식점 신규영업 해제가 도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여 검토, 처리할 계획임
충청북도의사회장	이 형 수	24.신규 의과대학 신·증설 억제 요망	· 교육사회위원회 및 각의원에게 송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함

4) 농림수산위원회

('95. 7. 12 ~ '97. 1. 11)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주 소	성 명		
<'95년도>			
제천시의회의장		1.'95추곡수매량 및 수매가 결정 재고 요구	· 본의회에서도 제119회 임시회('95.11.9)제2차 본회의에서 제천시의회의 건의내용을 포함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음을 회신
제천시의회의장		2.잎담배 수매량 및 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	· 본회의에서 제116회 임시회('95.8.26)제3차 본회의에서 제천시의회의 건의 내용을 포함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회신된 내용을 통보
청원군 옥산면 덕촌리 259	정 현 욱	3.원유대금 정상지급 및 납유업체 조정 요망	· 충청북도에 납유농가를 보호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협조, 요청하고 의회에서도 낙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청원군 강외면 상봉리 288의 3	최주용 외 1인	4.수해피해보상 요망	· 충청북도에 피해농업시설물 및 농작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피해복구 및 보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 제117회 임시회에서 수해피해 대책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에 건의하였음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69-4 대한건설협회충북도회	회 장 박 인 규	5.수해복구 비용의 국고부담 건의	· 재해복구사업지원에 있어 현재 공사중인 사업장은 "재해구호및 복구비용부담기준" 제18조3항에 의거 제외토록 되어 있어 이조항을 삭제토록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건의-미반영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260	오창균 외 820인	6.수해피해 진상조사 및 관련자 처벌요구	· 충청북도로 하여금 피해시설물 및 농작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피해복구및 보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건의하고

진정인		건명	처리내용
주소	성명		
			· 제117회 임시회시 "수해농가 특별지원및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재경원,농림수산부에 건의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중에 있음을 회신
청주시 상당구 외하동 359	서기석 외 209인	7.배수장설치 및 경지정리사업 시행 요망	· 충청북도에서는 동지역에 대한 경지정리사업 예정지조사를 완료하였으나 외하동지역이 비진흥지역으로 제외되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받은 후 시행코져 추진중에 있고 · 배수장설치는 청원농조에 배수개선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의회에서는 조속사업이 추진되도록 협조, 건의하겠음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257-13	최옥철 외 4인	8.농수로 범람에 의한 피해보상 요망	· 충청북도로 하여금 피해시설물및 농작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피해복구 및 보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건의하고 · 제117회 임시회시 "수해농가 특별지원및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재경원, 농림수산부에 건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충주시 가금면 창동리 224	안정희 외 105인	9.수해피해 보상 요망	· 충청북도로 하여금 피해시설물 및 농작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피해복구 및 보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건의하고 · 제117회 임시회시 "수해농가 특별지원 및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재경원, 농림수산부에 건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주 소	성 명		
충주시 앙성면 영죽리	이창재 외 15인	10.화재 도정공장 신축비 지원 요망	· 충청북도 및 충주시에 도정공장신축비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건의하고 각종 재해를 입은 농가의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협조 및 건의하겠음을 회신
<'96년도>			
제천시 청풍면 연촌리 381	장임식 외 4인	11.충주호 유료낚시터 수면사용 동의 불허처분에 대한 대책 건의	· 충청북도, 한국수자원공사, 수산청등에 본진정을 건의하겠으며 충주댐관리사무소장에게 진정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고 · 주민들의 생계지원 및 소득증대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환경감시원으로 고용 또는 투자시설의 잔존가치 보상등 생계지원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음 ※수면사용 허가기간 3년연장
제천시 청풍면 연촌리 381	장임식 외 352인	12.낚시업 수면사용 동의 중재 요망	· 도의회에서도 충주댐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한 바 허가기간 연장은 불가하나 유료낚시터 종사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수질감시원으로의 고용대책을 모색중에 있고 · 계속적으로 충청북도, 수자원공사, 수산청등에 건의하는등 의정활동을 펼칠 것임
진천군 초평면 신통리 157	손 용 수	13.농배수로 보수 요망	· 시공기관인 괴산군농지개량조합에 배수로준설 및 구조물설치를 요청하였고-배수로 준설 · 감독기관인 괴산군과 충청북도에 진정해결을 협조요청

진정인		건명	처리내용
주소	성명		
진천군 진천읍 신정2리	영농회장 류석열	14.관정설치 및 가두리양식장 철거 요망	· 제124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에 본진정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진천군 농지개량조합에도 계속적으로 협조요구하는등 의정활동을 펼칠 것임
예절바른담배문화운동중앙회	총재 손문창	15.보건당국의 금연기금 출연 요구에 대한 담배소비자 및 종사자 입장 건의	· 농림수산위원회에 송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함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 526	박장석 외 59인	16.군부대 인근 농경지에 대한 대책 요망	· 군사보호구역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증·개축등 주민들의 재산권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의하고 · 또한 인근농경지 매입은 농경지가 광범위하므로 현시점에서는 정부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어려운 실정이나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주민의 요구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보은군 산외면 장갑1리 290-11	유영하 외 53인	17.한해 상습지역 영농지원 요망	· '97년도 예산편성시 농업용수개발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진천군 백곡면 석현리 335	반재환	18.적법한 절차에 의한 낚시업 허가 요망	· 진정인이 1차 수면사용계약 (1년간, '94.10.1-'95.9.30) 만료기간전에 2차수면사용계약 신청을 하지 않아 '95.10.4 해약조치 되었으며 · '96.5.8 진천농지개량조합장에게 신청한 수면사용계약이 조합이사회에서 "진천읍 주민의 상수원보호"가 우려되어 부결처리되므로써 수면사용계약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항임을 회신

5) 건설교통위원회

('95. 7. 12 ~ '97. 1. 11)

진정인		건 명	처리내용
주 소	성 명		
<'95년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324-23	최영집 외 75인	1.청주 분평지구, 용담지역 주민들의 택지개발 관련 진정(3회)	· 용암2지구 개발제척은 도지사 등에 8회에 걸쳐 진정한 사항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므로 제척은 불가하고 · 분평지구내 지역주민들의 차별성 없는 보상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에관한 특별법"에 의거 보상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님
청주시 상당구 정봉동 30	조 관 희	2.정봉동 도시계획 시설인 "신우회도로" 건설계획 재고요망	· 노선변경안에 대해서는 공람이 완료된 상태이나 추후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 참고하여 결정할 것임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374	오명수 외 370인	3.용암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건의	· 토지보상가 공개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렵고 · 도 공영개발단에서의 개발의향은 기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92.9.14)되어 현재 토개공에서 추진중에 있어 사업주체 변경은 불가함 · 감정평가사 선정은 감정평가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있으나 지구내 주민들이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경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제천시 덕산면 억수리	김희운 외 17인	4.월악산 국립공원내 주차장 설치 요망	· 마을 구판장앞 주차장설치는 상부진입 차량통제가 어렵고 관광객 및 주민소득감소와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진정인		건명	처리내용
주소	성명		
			· 억수리 상부에 설치하는 것이관광객의 편익과 주민 소득증대, 마을불편해소에 도움이 될 것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0	전국G·B 주민 총연합회	5.G·B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성명서 및 건의문 송부	· 각의원, 건설교통위원회에 송부 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함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2105 용암진흥한우리타운	입주자 대표	6.신호등 설치건의	· 진흥 한우리타운옆 사거리는 '95하반기 신호등 설치계획으로 현재 설계의뢰중에 있고 원봉중학교 옆 사거리는 '96예산 확보시 설치계획임 : 설치완료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324-57	이종순 외 208인	7.용암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제척요망(4회)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거 '92.9.14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어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 대통령비서실, 내무부장관등에 8회에 걸쳐 불가하다고 회신한 사항임을 재통보
청원군 옥산면 신촌리	전명환 외 65인	8.시내버스노선 신설 요망	· 차후 시내버스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 조정시 검토, 처리하겠음
청원군 낭성면 지산1리 주민대표	김순배 외 40인	9.낭성 - 청주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고개구배 하향조정 요망	· 지성리-무성리간 고개를 낮추는 것은 구간의 종단선형의 균형과 현지여건으로 보아 조정이 불가하고 · 독립가옥을 이전 조치할 계획임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606	이정식	10.도로 편입토지 보상 요망	· '88.4.12 남주관광개발(주)이 수안보스키장을 건설하면서 도로부터 비관리청 도로시행허가를 받아 시공한 지방도 이설공사시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문제가 발생되어

진정인		건 명	처리내용
주 소	성 명		
			·'89.10.11 상기회사와 토지소유자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 합의하였으므로 당사자간에 협의·해결할 사항임을 회신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376-12	오명수 외 173인	11.토지개발공사시행 감정평가사 선정에 관한 진정	·용암2지구내 주민들이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경우 선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음을 한국토지개발공사 충북지사로 부터 회답을 받아 회신
청원군 남이면 석실리	이 장 허용무 외 59인	12.고속도로 노면 증가로 인한 배수로 설치(재시공)요망	·고속도로 용지내와 그주변 배수로에 대해서는 공사할 예정이고 마을앞 시급을 요하는 2·5반 배수로는 수해복구사업으로 공사할 계획임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438	김창근 외 23인	13.청주 - 청원택시사업구역 일원화 요망	·청주시 택시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청주시의회의 협의등을 통하여 통합논의를 계속하였으나 현시점에서는 시기가 부적절, 행정구역통합이 선행된후 추진할 사항임
충주시 교현1동 416-19 충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연제식, 전병철	14.충주 교현천 공동주차장 건설에 따른 도비지원 거부 요망	·환경보존차원의 샛강살리기운동과 생명의 숲운동등 환경에 대한 우려와 날로심각한 주차난 문제가 서로 상충하여 어느것 하나 소홀이 할 수 없는 사안으로 의회가 이의 경중을 판단하여 삭감할 수 없음
<'96년도>			
청원군 오창면 송대리 146-2	조 규 남	15.충청북도 과학산업단지 건설에 따른 주민요구	·본진정은 3년여에 걸쳐 생존권투쟁위원회등 이해당사자로부터 요구된 사항으로 충청북도지사가 답변 설명자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려드린 사항임

진정인		건명	처리내용
주소	성명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590	김동길 외 11인	16.초평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진정	·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한 보상은 법에 의거 2인의 감정평가사가 현지확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 영농보상은 도별(전국)농축산물 표준소득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적정하고 · 도로높이 조정은 설계에 맞게 된 것으로 조정이 불가함
(주)락원택시곰두리차량 봉사대장		17.장애인 택시취업 관련제도 개선	· 건설교통위원회에 송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함
제천시 금성면 월림2리	최기순 외 10인	18.중앙고속도로 편입토지 적정보상 요망	· 고속도로 편입토지의 보상가 책정은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표준지 공시지가,건설교통부고시지가 변동율 및 인근 보상선례등을 종합판단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것임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1469	박상우 외 5,000인	19.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및 서부우회도로 개설 촉구	· 속리산고속터미널에 중앙고속외 3개회사가 이용하는 것은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9조(공동사용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위하여 청주시, 속리산고속, 성안백화점과 9회 간담회를 실시, 터미널이전에 대비한 교통처리계획수립, 그리고 터미널 인접도로의 확장을 추진중에 있으며 · 서부우회도로 개설은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착공중에 있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진정인		건 명	처리내용
주 소	성 명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신재문 외 62인	20.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익금교 복개요망	· 익금교 복개는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나 막대한 재원확보, 환경성 검토, 도시계획시설 결정등이 선행되면 적극 추진할 계획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438	김창근 외 23인	21.청주시·청원군 택시 사업구역 일원화 요망	· 의회의사 13107-632('95.12.8)호로 기회신하였던 사항과 동일내용으로 현시점에서는 행정구역 통합이 우선적으로 선행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임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947-32	박영규 외 232인	22.주민불편 해소 요망	· 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를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음 (추경반영-2억, '96년말 완공)
음성군 생극면 송곡리 53	김 봉 호	23.하천편입사유지 하천부지와 교환 요망(2회)	· 하천편입 사유지와 하천부지와의 교환은 하천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직할하천, 지방하천의 보상이 끝나는 '98년이후 가능하므로 본 진정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지사에게 협조, 요청
청주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이사장		24.도시계획선 도로폐지 요망	·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계획되는 것으로 연풍 성지내의 도시계획선 도로폐지는 추후 도시계획선 재정비시 검토하겠음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65-6	윤철용 외 7인	25.제천-영주간 중앙고속도로편입(제외) 주택 및 토지 적정보상 요구	·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한 보상은 법에 의거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에 의거 보상금을 책정한 것이며 · 편입제외된 토지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지 여부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겠음을 회신

진정인		건명	처리내용
주소	성명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602	박영규 외 68인	26.옥산-오창간 도로진입로 포장요망	· 진입로 확장구간 일부가 오창테크노빌 진입로부지에 편입 예정으로 확장시 국고의 이중투자로 포장이 어려우며
			· 오창테크노빌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공사시 동 진입로 포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음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APT 16동 405호	김운회 외 15인	27.오창-독립기념관간 4차선 확장예정도로 노선변경 요망(3회)	· 오창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계획을 충청북도지사에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초 노선으로 추진함이 타당함을 회신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	정창영 외 649인	28.옥천군 안남면 진입로 포장요망	· '97년도 충청북도 도로사업계획시 우선적으로 포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96.12월중 착공, '97년도 완공예정)
청원군 오창면 송대리 62	이 종 신	29.오창테크노빌 건설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 요망	· 보상물건 조사과정에서의 주민과 마찰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정보상, 이주대책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충북지회장	정진택 외 45인	30.주택건설 감리제도 개선 건의	· 감리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관련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조치
청원, 오창, 양천1리, 구룡리	유인성, 전이찬 외 392인	31.오창테크노빌 건설에 따른 재산권 침해 및 보상현실화 요망	· 오창테크노빌 조성사업은 현재 감정가 산출이 마무리되어 보상중에 있으므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주 소	성 명		
음성군 소이면 비산2리 233	지영수 외 8인	32.직행버스 승강장 설치요망	· 음성군수가 비산리 전체주민들에게 직행버스를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선정토록 한 결과 주민대표 회의에서 종전 이용장소인 비산2리 삼거리를 경유토록 결정하여 행정지도를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음
청주상공회의소	회 장 한 현 구	33.청주-연길간 직항로 개설 건의	· 현재 중국 연길공항은 자국내 공항간 연결공항으로서 외국과 연결하는 국제공항 승격이 선행된후 직항로 개설을 건의함이 타당함
옥천군 청성면 양저리 82-7	안상옥 외 2인	34.청성면 묘금리 - 양저리간 도로포장 요망	· 앞으로 연차별 도로 확·포장 사업계획 수립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225	유 인 성	35.오창과학산업단지 집회관련 구속자 조속 석방 요망	· 진정서처리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거 현재 재판중에 있어 본 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님
충주호 숭조회	회 장 박 태 식	36.충주댐 숭조회 선박운영비 영구지원 요망	· 도의회에서는 선박운영비 영구지원을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입법청원중에 있어 특별법이 제정되면 댐주변지역 지원과 함께 검토할 것이며 · 도지사는 '97년초 댐주변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숭조회선박운영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적극 협조토록 하였고 '97년도에 선박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음을 회신

6) 기 타

('95. 7. 12 - '97. 1. 11)

진정인		건 명	처리내용
주 소	성 명		
<'95년도>			
진천군 진천읍 신정2리 308	영농회장 유석열	1.증여세 감면요망	· 청주세무서에 이송, 감면협조 요청하여 비과세 처리토록 함
진천군 진천읍 신정2리 308	이장 유석열	2.이장 수당 현실화 요망	· 이장활동 수당의 현실화를 위하여 내무부에 건의하였고, 시·군의 빈약한 재정형편으로는 어려움이 있음
<'96년도>			
서울 강남구 일원본동 수서 푸른A.105동 302	허 훈	3.생활불편(치정관련) 해소 진정	· 개인 사생활에 관한 문제이므로 본의회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님
충주시 노은면 안락1리 209	유호민 외 125인	4.채권해결을 위한 진상조사 요망	· 채권에 관한 문제는 개인과 개인간의 상거래에 관한 사항으로 본의회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님

附　　錄

Ⅰ. 歷代 道議員 名單
1. 初　代
2. 第 2 代
3. 第 3 代
4. 第 4 代

Ⅱ. 演說文集
1. 開會辭
2. 各種 記念行事

Ⅲ. 議政統計 및 資料
1. 會期 運營
2. 議案處理 現況
3. 道政質問
4. 行政事務監査結果 指適現況
5. 議員研鑽活動
6. '96委員會別 海外研修現況
7. 議會關聯 法規
8. 議會日誌
9. 議事堂 施設配置圖

Ⅰ. 歷代道議員 名單

1. 初 代 : 28名(1952. 5. 10)

구분 / 시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청주시	최 동 선	1900. 10. 25	청주 북문로2가 137	제1대 의장
	전 명 식	1903. 4. 7	사직2구 126	1954. 3. 25보선
청원군	한 정 구	1910. 10. 8	청원 남이 양촌84	제1대 내무위원장
	장 응 두	1903. 5. 4		제1대 징계자격위원장
	민 병 두	1898. 11. 29	청원 북일 현동66	제1,2,4대 산업위원장
	전 병 수	1898. 9. 26	청주 북문2가 114	제1대 문교사회위원장
보은군	구 연 홍	1915. 10. 20	보은 마로 관기386	제4대 내무위원장
	이 은 제	1915. 6. 8	보은 삼산	
옥천군	권 복 인	1911. 8. 29	옥천 청산 지전34	제1대 부의장
	강 재 인	1905. 7. 26	옥천 금구113	제2대 문교사회위원장
영동군	손 준 현	1901. 12. 4	영동 영동 계산662	제3대 내무위원장
	유 성 연	1902. 12. 8	매곡 노천84	제1대 예산결산위원장
	박 정 현	1910. 9. 10	학산 봉산481	제3대 문교사회위원장
진천군	이 재 범	1905. 8. 17	진천 덕산 옥동209	제3대 징계자격위원장
	노 달 선	1917. 3. 1	진천 읍내275	제2대 징계자격위원장
괴산군	김 서 응	1900. 11. 15	괴산 괴산 서부259	
	임 영 태	1904. 1. 5	상모 온천376	
	이 석 규	1912. 1. 20	괴산 동부623	
음성군	정 용 언	1906. 4. 24	음성 금왕 무극126	
	이 기 호	1912. 7. 20	음성 읍내307	
중원군	이 효 승	1910. 11. 5	중원 엄정 미내47	제4대 징계자격위원장
	홍 종 한	1901. 12. 15	충주 성서동129	제2대 내무위원장
	이 원 배	1918. 4. 19	중원 주덕 제내345	
	김 홍 길	1915. 2. 23	충주 용산동663	
제천군	노 의 중	1909. 2. 20	제천 제천 의림87	제3대 산업위원장
	유 호 열	1910. 2. 10	청풍 읍리380	제4대 문교사회위원장
	한 원 석	1918. 6. 6	수산 수산602	1954. 11. 24 보선
단양군	김 중 희	1919. 3. 5	단양 단양 상방241	
청주시	홍 원 길	1915. 10. 15	청주 수동2구441-9	1953. 11. 16사퇴
제천군	김 경	1918. 6. 19	제천시 신동476	1954. 8. 6사퇴

2. 第 2 代 : 30名(1956. 8. 13)

구분 / 시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청주시	안 상 열	1915. 1. 20	청주 우암동104-2	제8대 징계자격위원장
	김 원 회	1898. 10. 3	영동103-5	1959. 4. 25 보선
충주시	이 하 영	1914. 12. 1	충주 용산동481	제7대 내무위원장
청원군	한 상 대	1909. 8. 24	송파구 잠실 주공A 410-501	제6대 문교사회위원장,60.7.2사퇴
	오영진	1922. 9. 4	청원 문의 남계374	
	조수석	1916. 12. 9	강내 신촌65-2	제5대 징계자격위원장
	오진세	1921. 4. 5	현도 죽전65	제7대 징계자격위원장
	이 제 세	1911. 1. 17	청주 수동1295	제2, 4대 부의장
보은군	윤 태 훈	1924. 2. 15	청주 모충331-4	제4대 예산결산위원장
	윤 영 식	1915. 10. 30	보은 삼산	1958. 6. 5 보선
옥천군	이 중 무	1916. 12. 5	옥천 이원 지정48-2	1958. 6. 5 보선
	강 면 희	1900. 4. 6	이원 강청39	1958. 6. 5 보선
영동군	한 병 수	1911. 10. 18	영동 영동 중앙185-1	제5대 예산결산위원장
	김병연	1897. 2. 5	영동 계산205	1959. 9. 22 보선 위원장
	이 종 명	1905. 8. 2	황금 추풍령415	
진천군	유 의 열	1909. 5. 22	진천 진천 읍내328-1	제7대 산업위원장
	김 진 목	1925. 7. 14	청주 율량동현대A402-704	제8대 내무위원장
괴산군	김 서 웅	1900. 11. 15	괴산 괴산 서부259	제6대 내무위원장
	김영태	1905. 1. 5	상모 온천376	제5대 문교사회위원장
	김 진 성	1909. 7. 2	괴산 서부226	제8대 산업위원장
음성군	조 춘 형	1905. 1. 10	음성 금왕 무극103	제8대 문교사회위원장
	이기호	1912. 7. 20	음성 읍내307	제5대 의장,3부의장,5산업위원장
	송 형 식	1904. 4. 1	대소 윤리178	
중원군	우 병 훈	1919. 7. 15	중원 엄정 신만416	제6대 징계자격위원장
	홍종한	1899. 12. 15	앙성 본평382	제2대예결위원장,6대산업위원장
	이 원 배	1918. 4. 19	주덕 제내345	제5대 내무위원장
제천군	김 용 익	1919. 11. 6	제천 제천 의림43	1958. 6. 5 보선
	박영성	1916. 3. 3	금성 구룡309	
	한 원 석	1918. 6. 6	수산 수산589	제3대 예산결산위원장
단양군	지 덕 구	1915. 11. 6	단양 단양 하방142	1960. 7. 5 사퇴
청주시	최 동 선	1900. 10. 25	청주 북문2구137	제4대 의장, 1959.2.10사퇴
보은군	구 연 홍	1918. 6. 6	보은 보은 관기리386	1959. 2. 24 사퇴
옥천군	권 복 인	1911. 8. 29	옥천 청산 명치179	1958. 2. 24 사퇴
	곽 정 관	1896. 2. 24	옥천 금구258	1958. 1. 31 사퇴
영동군	김 선 행	1909. 11. 10	영동 영동 부용334	제7대문교사회위원,1959.8.5사퇴
제천군	노 의 중	1909. 2. 20	제천 제천 의림87	제3대 의장, 1958.2.24사퇴

3. 第 3 代 : 26名(1960. 12. 12)

구분 / 시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청주시	서 병 주	1918. 1. 3	청주 내덕동174	제6대 의장
	박 노 정	1906. 9. 3	북문1가1-2	
충주시	민 창 기	1909. 3. 25	충주 성서85-5	
	신 상 옥	1925. 2. 29	경기 고양백석2동1349	
청원군	김 한 식	1918. 1. 11	청원 오창 백현52	
	박 종 화	1930. 10. 11	경기성남중원구하대원동130-17	
	이 장 수	1905. 11. 13	청원 문의 문산22	
	홍 성 래	1918. 9. 19	남이 척산638	
보은군	윤 태 훈	1924. 2. 15	청주 모충동266-18 36/1	제5대 부의장
	윤 영 식	1915. 10. 30	보은 보은 삼산99-1	
옥천군	이 희 창	1920. 1. 20	옥천 옥천 하계32-1	제9대 산업위원장
	이 용 희	1931. 6. 10	서울 서초 방배809-27	
영동군	정 희 택	1922. 8. 30	대전동구가양1동옥수A 706	
	한 병 수	1911. 10. 8	영동 학산 조산536	
진천군	이 정 의	1914. 5. 15	진천 덕산 옥동209	1961. 4. 보선
	이 인 택	1912. 7. 24	진천 읍내277	
괴산군	박 원 식	1907. 7. 7	괴산 불정 탑촌682	
	이 규 홍	1909. 2. 25	증평 송산454	
음성군	조 춘 형	1905. 1. 10	음성 금왕 삼봉103	제9대 문교사회위원장
	박 노 승	1927. 4. 22	음성 평곡325	
중원군	이 성 규	1912. 9. 17	중원 신니 선당357	제9대 내무위원장
	최 면 승	1925. 6. 13	동량 조동1284	제6대 예산결산위원장
제천군	엄 봉 익	1914. 6. 4	제천 청풍 읍리366	
	원 용 철	1900. 6. 9	제천 명동169	
단양군	김 봉 운	1914. 3. 15	단양 영춘 상리414-1	
	조 동 수	1907. 4. 8	대강 장림113	
진천군	유 희 열	1909. 5. 22	진천 진천 읍내328-2	1961. 1. 25 사망

4. 第 4 代 : 38名 (1991. 6. 20)

구분 / 시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청주시	한 장 훈	1943. 12. 11	청주 우암동326-4	문교사회위원장
	김준석	1942. 11. 8	내덕2동신화A5-1003	
	윤태한규	1947. 1. 1	영운동70-2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운성훈	1950. 6. 23	봉명동1825	의회운영위원장,부의장
	조성준	1939. 3. 1	사직2동벨라맨션A-101	제8대 의장
	박 만 순	1941. 3. 19	복대동548	
충주시	김 인 식	1936. 12. 6	충주 안림578-1	
	박종완권	1939. 5. 24	문화2987	건설위원회간사
	김 연 권	1933. 8. 4	교현1동 185-3	내무위원장, 부의장
제천시	장 인 기	1937. 9. 11	제천 남천56-31	내무위원회간사
	이병용	1946. 9. 16	중앙로2가 76-30	
	권 용 하	1929. 1. 7	영천2동 46-15	부의장
청원군	김 효 천	1950. 5. 27	청원 미원 미원522-3	건설위원회간사
	한현구	1939. 4. 19	남이 양촌290	제7대 의장
	차 주 용	1937. 9. 13	북일 마산164-3	
보은군	박 상 호	1936. 11. 26	보은 보은 죽전52-2	부의장
	박종기	1939. 11. 29	삼승 우진348-1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옥천군	정 진 철	1940. 8. 30	옥천 옥천 금구5-70	운영위원장
	육봉호	1936. 2. 16	이원 강청39-1	
	안 철 호	1940. 12. 8	청산 지전37-2	산업위원장
영동군	정 광 수	1953. 1. 10	영동 영동 계산695-6	
	이병광	1927. 11. 10	황간 마산42-12	
	이 광 호	1933. 4. 1	양산 가곡468	내무위원장
진천군	김 경 회	1952. 6. 15	진천 진천 교성 203-1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유 영 훈	1955. 4. 30	초평 용정376-3	
괴산군	김 기 한	1937. 12. 15	괴산 사리 방축306	기획경제위원장
	김 봉 삼	1935. 1. 30	증평 교동60	건설위원장
음성군	차 주 원	1929. 12. 11	음성 음성 읍내299	
	성기덕	1957. 6. 20	금왕 무극134	
	봉 하 용	1946. 7. 9	대소 오산120-37	
중원군	김 재 근	1955. 4. 23	중원 주덕 신양186	
	이재은	1938. 12. 1	노은 수룡757	
	우 범 성	1938. 12. 9	엄정 용산387-1	
제천군	김 진 학	1949. 2. 19	제천 수산 수산578	
	박 기 양	1936. 3. 30	봉양 주포152-12	
단양군	신 완 섭	1940. 11. 16	단양 단성 북하96	예결, 댐특위위원장
	안 재 원	1950. 2. 3	매포 평동1182	
괴산군	유 명 희	1939. 10. 13	괴산 괴산 동부545	1993. 11. 12 사망

Ⅱ. 演說文集

1. 開 會 辭

□ 제116회 임시회 개회사(1996. 8. 16)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 우리는 지난 7월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주병덕 도지사와 정인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어제가 50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이었으며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경축행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그 무엇보다도 광복과 더불어 국토가 분단된지 50년, 우리는 통일을 향한 새로운 각오로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는 도정 및 교육시책보고를 청취하고 충청북도 교육위원을 선출하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심의와 '94년도 예산검사위원의 선임을 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임시회 이후 한달 동안 의정활동의 홍보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는 귀향활동을 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8월 9일, 우리 도내 중북부지역에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현지확인 등에 적극 참여해 주신 안재원 농림수산위원장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기 충청북도교육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어떠한 분이 교육위원으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결정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더욱 희망차고 내실있는 충청북도의 교육자치를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을 교육위원으로 선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9월중 임시회의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듣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도정질문의원 선정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금번 의원연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보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원연찬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117회 임시회 개회사(1995. 9. 12)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 임시회 이후 보름만에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시 나기정 부지사님과 김근학 부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비회기중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수해지역을 방문하여 피해지역민을 위로하고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 등을 협의하였음은 물론, 복구에 임하고 있는 군인과 공무원, 그리고 주민들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8월 28일과 29일에 청원 및 음성지역 의원들께서 관내 수해상황을 살펴보고 대책을 상의하였으며, 건설위원회에서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도내 중부 및 북부 수해지역을 현지확인하였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9월 4일 회의를 소집,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관련법 개정 등 실질적인 피해보상책 등을 협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 등 불우이웃을 방문하고 위로, 격려하여 훈훈한 인정을 베풀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향을 찾은 출향인사들과 만나 지역현황을 널리 홍보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귀향활동도 하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제117회 임시회는 제5대 개원후 처음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지난 8월 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 추진상황 등 당면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현지확인과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지난 회기중에 있은 업무보고 청취 등으로 도정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을 잘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특히 금번의 도정질문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후 처음 실시하는 것이므로 도민들께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도정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들께서는 그 동안 귀향활동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나타난 사항들이나 각계각층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책 등을 깊이있게 분석,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이 해소되는 실질적인 도정질문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완전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소신있는 답변과 함께 문제점이 있는 시책에 대하여는 해결방안도 명확히 제시하여 무리없이 잘 마무리한다는 진솔한 마음을 모아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 모두가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1일간의 회기에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상임위원장들께서는 알찬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우리의회가 도민을 위하여 작은 것까지도 지나치지 않은 의회로 비쳐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118회 임시회 개회사(1995. 10. 9)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 제11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주병덕 지사님과 정인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그리고 도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당면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우리 5대의회는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나는 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회기에는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으며, 금번 회기에는 지난해에 집행한 세입·세출의 결산을 심의하고 금년도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10월은 문화의 달로서 10월 2일부터 어제까지 7일간 경북 포항에서 제76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었고 이번 회기가 끝나는 다음날인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음성을 중심으로 이웃 지역에서 제34회 충청북도민체육대회가 열리게 되는 등 도내 시·군에서는 많은 문화, 체육, 예술행사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역별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주민과 같이 하느라 바쁜 일정이 되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따른 특위를 비롯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만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앞으로 40여일 후에 있을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심의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정기회 전에 다시 한번 임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만, 40일간의 정기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 금년도 도정의 알찬 마무리와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고 하나하나 심도 있게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119회 임시회 개회사(1995. 11. 1)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 5대의회가 개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도 지나고 11월이 되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희망찬 새해의 계획을 준비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에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주병덕 지사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비회기중에도 10월 문화의 달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들과 특히 도내 잎담배 수입현장을 방문하여 생산농가와 관계자를 위로 격려해 주신 농림수산위원회 안재원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확정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으로 의원여러분들의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의원연찬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

우리 의원들은 도민의 대표자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정기회에서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충실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 등 완벽한 준비를 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권, 예산심의권과 함께 의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감사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10일 정도의 기간동안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실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정방침사업을 중심으로 사전에 충분한 자료 수집과 연구로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정기회의 기간중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도 사전에 선정하여 철저한 준비로 도민의 궁금증을 풀어 주고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120회 정기회 개회사(1995. 11. 20)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

우리는 오늘 제5대 의회에서는 처음 맞는 정기회를 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주병덕 도지사님과 정인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

올해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의 기반을 조성하는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만, 연이은 대형 사건사고들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 좌절되고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매우 불행한 한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유엔 안보리비상임이사국에 아주지역 대표로 진출하는 등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게 되었으며 경제개발면에서는 수출 1천억불을 이미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4대의회를 마감하고 5대의회의 개원과 함께 민선자치단체장의 시대를 맞이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에 개회되는 제120회 정기회는 '96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1년 중 가장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도정의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써 도정시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함에 있어 합법성 및 합목적성에 비추어 잘못된 부분은 적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격려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우리 의원들은 치밀한 준비 및 적극적인 자세로 폭로나 인기위주가 아닌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감사 위주로 실시하여 의회위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도정질문에 있어서는 그 동안 귀향활동을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각종 문제의 해결책 등을 깊이있게 분석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는 물론,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모두 풀릴 수 있도

록 현실적이면서 생산적인 도정질문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우리 의원들의 합리적인 정책건의는 과감히 반영하고 제도개선 등 의회에 협조를 얻을 사항은 과감하게 협조를 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적인 관계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분석한 자료를 기초로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도있고 신중한 검토로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

정기회는 40일간의 짧지 않은 기간이므로 물론 생업과 더불어 의정활동을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만, 의원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로 금년도 정기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주병덕 도지사님과 정인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관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121회 임시회 개회사(1996. 1. 18)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희망찬 병자년 새해, 첫 임시회에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금년도 도정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주병덕 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사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구영신이란 고사성어와 같이 을해년의 어려운 일들이 병자년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올해엔 우리 도민 모두의 가정에 희망과 더불어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 지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

우리 제5대의회의 출범 2차년도인 금년부터는 뚜렷한 방향을 잡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지방자치의 견고한 뿌리를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맞아 과거의 양적인 면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 있으며,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선진국이라도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외국의 사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세계화·개방화·지방화·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우리 충청북도가 세계 여러나라와 맞서 국제경쟁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더욱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우리 의회는 도민과 함께 하는 생활자치를 정착시키고 지역화합으로 사회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민주와 능률이 조화되는 생산적인 의회로서 전문성 있는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전국 어느 의회보다도 앞서가는 성숙된 선진의회상을 구축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은 꾸준한 연찬활동과 해외연수 등으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지방화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나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고 보완함은 물론, 집행부에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므로써 『힘있는 충북건설』로 도민복지증진에 다함께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7일간의 회기로서 금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교육위원선출, 그리고 회부된 안건을 심의 의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도정의 개괄적인 운영방향에 대하여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도민들을 위한 금년도 계획을 심도있게 파악 분석해서 도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들의 각 가정마다 항상 건강하심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122회 임시회 개회사(1996. 2. 26)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 임시회 이후 비회기중 해외연수를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오신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나기정 해정부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때 보다도 극심한 변화와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재적으로는 일본의 독도망언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가 하면 국내에서는 4월 11일 총선열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고, 우리 도에는 문장대·용화온천개발과 먹는 물 관련 조례제정 등이 도민의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의회에서는 도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여러나라 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각종 제도, 시책 등을 비교시찰하였으며, 또한 우리 고유의 민속명절인 "설"을 전후하여 불우한 이웃을 방문, 위로 격려하였음은 물론, 고향을 찾은 출향인사들에게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지역의 관심사를 허심탄회하게 협의하면서 지역발전에 많은 협조를 당부하는 등 귀향활동에 바쁜 시간을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우리는 5대의회 개원 반년을 보내면서 지난날의 의정활동이 진정한 도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하여 왔는지를 회고하여 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날의 의정활동을 뒤돌아 보고,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로 삼아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처리와 비회기중 의정활동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끊임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도민을 위하여 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의회가 도민에게 왜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각 분야에서 『전문화된 의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하는 의회』,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도민과 가까이 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열정과 지혜를 쏟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도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운영의 선례와 관행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지역내의 모든 관심사를 의회에서 수렴하는 의정문화를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알찬 회기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과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123회 임시회 개회사(1996. 3. 12)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아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주병덕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3·1절은 일본의 독도망언에 대한 울분속에 민족적 자존심과 각계각층의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태국수도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25개국의 정상들이 참석한 아셈(ASEM)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창으로 범 아시아관통 철도건설에 합의를 도출하였는가 하면, 아셈(ASEM) 3차 회의를 2001년에 우리나라가 주최하도록 결정된 것은 유엔 안보리이사국 진출과 함께 향후 세계무대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UN에서는 3월 22일, 『물의 날』로 정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확대하여 3월을 『물의 달』로 정하면서 물의 보호·개발·이용 등에 대한 국민적 각성을 높이자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등, 나라 안팎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안과 청원의 심사,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처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달부터는 금년도 도정주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이러한 사업과 관련되는 주민의 욕구 또한 다양하게 표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착실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더욱이, 의원님들은 지역문제에 대한 여론을 신중히 수렴하고,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한차원 높은 의회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이제, 21세기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세계화,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의 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독창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 보다 더 질높은 삶이 충족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우리는 회기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민의 현안문제에 대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당면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등으로 다양해 가는 도민의 소리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면서 활동하는 의원상을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회기중에 계획하고 있는 도정질문을 준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모든 것이 해소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정질문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124회 임시회 개회사(1996. 4. 16)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한달만에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주병덕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24회 임시회는 12일간의 회기로서 도정질문을 비롯하여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작금의 우리 주변정세는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북한의 정전협정 포기선언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무력시위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어 있고, 나라 밖에서는 이러한 판문점 사태에 대하여 안보리 비공개회의에서 본격적인 대응책이 협의중에 있는가 하면, 라이베리아 내전, 남아공 폭력사태 등 세계 도처에서 대형 사건, 사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지난 15대 국회의원선거를 순조롭게 마치면서 선거기간동안 들떠있는 사회분위기를 가라앉히고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생업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회기중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도정의 시책들을 중심으로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이 풀려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정질문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하게 심사분석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은 물론, 도민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면 추진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천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금년도 벌써 ¼분기가 지났습니다. 앞으로 각종 업무가 본격적으로 힘차게 추진될 때라고 봅니다.

이 모든 업무가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관심을 기울여 챙겨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발전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시어 잘하는 부분은 더욱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의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지역활동 과정에서 많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수준높은 의정활동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관계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참석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125회 임시회 개회사(1996. 5. 21)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싱그러운 녹음이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 5월은 청소년의 달이자 가정의 달로서 지역에서 경로주간행사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오늘 제125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주병덕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25회 임시회는 열흘간의 회기로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당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국내외에서는 2002년 월드컵개최지 결정을 목전에 두고 한·일간에 열띤 유치활동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협상문제도 남북한 당국과 4자회담을 위하여 다각도로 협상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서는 문장대·용화온천개발에 관하여 도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어 이에 대한 각성과 대책에 지대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우리 의회가 바람직하게 운영되어 한차원 높은 미래지향적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의회는 법령, 조례, 규칙의 준수는 물론, 대화와 타협의 토론문화를 정착시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둘째, 주민의 자치의식을 높여 나가기 위한 의정홍보활동과 주요 도정의 실태파악,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조정해 나가는 기능도 강화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각종 안건의 심의 의결에 있어서도 감시·견제기능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제고시키면서 지방행정과 의회관련 정보수집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 기관의 갈등과 대립상태보다는 상호 보완관계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비회기중에도 증평 보강천변 송산교 교량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현지 고충을 청취하신 내무위원회 위원과 대청댐주변대책 등을 위하여 현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무엇보다도 충청북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보다 면밀하게 심사하고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예산결산분야의 전문가이신 국회 의정연수원의 신해룡 교수님을 초빙하여 연찬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되므로 우리 의원 모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 현지확인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시어 우리 의회가 도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비회기동안 지역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수렴된 고충과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해결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관계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끝으로 의원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126회 임시회 개회사(1996. 6. 17)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하신 의원님들의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광홍 정무부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하여 그 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신명을 바쳐 온 호국 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민족의 번영을 다짐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호국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보훈가족들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5대의회가 개원된지도 1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민선단체장의 출범과 함께 온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개원한 우리 의회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의 기틀이 다져 나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지방의회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가운데에도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지나오는 과정에서 혹시나 잘못된 점이 있었는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반성할 수 있는 계기로도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제126회 임시회는 6일간의 회기로서 지난 회기에서 의결, 운영위원회에 재회부한 개발제한구역 조사건의안 등을 심의하고 당면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의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지난 5월 31일, 온 국민이 열망하던 2002년 월드컵대회를 일본과 함께 공동 개최키로 결정되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국내에서는 각 시·도간 경기 유치를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2002년 월드컵유치 추진위원회를 거도적으로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각계 각층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열과 성을 갖고 우리 도에 월드컵경기가 유치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월드컵대회를 유치하게 됨으로써 내년 1월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99년 IOC총회,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 2002년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4회 아시안게임 등 많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을 21세기 동북아 중심국가로 부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임시회 이후 어제까지 제35회 도민체전 경기장을 방문, 지역출신 선수 및 관계자들을 위로 격려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하였으며, 지난 6월 7일 서울에서 개최된 호남고속철도와 지역발전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인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를 위하여 적극 활동하신 의장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그리고 청주·청원지역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에게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앞으로 다가올 장마를 대비한 현지확인 점검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각급 사회단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하고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참으로 훌륭하고도 모범적인 의원으로서 도민의 사랑과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127회 임시회 개회사(1996. 7. 18)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127회 임시회를 개회하기 위하여 등원하신 의원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주병덕 도지사님과 김영세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회되는 임시회에서는 도청 및 교육청의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을 보고받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 현지확인,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그리고 당면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7월 12일로써 개원 한돌을 맞이한 우리 5대의회는 이제 2차년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는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123건의 조례안, 지역현안 및 숙원사업 13건, 4건의 청원, 각계각층의 주민들로부터 제기되는 101건의 민원, 3회에 걸친 도정질문, 회기마다 지역현안사항과 당면시책관련 5분자유발언을 하는 등 지역의 균형개발과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임시회 이후 지역활동과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도 지난 2일 서울에서 있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전국 광역의원 대회를 비롯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10일과 11일 양일간 경북통상과 경남무역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4일과 5일 양일간 암반관정개발지 현지확인 및 주민여론 수렴과 사회복지시설 방문, 특별법제정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청주, 충주, 제천, 단양 등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12일과 13일, 광주·전남·전북의회를 방문하여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와 관련, 협의를 하였습니다. 활동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상반기 동안의 도정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현장상황은 어떤지,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그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시고 잘하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는 격려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에 있을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우리 도민들이 구금해 하는 것, 지역숙원사업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와 검토로 질문에 임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5대의회 개원 1주년을 보내면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추진되었던 시책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의정 2차년도를 맞아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도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의회, 진정한 도민의 바램을 창출하는 의회, 지역을 균형발전시키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128회 임시회 개회사(1996. 8. 26)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한달 여 만에 다시 회의를 소집하면서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주병덕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가간, 지역간에 잘살기 위한 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사고와 비전을 갖고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각 지방이 그 지역적인 특성과 개성을 최대한 살려 나가는 "지역개성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방화·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21세기를 향한 지역특성과 개성을 살리는 연구개발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흐름의 변화를 앞서 내다보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구상을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도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고찰과 함께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개발능력이 향상될 때 우리 충청북도는 『세계최고의 것·세계최초의 것·세계 유일의 것』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 도는 활력에 넘치는 풍요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28회 임시회는 도정질문, 그리고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당면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임시회 이후 비회기중에도 폭염을 무릅쓰고 충북정도 100주년과 관련되는 각종 행사에 도민과 함께 어울려 자축하기도 하였고, 전국농어민후계자대회 발대식에 참석하였는가 하면 '96 을지연습 훈련장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댐특위활동 기본계획을 수

립하고 청원입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23일 국회를 방문,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댐특위위원과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우리는 지난 임시회에서 금년도 상반기 도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도정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도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회기중의 도정질문과 답변은 지엽적인 내용이나 일과성의 질문을 벗어나 정말로 도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질문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의 상호균형과 조화, 그리고 합리적인 견제를 통한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신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때 도민들과 함께하는 의회로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129회 임시회 개회사(1996. 9. 10)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나기정 행정부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요즈음 국제정세는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9월 2일부터 중남미 5개국의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중국 흑룡강성과의 자매결연을 위하여 오늘 현지로 출발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우리는 10여일 전에 도정질문을 통하여 지역현안의 추진상황과 도민들의 궁금증을 어느 정도 풀어 주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4/4분기는 그 동안 애써 추진해 온 주요 도정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현장중심의 행정이 활발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중에도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제도상의 미흡함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집행부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지역의 발전과 도민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시켜 주민의 실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여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선도자로서, 지역발전 추진자로서, 또한 지역현안문제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130회 임시회 개회사(1996. 10. 7)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3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나기정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확정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당면주요사항에 대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으며, 정기회를 대비한 의원연찬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많으신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자치입법권, 예산심의권과 함께 의회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인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예년에 비하여 일찍 확정하여 우리에게 부여된 역할을 보다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금년의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충실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 등 완벽한 준비를 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중에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의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연찬회도 계획되어 있으므로, 전원 참여하시고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금년 10월은 충청북도 정도 100주년을 맞이하여 도내 각 시군에서 많은 문화·체육·예술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역별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되 우리의 계획된 회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재삼 부탁드립니다.

정기회 전에 다시 한 번 임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는 39일간의 정기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함께 금년도 도정의 알찬 마무리는 물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131회 임시회 개회사(1996. 10. 29)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나기정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기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우리 의원들은 이제 5대 의회의 전반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모든 의원이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우선의 입장에서 대립되는 의견을 슬기롭게 조화시켜 나가는 의회, 집행부와는 부정적인 시각의 비판과 감시가 아닌 민주적이고 능률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우리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기회를 대비하여 지난 회기에 의원연찬회도 하였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도정의 주요 시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보다 바람직한 방안은 없는 것인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충분한 자료의 수집과 연구로써 그 어느때 보다도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정질문을 준비하시는 의원들께서도 과거를 반복하기보다는 좀더 발전적이고 알찬 결실을 이루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질문을 준비하여 도정질문 후에 도민들로부터 궁금증을 후련히 풀어 주었다는 찬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132회 정기회 개회사(1996. 11. 20)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조석으로 느껴지는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에도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니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또한,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주병덕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금년은 정치·경제·사회·행정 등 모든 분야가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는 2002년 월드컵 유치, 99년 IOC총회,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 등 국제행사 유치는 물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입이라는 고무적인 사안들이 있었으며, 우리 충청북도는 정도100주년 행사를 성공리에 치르고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발맞추어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77건의 의안과 82건의 청원, 진정서를 접수 처리하였고, 6건의 대정부 및 도정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여 법률제정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빈회기중에 국회를 방문, 협의하신 댐특위 위원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32회 정기회는 '97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1년 중 가장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도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정시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함에 있어 합목적성 및 합법성에 비추어 잘못된 부분은 적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격려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우리 의원들은 그 동안 열심히 준비하여 온 자료를 토대로 주민의 실익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도정질문을 하는 의원들께서도 그 동안 수렴된

주민의견이나 지역현안사항을 심도있게 분석 검토하여 지엽적이거나 국부적 사안을 지양하고 도정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도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모두 알려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도정질문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의원들의 합리적인 정책건의는 과감히 반영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도정발전과 도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상호협력하는 동반자적인 관계가 정립되는 자리가 되도록 진솔한 답변과 노력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오직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파급효과 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여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예산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짧지 않은 정기회의 동안 생업과 더불어 의정활동을 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의원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협력으로 5대의회 전반기의 알찬 마무리와 금년도 정기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주병덕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언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各種 記念行事

□ 제5대 충청북도의회 개원사(1995. 7. 12)

존경하는 15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도민으로부터 선택되어 가슴벅찬 포부와 함께 무거운 사명감을 안고 제5대 의회에 입성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막중한 살림을 맡으신 주병덕 지사님과 정인영 교육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

우리모두는 역사적인 제5대 충청북도의회 개원을 뜻깊게 하고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권위와 획일로 점철되었던 한 시대를 마감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도도한 물결이 흐르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우리는 가슴설레이는 기대와 참 의미의 지방자치를 기필코 완성시켜야 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동시에, 그간 탄탄한 기초를 마련해 주신 선배의원님들과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34년이란 긴 세월을 통하여 많은 분들께서 걱정해 주셨던 이땅의 지방자치가 이제야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저희 40명 의원들은 한 마음 한뜻으로 오직 도민여러분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로, 이 의사당에서 150만 도민의 뜻이 활짝 꽃피어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모두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우리는 지난 선거를 통하여 흙먼지 이는 시골길로, 바쁘게 살아가는 시장터로, 어렵게 살아가시는 달동네로 골목골목 다니면서 도민들의 삶의 현장을 똑똑하게 지켜 보았습니다.

어떤때는 차라리 그 곳에서 그들과 아픔을 같이하고 싶었는가 하면 삶의 활기로 가득찬 곳에서는 함께 희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구석구석을 우리는 고스란히 마음에 간직하고 이제 의사당에 힘차게 섰습니다.

지방자치는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살림살이를 결정하고 집행하면서 중앙정부와는 조화와 협조의 관계를 가지고 지역의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조례제정과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모든 도민의 의사가 도정에 잘 반영되고 있는가를 살피고, 집행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시책들이 합법성은 물론, 나아가서 합목적성을 갖추었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충실히 해나가야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몇가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명실상부하게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근본은 도민에게서 비롯되는바, 제5대의회는 전국 어느의회 보다 주민의 복지가 향상되고 권익을 신장시키는데 큰 몫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의원들께서는 현장에서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는데 조금도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고 이것이 의사당을 거쳐 시책화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둘째, 「민주적인 의회상 정립」입니다.

우리사회는 힘의 논리가 정의를 지배하는 풍토가 한때 있었습니다만, 다수결의 의미는 다수의 지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견도 존중하면서 최대공약수인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결론에 이르는 민주적인 절차가 우리 의회에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생산적인 의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랫동안 민주와 능률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오늘날과 같이 민주화가 성숙된 사회에서는 두가지 내용이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갈 때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임위원회 활동이 내실있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소신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의사도 소중하다는 양보와 겸양의 미덕이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당면한 현안문제와 오래도록 해결이 어려운 도민 숙원사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당위성이 각계각층에 확산되도록 의회가 앞장서는 한편, 중앙부처는 물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그 해결방안을 반드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여러분!

그러나 이보다 더욱 소중한 것은 150만 도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정신일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방자치제도가 마련되어도 주민참여의식이 부족한 사회에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뽑아준 도의원이 어떻게 일을 해나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격려와 채찍을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역사는 쉬지않고 흘러갑니다.

앞으로 3년, 소중한 세월을 우리모두 힘을 합쳐 지방자치 발전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새롭게 합시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시설물이 쉽게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회 이곳저곳에서 많이 보아왔으며 그때마다 우리모두는 서글픈 생각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고 진정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민주적인 의회」, 「생산적인 의회」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은 물론 여러분 모두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훌륭한 선례를 남겨주신 선배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진정한 지방화시대의 출범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도민여러분과 각급기관 단체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95년도 송년사(1995. 12. 31)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해년 한 해도 아쉬움과 보람이 함께하는 가운데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지난 일년 동안 저희 충청북도의회에 대하여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신 도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한 해를 돌이켜 볼 때마다 다사다난했던 해였다고 이야기합니다만, '95년이야말로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뉴스가 연일 계속되었던 그야말로 사건사고로 얼룩진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특히 금년은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제5대 충청북도의회의 새로운 출범과 함께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제9대 충청북도의회 의장직의 중책을 맡아 「민주적인 의회」「생산적인 의회」「도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한 해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의 간섭이 여전하고 법과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난 6. 27 지방선거에서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됨으로써 지방자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년초부터 찾아 온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농작물을 바라보던 안타까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여름장마에 뜻하지 않은 물난리로 더욱 시름을 깊게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때 뵌 여러분들의 근심어린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저는 지난 7월 12일 가진 제5대 의회 개원식에서 참다운 의미의 지방자치를 기필코 이룩하겠다고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저희 40명 의원 모두는 도민여러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모두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훌륭한 전통을 물려주신 제4대 충청북도의회가 30년만에 지방자치를 부활시켰다고 한다면, 제5대 충청북도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원년을 열었다는 자부심과 함께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면 遠近·深山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면서 직접 보고 듣는 현장활동을 통해 넓은 안목과 풍부한 경험을 쌓기위해 지난 6개월여를 바쁘게 지내왔다고 회고합니다.

이제 잠시 그간의 의정활동사항을 말씀드린다면,

명실상부한 「도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기 위하여

도의회는 150만 도민여러분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 예로 지난 여름 수해현장을 둘러보면서 수재민들에 대한 지원과 재해복구 대책에 관한 법과 제도가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아래 수해농가 특별지원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내무부등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 있으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날로 고갈되어가는 도내 수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촉구하는 '먹는물관리법 개정건의' 그리고 "95년 추곡 및 잎담배수매가 인상건의'등 도민의 여론을 집약하여 중앙의 힘이 필요한 사항은 각종 건의안으로 채택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관철 될 수 있도록 힘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이 밖에도 제5대 의회는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위원회별로 현장확인활동을 펼쳐 총40여 현장을 직접 점검하면서 중소기업운영 및 관광지 개발실태, 각종 오폐수 처리장설치 및 운영실태, 특산품단지 등을 방문하여 도민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향후 의정활동의 진로를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첫째, 「민주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도의회는 정파를 초월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저의 소신입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결과 저희 도의회는 각 정당별 소수인원으로 구성됨으로써 뜻있는 많은 분들께서 과연 순탄한 운영이 될까 하고 걱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고 진지한 토론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생각하에 저희 제5대 충청북도의회는 총6회에 걸친 임시회와 정기회를 운영하면서 150여회의 많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모든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심도있고 기탄없는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당초의 걱정이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 「생산적인 의회」를 위하여

의회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의안심의를 통하여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각종 안건의 심의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의안심의에 임해 왔으며 또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의원들의 의안심의 능력향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지방의회운영, 예산심의기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법 등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해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을 심의 하는데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각종 사업비의 조정을 기하는 등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의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충청북도는 내륙에 위치하여 있으면서도 교통여건이 좋고 수자원과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지역특화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중앙집권적인 기획과 성장거점전략에서 제외 됨으로써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도의회는 호남고속전철건설과 관련하여 최근 도민여러분들의 관심사항이 된 오송기점역 설치와 관련한 도민의 여론을 집약하여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을 오송역건설과 연계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는 물론 기추진중인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차질없는 조성을 비롯하여 청주공항의 조기완공과 연계도로 건설등 기간시설의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중부내륙고속도로의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줄 것을 촉구하는 등 각종 대단위 사업의 철저한 추진을 독려하고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도민여러분!
이러한 의욕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앙정부는 빈약한 지방재정을 빌미로 각종사업의 획일적인 추진을 지시하고 있어 지역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구태의연한 모습도 있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당인 지방의회에 조차 중앙정치논리로 지배하려는 등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성원을 바탕으로하여 새해에는 더욱 의욕적이고 활력있는 의정을 펼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욕으로 얼룩진 을해년이 모두 저물고 때묻은 과거에 대한 청산과 새로운 질서의 태동이라는 큰 의미를 갖고 병자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도의회가 제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을 함께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150만 도민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깃 드시길 기원합니다.

□ '96년도 신년사(1996. 1. 1)

존경하는 150만 도민여러분!

병자년 새해가 힘차게 솟았습니다.

새해에도 도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히 깃드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여러분의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그야말로 다사다난하였고 영욕이 교차한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국자적으로는 조국 광복 50주년을 맞아 힘찬 민족약진을 다짐했는가 하면, UN에 가입한지 불과 4년여만에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어 국위가 크게 신장되었으며, 지난 연말에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그리고 수출액 1,000억불을 달성하는 국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전직대통령의 연이은 구속사건등 전대미문의 굵직한 사건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각 분야에서 세계화를 향해 열심히 뛰고 있는 국민의 발목을 잡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지역에서도 6.27 지방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도의회 및 시군의회가 탄생하였고,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어 지방자치의 수준이 한단계 더 성숙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12일 개원한 충청북도의회는 4당 4색으로 구성되어 의견의 대립과 갈등으로 의회운영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위의 우려에 양보와 겸양을 앞세워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40명 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 왔습니다.

또한 8월의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복구대책 마련과 오송역기점호남고속철도 건설등 각종 사회 간접시설을 확충하고자 집행청과 발을 맞추어 왔으며,

향토기업의 연이은 부도에 따른 경제난을 해소코자 힘을 기울이는 한편, 먹는 물 관리법개정건의, 추곡 및 잎담배수매가 인상과 수해농가 특별지원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건의등 도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을 없애고자 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는데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도의회는 새해를 맞아 종전과는 다른 모습을 도민여러분 앞에 보이고자 온 힘을 쏟겠습니다.

34년간을 기다려 오늘의 지방자치제도를 갖게 된 우리는 그동안 누누히 강조되어온 중앙으로 부터의 예속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자립능력을 키우고 합심단결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중앙정부와는 긴밀히 협조하여 다가오는 21C에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미래 창조적인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앞으로, 도의회는 집행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 하면서 진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몫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중심에 도의회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여러분!

이제 제5대의회 2년차의 시점에서 본인을 포함한 전의원은 옷깃을 여미고 새로운 각오와 슬기를 모아 지난 4대의회가 쌓아주신 좋은 전통은 살리고, 또 새 시대에 맞는 각종 정책을 개발하여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나아가 도민의 복지증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드리면서 본인의 새해 포부를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도의회는 150만 도민의 대표기관이며 민의의 전당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에서 제기된 주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의사당으로 들여와 활발한 토론을 거쳐 그에 대한 해소방안이 반드시 찾아져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접수된 민원만을 처리해서는 안되고 의원 각자가 골목골목을 찾아가 도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답답한 것을 속시원히 풀어주면서 주민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생활정치가 정착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민 스스로 뽑은 대표들에게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도의회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는데는 각계각층은 물론 도민의 결집된 힘이 긴요하다 하겠습니다.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거나 남을 비방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문제해결의 방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대변자인 도의회가 지역간, 계층간 화합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러한 바탕에서야만 중앙과의 협조도 원활해지고 이에따라 대규모 숙원사업 유치도 순조롭게 이루어져 충북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셋째, 생산적인 의회상을 확실하게 정착시키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민주주의가 성숙된 사회에서는 민주성 못지않게 능률성도 강조되어 양자가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임위원회활동이 내실있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결정사항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는 모든 의원의 의견이 집약되어야 하고 능률성도 고려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라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청과는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관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지방자치단체라는 수레의 두바퀴 기능이 균형있게 발휘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의원의 전문성을 높여 의회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현실은 지방자치라는 허울만 있을 뿐 내용은 속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도민의 의사가 지방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중요한 내용을 변화·개선시키고자 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중앙의 권한, 아니면 법령규제라는 어려움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 그리고 집행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을 충실히 하여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도민에게 돌리기 위해서는 의원각자가 전문성을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원의 해외 및 국내 현장방문을 통한 연찬회와 전문가를 통한 연찬회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도민숙원사업 해결에 도의회가 향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여러해를 두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대규모 숙원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착수되어 도민의 바램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기능을 다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중앙인사와 지역인사의 만남을 주선하고 의원 모두가 각계각층의 여론을 집약하도록 뒷받침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숙원사업을 완결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150만 도민의 결연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 분위기 확산을 위한 첨병의 역할을 의회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치적인 문제로 심한 갈등과 마찰을 겪고 있으면서도 세계화의 도도한 물결을 헤쳐 나가야 하는 숨가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사회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우리의 것을 소중히 알며 윤리도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선진시민의식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도의회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도민의 바램이 무엇인지 세밀히 살피어 알찬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내가 뽑은 도의원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나 일거수 일투족을 살펴보시고 서슴치 말고 채찍과 격려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민주주의 수준을 재는 잣대로 시민의 참여의식 정도가 흔히 적용되어 집니다만, 도의회의 의정이 원만하게 운영되고 의회 결정에

힘이 가중되어 질 수 있는 것은 도민의 관심과 성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금년에도 도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모든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알찬 결실을 거두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96년도 송년사(1996. 12. 31)

존경하는 150만 도민여러분!

병자년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보람과 아쉬움의 감회속에 한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도민여러분들께서 충청북도의회 의정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우리나라가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에 선임되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와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 가입하면서 책임있는 선진세계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충북정도 100년의 해를 맞이하여 온 도민이 희망찬 21세기 미래를 향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 의미있는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도민여러분!

제5대의회는 항상 도민의 편에 서서 집행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진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의 발전과 도민들의 복지향상에 열과 성을 다하여 활동하였습니다.

현지활동에서 수렴한 소중한 민의와 현안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매월마다 회의를 개최하여 임시회 11회와 정기회를 합쳐 120일간을 운영하므로써 도민과 함께 하는 생활자치를 실현하는데 제몫을 다하고자 힘을 기울였습니다.

도내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의원들이 지역간담회를 열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갈등의 요인을 조정하여 지역의 화합분위기 조성에 도의회가 중심역할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방자치관련법에 대한 제도적인 모순을 개선하여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모았으며, 만성적인 적자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경영정상화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지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도의원 모두가 의욕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만 의회가 발의하여 제정한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 일년간의 의정활동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도의회는 150만 도민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과 어려움을 함께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40명의원 모두가 도내 구석구석을 찾아 다녔습니다.

의원들이 주민에게서 수렴한 의견은 세차례의 도정질문을 통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화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낙농가특별지원에 관한 건의'와 '도·농복합형태의시 특별지원약속이행촉구 결의'등 지역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도의회를 중심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의회가 앞장서 일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지역의 다양성과 잠재된 역량을 개발하여 발전을 촉진하려는 의욕적인 각종 정책은 주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하여야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원화된 우리사회에서는 지역간, 계층간의 경쟁과 갈등이 늘어가고 있어 지역발전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민의 대변자인 도의원들이 나서서 언제 어느곳에서나 주민과의 진솔한 대화로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자치시대의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에 앞장섰습니다.

셋째,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102건의 조례안과 건의안 등을 적절히 처리하였습니다.

각종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내실있게 검토분석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므로써 각종의안이 능률적으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의회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현대행정이 다양해 지고 복잡해 짐에 따라 이를 결정하고 감시하는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으로 국내외의 저명한 인사를 초빙하여 다섯

번의 연찬회를 마련하고 의원들의 자질향상과 능률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의원들이 보다 심도있게 집행청의 견제와 감시의 수위를 높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97년도 새해예산안도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삭감하여 효율적으로 편성운영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민 숙원사업 해결에 도의회가 앞장섰습니다.

우리지역에도 오랜동안 해결이 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소외감과 불편을 느끼며 살아가는 일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댐주변과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문제와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설치'그리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등 지역발전과 관련된 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목적댐으로 인한 주변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댐관련대책위를 구성하여『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을 입법청원함으로써 긍정적으로 국회에서 처리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조정 등의 건의는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도민여러분!

저희 도의원 모두는 그동안의 경험과 선배의원들이 쌓아 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해 지역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만, 의욕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아쉬움속에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원을 구성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반기 의정을 교훈삼아 의회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한 차원 높은 활동을 전개하여 민주와 능률이 조화를 이루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도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소망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같이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Ⅲ. 議政統計 및 資料

1. 會期運營

□ 총 괄

회 수 별	회 기	일 수	회 의 운 영 (회)			
			계	본회의	상임위	특 위
총 계		**205**	**351**	**56**	**264**	**31**
소 계('95년)		85	133	22	97	14
제115회 임시회	'95. 7.12~ 7.15	4	11	3	8	·
제116회 임시회	8. 16 ~ 8. 26	11	20	3	17	·
제117회 임시회	9. 12 ~ 9. 22	11	16	5	11	·
제118회 임시회	10. 9 ~ 10.18	10	17	2	12	3
제119회 임시회	11. 1 ~ 11. 9	9	17	2	13	2
제120회 정기회	11.20 ~ 12.29	40	52	7	36	9
소 계('96년)		120	218	34	167	17
제121회 임시회	'96. 1.18~ 1.24	7	19	3	16	·
제122회 임시회	2. 26 ~ 2. 29	4	9	2	7	·
제123회 임시회	3. 12 ~ 3. 16	5	8	2	5	1
제124회 임시회	4. 16 ~ 4. 27	12	19	4	13	2
제125회 임시회	5. 21 ~ 5. 30	10	20	2	15	3
제126회 임시회	6. 17 ~ 6. 22	6	11	2	9	·
제127회 임시회	7. 18 ~ 7. 24	7	25	2	21	2
제128회 임시회	8. 28 ~ 9. 5	9	14	5	9	·
제129회 임시회	9. 16 ~ 9. 20	5	12	2	9	1
제130회 임시회	10. 7 ~ 10.17	11	14	2	12	·
제131회 임시회	10.29 ~ 11. 2	5	11	2	9	·
제132회 정기회	11.20 ~ 12.28	39	56	6	42	8

□ 회기별 의결안건 내역

◉ 제115회 임시회

1) 제1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2) 의장·부의장 선거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상임위원장 선거
5)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원안가결)
6)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충청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 (원안가결)
9)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원안가결)

◉ 제116회 임시회

1) 제1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2) '94년도 충청북도및교육청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원안가결)
3) 제2기 충청북도교육위원 선출
4)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0)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1)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2)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3)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원안가결)
14)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5) '95년산 잎담배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안 (원안채택)
16) 지방자치발전의 정착을 위한 관련 법규 개정촉구결의안 (원안채택)
17) 2002년월드컵축구경기유치지원에 대한 결의안 (원안채택)

◉ 제117회 임시회

1) 제1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가결)
3)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원안가결)

4)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수해농가 특별지원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건의안 (원안채택)
7) 배합사료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실시에 관한 건의안 (원안채택)

◉ 제118회 임시회

1) 제1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원안가결)
3)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4) 199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5)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수정안 (수정가결)
6)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 (원안가결)
7)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수정가결)
9)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0)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 '96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안 (원안가결)
12)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를 위안 건의안 (원안채택)

◉ 제119회 임시회

1) 제1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2) 1994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원안가결)
3) 1994년도 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원안가결)
4) 1995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5)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8) 먹는물관리법개정건의안 (원안채택)
9) '95년산 추곡수매에 관한 건의안 (원안채택)
10) 중부내륙고속도로 일부노선 변경건의안 (원안채택)

◉ 제120회 정기회

1)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가결)
3)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경영부실에 따른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건 (원안가결)

4)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 경영부실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5) 충청북도의회 신완섭의원 사직의 건 (부결)
6) 1996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수정가결)
7)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수정가결)
8) 충청북도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0)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원안가결)
11) 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원안가결)
12) 1995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13) 199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14)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5)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6) '96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17)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8) 대청호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대한 청원 (부분채택)
19) 대청소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및 특별종합 대책에 대한 현행 환경부고시폐지건의안 (원안채택)
20)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2)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3) 충청북도건강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원안가결)
24)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5) 충청북도도서관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6)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7)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 제121회 임시회

1) 제121회 충청북도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원안가결)
2) 제2기 충청북도 궐원교육위원 선출
3) 충청북도농축산사업소조례안 (원안가결)
4)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충청북도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제122회 임시회

1) 제1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원안가결)
2)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안 (수정가결)
5)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일본의독도망언규탄결의안 (원안채택)

◉ 제123회 임시회

1) 제1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의결)
2)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채택)
3)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정가결)
4)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원안가결)
5) 충청북도 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결)
6)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충청북도농촌소득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재의의 건 (수정가결)

◉ 제124회 임시회

1) 제1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원안가결)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가결)
3)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4)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원안가결)
5)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안 (수정가결)
9) '96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원안가결)

10)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수정가결)
1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4)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

◉ 제125회 임시회

1) 제1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3)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4)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수정가결)
6)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수정가결)
7)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가결)
8)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0)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 (원안가결)
12) 1995년도충청북도및교육청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원안가결)

◉ 제126회 임시회

1) 제1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원안가결)
2)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 (원안가결)
3) 개발제한구역조정건의안 (수정가결)
4) 낙농가특별지원에 관한 건의안 (수정가결)

◉ 제127회 임시회

1) 제1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충청북도건축조례안 (원안가결)
5)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원안가결)
6) 용담댐하류슈질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수량조절 건의안 (수정가결)
7) 도농복합형태의 시 특별지원약속이행촉구결의안 (원안가결)
8) 댐간련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가결)

◉ 제128회 임시회

1) 제1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가결)
3)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청원에 관한 건 (원안가결)
4)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6)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충청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수정가결)
8)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 재의의 건 (원안가결)

◉ 제129회 임시회

1) 제1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2) 1995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원안가결)
3) 1995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원안가결)
4) 19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원안가결)

◉ 제130회 임시회

1) 제1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2)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수정가결)
3) 농특산물 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안 (원안가결)
4)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 제131회 임시회

1)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제1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원안가결)
3)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수정가결)
4) 수안보지역 자연사박물관건립에 관한 청원 (원안채택)

◉ 제132회 정기회

1)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1997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수정가결)
4)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수정가결)
5)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가결)
6)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아 (원안가결)
8) 충청북도개발사업소조례안 (원안가결)
9)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0) 199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11) 199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12)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3)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4)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5) 충청북도 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6)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원안가결)
17)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8)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9)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1)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2)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3) 충청북도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원안가결)
24)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5)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26)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보고

2. 議案處理 現況

'95. 7. 1 ~ '96. 12. 31

구분			계	조례안				예산안			동의·승인	건의·결의	규칙	기타 일반안건
				소계	의원발의	도지사제출	교육감제출	소계	도지사제출	교육감제출				
접수		계	181	107	5	83	19	14	8	6	11	21		28
		'96	102	65	4	51	10	6	3	3	4	7		20
		'95	79	42	1	32	9	8	5	3	7	14		8
처리	원안가결	계	144	84	5	63	16	4	1	3	11	17		28
		'96	78	49	4	36	9	1		1	4	4		20
		'95	66	35	1	27	7	3	1	2	7	13		8
	수정가결	계	30	18		15	3	10	7	3		2		
		'96	19	12		11	1	5	3	2		2		
		'95	11	6		4	2	5	4	1				
	부결	계	6	5		5						1		
		'96	4	4		4								
		'95	2	1		1						1		
	폐기(보류)	계	1									1		
		'96	1									1		
		'95												

※ 건의안 1건 : 행정구역조정촉구건의안 (내무 : 보류)

3. 道政質問

□ 총 괄

구 분		질문 의원수	질 문 건 수			비 고
			계	충청북도 소 관	교육청 소 관	
총 계		41	311	275	36	
'95年	소 계	20	157	145	12	
	117 임시회	10	79	70	9	
	120 정기회	10	78	75	3	
'96年	소 계	21	154	130	24	
	124 임시회	7	52	46	6	
	128 임시회	9	77	61	16	
	132 정기회	5	25	23	2	

□ 분야별

구 분 / 회기별	계	내무	보건 환경	사회 복지	농정	공업 경제	문화 관광	건설 교통	민방 소방	교통 행정	기타
계	311	82	37	8	44	13	21	56	3	37	10
117	79	16	13	-	13	5	5	17	-	9	1
120	78	25	5	2	12	3	6	16	-	4	5
124	52	13	7	3	7	-	5	10	-	6	1
128	77	21	8	3	10	4	4	8	3	16	-
132	25	7	4	-	2	1	1	5	-	2	3

□ 의원별

의원명	질문회수			질문건수			비고
	계	'95	'96	계	충청북도 소관	교육청 소관	
계	41	20	21	311	275	36	
김대호	2	1	1	15	14	1	
임헌용	2	1	1	17	16	1	
윤병태	2	1	1	11	10	1	
김춘식	1	1		5	5		
박제국	1	1		8	5	3	
이길하	2	1	1	19	7	12	
박온섭	2	1	1	19	18	1	
이희복	1	1		6	6		
김원식	1	1		10	10		
오성진	1	1		9	8	1	
유명호	2	1	1	12	11	1	
권영관	1	1		6	5	1	
이선호	1	1		9	9		

의원명	질문회수			질문건수			비 고
	계	'95	'96	계	충청북도 소관	교육청 소관	
최영락	1	1		7	7		
이민희	1	1		9	8	1	
장준호	2	1	1	16	12	4	
최종철	2	1	1	20	19	1	
김재근	2	1	1	13	13		
박용인	1	1		14	14		
유재철	2	1	1	13	9	4	
송옥순	1		1	7	5	2	
정태정	1		1	7	6	1	
이향래	1		1	9	9		
최선환	1		1	7	7		
박만순	1		1	10	10		
김동진	1		1	5	5		
성기덕	1		1	8	8		
김인식	1		1	8	7	1	
한상문	1		1	5	5		
김준석	1		1	4	3	1	
차주용	1		1	3	3		

※ 무순

4. 行政事務監査結果 指摘現況

(단위 : 건)

구분 / 위원회별	합계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		
	소계	'95	'96	소계	'95	'96	소계	'95	'96
계	394	211	183	248	134	114	146	77	69
의회운영위원회	12	7	5	9	6	3	3	1	2
기획경제위원회	46	34	12	35	24	11	11	10	1
내무위원회	159	78	81	115	57	58	44	21	23
교육사회위원회	31	20	11	18	11	7	13	9	4
농림수산위원회	88	43	45	54	26	28	34	17	17
건설교통위원회	58	29	29	17	10	7	41	19	22

5. 議員硏鑽活動

□ '95년도

일 시	주 제	강 사	비 고
7. 7	· 지방의회의원편람설명 - 총선후 최초의 임시회 요령 - 지방의회운영 - 의사절차 등 기타	도의회 의회사무처장	전의원
8. 16 (14:00~16:00)	·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	충북대학교 강형기교수	〃
8. 25 (10:00~18:00)	·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 지방의회운영 의사절차 · 예산결산심사기법	건국대학교 최장호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수만 국회의정연수원 신해룡교수	〃 〃 〃
10.11~12	· 지방자치와지역특화산업 · 충북지역의주요경제지표 · 지방화·세계화시대의 노동정책과제 ·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경영방안 모색	삼성경제연구소 김갑성 한국은행청주지점장 김 현 청주지방노동사무소장 김윤배 삼성경제연구소 부소장 이규황	기획경제위원회 〃 〃 〃
10. 17 (12:00~14:00)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범위 및 입법심의요령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성호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 이주희교수 청주상공회의소회장 한현구	전의원 〃 〃
11. 1 (13:30~16:40)	· 예산결산심사기법	국회의정연수원 신해룡교수	〃
11. 6 (10:00~15:30)	· 도로관리	충청북도 도로과장 송영화	건설교통위원회

□ '96년도

일 시	주 제	강 사	비 고
1. 23 (14:00~16:20)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남북관계 전망	통일연수원 윤병익교수	전의원
2. 28 (14:00~16:00)	· 오링테스트를 활용한 건강관리	옥천제일약국 이병무약사	〃
5. 21 (15:00~17:00)	· 예산결산심사기법	국회의정연수원 신해룡교수	〃
7. 18 (10:00~12:00)	· 지방자치와 의회의 역할	미국아리조나주립대학교 김주철 부총장	〃
10.15~10.16	· 국제화시대 도의원의 역할	단국대학교 김유혁교수	〃
	· 행정사무감사의 본질과 기법	경원대학교 이영균교수	〃
	· 최근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안보	충북대학교 홍성후교수	〃
	· 예산·결산심사기법	국회법제예산실예산정책심의관 신해룡	〃

6. '96 委員會別 海外研修現況

구분 / 위원회별	기 간	연수인원	대상국 및 지역	연 수 분 야
기획경제 위원회	1.29~2.11 (13박14일)	10명 (도의원5, 공무원3, 기자2)	이탈리아(로마), 모로코(티베리아스) 그리스(아테네) 스페인(마드리드) 이스라엘(예루살렘)	· 의회의 조직 및 운영 · 수출지원정책 · 중소기업육성지원 등 · 관광정책 및 홍보활동
내 무 위원회	1.25~2. 5 (11박12일)	11명 (도의원8, 공무원3)	멕시코(멕시코시청) 브라질(상파울로, 리오데자네이로) 아르헨티나(이과수) 페루(리마,우루밤바)	· 의회의 기능과 운영 · 지방자치단체일반행정 · 문화재보존시책
교육사회 위원회	1.25~2. 5 (11박12일)	12명 (도의원8, 공무원2, 기자2)	페 루(리마, 쿠즈코, 마츄피츠) 브라질(리오, 상파울로)	· 사회복지분야 · 환경분야 · 교육행정분야
농림수산 위원회	1.29~2. 9 (11박12일)	9명 (도의원7, 공무원2)	이스라엘(예루살렘) 이집트(카이로) 스페인(마들드) 이탈리아(로마) 스위스(쥬리히)	· 지방자치분야 · 시설원예(과수등)분야 · 농축산물 유통분야
건설교통 위원회	1.28~2. 8 (11박12일)	10명 (도의원7, 공무원2, 기자1)	영국(암스텔담,런던) 프랑스(파리) 네덜란드(인스부르크) 스위스(베니스) 이탈리아(로마)	· 지방의회 운영 · 도로망 확충 및 가로망 정비 · 그린벨트(공원)관리

7. 議會關聯 法規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 〔1991. 3. 29 조례 제1882호〕

개정 1995. 4. 28 조례 제218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①공인은 충청북도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충청북도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제2항제2호의 직인은 충청북도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충청북도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5. 4. 28)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처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5. 4. 28)

제6조(관리) 공인은 총무담당관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7조(날인위치) ①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처장(간사)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 최초개원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

부 칙 (1995. 4. 28 조례 제2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 인 의 규 격

1. 충청북도의회의 인 : 3.6센티미터
2. 충청북도의회의장의 직인 : 2.7센티미터
3. 충청북도의회상임위원장의 직인 : 2.4센티미터
4.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의 직인 : 사무관리규정 별표1 관인의 규격준용 (개정 95. 4. 28)

(별지 서식)

공 인 대 장

<table>
<tr><td>인 명</td><td colspan="2"></td><td>서체규격</td><td></td></tr>
<tr><td>폐 기</td><td colspan="2">년 월 일</td><td>사용개시</td><td></td></tr>
<tr><td>이 유</td><td colspan="2">마멸, 직제변경, 기타</td><td>각인근거</td><td></td></tr>
<tr><td>용 도</td><td colspan="2"></td><td rowspan="4">인

영</td><td rowspan="4"></td></tr>
<tr><td rowspan="3">보
관
책
임
자</td><td>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tr>
<tr><td>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tr>
<tr><td>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tr>
<tr><td>비 고</td><td colspan="4"></td></tr>
</table>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1991. 4. 6 조례 제1907호〕

개정 1991. 6. 28 조례 제1921호
1992. 1. 31 조례 제1975호
1992. 10. 23 조례 제2000호
1993. 7. 2 조례 제2067호
1994. 2. 18 조례 제2114호
개정 1994. 7. 22 조례 제2134호
1995. 4. 28 조례 제2189호
1995. 6. 23 조례 제2206호
1996. 3. 11 조례 제225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 6. 23)

1. 의회운영위원회 10인
2. 기획경제위원회 8인
3. 내 무 위 원 회 8인
4. 교육사회위원회 8인
5. 농림수산위원회 8인
6. 건설교통위원회 7인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심사와 청원 및 진정서 처리등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95. 6. 23)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93. 7. 2)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경제위원회
   가.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실, 공업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95. 4. 28, 96. 3. 11)
   나. 지방경찰청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다. 기획, 공보, 감사, 공업경제 사무에 관한 사항 (개정 95. 4. 28, 96. 3. 11)

3. 내무위원회
   가. 내무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94. 2. 18, 96. 3. 11)
   나. 내무, 민방위재난관리, 소방, 공무원교육 사무에 관한 사항 (개정 96. 3. 11)

4. 교육사회위원회
   가. 교육청, 보건환경국, 사회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교육사회 및 보건환경 사무에 관한 사항 (개정 96. 3. 11)

5. 농림수산위원회
   가. 농정국, 농촌진흥원에 속하는 사항 (개정 94. 7. 22)
   나. 농정 및 농촌진흥 사무에 관한 사항 (개정 94. 7. 22, 96. 3. 11)

6. 건설교통위원회
   가.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단, 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에 속하는 사항 (개정 95. 4. 28)
   나. 건설교통개발 사무에 관한 사항 (개정 96. 3. 11)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의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의회의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

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3. 7. 2)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해임·보임) ①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94. 2. 18)

②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③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임기중 해임 및 보임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른다. (신설 94. 2. 18)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1952. 6. 3 조례 제11호)는 폐지한다.

부 칙 (1991. 6. 28 조례 제1921호)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 31 조례 제1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0. 23 조례 제2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7. 2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2. 18 조례 제2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7. 22. 조례 제2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4. 28 조례 제2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6. 23 조례 제22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의회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의회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

부 칙 (1996. 3. 11 조례 제2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 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1991. 4. 6 조례 제190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감
2. 부지사·부교육감
3.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4. 법 제104조 내지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 행정기관의 장 (교육장)
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장
7. 충청북도 및 교육청의 외청 또는 사업소 소속공무원중 도본청 및 교육위원회의 실·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1991. 4. 12 조례 제1909호

개정 1994. 10. 14 조례 제215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 (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의회는 도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기간중 10일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 (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94. 10. 14)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의회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도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충청북도조례로 설치한 충청북도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3.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다만,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의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4. 충청북도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개정 94. 10. 14)
5.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중 충청북도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충청북도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신설 94. 10. 14)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위임사무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94. 10. 14)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자의 출석증언 및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 자치단체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제3항 ~ 제6항 94. 10. 14)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⑤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1 선서서와 같이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국가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2조 내지 제11조 및 제12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법 제36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또는 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지방의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대리출석 답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

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전까지 의회 의장이나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4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를 제척할 수 있다.

②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주의의무)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도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도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도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도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0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0. 14 조례 제2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94. 10. 14)

가.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설명문안)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 ○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피감사 공무원 선서서

선 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 년 월 일

기관명 :

선서인 : (인)

다.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서

선 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의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증 인 : (인)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인등 비용지급에관한조례

〔1994. 10. 14 조례 제215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①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②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원
2. 청원인
3.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
4.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를 준용한다.

제5조(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충청북도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1991. 6. 14 조례 제1917호〕

개정 1991. 10. 26 조례 제1935호
1992. 1. 31 조례 제1972호
1992. 10. 23 조례 제2004호
1993. 7. 23 조례 제2072호
1994. 5. 13 조례 제2123호
1995. 9. 22 조례 제2213호
1996. 2. 13 조례 제225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이하"사무처"이라 한다)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 1. 31)

제2조(직무)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회의와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92. 1. 31)

제3조(조직) ①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92. 1. 31)

②사무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92. 1. 31)

제4조(사무직원의 정수) 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65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2. 1. 31, 92. 10. 23, 93. 7. 23, 94. 5. 13, 95. 9. 22, 96. 2. 13)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구성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0. 26 조례 제1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 31 조례 제1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0. 23 조례 제2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7. 23 조례 제2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5. 13 조례 제2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9. 22 조례 제2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관한조례

〔1991. 4. 12 조례 제1910호〕

개정 1992. 1. 31 조례 제1976호
1992. 9. 25 조례 제1999호
1994. 1. 7 조례 제2107호
1994. 10. 14 조례 제2157호
1995. 9. 6 조례 제2212호
1996. 3. 11 조례 제225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지급) 의원의 의정자료수집·연구 및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제3조(회의수당지급) 의원이 회기중 회의 (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 (원격지 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96. 3. 11)

제4조(여비지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의정활동비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5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100,000원으로 하고 매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회의수당지급기준) ①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60,000원으로 한다.

②원격지회의출석비는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도의회 소재지로부터 편도거리 60킬로미터 이상)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한 교통운임(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 (3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지급한다. (신설 96. 3. 11)

③제2항의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대상지역은 별표3과 같다. (신설 96. 3. 11)

제8조(여비지급기준) ①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충청북도의회 사무실이 있는 청주시내에서의 출장과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충청북도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부 칙

①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의회의원비용변상조례(1952. 6. 3 조례 제1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2. 1. 31 조례 제1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9. 25 조례 제1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 7 조례 제2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4. 10. 14 조례 제2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 9. 6 조례 제2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 3. 11 조례 제2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92. 9. 25, 94. 1. 7, 94. 10. 14, 95. 9. 6, 96. 3. 1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제8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의 장 부의장	1등급	2 등 정 액	정 액	정 액	6,500	37,500	25,000
의 원	1등급	2 등 정 액	정 액	정 액	6,500	37,500	25,000

비 고 : 1.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 (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 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 운임을 지급한다.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제8조제2항 관련) (개정 94. 10. 14, 95. 9. 6)

(단위 : 미불화)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철 도 운 임</th><th rowspan="2">선 박 운 임</th><th rowspan="2">항 공
운 임</th><th rowspan="2">자동차
운 임</th><th rowspan="2">일 비
(1일당)</th><th rowspan="2">숙 박 비
(1야당)</th><th rowspan="2">식 비
(1일당)</th><th colspan="3">준 비 금</th></tr>
<tr><th>15일
미만</th><th>15일이상
30일미만</th><th>30일
이상</th></tr>
<tr><td rowspan="4">의장·
부의장</td><td rowspan="8">·2등급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td><td rowspan="8">·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td><td rowspan="4">1등
정 액</td><td rowspan="8">실비액</td><td>가등급 30</td><td>가등급 147</td><td>가등급 133</td><td rowspan="4">150</td><td rowspan="4">180</td><td rowspan="4">210</td></tr>
<tr><td>나등급 30</td><td>나등급 117</td><td>나등급 99</td></tr>
<tr><td>다등급 30</td><td>다등급 92</td><td>다등급 72</td></tr>
<tr><td>라등급 30</td><td>라등급 79</td><td>라등급 61</td></tr>
<tr><td rowspan="4">의 원</td><td rowspan="4">1등
정 액</td><td>가등급 25</td><td>가등급 130</td><td>가등급 107</td><td rowspan="4">140</td><td rowspan="4">170</td><td rowspan="4">195</td></tr>
<tr><td>나등급 25</td><td>나등급 90</td><td>나등급 78</td></tr>
<tr><td>다등급 25</td><td>다등급 72</td><td>다등급 58</td></tr>
<tr><td>라등급 25</td><td>라등급 62</td><td>라등급 49</td></tr>
</table>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뉴욕, 런던, 파리, 스톡홀름, 동경, 홍콩

나. 나등급

(1) 아세아주, 대양주 : 일본, 파푸아뉴기니아

(2) 남·북아메리카주 : 워싱턴,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 코, 트리니다드토바고, 자메이카

(3) 유 럽 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4) 중동·아프리카주 :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케마루운,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다. 다등급

(1) 아세아주, 대양주 : 인도, 터어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지아, 싱가폴,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 중화민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2) 남·북아메리카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수리남

(3) 유 럽 주 : 덴마아크, 아일랜드, 포르투갈, 희랍

(4) 중동·아프리카주 :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시어스

라. 라등급

(1) 아세아주·대양주 : 인도네시아, 버어마, 스리랑카, 휘지, 네팔

(2) 남·북아메리카주 : 구아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로, 페루, 볼리비아, 우루구아이, 파라구아이, 아르헨티나

(3) 유 럽 주 : 해당국가 없음

(4) 중동·아프리카주 : 레바논, 북예맨, 모로코, 튀니지, 루안다, 말라위, 스와지랜드, 가나, 소말리아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대상지역

(단위 : ㎞)

시·군별	대 상 지 역
충 주 시	동일원(71.0), 상모면(80.7), 살미면(71.7), 소태면(94.8), 엄정면(85.8), 산척면(85.8), 동량면(81.8), 금가면(83.8), 가금면(81.8), 앙성면(77.8), 노은면(69.8), 신니면(63.8)
제 천 시	동일원(118.9), 봉양읍(109.2), 백운면(120.9), 송학면(129.0), 청풍면(129.7), 금성면(130.2), 수산면(116.0), 한수면(124.7), 덕산면(109.4)
보 은 군	산외면(64.3), 외속리면(63.2), 내속리면(66.1), 삼승면(66.1), 탄부면(67.2), 마로면(70.1)
옥 천 군	동이면(63.4), 안남면(74.2), 안내면(72.1), 청성면(75.8), 청산면(77.5), 이원면(64.6), 군서면(60.6)
영 동 군	영동읍(83.4), 용산면(87.2), 황간면(100.0), 추풍령면(108.0), 매곡면(104.9), 상촌면(110.7), 양강면(87.4), 용화면(113.4), 학산면(97.7), 양산면(100.9), 심천면(74.0)
괴 산 군	장연면(65.6), 연풍면(70.4), 불정면(62.2)
음 성 군	생극면(60.5), 감곡면(71.6)
단 양 군	단양읍(143.5), 매포읍(155.6), 단성면(154.7), 대강면(155.4) 가곡면(150.7), 영춘면(164.4), 어상천면(164.8) 적성면(168.6)

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 〔1993. 5. 10 조례 제2056호〕

개정 94. 5. 27 조례 제212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의회의장은 도의회 사무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도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각종 의안심의시 자문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위촉기간) 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는 그 기간내라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도의회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①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시에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4. 5. 27)

②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일때는 그 다음날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5. 27 조례 제2126호)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사 건 실 적 부

구분 / 종류	사 건 명	의 뢰 년월일	의뢰내용	회 신 년월일	회신내용	비 고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 타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1994. 10. 14 조례 제2149호〕

개정 1995. 9. 22 조례 제221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회의수당"이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회의수당을 말한다. (개정 95. 9. 22)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년도 회의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 9. 22)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년도 회의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되 제5조에 규정한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개정 95. 9. 22)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제1항 각호의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5. 9. 22)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충청북도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도지사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중 1인은 도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나머지 3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5. 9. 22)

1. 의회의원중 1인
2. 의무직 공무원 또는 지방공사청주·충주의료원장중 1인
3.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도지사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도 기획관으로 한다. (개정 95. 9. 22)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9. 22 조례 제2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table>
<tr><td rowspan="2">접수</td><td>제 호</td><td colspan="3" rowspan="2">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td><td>처리기간</td></tr>
<tr><td></td><td>15일</td></tr>
<tr><td colspan="2">보상대상의원</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
번 호</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5">청 구 자</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
번 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 colspan="2">전화번호</td></tr>
<tr><td>청구내용</td><td colspan="4">□ 사망 □ 장애 □ 상해</td></tr>
<tr><td>보상금수령
금융기관</td><td>은행
지점</td><td>구좌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상 병 장 소</td><td colspan="2"></td><td>상병년월일시</td><td></td></tr>
<tr><td colspan="2">상병원인및
발생상황</td><td colspan="4"></td></tr>
</table>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경위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 의회의장 직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접수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처리기간
			즉 시

보상대상의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보 상 금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내용				
심 의 회	<결 정>			
	<결정이유>			
심의결과	<심의위원 서명>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1991. 2. 18 의회규칙 제1호〕

개정 1993. 6. 23 의회규칙 제7호
1994. 9. 14 의회규칙 제8호
1995. 1. 25 의회규칙 제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3. 6. 23)

제3조(의석배정) ①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93. 6. 23)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다만, 폐회중에 신청한 청가는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의장이 허가하며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다. (본항단서신설 93. 6. 23)

③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 2 장 의장과 부의장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된다.

②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0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2조(의장·부의장 사임)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 3 장 회 의

제 1 절 회의의 개폐

제13조(회기) ①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의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4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의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6조(휴회) ①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휴회중이라도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2절 의 사 일 정

제17조(의사일정의 작성) ①의장은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8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의원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9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 3 절 의안 및 동의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도지사·교육감·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2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를 할 수 있다.

②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의장은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하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93. 6. 23)

④의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93. 6. 23)

⑤소관위원회는 관련 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제4항의 기간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을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신설 93. 6. 23)

제22조(특별위원회 회부) ①의장이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3조(심사기간) ①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5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6조(수정동의) ①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7조(의안·동의의 철회) ①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도지사 또는 교육감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3. 6. 23)

제28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93. 6. 23)

제29조(안건심의) ①본회의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1항의 제안자가 도지사 또는 교육감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0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1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는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제 4 절 발 언

제33조(발언의 허가) ①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4조(발언의 장소) ①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5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6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7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의 2(5분 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회되는 경우 그개의시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 (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여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

③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5분 자유발언의 발언순서는 접수부에 의한 접수순서에 의한다. (신설 95. 1. 25)

제38조(발언시간의 제한) ①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의원의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9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토론의 통지) ①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1조(의장의 토론참가) ①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2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의원 2인이상의 발언이 있는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 5 절 표　　결

제43조(표결의 선포)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한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4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5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6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47조(투표절차) ①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감표위원은 다른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8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9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 6 절 회 의 록

제50조(회의록의 작성) ①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발언자의 발언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1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날인한다. (개정 93. 6. 23)

②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2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기 인쇄된 부수내에서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개정 94. 9. 14)

제 4 장 위 원 회

제54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5조(본회의중 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본회의와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6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7조(위원회의 제안) 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교육·학예 사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학예 사무를 소관하는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제출한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안이나 대안 등은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3. 6. 23)

③제1항의 제안자가 도지사 또는 교육감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59조(위원의 발언) ①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0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1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2조(연석회의) ①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3조(공청회) ①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4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65조(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의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66조(위원회 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94. 9. 14)

③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제67조(비공개 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 5 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8조(예산안 심의) 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93. 6. 23)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69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0조(예산안의 결의) ①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분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1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결산의 심사) ①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케 한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의장이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 6 장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제73조(도지사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3. 6. 23)

제74조(도지사에 대한 서면질문) ①의원이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개정 93. 6. 23)

②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 6. 23)

③제2항의 답변에 의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75조(도지사 등의 발언)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사직과 자격심사

제76조(사직) ①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77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의장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8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한다.

④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9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 8 장 질 서

제80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81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82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안에는 의원·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83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84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단체방청권·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85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6조(방청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가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자

②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87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 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8조(녹음·녹화 등) ①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 (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녹음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 장 징 계

제8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90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제8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②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1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2조(심문 및 변명) ①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3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의장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94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훈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3. 6. 23)

부 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6. 23 의회규칙 제7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9. 14 의회규칙 제8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 25 의회규칙 제9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의회청원심사규칙 〔1991. 7. 9 의회규칙 제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의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에 모독하는 것
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 ①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의 회부와 심사)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한다.

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년월일을 기재한다.

③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을 그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 ①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청원이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도지사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보고가 있는 때
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 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table>
<tr><td colspan="5">청 원 철 회 요 구 서</td></tr>
<tr><td>청 원 건 명</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청 원 인</td><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성 명</td><td>인</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소 개 의 원</td><td colspan="4">인</td></tr>
<tr><td>소개 년월일</td><td colspan="4"></td></tr>
<tr><td>소 개 의 견</td><td colspan="4"></td></tr>
</table>

(별지 제2호 서식)

<table>
<tr><td colspan="5">청 원 소 개 의 견 서</td></tr>
<tr><td>청 원 건 명</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청 원 인</td><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성 명</td><td>인</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소 개 의 원</td><td colspan="4">인</td></tr>
<tr><td>청원제출일자</td><td colspan="2"></td><td>청원철회일자</td><td></td></tr>
<tr><td colspan="5">철회요구사유</td></tr>
</table>

충청북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 〔1991. 7. 9 의회규칙 제3호〕

개정 1991. 11. 8 의회규칙 제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신분증용지의 색상은 백색용지에 의한 연한 황색으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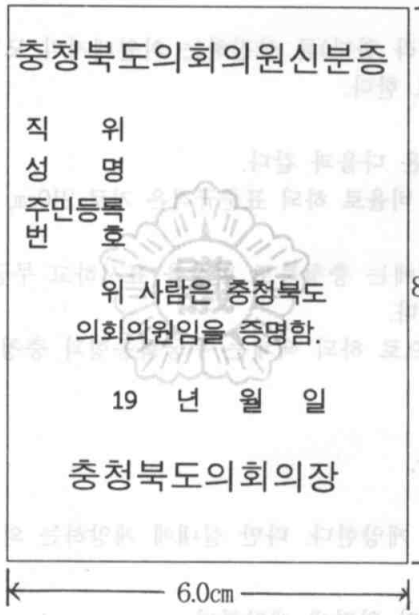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1. 8 의회규칙 제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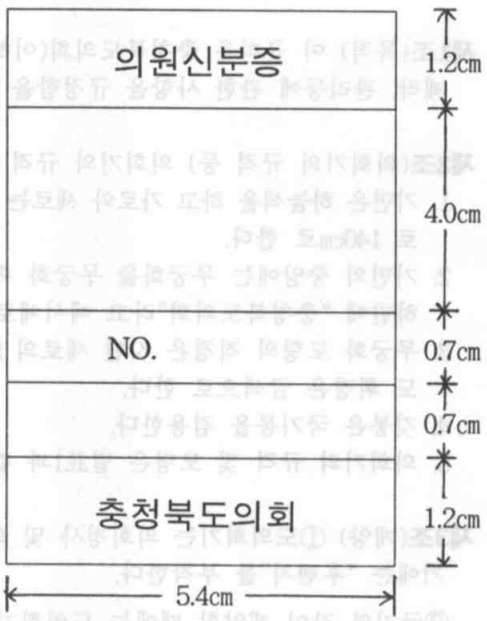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 면)



(후 면)



(주)

1. 사진의 규격등
   가. 사진(가로×세로 = 5.0 × 3.0cm
   나. 성명(흑색 모필로 기입할 것)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분증 전면에 충청북도의회 휘장을 연한 하늘색으로 표시한다.

글 자 의 구 분	글 자 의 크 기	글 자 의 종 류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16포인트	고 딕 체
발급기관장	16포인트	고 딕 체
발급기관	18포인트	고 딕 체
위사람은···증명함	10.5포인트	고 딕 체
기 타	8포인트	명 조 체

4. 지질은 인쇄용지 190g/㎡으로 한다.
5. 신분증은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6. 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달수 있게 한다.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1991. 11. 8 의회규칙 제4호〕

개정 1992. 6. 10 의회규칙 제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원배지의 모형, 제작,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하늘색을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한다.
2. 기면의 중앙에는 무궁화를 무궁화 속의 원내에는 충청북도 휘장을 표시하고 무궁화 하단에 "충청북도의회"라고 예서체로 표시한다.
3. 무궁화 모형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하되 색채는 무궁화동형과 충청북도 휘장은 금색으로 한다.
4.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
5.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제3조(게양) ①도의회기는 의회청사 및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후렌지"를 부착한다.

②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도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제식) ①도의회의원 배지 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이 한다.

②의원배지 이면에는 의회대수와 시군별 선거구순에 의한 의원고유번호를 조각한다.

제7조(배지교부) ①의원배지는 의원등록시에 교부한다.

②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제8조(배지패용요령) 의원배지는 상의좌측 옷깃에 착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교부한 배지는 이 규칙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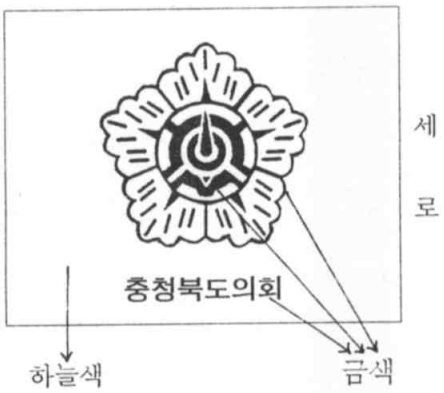
부 칙 (1992. 6. 10 의회규칙 제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회기 모형도 및 규격

모 형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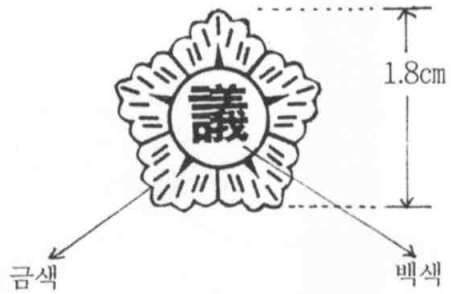
규 격

- 가로 : 세로 = 3 : 2
- 무궁화 모형의 직경 : 세로의 3
- 무궁화 모형 가운데 충청북도 휘장의 직경 : 무궁화 모형의 직경의 1/1.8
- "충청북도의회" 각 자의 크기 : 세로의 1/12
- "충청북도의회"자 전체의 폭 : 가로의 1/2
- 하늘색 바탕은 청렴, 결백, 신선함을 뜻하고 무궁화는 나라를 상징하며 무궁화 원내의 휘장은 충북을 상징한다.

(별표 2)

의원배지 모형도 및 규격

모 형 도



규 격

- 무궁화 모형의 직경 : 1.8cm
- 무궁화 모형 가운데 원의 직경 : 1.0cm
- "議"자의 직경 : 0.8cm(개정 92. 6. 10)
- 재료는 은으로 하되 금색으로 도금

충청북도의회사무처직제규칙 〔1991. 6. 14 규칙 제1760호〕

개정 1992. 1. 10 규칙 제1821호
1993. 7. 23 규칙 제1959호
1996. 2. 13 규칙 제214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사무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및 전문위원을 둔다.

제3조(총무담당관) ①총무담당관밑에 총무계, 경리계, 자료계, 홍보계를 두고, 총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홍보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5급 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다른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3. 7. 23, 96. 2. 13)

②총무계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 7. 23)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서무, 복무, 포상 및 공인관리
3. 예산편성 및 문서수발, 보존관리
4. 보안 및 의회청사 경비업무
5. 의원등록관리 및 의원, 사무직원 복리후생 업무
6. 의회의 방청참관 및 회의장 질서유지
7. 각종 행사 및 의전,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처내 다른 담당관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경리계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3. 7. 23)
1. 의회소관 국·도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2. 회계심사 및 지출원 업무
3. 계약 및 용도사무
4. 국·도비 전도자금 지출관련 업무
5.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보관
6. 청사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7. 차량 및 물품보관

④자료계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 7. 23)
1.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 수집, 조사연구 및 보관관리
2. 의회사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

⑤홍보계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6. 2. 13)
1. 의회활동 홍보계획의 수립, 조정
2.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제4조(의사담당관) ①의사담당관밑에 의사계, 의안계, 기록계를 두고, 의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3. 7. 23)

②의사계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 7. 23)
1.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2.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3.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4.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조정
5. 그밖에 담당관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의안계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 7. 23)
1.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
2.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3. 청원, 진정의 접수 분류 및 처리
4. 의안문서의 보존 관리
5.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④기록계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3. 7. 23)
1. 각종 회의상황 기록정리 및 보관
2. 각종 회의록의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3. 속기사 및 기록장비의 운용관리
4. 그밖에 각종 회의상황의 기록정리에 관한 사항

제5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구성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 10 규칙 제1821호)

이 규칙은 199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7. 23 규칙 제19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2. 13 규칙 제21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議會日誌

□ 1995년도 (7. 10 ~ 12. 31)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7. 10	○ 제5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상견례 및 간담회 ·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처 간부소개 · 지방의회 의원편람 설명 · 의장단, 상임위원 구성방법 등 설명	회의실
7. 12	○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개회식 · 의장단 선출 : 의 장 - 車珠元의원 부의장 - 劉永勳·申完燮의원	본회의장
	○ 제5대의회 개원식	본회의장
7. 13	○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상임위원장 선출 - 의회운영위원회 : 金鎭學 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 宋在周 의원 - 내 무 위 원 회 : 成耆德 의원 - 교육사회위원회 : 劉載喆 의원 - 농림수산위원회 : 安載元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 韓相文 의원	본회의장
	○ 상임위원회 활동 · 상임위별 간사 선임 - 의회운영위원회 : 張準浩 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 林憲用 의원 - 내 무 위 원 회 : 尹炳泰 의원 - 교육사회위원회 : 李吉廈 의원 - 농림수산위원회 : 李喜福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 金元植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 의원명패 제작의 건 · 기획경제위원회 -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위원회실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7. 14	○ 상임위원회 활동 · 내무위원회 - 충청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제정안 등 4건	위원회실
7. 15	○ 제1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	본회의장
7. 18	○ 의장단 부대방문 취임인사 ○ 제2기 충청북도 교육위원 선출 공고	
7. 19	○ 중국 흑룡강성 경제시찰단 접견	의장실
7. 20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의장실
7. 21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 참석 ※ 참석 : 김진학 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7. 26	○ 농림수산위원회 현지방문 활동 · 농축산업의 실태파악 · 의정활동 자료수집	단양 소백산 관광시범목장
7. 29	○ 전국 시도의회 의장·의회운영위원장 연석회의 참석 ※ 참석 : 차주원 의장, 김진학 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8. 7	○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 제11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94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2명 ※ 김재근 의원, 김춘식 의원	위원회실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8. 8	○ 의회사무처 간부 인사이동 · 총무담당관 이홍우 (전 의사담당관) · 의사담당관 이성동 (전 청주시 기획실장) · 의회운영전문위원 우병수 (전 내무전문위원) · 기획경제전문위원 김재평 (전 전산통계담당관) · 내무전문위원 오창환 (전 교육원 서무과장)	
8. 16	○ 제116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 개회식 · 제1차 본회의 - 의회사무처 인사에 따른 간부소개 - 제11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	본회의장
	○ 의원연찬회 · 주제 :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 · 강사 : 충북대 강형기 교수	회의실
8. 19	○ 의원간담회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결과 청취	의원휴게실
	○ 향토사단 방문 · 안보정세 설명회 청취	육군 제37사단
8. 21	○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제2기 충청북도 교육위원 선출 : 11명	본회의장
8. 23	○ '95 을지연습 참관	충무시설
8. 17 ~8. 24	○ 상임위원회 활동 · 공통 : 업무보고 · 의회운영위원회 - 충청북도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발전의 정착을 위한 관련법규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위원회실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 -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 등 2건 · 내무위원회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 -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유치지원 결의안 채택 - 문화재 정비실태 현지답사 · 교육사회위원회 - 도관장 공해배출업소 현황 청취 · 농림수산위원회 -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 잎담배 수매가 인상 대정부 건의안 채택 · 건설교통위원회 - 과학산업단지건설추진협의회 위원 추천 : 이민희 의원 - 대전·청주권 광역개발계획 연구용역 자문위원 추천 : 오성진 의원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 : 최종철 의원 - 공영개발사업 현지확인 : 가경3지구	
8. 25	○ 의원연찬회 ·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건국대 최창호 교수) · 지방의회 운영 및 의사절차 (지방행정연구원 이수만 책임연구원) · 예산·결산심사 기법 (국회의정연수원 신해룡 교수)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이주희 교수) · 조례제정 범위와 입법심의 요령 (지방행정연구원 김성호 책임연구원)	회의실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8. 26	○ 제1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수해피해상황 보고 청취 · 의결안건 - 충청북도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11건 - 지방자치발전의 정착을 위한 관련법규 개정 촉구결의안 채택 -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유치지원 결의안 채택 - 잎담배수매가 18.8% 인상 건의안 채택	본회의장
8. 29 ~ 8. 31	○ 차주원 의장 수해현장 방문 · 증평·청원군 강외지역 ○ 농림수산·건설교통위원회 활동 · 현지확인 : 수해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	
8. 31	○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 제11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도정질문 일정	위원회실
9. 2	○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자금지원 건의 · 건의처 : 재정경제원	
9. 4	○ 농림수산위원회 활동 · 수해현황 청취 및 대책마련	위원회실
9. 5	○ 제2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개원	교육위원회
9. 5 ~ 9. 6	○ 중추절 맞이 군·경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 차주원 의장	군부대 및 사회복지시설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9. 12	○ 의장단·상임위원단장 연석회의 · 지역개발과 건설에 관한 세미나 개최 주관에 관한 건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 2명	의장실
	○ 제117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 개회식 ·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국제도시간 자매교류 추진상황 청취	본회의장
9. 14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참석 · 참석 : 김진학 위원장	인천광역시의회
9. 16	○ 북한정세설명회 · 국가안전기획부 충북지부 주관	소회의실
	○ 의원간담회 · 의원보좌관제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 · 지방자치법 개정 청원 등	의원휴게실
9. 13 ~ 9. 21	○ 상임위원회 활동 · 기획경제위원회 - 현지방문 ┌ 농공단지 (옥천) ├ 농특산품 재배단지 (음성, 단양) └ 관광지구 (수안보) -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처리간담회 · 내무위원회 - 현지방문 ┌ 청주, 제천, 영동소방서 └ 청풍문화재 단지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회실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 교육사회위원회 : 환경기본시설 현지방문 · 농림수산위원회 - 현지방문 : 농산물유통공사 충북지사, 축협 도지회, 임협도지회, 관광농원. - 수해농가 특별지원 및 재해대책법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 · 건설교통위원회 - 현지방문 : 도로건설, 하천시설, 수해복구현장 - 월악산 국립공원 내 주차장 설치 진정	
9. 18 ~ 9. 20	○ 제117회 임시회 제2차 ~ 제4차 본회의 · 도정질문 및 답변 - 질문의원 : 김대호, 임헌용, 윤병태, 김춘식, 박제국, 이길하, 박온섭, 이희복, 김원식, 오성진의원 - 답변자 : 도지사, 교육감, 실국원장.	본회의장
9. 20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 ·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례 검토 ·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안건 제출 등	의장실
9. 22	○ 제11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의결 · 수해농가 특별지원 및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 건의안 채택 ·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실시에 관한 건의안 채택 ○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참석 · 참석 : 차주원 의장	본회의장 대전광역시의회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9. 22 ~ 9. 23	○ 의원간담회 · 참석 : 도의원 부부동반	수안보파크호텔
9. 27	○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 제118회 임시회 일정 : 10. 9 ~ 10. 18 (10일간) · '95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위원회실
9. 28	○ 의정동우회 간담회 · 임원개선 및 운영계획 협의	의원휴게실
9. 29	○ 전북의회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소속 유갑철 의원 일행 4명 접견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상호 관심사 논의	의장실
10. 2	○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참석 · 참석 : 차주원 의장 ○ 제76회 전국체전 개막행사 참석 및 선수단 격려 · 참석 : 차주원 의장	포항 포항시 일원
10. 4	○ 전국 도의회 농업관련 상임위원장 간담회 참석 · 참석 : 안재원 위원장 · 안건 - '95 추곡수매가 인상문제 - 만냥고추 피해 등 당면 농촌문제 협의	전라남도의회
10. 7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참석 · 참석 : 김진학 위원장	서울 맨하탄 호텔
10. 9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 의원 해외연수 계획 · 기타 당면사항 협의 등	의장실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 제118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 개회식 ·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장 : 이병두 의원 - 간 사 : 유명호 의원 - 위 원 : 김준석, 임헌용, 김동진, 권영관, 김재근, 최선환, 최영락, 이민희, 이향래, 이희복, 정태정, 박제국 의원	본회의장
10. 10 ~10. 17	○ 상임위원회 활동 · 기획경제위원회 -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등 1건 - '96 자치복권 발행계획안 - 의원연찬회 - 충북개발연구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 내무위원회 - 정춘수 동상 연내철거에 대한 청원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진정서 처리 - 정책보좌관제 운영 개선방안 보고 - 자치법규 정비 방향 논의 등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안 등 3건 - '94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예비심사 - '95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 농림수산위원회 - 진정처리 - 전국 도의회 농업관련위원장 회의결과 보고 청취 - 농업관련기관 현장방문	위원회실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 도로관리사업소 및 현장방문 - 레미콘 생산업체 현장방문 - 진정·건의서 처리 ○ 특별위원회 활동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종합심사 - '94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95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회실
10. 13	○ 지방의회의 의정효율성 제고방안 중간보고회 · 주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참석 - 의회운영위원장, 총무·의사담당관, 전문위원 - 기획관, 의회계장 - 김성호 책임연구원, 김필두 연구원 - 송창석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회의실
10. 16	○ 도출신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 주재 : 차주원 의장 · 참석 - 도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 충북출신 국회의원 9명 - 도지사, 기획관 -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 안건 : 지역현안 설명 및 협조	서울 63 B/D
10. 17	○ 의원연찬회 · 주제 및 강사 - 조례제정 범위 및 입법심의 요령 (지방행정연구원 김성호 책임연구원)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이주희 교수)	회의실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10. 18	○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94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 '95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 등 5건 · '96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안 · 호남고속철도 오송 기점역 설치를 위한 건의안 채택 · 충청북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	본회의장
10. 21	○ 의회사무처 직원 체육행사	조령산
10. 26 ~10. 27, 10. 30	○ 농림수산위원회 활동 · 잎담배 수매가 인상 건의자료 수집 · 대상 : 청주, 충주, 제천, 보은지역	잎담배수매현장
10. 28 ~10. 29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 참석 · 참석 : 김진학 위원장	제주도의회
10. 31	○ 내무위원회 활동 · 『청소리위원회』 설치조례안 성안협의	위원회실
11. 1	○ 제119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 개회식 ·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95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장
	○ 의원연찬회 · 주제 및 강사 - 예산·결산심사기법 (국회의정연수원 신해룡 교수)	회의실
11. 2 ~ 11. 8	○ 상임위원회 활동 · 공통 - '94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예비심사 - '95 제2회 충청북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	위원회실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 '95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 - '95 정기회 의사일정에 관한 건 · 기획경제위원회 - 충청북도지방공사청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내무위원회 - 행정구역 조정 청원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 교육사회위원회 - 먹는물관리법 제정 건의안 채택의 건 - 충주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 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 · 건설교통위원회 - 진정·건의서 처리 - 건설용어 해설 세미나 - 레미콘 생산업체 방문	
11. 7 ~ 11. 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 '95 제2회 충청북도 추경예산안 등 종합심사	위원회실
11. 9	○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94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94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95 제2회 충청북도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 '95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먹는물관리법 개정 등 건의안 3건	본회의장
11. 9 ~11. 15	○ 국제 자매결연도시 방문 · 방문국 : 일본국 (야마나시현, 이바라기현) · 방문단 - 차주원 의장 - 김진학 의회운영위원장 - 송재주 기획경제위원장 - 이병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위원회실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11. 16	○ 전국 도의회 농업관련 위원장 간담회 개최 · 주재 : 안재원 농림수산위원장 · 안건 : 추곡수매 인상 건의안 채택	농림수산위원회
11. 20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 제120회 정기회 운영 및 당면사항 협의 ○ 제120회 정기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 개회식 · 회기결정의 건 · 시정연설 (도지사, 교육감) ·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실
11. 21 ~11. 29	○ '95 행정사무감사 ·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 전반	위원회실
11. 30 ~ 12. 2	○ 제120회 정기회 제2차 ~ 제4차 본회의 · 도정질문 및 답변 - 질문의원 : 유명호, 권영관, 이선호, 최영락, 이민희, 장준호, 최종철, 김재근, 박용인, 유재철 의원. - 답 변 자 : 도지사, 교육감, 실국원장. ·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경영부실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본회의장
12. 4 ~ 12. 7	○ 상임위원회 활동 · 공통 : '96 예산안 예비심사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위원회실
12. 7 ~ 12. 8	○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참석 · 참석 : 차주원 의장	제주도의회
12. 8 ~12. 15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 '96 예산안 종합심사	위원회실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12. 11	○ 서울특별시의회 방문 · 방문단 :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 내 용 : 우리농산물 전달 및 교류협력 ○ 농림수산위원회 활동 · 추곡수매현장 방문 : 청원군 일원	
12. 12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 궐원 교육위원 선출계획 ·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 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방문단 내도계획 등 협의	의장실
12. 16	○ 제120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 집행기관 신임간부 인사 - 도 : 김광홍 정무부지사, 이석의 기획관리실장 - 교육청 : 김영세 교육감 · '96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등 3건 · '95 제3회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장
12. 18 ~12. 20	○ 상임위원회 활동 · 공통 : '95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 내무위원회 -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건 - '9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회실
12. 20	○ 청주시 궐원 교육위원 선출공고 · 선출일 : '96. 1. 23	
12. 21 ~12. 2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 '95 제3회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종합심사	위원회실
12. 21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단 내방 · 방문단 : 문일권 의장 외 5명	의장실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12. 23	○ 제120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 '95 제3회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 ·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 '96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대책지역 및 특별 종합대책에 대한 청원 채택 ·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 종합대책에 대한 환경부 고시 폐지 건의안 채택	본회의장
12. 26 ~12. 28	○ 상임위원회 활동 · 의회운영위원회 - 제12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기획경제위원회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 청주의료원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구성의 건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회실
12. 29	○ 제120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 · '9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본회의장
	○ 도의회 폐회연 · 참석 : 도의원, 집행기관 간부, 언론사	회의실
12. 31	○ '95년도 종무식 · 참석 : 사무처 직원	회의실

□ 1996년도 (1. 1 ~ 12. 31)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1. 1	○ 충혼탑 참배 · 참석 : 차주원 의장,유영훈 부의장,최종철 의원	충혼탑
1. 3	○ 신년인사회 및 시무식 · 신년인사회 : 사무처 및 집행기관 간부 · 시무식 : 사무처직원	의장실 회의실
1. 8	○ 중국 흑룡강성 우호교류실무대표단 접견 · 방문단 : 인민정부 馬國良부성장외 5명	의장실
1. 9	○ 의원 신년교례회 · 참석 : 의원 및 집행기관 간부	회의실
1. 13	○ 재경충북협회 신년교례회 · 참석 : 차주원 의장	서울앰버서더 호텔
1. 18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 제121회 임시회 운영계획 · 의원해외연수계획등 협의	의장실
	○ 제121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본회의 · 개회식 · 제1차본회의 - 제12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	본회의장
1. 19 ~1. 22	○ 상임위원회 활동 · 공통 : 업무보고 · 의회운영위원회 - 제12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 -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위원회실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 내무위원회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6건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	
1. 19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의 · 참석 : 차주원 의장	서울 타워호텔
1, 23	○ 제12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 제2기 충청북도 궐원교육위원 선출 : 金正吉 (청주시)	본회의장
	○ 통일문제설명회 · 강사 : 통일연수원 윤병익교수, 강도원교수 · 내용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남북관계 전망 - 북한실상(VTR)	회의실
1. 24	○ 제121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7건 · 5분자유발언 : 임헌용의원	본회의장
1. 25 ~2. 5	○ 의원 해외연수 · 상임위원회별 연수대상국 - 내무위원회 : 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멕시코 - 교육사회위원회 : 브라질,페루,미국	
1. 28 ~2. 8	○ 의원해외연수 · 건설교통위원회 - 연수대상국 :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1. 29 ~2. 11	○ 의원해외연수 · 기획경제위원회 - 연수대상국 :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스라엘	
1. 29 ~2. 9	○ 의원 해외연수 · 농림수산위원회 - 연수대상국 : 이스라엘, 이집트,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1. 30	○ 충청북도의정동우회 개최 · 참석 : 역대도의원 (1~4대)	의원휴게실
2. 26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 제122회 임시회 운영계획 ·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 등	의장실
	○ 제122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 개회식 · 제1차본회의 - 회기결정의 건	본회의장
2. 26 ~2. 28	○ 상임위원회 활동 · 의회운영위원회 -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 - 12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일본의 독도망언규탄결의안 채택의 건 · 기획경제위원회 -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안등 2건 · 내무위원회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충북100년기념사업계획 보고 청취	위원회실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실습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먹는물관리법 개정 추진상황등 협의 · 농림수산위원회 - 농정현안사업 보고 청취 · 건설교통위원회 - 청원, 진정·건의서 처리 협의 -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2. 28	○ 의원세미나 · 주제 : 오링테스트를 활용한 건강관리 · 강사 : 이명무 약사	회의실
2. 29	○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 · 일본의 독도망언 규탄 결의안 채택 · 충북100주년기념사업계획 보고	본회의장
3. 12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 제123회 임시회 운영계획 · 제124회 임시회 도정질문 의원 확정	의장실
	○ 제123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 개회식 · 제1차 본회의 - 회기결정의 건 - 청주의료원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본회의장
3. 12 ~3. 15	○ 상임위원회 활동 · 의회운영위원회 - 위원회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위원회실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 - 청주의료원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 청주및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내무위원회 - 문화재 보전실태 현지답사 및 청소년 관련 업무보고 청취 -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 관리조례폐지조례안 · 교육사회위원회 - 겨울가뭄대책지역 현지방문 · 농림수산위원회 - 내수면개발시험장 업무보고 -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방문 - 산림환경사업소 업무보고 청취 · 건설교통위원회 - 충청북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등 2건 - 육상골재 채취현장 답사	
3. 16	○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등 5건	본회의장
4. 3	○ 전국시도의회사무처장협의회 회의 · 참석 : 조영창 사무처장	경상남도의회
4. 12	○ 김진학의원 의원직 상실 ·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 (벌금 2백만원) · 의정활동 평가 설문지 및 인사장 배포 협의	
4. 16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 제124회 임시회 운영계획 · 춘계 단합 등산대회 개최 협의	의장실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 제12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회실
	○ 제124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 개회식 · 제1차 본회의 - 회기 결정의 건 -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96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장
	○ 이희복의원 의원직 상실 · 대법원,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변호사법 위반 혐의	
4. 17 ~4. 20	○ 상임위원회 활동 · 기획경제위원회 - 명예연구소 및 특산단지 지정업체 방문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 · 내무위원회 -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안 - 문화재정비 및 보존실태 답사 -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뉴청주골프장 관련 진정 · 교육사회위원회 - '96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 '9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안등 3건 - 도내 가뭄지역 문제점 및 급수대책	위원회실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 농림수산위원회 - 농업관련기관 및 시설방문 · 건설교통위원회 - 고속도로 선형개량공사 잔여토지 매입 요구 청원 및 진정 2건 - 청주국제공항 건설현장 방문 -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 조례안	
4. 22 ~4. 23	○ 제124회 임시회 제2차 ~ 제3차 본회의 · 도정질문 및 답변 - 질문의원 : 송옥순, 유재철, 정태정, 이향래, 최선환, 박만순, 김동진의원 - 답변자 : 도지사, 교육감, 실국원장	본회의장
4. 24	○ 건설교통위원회 활동 · 하천편입사유지 하천부지와 교환 요망 진정	위원회실
4. 24 ~4. 26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 '96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종합심사 · '9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종합심사	위원회실
4. 27	○ 제1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 · '96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 '9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96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의회운영위원장 선출 : 김준석 의원	본회의장
5. 2	○ 도의원·사무처 직원 연합체육대회	가령산 자연학습원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5. 8	○ 전국시도의회사무처장협의회 해외연수 · 기간 : 5. 8 ~ 5. 20 (13일간) · 연수대상국 : 미국, 멕시코, 브라질 · 참가 : 조영창 사무처장	
5. 9	○ 교육사회위원회 활동 · 대청댐 주변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보은군 회남면
5. 13	○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 제125회 임시회 운영계획 · '95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검사위원 선임 : 박제국, 차주용의원 · 연간 회기 잔여일 (5일) 일정 운영	위원회실
5. 14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연석회의 · 참석 - 김준석 의회운영위원장 - 우병수 의회운영전문위원	대구광역시의회
5. 16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 · 국책사업특별법 제정에 관한 사항 · 참석 : 차주원 의장	부산광역시의회
5. 21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결과 · 유관기관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계획 ·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일본과의 친선교류문제 협의	의장실
	○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 '95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96 제1회충청북도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위원회실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 제125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 개회식 · 제1차 본회의 - 회기 결정의 건 - '96 제1회충청북도추경예산안 제안설명 - '95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5분자유발언 : 정태정 · 한상문의원	본회의장
	○ 의원연찬회 · 주제 : 예산결산기법 · 강사 : 국회의정연수원 신해룡 교수	회의실
5. 22 ~5. 30	○ 상임위원회 활동 · 공통 : 제1회충청북도추경예산안 예비심사 · 기획경제위원회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내무위원회 -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 건 - 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 조례안등 4건 - 유관기관 단체와의 간담회 ┌ 바르게살기운동충청북도협의회 └ 새마을운동충청북도지부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농림수산위원회 -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 조례안 · 건설교통위원회 - 유관기관단체와의 간담회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 대한전문건설사업협회 충청북도회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충북지회	위원회실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5. 27 ~5. 2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 '96 제1회충청북도추경예산안 종합심사	위원회실
5. 30	○ 의원간담회 · 초대의회 개최장소 보존 문제 · 농촌일손돕기계획 · 의원 등산대회 행사계획 협의 ○ 제1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96 제1회충청북도추경예산안 승인의 건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 · 5분자유발언 : 김원식·최선환 의원 ○ 농촌일손돕기 행사 · 참가 : 의원 및 사무처 직원 80명	의원휴게실 청원군 강내면
5. 31	○ 의원 등산대회 · 철쭉제 행사 참가	소백산
6. 3	○ '95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 · 도의원 : 차주용의원, 박제국의원 · 공인회계사 : 김영수, 변종회 · 유경험자 : 이수명, 이종선 ※ 활동기간 : '96. 6. 11~7. 10 (30일간)	의장실
6. 4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 · 참석 : 차주원 의장	서울특별시의회
6. 5	○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 의회운영위원 연찬회 - 제126회 임시회 회기 결정 - 기타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수안보파크호텔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6. 10	○ 전국시도의회사무처 총무계장회의 · 참석 : 유광준 총무계장	대전광역시의회
6. 11	○ '95 세입세출결산검사 활동 · 기간 : 6. 11~7. 10 (30일간) · 대상 : 충청북도 및 교육청 소관	특별위원회실
6. 17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 5대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 계획 · 지방자치 세미나 행사계획 - 일시 : '96. 7. 2 13:00 ~ 17:00 - 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강당 - 주관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 주제 : 21세기 대비 바람직한 지방자치법 개정 · 재난관리상황 보고 청취 · 호남고속전철노선정책협의회 자문위원 위촉 : 한상문, 오성진, 박만순의원	의장실
	○ 제126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 개회식 · 제1차본회의 -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 - 5분자유발언 : 김원식, 이향래의원	본회의장
	○ 재난관리상황 보고 청취 · 참석 : 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재난관리상황실
6. 18 ~6. 21	○ 상임위원회 활동 · 기획경제위원회 - 유관기관단체와의 간담회 ┌ 유기농연구소 ├ 충북개발연구원 ├ 중소기업진흥공단충북지부 └ 청주도시가스공사	위원회실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 내무위원회 -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현황 청취 · 교육사회위원회 - 대청댐환경보존자원특별법제정관련 간담회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와의 간담회 - 업무현황 청취 : 여성회관, 자연학습원 · 농림수산위원회 - 낙농가특별지원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 - 유관기관단체와의 간담회 ┌ 충청북도농촌지도자연합회 ├ 충청북도생활개선협의회 └ 한국농어민후계자충북연합회 · 건설교통위원회 - 옥천군 안남면 진입로 포장 건의등 2건 - 수해복구현장 확인 ┌ 충주시 살미면 ├ 제천시 덕산면 ├ 청원군 옥산·낭성·남일면 └ 음성군 원남면	
6. 22	○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 · 낙농가 특별지원에 관한 건의문 채택 · 개발제한구역 조정건의안 채택 · 5분자유발언 : 박온섭의원	본회의장
6. 24	○ 타시도의회 친선방문 · 대상 : 전라북도의회 · 안건 : 호남고속철도 노선 결정등과 관련 친선 간담회 · 방문단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6. 26	○ 타시도의회 친선방문 · 대상 : 광주광역시의회, 전라남도의회 · 안건 : 호남고속철도 노선 결정등과 관련 친선 간담회 · 방문단 :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7. 2	○ 전국광역시도의회의원대회 참석 · 주관 : 전국광역시도의회의장협의회 · 주제 : 지방자치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 · 주제발표 : 조창현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장 · 토론 및 결의안 채택	올림픽파크호텔 (올림피아홀)
7. 4	○ 교육사회위원회 활동 ·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법률안 제정 · 도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향후 활용방안 · 암반과정 개발 현지방문 - 제천시 청풍면 양평리 - 단양군 적성면 파랑리	위원회실
7. 8	○ 일본국 야마나시현청 관계자 접견 · '97교류사업 및 충북100년 기념행사 협의 · 佐藤文俊 총무부장외 4명	의장실
7. 9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 제127회 임시회 회기 및 안건 · 충북100년 기념행사 외빈 영접 · 제5대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 · 일본 야마가다현 방문계획 · 2002 월드컵축구대회 청주 오송유치 추진상황 보고 청취	의장실
7. 12	○ 제5대 충청북도의회 개원1주년 기념행사 · 경과보고	회의실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 유공공무원 표창 : 6명 · 기념사 : 유영훈 부의장 · 축 사 : 주병덕 도지사, 김영세 교육감 · 한시 낭독 : 박온섭 의원 ※ 오찬 : 구내식당	
7. 18	○ 의원연찬회 · 주제 : 지방자치와 의회의 역할 · 강사 : 아리조나주립대 부총장 김주철 ○ 제127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 개회식 · 제1차 본회의 - 회기결정의 건 -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	회의실
7. 18 ~7. 23	○ 상임위원회 활동 · 공통 : 소관사항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 · 기획경제위원회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내무위원회 - 행정구역조정 촉구 건의안 - 도농 복합형태의 시 특별지원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등 2건 - 용담댐 하류 수질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수량조절 건의안 · 농림수산위원회 - 농기계 교육 추진상황 현지확인 - 충북농협연수원 방문 - 도의원 선정 지역농업인과의 간담회 · 건설교통위원회 - 충청북도건축조례안 - 영동지역 수해현장 방문	위원회실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7. 24	○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4건 · 용담댐하류수질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수량 조절 건의안 · 도농 복합형태의 시 특별지원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 ·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구성 - 위원장 : 박학래 의원 - 간 사 : 최선환 의원 - 위 원 : 최종철, 이선호, 이길하, 오성진,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박온섭, 박제국 의원 · 5분자유발언 : 최종철, 최선환의원	본회의장
7. 25 ~7. 30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일본 방문 · 방문도시 : 야마가다현, 가나가와현 · 주요내용 - 양도·현의회간 간담회 - 쓰레기소각장, 공업기술센타, 입곡천공업단지, 월드컵경기장등 시찰	
7. 26 ~7. 30	○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 내용 : 해외연수 · 방문국 : 캄보디아(프놈펜, 시엔립) · 연수의원 : 5명 (김준석, 장준호, 김대호, 김원식, 이선호의원)	
8. 1	○ 충북100년기념 고유제 참석 · 참석 : 차주원 의장	충주시 중앙공원
8. 2	○ 미국 북마리아군도의회 의원 일행 환영만찬 · 대표단 : 바바우타 법사위원장외 2인 · 방문목적 : 충북100년 기념행사 교류 방문	청주관광호텔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8. 3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 충북100년 기념행사 추진상황 · 제128회 임시회 회기 운영	의장실
	○ 충북100년 기념 외국의회 의원 일행 접견 · 방문국별 인원 - 일본 야마나시현의회 14명 - 중국 흑룡강성 인민대표대회 6명 - 미국 북마리아군도의회 3명 · 내용 : 화환 및 기념품 교환 환담	의원휴게실
8. 4	○ 충북100년 기념 초청 만찬 · 주재 : 차주원 의장 · 참석 : 100명 - 외국의회 초청 의원 - 기념행사 관계관	청주관광호텔
8. 5	○ 일본 야마나시현의회 의원 초청 조찬 · 주재 : 차주원 의장	수안보와이키키 호텔
8. 6	○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 · 댐관련특위 활동 관련 세부추진계획 · 용담댐·영월댐관련 활동사항 · 특별법 초안 작성 소위원회 구성 - 박학래위원장, 최선환 간사, 이길하·오성진 유재철의원	위원회실
8. 7 ~8. 8	○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 · 참석 : 김준석 위원장 · 안건 : 의원보좌관제와 지방자치법개정안 협의	강원도 강릉
8. 12	○ 도정질문의원 간담회 · 주재 : 차주원 의장 · 내용 : 도정질문내용조정 및 질문방법 등 협의	의장실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8. 12 ~8. 14	○ 제5회 전국농어민후계자대회 참석 · 참석 : 안재원 농림수산위원장 이선호간사, 최영락·이향래의원	전남 영광군 (대불공단)
8. 16	○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 · 특별법 초안 작성 소위원회 개최 · 주요내용 - 특정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법률안 검토 - 법률자문 변호사 선정 : 정영수 변호사 - 입법청원 시기 및 소개 국회의원 선정 - 특위운영 관련사항 등 협의	위원회실
8. 22	○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 제12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재의요구안처리등	위원회실
	○ '96 을지연습 참관 · 참관 : 도의원 35명	충무시설
8. 23	○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 · 충북출신 국회의원과 간담회 · 내용 -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설명 - 청원 소개의원 선정 협의 등	국회의원회관
8. 26	○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 ·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정안 입법청원의 건	위원회실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 제128회 임시회 운영계획 · 도정질문 준비 만전 당부	의장실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8. 28	○ 제128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 개회식 · 1차 본회의 - 회기결정의 건 -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청원의 건	본회의장
8. 29 ~8. 31	○ 상임위원회 활동 · 기획경제위원회 - '96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 -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1건 - 주유소 허가 취소요망 진정 등 2건 · 내무위원회 -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 청주실내수영장 운영개선 진정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농림수산위원회 - 전국 도의회 농업관련 상임위원협의회 워크숍 참석 (8.29 ~ 8. 30 유성리베라호텔) · 건설교통위원회 - 영동지역 건설사업현장 현지확인 - 충청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 - 주택건설 감리제도 개선 진정처리	위원회실
9. 2 ~9. 4	○ 제128회 임시회 제2차~제4차 본회의 · 도정질문 및 답변 - 질문의원 : 박온섭, 최종철, 장준호, 임헌용, 김대호, 성기덕, 유명호, 김인식, 이길하 의원 - 답변자 : 도지사, 교육감 및 실국원장	본회의장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9. 5	○ 제1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 ·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본회의장
9. 12	○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 제12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95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위원회실
	○ 의회사무처 간부와의 간담회 · 주재 : 유영훈 부의장	부의장실
9. 16	○ 제129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 개회식 · 제1차 본회의 - 회기결정의 건 - '95년도 충청북도 및 교육청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본회의장
	○ 중국 흑룡강성 방문 · 기간 : 9. 16 ~ 9. 23 (8일간) · 방문단 : 차주원의장, 김준석 의회운영위원장, 윤병태의원, 임헌용의원 · 목적 : 양도·성간 의회차원의 상호교류협력 증진 협의	
9. 16 ~9. 18	○ 상임위원회 활동 · 공통 : '95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예비심사 · 내무위원회 - 문화재 정비 및 보존실태 현지답사 · 농림수산위원회 - 청주, 증평지역 정부양곡 보관실태 확인 · 건설교통위원회 - 진정처리협의 간담회	위원회실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9. 1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 '95충청북도 및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종합심사 · '95충청북도 및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	위원회실
9. 20	○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95충청북도 및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95충청북도 및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 공포 · 방법 : 도보 게재 · 시행일 : 공포후 30일 이내 시행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본회의장
10. 1 ~10. 2	○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 · 목적 : 댐주변지역 주민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모색 · 대상지역 : 충주시 목벌동, 단양군 별곡리	
10. 2	○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 제130회 임시회 회기 운영 협의 · 국회 국정감사 대상 변경 및 부당성 대응 모색	위원회실
	○ 의회사무처 농촌일손돕기 활동 · 고추따기 2,000평 · 참석 : 의회사무처 직원 45명	괴산군 청천면
10. 4	○ 국회 국정감사위원 초청 조찬 · 목적 : 국회 국정감사에 따른 도의회 입장 전달 · 초청위원 : 신경식, 김영준의원 · 참석 : 차주원의장,김준석·차주용·임헌용의원	청주관광호텔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10. 7	○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 제13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회실
	○ 제130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 개회식 · 제1차 본회의 -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장
10. 8 ~10. 16	○ 상임위원회 활동 · 공통 -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의 건 -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요구의 건 · 의회운영위원회 - 96년도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유급보좌관제 신설 협의 · 기획경제위원회 - 명예연구소 방문 : 5개소 -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등 3건 · 내무위원회 - 문화재 정비 및 보존실태 현지답사 - 제77회 전국체전 출전선수단 방문 격려 - 지방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청취 · 교육사회위원회 - 전남 영광군 영산성지학교 방문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방문 - 먹는물 제조업체 방문 : 진로종합식품 · 농림수산위원회 - 문화마을조성사업 현지확인 : 제천 - 한우경진대회 참관 - 서울 농수산물 도매시장 방문 - 괴산지역 임도시설 확인 - 잎담배 수매현장 방문 - 농특산물 수매가 인상 및 채소류 수매에 관한 건의의 건	위원회실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한 건설현장 확인 - 진정건의서 처리 협의	
10. 17	○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96행정사무감사 계획안 · 충청북도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안 · 농특산물 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	본회의장
10. 15 ~10. 16	○ 의원연찬회 · 주제 및 강사 - 국제화 시대의 도의원의 역할 : 단국대 김유혁 교수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요령 : 경원대 이영균 교수 - 최근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안보 : 충북대 홍성후 교수 - 예산결산심의 절차와 기법 : 국회 의정연수원 신해룡 교수	회의실
10. 19	○ 의회사무처 직원 체육대회 · 등산 및 자연보호활동 · 참석 : 사무처 직원 57명	청원군 문의면 (불당골)
10. 28	○ 10.19 재·보궐선거 도의원 당선인과의 상견례 · 당선인 : 박상수(제천4), 안철호(옥천2) · 의장단 : 차주원의장, 유영훈·신완섭부의장 ※ 의회 의원 뱃지 전달	의장실
10. 29	○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 제13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충청북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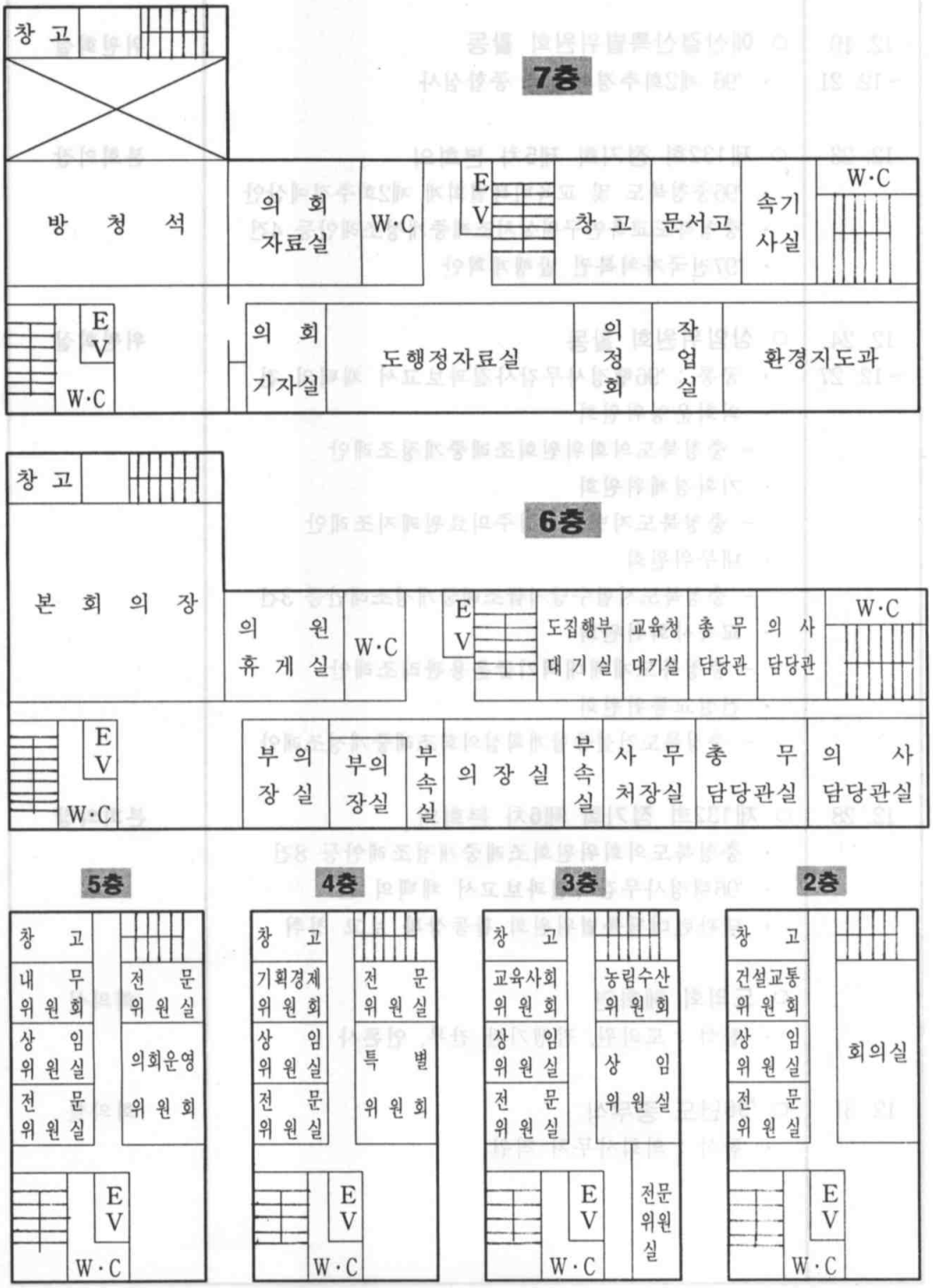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 제131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본회의장
	· 개회식	
	· 제1차 본회의	
	- 회기결정의 건	
	- 10. 19 재·보궐선거 당선의원 선서 : 박상수, 안철호 의원	
10. 30 ~11. 1	○ 상임위원회 활동	위원회실
	· 기획경제위원회	
	- 관광지 개발사업 현장 방문	
	· 내무위원회	
	- 수안보지역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청원심사	
	- '9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문화재 정비 및 보존실태 현지확인	
	· 교육사회위원회	
	- 여성회관 향후 운영방향 및 공사 진척사항 협의	
	- 용담댐 수계에 따른 환경오염원 실태 점검	
	· 농림수산위원회 : 잎담배 수매현장 방문	
	· 건설교통위원회	
	- 청주~연길간 직항로 개설 건의안 처리 등 진정 2건	
11. 2	○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본회의장
	· '96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수안보지역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청원	
11. 4	○ 의회사무처 간부회의	의장실
	· 참석 : 계장급 이상 간부	
	· 내용 : 제132회 정기회 준비 철저	
11. 4 ~11. 9	○ 중국 흑룡강성 교류 방문	
	· 방문단 : 유영훈 부의장(단장), 권영관,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차주용, 장준호, 김대호, 유명호 의원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 주요내용 - 양도·성간 자매결연에 따른 상호교류 확대 방안 논의 - 양도·성의회간 우호증진 및 의회차원의 지원책 모색	
11. 8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 · 참석 : 김준석 위원장	경상남도의회
11. 15	○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 제132회 정기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건 ·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결과 -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협의사항 - 차기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 주관	위원회실
11. 20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 제132회 정기회의 내실 운영 · 의원상조회 기금 활용계획 · 집행기관 간부와의 간담회 계획	의장실
	○ 제132회 정기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 개회식 · 제1차 본회의 - 회기결정의 건 - '97예산안 제출 관련 도정 및 교육시책 연설 -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장
11. 21 ~11. 29	○ '96행정사무감사 활동 · 상임위별 소관사항 전반	위원회실
11. 30	○ 교육사회위원회 활동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회실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12. 2 ~12. 3	○ 제132회 정기회 제2차~제3차 본회의 · 도정질문 - 질문의원 : 한상문, 김재근, 윤병태, 김준석, 차주용의원 - 답변자 : 도지사, 교육감 및 실국원장	본회의장
12. 3	○ 안보정세 설명회 · 주관 : 국가안전기획부 충북지부 · 내용 : 국내외정세 및 통일안보상황(VTR 상영)	회의실
12. 4 ~12. 7	○ 상임위원회 활동 · '97충청북도및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	위원회실
12. 9 ~12. 1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 '97충청북도및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종합심사	위원회실
12. 12	○ 기획경제위원회 활동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	위원회실
	○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 ·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 청원심사에 따른 입법취지 설명	국 회
12. 16	○ 제132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 12. 11 재선거 당선의원 선서 : 이병철 의원 · '97충청북도및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 · '96충청북도및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장
12. 17 ~12. 18	○ 상임위원회 활동 · 공통 : '96 제2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회실

일 자	주 요 행 사	장 소
12. 19 ~12. 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 '96 제2회추경예산안 종합심사	위원회실
12. 23	○ 제132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 '96충청북도 및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 ·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 · '97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안	본회의장
12. 24 ~12. 27	○ 상임위원회 활동 · 공통 :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회운영위원회 -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기획경제위원회 - 충청북도지방공사청주의료원폐지조례안 · 내무위원회 -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 건설교통위원회 -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회실
12. 28	○ 제132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 ·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보고 청취	본회의장
	○ 도의회 폐회연 · 참석 : 도의원, 집행기관 간부, 언론사	회의실
12. 31	○ '96년도 종무식 · 참석 : 의회사무처 직원	회의실

9. 議事堂 施設配置圖


7층
창 고
방 청 석
의 회 자료실
W·C
E V
창 고
문서고
속기 사실
W·C
E V
W·C
의 회 기자실
도행정자료실
의정회
작업실
환경지도과
6층
창 고
본 회 의 장
의 원 휴 게 실
W·C
E V
도집행부 대 기 실
교육청 대기실
총 무 담당관
의 사 담당관
W·C
E V
W·C
부 의 장 실
부의 장실
부 속 실
의 장 실
부 속 실
사 무 처장실
총 무 담당관실
의 사 담당관실
5층
창 고
내 무 위원회
상 임 위원실
전 문 위원실
전 문 위원실
의회운영 위원회
E V
W·C
4층
창 고
기획경제 위원회
상 임 위원실
전 문 위원실
전 문 위원실
특 별 위원회
E V
W·C
3층
창 고
교육사회 위원회
상 임 위원실
전 문 위원실
농림수산 위원회
상 임 위원실
E V
W·C
전문 위원실
2층
창 고
건설교통 위원회
상 임 위원실
전 문 위원실
회의실
E V
W·C

議政白書

印　　刷　1997年　6月
發　　行　1997年　6月
發 行 處　忠淸北道議會事務處
印　　刷　文化孔版社
　　56－4534, 59－5574

題　　字　東林 吳國鎭